2025.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III)

외 교 통 일 위 원 회
국 방 위 원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외 교 통 일 위 원 회

❖ 외 교 부

Ⅰ. 개 관 ····· 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6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8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

Ⅱ. 사업별 검토 ····· 10

【일반회계】

<세 출> ····· 10

1. 탈북민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집행률 제고 필요 ····· 10
2.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 회의일정 및 참석여부 조기 확정을 위한 적극적 협의 필요 ····· 13

3.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사업: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등 ····· 17
4. 국별협력사업(ODA): 집행 부진 사업의 적정 소요액 검토 필요 ····· 23
5.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신규): 사업 수행 대학교 선정 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고려 필요 등 ····· 36
6.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신규):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등 ····· 44
7.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사업: 세입예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세출예산 편성 필요 ····· 49
8. 청년인턴 채용 사업: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52
9.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 기타보전금의 비목 조정 필요 ····· 55
10.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사업: 고용부담금 편성 필요 ····· 58

❖ 통 일 부

Ⅰ. 개 관 ····· 6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6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64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66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67

Ⅱ. 사업별 검토 ····· 68

【일반회계】

<세 출> ····· 68

1.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 사업(신규): 신진연구자 대상 홍보방안 모색 필요 등 ····· 68

2.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 사업(신규): 종전 자문기구 운영사례 검토 필요 등 ····· 73

3.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신규): 타기관 사업과 차별화 방안 모색 필요 ····· 77

4.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신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83

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목 조정 필요 ····· 89

【남북협력기금】

<총 괄> ····· 93

6. 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 적정 여유자금 규모 논의 필요 ····· 93

<지 출> ····· 97

7.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무상) 사업: 최근 결산 내역 및 남북한 정세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9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Ⅰ. 개 관 ····· 100

1. 예산안 개요 ····· 10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02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02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3

Ⅱ. 사업별 검토 ····· 104

【일반회계】

<세 출> ····· 104

1.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 지역회의 출석률 제고 필요 ····· 104
2.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 이념적 중립성 및 세대별 대표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등 ····· 108

❖ 재외동포청

Ⅰ. 개 관 ····· 113

1. 예산안 개요 ····· 11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15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16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6

Ⅱ. 사업별 검토 ····· 117

【일반회계】

<세 출> ····· 117

1.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신규): 의무위반 또는 중도포기 관련 반납 규정 마련 필요 ····· 117
2.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한 조속한 구축 필요 ····· 121
3.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관사 운영·관리규정 마련 필요 ····· 125

국 방 위 원 회

❖ 국 방 부

Ⅰ. 개 관 ····· 13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3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34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37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8

Ⅱ. 사업별 검토 ····· 139

【일반회계】

<세 출> ····· 139

1. 통신시설 사업, 환경보전시설 사업 및 장비획득 사업(단위사업): 장기계속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안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139
2. 민간조리원 운영: 민간조리원 운영률 제고 노력 필요 ····· 144
3. 국방ICT혁신기술(R&D) 사업: 과제별 지원단가의 적정성 점검 필요 ····· 147
4.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집행가능한 수준으로의 예산 감액 조정 검토 ····· 151
5.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154
6.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등 ····· 159

7.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사업: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 예산규모로 감액 조정 필요 ····· 164
8. 병영 문화프로그램 사업(신규): 유사사업과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필요 ····· 167
9.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 예산 단가의 감액 조정 검토 필요 등 ····· 170
10. 간부확보장려사업: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추진 등 ····· 176
11. 동원훈련 사업 및 일반훈련 사업: 집행가능한 수준으로의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182

【국방 ·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 출> ····· 188

12. 부대개편 7차 사업 및 부대개편 8차 사업: 낙찰차액을 감안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188
13.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 필요 ····· 193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

<수 입> ····· 196

14. 입장료수입: 수입증대 방안 검토 필요 ····· 196
15. 기타잡수입: 관리위탁 업체 선정시 경쟁 입찰을 통한 수입 증대 노력 필요 ····· 201

❖ 병 무 청

Ⅰ. 개 관 ····· 205

1. 예산안 개요 ····· 20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07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08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08

Ⅱ. 사업별 검토 ····· 209

【일반회계】

<세 입> ····· 209

1. 건물대여료: 사용요율 상향 조정 검토 필요 등 ····· 209

<세 출> ····· 215

2.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낙찰단가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 단가의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215

3.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중도해지율 등을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노력 필요 ····· 221

❖ 방위사업청

※ 비공개 (177 ~ 226쪽)

※ 비공개 (177 ~ 226쪽)

행 정 안 전 위 원 회

❖ 행정안전부

Ⅰ. 개 관 ····· 315

1. 예산안 개요 ····· 31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18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21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22

Ⅱ. 사업별 검토 ····· 323

【총 괄】

1.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 국비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 323

【일반회계】

<세 출> ····· 330

2.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330
3.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신규): 가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을 사전에 수행할 필요 ····· 337
4.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신규): 사업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 등 ····· 340

5. 국민소통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실적 개선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344
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필요 ····· 347
7.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신규):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조정 검토 필요 등 ····· 3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358

8.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 투자계획 평가지표의 개선 필요 등 ····· 358
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수도권-비수도권 차등지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368
10. 마을기업 육성사업: 성과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 372
11.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신규): 적정 수준의 국비보조율 설정 검토 필요 ····· 376
12.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신규): 공간 리모델링 비용규모의 확인 필요 ····· 380
13.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신규): 사업 지출구조의 조정 검토 필요 ····· 384

❖ 경 찰 청

Ⅰ. 개 관 ····· 386

1. 예산안 개요 ····· 38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89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91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92

Ⅱ. 사업별 검토 ····· 393

【총 괄】

1.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 사업: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393

【일반회계】

<세 출> ····· 398

2.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사업: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간 임무 구분 및 책임 명확화 필요 ····· 398
3. 국민안전산업펀드 사업(신규):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조정 필요 등 ····· 402
4. 경찰관 피복비 등 사업: 구형·신형 점퍼 혼용에 따른 국민 혼란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409
5. 경찰기동력강화 사업: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412
6. 장비관리유지 사업: 저위험권총 및 저위험권총탄의 예산 집행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 417
7.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신규 설치분에 대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422
8.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 소지허가 갱신 대상자 확대에 따른 모바일고지 서비스 도입 검토 필요 등 ····· 425

❖ 소 방 청

Ⅰ. 개 관 ····· 430

1. 예산안 개요 ····· 43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32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434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34

Ⅱ. 사업별 검토 ····· 435

【일반회계】

<세 출> ····· 435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대형 재난·사고현장 출동대원 심리지원 강화 필요 ····· 435
2.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신규): 국고 보조율 조정 검토 필요 ····· 439
3. 국립소방병원 운영 사업: 철저한 개원 준비 및 의료인력 확보 노력 필요 ····· 444
4.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449

❖ 인사혁신처

Ⅰ. 개 관 ····· 45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45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56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458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59

Ⅱ. 사업별 검토 ····· 460

【일반회계】

<세 입> ····· 460

1. 기타경상이전수입: 기관장 관사 임차보증금 지원금의 반환액을 세입예산에 적정 반영할 필요 ····· 460

<세 출> ····· 463

2. 교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AI 실습 교육용 노트북의 구매 단가 및 수량 조정 등 검토 필요 ····· 463
3.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 사업(신규): 별도 연구비 편성의 필요성 검토 필요 ····· 467

【공무원연금기금】

<지 출> ····· 469

4.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사업 등: 지자체 수탁금 잉여금 반환액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등 ····· 46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개 관 ····· 475

1. 예산안 개요 ····· 47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77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478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78

Ⅱ. 사업별 검토 ····· 479

【일반회계】

<세 출> ····· 479

1.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사업: 통일적인 법규교육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 479
2. 청사 CI 제작·교체 사업(신규): 선거연수원 CI 교체의 필요성 검토 필요 ····· 482
3.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 온라인투표 지원 활성화 노력 필요 ····· 485

❖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Ⅰ. 개 관 ····· 489

1. 예산안 개요 ····· 48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90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491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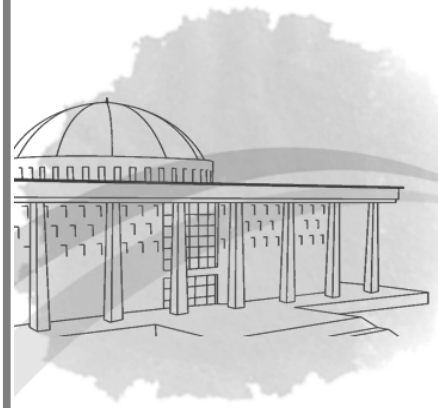
Ⅱ. 사업별 검토 ····· 493

【일반회계】

<세 출> ····· 493

1. 안전사회 구현 사업(신규): 진상규명조사 결과와 연구용역 간 연계방안 마련 필요 ····· 493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4,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839억원(25.2%) 증가함.

예산은 3,482억원으로 전년 대비 746억원(27.2%) 증가하고, 기금은 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억원(15.6%) 증가함.[1)]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737	2,737	3,482	746	27.2
기 금	597	597	690	93	15.6
총수입	3,334	3,334	4,173	839	25.2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은 3조 6,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60억원(△15.8%) 감소함.

예산은 3조 5,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7억원(△15.9%) 감소하고, 기금은 5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억원(△7.6%) 감소함.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2,218	41,722	35,501	△6,717	△15.9
기 금	570	570	527	△43	△7.6
총지출	42,788	42,292	36,028	△6,760	△15.8

나. 예산안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 3,482억원으로 전년 대비 746억원(27.2%) 증가함.

[2026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737	2,737	3,482	746	27.2
합 계	2,737	2,737	3,482	746	27.2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3조 5,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7억원(△15.9%) 감소함.

[2026년도 외교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2,218	41,722	35,501	△6,717	△15.9
합 계	42,218	41,722	35,501	△6,717	△15.9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외교부 소관 1개 기금(국제교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99억원(28.2%) 증가함.

[2026년도 외교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제교류기금	1,059	1,059	1,358	299	28.2
합 계	1,059	1,059	1,358	299	28.2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외교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개(124억 8,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사업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금 정비의 일환으로 ’25.1.1.자 폐지된 출국납부금 관련, 기부과된 출국납부금 환불 및 징수위탁 수수료 납부 등 후속조치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사업은 신남방·신북방 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유망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 지평 확대 및 유럽, 인태지역 유사입장국, 중동과의 실질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외교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11,630
2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850
총지출		12,48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사업 등 총 11개임.[3)]

[2026년도 외교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미얀마(ODA)	1,327	5,342	4,015	302.6
2	인도(ODA)	250	699	449	179.6
3	국민 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183	481	298	162.8
4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515	6,727	3,212	91.4
5	페루(ODA)	9,497	17,747	8,250	86.9
6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870	1,507	637	73.2
7	협력사업 지원(ODA)	61,390	91,576	30,186	49.2
8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 관계 강화	5,133	7,500	2,367	46.1
9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23,893	139,077	15,184	12.3
10	재외공관 인건비	299,243	309,353	10,110	3.4
1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224,367	234,582	10,215	4.6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외교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제교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16억원을 예탁할 계획임.

[외교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업 중 ODA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외교부 전체 예산안 3조 6,028억원 중 ODA예산(국제기구 분담금 포함)은 2조 1,852억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2025년 대비 6,241억원(△22.2%)이 감액되어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졌음.

외교부는 ODA 예산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하는 동시에,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의·교류 확대, ② 주요국 대상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 지원, ③ 주요 협력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 다변화, ④ K-이니셔티브 실현 추진 및 국민 공공외교 확대, ⑤ AI 플랫폼 기반 구축 지속 추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였음.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개최일정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외교부는 회의일정 및 국가별 참석여부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고, 입찰공고 유찰 등 사업 지연 요인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함.

둘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예산은 2024·2025년에 선발된 60명과 2026년에 선발되는 30명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에 대한 2027년도 파견경비로서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이므로, 2026년도 예산안의 170억 3,400만원은 2027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은 사업 실행 대학교 선정 시 교육부와 법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세출예산안이 세입예산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도록 검토가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탈북민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집행률 제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탈북민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은 해외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약품 지원, 병원 진료·입원 비용 지원, 국내 의료진·심리상담사 출장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탈북민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609	1,609	1,496	△113	△7.0
탈북민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119	119	119	-	-
탈북민 의료지원	64	64	64	-	-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 진료상담 프로그램	55	55	55	-	-

4) 일반회계-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1132-403)(한반도정책국)

나. 검토의견

코로나19 종료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탈북민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사업의 집행률은 50.4%에 그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보호 및 국내 이송 지원을 위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수의 변동 추이에 따라 예산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급감하여 2021년 63명으로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2024년 236명[2021년 대비 173명 증가(274.6%)]으로 2020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임.

[2016~2025년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3.
남성	302	188	168	202	72	40	35	32	26	1
여성	1,116	939	969	845	157	23	32	164	210	37
합계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38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143 (11.2)	△291 (△20.5)	10 (0.9)	△90 (△7.9)	△818 (△78.1)	△166 (△72.5)	4 (6.3)	129 (192.5)	40 (20.4)	- -

주) 2025년 3월(잠정) 기준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외교부의 탈북민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사업의 집행률도 2021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4년 집행률이 50.4%로서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18~2025년 탈북민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회, 명)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의료검진·심리상담 횟수	검진·상담인원
2018	97	15	15.5	2	3
2019	111	13	11.7	4	4
2020	105	5	4.8	2	2
2021	105	12	11.4	2	2
2022	140	23	16.4	2	2
2023	129	44	34.1	2	2
2024	119	60	50.4	6	9
2025.6.	119	17	14.3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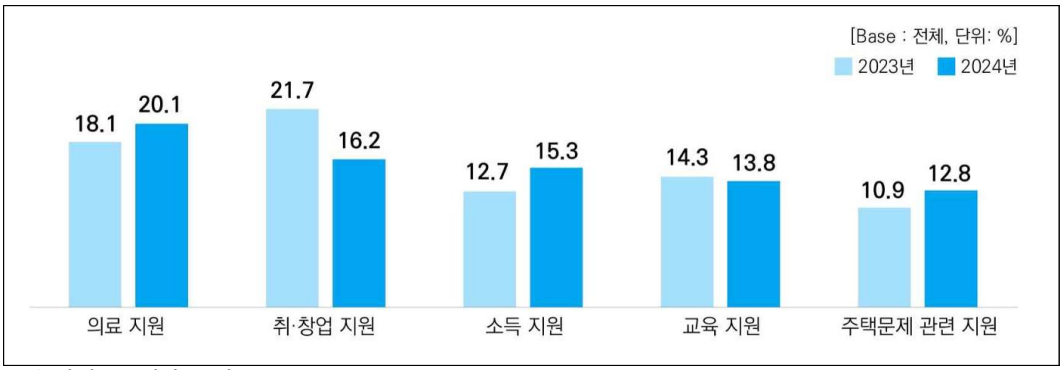
주) 각 연도 말 및 2025년 6월 말 기준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집행은 ‘검진 및 상담’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물품 확보, 현지 병원 진료비 등 ‘의료 및 심리 지원’ 관련 제반 집행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며,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의사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임.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이탈 과정에서 겪는 열악한 환경 및 극한의 상황에 따른 건강 악화와 제3국 체류, 보호시설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례가 많고, 이러한 지원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은 향후 국내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20.1%가 1순위로 ‘의료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외 체류 기간동안부터 제공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이 입국 후 적응 및 사회 진출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 결과]



주) 상위 5순위만 표시
자료: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따라서 외교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보호 및 국내 이송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수의 변동 추이에 따라 예산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 회의일정 및 참석여부 조기 확정을 위한 적극적 협의 필요

가. 개 요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우리 정부 최초 중앙아시아와의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400만원(△1.4%)이 감액된 6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6,854	237	6,760	△94	△1.4

2024년 6월, 정부는 부존자원과 성장 잠재력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하면서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 간 고위급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68억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24년 12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동일하게 확정되었음.

외교부는 2025년 9월 또는 9월 이후 개최를 예정하여 각국에 참석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타 국제회의 참석 및 각국의 국내행사 등으로 일정 조율이 불가하여 2026년으로 순연개최가 결정되었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준비기획단 운영,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경비 66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 예산은 총 67억 6,000만원으로 준비기획단 운영을 위한 7억 5,500만원과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를 위한 60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5) 일반회계-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1134-402)(동북·중앙아시아국)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

ㅇ **회의명** :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2026 Korean-Central Asia Summit)

ㅇ **시기 및 장소** : 2026년, 한국

ㅇ **주요 일정(안)**

- (1일차) 환영 만찬
- (2일차) ▲정상회의 ▲공식 오찬 ▲양자회담 등
- 부대행사 : ▲시민 참여 문화 행사
  ▲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등 관계부처 부대행사 개최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계부처 분야별 약 13개 행사 개최

ㅇ **지원범위**: 2(정상내외)+4
※ 타국 정상회의 개최 시 통상 2+4 지원

ㅇ **기획단 조직 구성(안)**

- 준비기획단장, 부단장, 기획팀, 행사팀, 홍보팀 구성 / 총 21명
-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은 시민참여 문화행사 등 다양한 교류행사 실시

ㅇ **예산(정부안 기준)**: 67억 6,000만원

- 준비기획단: 7억 5,500만원(전년도 본예산 대비 900만원 증액)
-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60억 500만원(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400만원 증액)

※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순감(전년도 대비 2억 3,700만원 전액 감액)

ㅇ **홍보**: 대국민 홍보를 위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 제고

- 방송,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 활용

자료: 외교부

나. 검토의견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일정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외교부는 회의일정 및 국가별 참석여부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고, 입찰공고 유찰 등 사업 지연 요인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함.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는 각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2025년 연내에 개최일정 등을 확정하여 2026년 하반기 중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기획단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의 2026년도 예산 확정 후 출범할 계획이며, 준비기획단 출범 이후 개최일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24년 6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발표 이후 추진 현황]

일자	내용
2024.6.18.	제27회 국무회의「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결과」의결
2024.7.10.	동북·중앙아시아국장 주재 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예산 관련 관계부처회의 개최
2024.8.27.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68.54억원)이 반영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국무회의 의결
2024.12.10.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본회의 의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예산 68.54억원 확정)
2025.3.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순연개최 결정
2025.4.29.	한-카자흐 국장급 협의회 개최(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관련)
2025.5.1.	동북·중앙아국장, 우즈벡 외교차관 예방(한-중앙아 정상회의 및 양자 고위급 교류 관련)
2025.5.13.	한-타지키스탄 정책협의회 개최(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협조 당부 등)
2025.5.15.	한-키르기스스탄 정책협의회 개최(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협조 당부 등)
2025.7.-8.	중앙아 5개국과 정상 간 통화(양국 협력 증진, 2026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관련) : ▲카자흐스탄(7.23.), ▲우즈베키스탄(7.24.),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8.28.), ▲투르크메니스탄(8.29.)
2025.9.	동북·중앙아시아국장 - 주한대사 간 통화(개최시기 논의) : ▲키르기스스탄(9.2.), ▲투르크메니스탄(9.3.), ▲카자흐스탄(9.5.), ▲우즈베키스탄(9.8.)
2026년 상반기	행사대행용역 및 홍보대행용역 입찰 진행
2026년 하반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 이후 정상회의 개최 관련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 행사대행용역 및 홍보대행용역 현황을 보면 입찰공고는 통상 12~44일 정도 진행하였고, 계약은 대체로 행사일의 2~5개월 전에 체결되었음.

이를 고려하면 2026년 1~2월 중에 행사대행용역 등의 계약체결이 진행되어야 6~7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준비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임.

[2019년 이후 행사대행용역 및 홍보대행용역 입찰공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입찰명	예정가격 (계약금액)	공고기간	실제개찰일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비고
행사 대행 용역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준비대행	3,900 (3,510)	2019.5.30. ~2019.7.10. (42일)	2019.7.18. (2019.8.22.)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019.11.25. ~11.26. / 부산 벡스코
	2020년 P4G 정상회의 행사준비대행	5,500 (6,349)주)	2020.2.6. ~2020.2.19. (14일)	2020.2.24. (2020.2.28.)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2021.5.30. ~5.31. / DDP

(단위: 백만원)

구분	입찰명	예정가격 (계약금액)	공고기간	실제개찰일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비고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대행용역	6,000 (5,550)	2023.1.27. ~2023.2.14. (19일)	2023.2.19. (2023.3.14.)	계약체결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3.5.29. ~5.30. / 청와대 영빈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대행 PCO 용역	21,000 (19,530)	2023.12.4. ~2024.1.16. (44일)	2024.1.22. (2024.2.16.)	계약체결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024.6.4. ~6.5. / 킨텍스 및 서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운영 대행 용역	3,300 (2,970)	2023.12.28. ~2024.1.11. (15일)	2024.1.16. (2024.2.1.)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2024.3.18. ~3.20. / 코엑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행사 대행 용역	27,187 (27,000)	2025.3.18. ~2025.4.16. (30일)	2025.4.23. (2025.5.8.)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2025.10.30. ~11.1. / 경주
홍보 대행 용역	2021 P4G 정상회의 종합홍보 대행	3,565	2020.12.31. ~2021.1.14. (15일)	2021.1.14.	-	유찰
	2021 P4G 정상회의 종합홍보 대행 (재공고)	3,565	2021.1.15. ~2021.1.26. (12일)	2021.1.26.	-	유찰
	2021 P4G 정상회의 종합홍보 대행 (수의시담)	3,565 (3,458)	2021.3.18. ~2021.3.22. (5일)	2021.3.22. (2021.3.24.)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및 광고 지원 용역	800	2023.12.6. ~2023.12.19. (14일)	2023.12.19.	-	유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및 광고 지원 용역(재공고)	800 (792)	2023.12.22. ~2024.1.9. (19일)	2024.1.12. (2024.2.7.)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 코로나19로 행사일정이 지연되어 1차례 수정계약이 진행되었으며, 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도 기존 47억 8,500만원에서 63억 4,900만원으로 증가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준비기획단은 2026년도 예산 확정 후 출범 예정이므로, 외교부는 준비기획단의 출범과 함께 입찰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중 각 중앙아시아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정상회의 개최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거 정상회의 개최 관련 입찰공고의 유찰사례를 검토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공고 안내 등 유찰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사업: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파견’** 사업은 국제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적 기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국제기구에서 수습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3,800만원(7.2%)이 증액된 170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16,072	16,072	17,218	1,146	7.1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15,896	15,896	17,034	1,138	7.2

[2026년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25) 158억 9,600만원 → (’26) 170억 3,400만원 [11억 3,800만원 증액]
- (164,576USD×60명×1,380원)+(164,576USD×30명×1,380원÷2)=17,034,616,000원
※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11억 3,800만원 증액 / 1·2·3차년도 각 30명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만 32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을 모집·선발하여 국제기구에 수습직원으로 파견하는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국제기구초급전문가의 파견기간은 1년이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3년차 근무의 경우 외교부와 파견 기구가 파견 경비를 반액씩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연장을 결정하고 있음.

6) 일반회계-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2231-401)(국제기구·원자력국)

2024년부터는 선발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 계약기간을 최장 3년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5년 158억 9,6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109.3% 증액되는 등 사업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2~2025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사업 선발·파견인원 및 결산내역]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선발	파견	본예산	추경							
2022	25	45	7,592	7,592	-	-	7,592	7,338	96.7	-	254
2023	24	49	9,410	9,410	-	-	9,410	9,170	97.4	-	240
2024	31	80	13,942	13,942	-	-	13,942	13,908	99.8	-	34
2025.7.	30	85	15,896	15,896	-	-	15,896	128	0.8	-	-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파견자에게 지원되는 경비는 기본급여, 생활비 조정금, 가족수당 등이며, 외교부가 파견 대상 국제기구에 파견경비를 송금하면 각 국제기구가 파견자에게 보수 및 정착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응시자격, 파견기간 및 모집방법 등]

○ **응시자격**: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만 32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학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자 또는 시행연도 12월 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
※ 남자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불가

○ **파견기간**: 1년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모집방법**: 공고에 의한 모집

○ **선발시험**: 1차 서류전형[국제기구] / 한국어 면접[외교부] / 2차 면접시험(또는 필기시험)[국제기구]

○ **파견경비**: 국고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파견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함
※ 3년차 근무의 경우 외교부와 파견 기구가 파견경비를 반액씩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연정 결정 가능
※ 기본급여, 생활비 조정금, 가족수당, 보조금(교육, 주거, 정착 등), 근무지 수당(또는 위험수당), 부임 및 귀국 여비, 연간 훈련비, 건강보험 등

자료: 외교부

2022년 이후 선발 및 파견인원을 살펴보면 외교부는 당해연도에 선발한 인원을 다음 연도에 파견하고 있음.

[2022~2025년 연도별 선발 및 파견인원]

(단위: 명)

구분	선발	파견	비고
2022	25	45	2023년도 파견 1년차 25명, 2022년도 2년차 20명
2023	24	49	2024년도 파견 1년차 24명, 2023년도 2년차 25명
2024	31	80	2025년도 파견 1년차 31명, 2년차 24명, 3년차 25명
2025	30	85	2026년도 파견 1년차 30명, 2년차 31명, 3년차 24명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의 경우 6월 28일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등을 거쳐 11월 2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2025년에 국제기구에 파견하였음.

[2024년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자 선발 및 파견일정]

일자	내용
2024.6.28.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6.28.~8.9.	응시서류 접수
2024.8.9.~9.26.	국제기구별 제1차 시험(서류전형)
2024.9.30., 10.2.	외교부 평가단 한국어 면접 실시
2024.10.14.~11.8.	국제기구별 제2차 시험(면접 또는 필기시험)
2024.11.25.	합격자 발표
2024.11.25.~2025년 중	국제기구측과 계약서 협의
2025년 중	JPO 파견

자료: 외교부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예산 170억 3,400만원은 2024·2025년에 선발된 60명과 2026년에 선발되는 30명의 국제기구초급전문가에 대한 2027년도 파견경비로서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이므로, 2026년도 예산안의 170억 3,400만원은 2027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와 국제기구는 최종합격자 선발 이후 이들에 대한 파견 관련 비용추계서를 공유하고, 외교부는 각 국제기구의 비용추계서에 맞추어 파견자들에 대한 파견경비를 국제기구에 집행(지출)함.

외교부는 2024년 12월 20일과 30일에 국제기구초급전문가 70명에 대한 파견경비로 총 139억 8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에 파견되는 1년차(2024년 선발) 파견인원 31명과 2025년에 2·3년차(2023년·2022년 선발)가 되는 파견인원 39명에 대한 파견경비였음.

이는 2024년도 예산에 2025년도 파견경비를 편성하여 지출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3조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편성 및 집행으로 볼 수 있음.

[2020~2024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사업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액	내역
2020	12.24.	5,639	35건 / 35명분(1년차 20명, 2년차 15명)
	소계	**5,639**	**35건 / 35명분(1년차 20명, 2년차 15명)**
2021	12.27.	6,550	38건 / 38명분(1년차 20명, 2년차 18명)
	12.29.	24	1건 / 1명분(1년차 1명)[1]
	소계	**6,574**	**39건 / 38명분(1년차 20명, 2년차 18명)**
2022	12.28.	7,338	39건 / 39명분(1년차 22명, 2년차 17명)
	소계	**7,338**	**39건 / 39명분(1년차 22명, 2년차 17명)**[2]
2023	12.28.	9,170	46건 / 46명분(1년차 24명, 2년차 22명)
	소계	**9,170**	**46건 / 46명분(1년차 24명, 2년차 22명)**[3]
2024	12.20.	7,302	30건 / 30명분(1년차 파견 30명)
	12.30.	6,606	6건 / 40명분(1년차 1명, 2년차 23명, 3년차 16명)
	소계	**13,908**	**36건 / 70명분(1년차 31명, 2년차 23명, 3년차 16명)**
합계		**42,629**	**195건 / 228명분**

주 1) 1년차 파견자 1명 지불단위 변경으로 인한 차액 송금
2) 2022년 1년차(총 25명) 중 3명 잔액 사용 / 2년차(총 20명) 중 3명 잔액 사용
3) 2023년 2년차(총 24명) 중 2명 잔액 사용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파견자들이 2026년도에 지원받을 파견경비는 이미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2025년 연말에 집행될 예정이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파견경비(2027년도 급여 등) 170억 3,400만원은 전액 감액하고, 향후 이를 2027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각 연도 파견사업 중에는 중도 사임 인원 발생 등의 사유로 국제기구에 이체한 국제부담금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국제기구별 연말 중 예상되는 잔액을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선발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자 165명 중 개인사유 및 국제기구 채용으로 인해 중도 사임한 인원은 총 22명임.

이들의 중도 사임은 각 연도 사업 중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에 지출한 파견경비 중 일부가 집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2019~2025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중도 사임 사례]

(단위: 명)

연도	전체 선발인원	중도 사임[주]	비 고
2019	15	2	▲2021.8. 개인사유(1명) ▲2021.10. 국제기구 채용(1명)
2020	20	5	▲2021.8. 국제기구 채용(1명) ▲2022.3. 국제기구 채용(2명) ▲2022.8. 국제기구 채용(1명) ▲2022.12. 국제기구 채용(1명)
2021	20	5	▲2023.6. 국제기구 채용(2명) ▲2023.8. 국제기구 채용(1명) ▲2023.11. 국제기구 채용(1명) ▲2024.1. 국제기구 채용(1명)
2022	25	9	▲2023.7. 개인사유(1명) ▲2024.4. 국제기구 채용(1명) ▲2024.8. 국제기구 채용(1명) ▲2024.10. 국제기구 채용(1명) ▲2025.2. 국제기구 채용(2명) ▲2025.2. 개인사유(1명) ▲2025.3. 국제기구 채용(1명) ▲2025.5. 국제기구 채용(1명)
2023	24	1	▲2025.7. 개인사유(1명)
2024	31	-	-
2025	30	-	-

주) 중도 사임: 중도 포기 및 채용으로 인한 조기종료 포함
자료: 외교부

2024년 12월 기준으로 국제기구가 집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적게는 4,054유로부터 많게는 392,646달러까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4년 12월 기준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사업 관련 국제기구 잔액 현황]

국제기구	잔 액	국제기구	잔 액
유엔사무국	392,646미불	WFP	186,272미불
UNICEF	161,944미불	UNESCO	299,376미불
UNHCR	359,000미불	UNIDO	33,448미불
ILO	239,000미불	IOM	-
ICC	142,953유로	OPCW	4,054유로
UNDP	175,966미불	WMO	339,443스위스프랑
WHO	292,783미불	WIPO	276,247미불
IRENA	21,914미불	UNEP	235,502미불
IAEA	18,000유로	FAO	18,747미불
IFAD	119,999미불	ICAO	-
OECD	45,276유로		

자료: 외교부

따라서 예산 편성 시 각 국제기구별 국제부담금 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국별협력사업(ODA): 집행 부진 사업의 적정 소요액 검토 필요

가. 개 요

외교부의 2026년도 ODA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96억 4,700만원(△24.2%)이 감액된 1조 5,034억 3,900만원이 편성되음.

‘국별협력사업’은 협력대상국과 협의 하에 정해진 기간, 예산, 지역 내에서 특정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시설 및 기술지원 등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47억 2,300만원(△14.0%)이 감액된 7,044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7)]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예산현액	집행액			(B-A)/A
공적개발원조(ODA)	1,983,086	1,949,716	1,596,770	1,503,439	△479,647	△24.2
국별협력사업	**819,206**	**790,836**	**665,028**	**704,483**	**△114,723**	**△14.0**
국제기구초급전문가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16,072	16,072	255	17,218	1,146	7.1
글로벌 프로그램	336,244	331,244	297,810	289,145	△47,099	△14.0
협력사업 지원	61,390	61,390	49,951	91,576	30,186	49.2
전략적 협력강화	6,400	6,400	1,700	7,300	900	14.1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743,774	743,774	582,026	393,717	△350,057	△47.1

주) 2025년 9월 현재, 국제기구 분담금 중 ODA로 계상되는 예산 제외
자료: 외교부

7) 일반회계-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2431),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2432), 중남미지역 국가원조(2433), 중동·CIS지역 국가원조(2434)(개발협력국)

나. 검토의견

첫째, 네팔·미얀마 및 우크라이나 사업은 현지 정세 및 국제사회 동향을 감안하여 2026년도 예산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액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네팔은 2025년 9월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인해 72명 이상이 사망하고 1,368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총리 및 각료 4명이 사임하고 시위대에 의해 임시 총리가 선출되는 등 현지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네팔(ODA) 사업 중 ‘네팔 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사업’ 은 2025년도 예산액 18억 2,600만원 중 한국국제협력단 단계의 집행액은 3억 6,400만원(집행률 19.9%)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네팔 Province7 지역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테크닉 설립사업’ 등 2건의 사업은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 체결 지연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향후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총괄관리사(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PMC)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 정세 변화에 따라 2026년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얀마는 2021년 2월 국가비상사태 발생 이후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고, 2025년 7월에는 4년 반만에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었으나 곧이어 8월에는 총선 전 정부에 대한 테러 우려로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여전히 정세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임.

현지 정세로 인해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의 2025년도 예산 1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4건의 사업이 모두 30% 미만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미얀마 정세 변화에 따라 계속사업 4건과 2026년도 신규사업 2건에 대한 예산 집행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으로 2025년 9월 현재까지 현지 정세 불안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 은 2025년도 예산 5억원 중 7,500만원(집행률 14.9%)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낮고, ‘우크라이나 국립아동병원 오흐디마트 소아트라우마 및 재활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 등 3건의 사업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현지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 협의의사록 체결 및 이후 행정절차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별 협력사업 중 현지 정세 불안정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	
1	네팔 (ODA)	네팔 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사업 ('22-'28/800만불)	1,826	1,826	364 (19.9)	1,517	△309	△16.9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 수원기관 약정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2		네팔 Province4 직업교육학교 건립사업 ('24-'30/900만불)	425	425	6 (1.4)	2,310	1,885	443.5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으로 하반기 내 PMC 선정 완료 예정
3		네팔 Province7 지역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테크닉 설립사업 ('25-'29/1,000만불)	5	5	-	2,061	2,056	41,120.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 R/D 체결 지연에 따른 PMC 선정 지연
4		네팔 과일 및 채소 가치사슬 개발사업(2단계) ('25-'31/1,000만불)	5	5	-	480	475	9,500.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 R/D 체결 지연에 따른 PMC 선정 지연
5		네팔 떠라이 지역 기후탄력적 벼 품종 재배 및 쌀 생산량 증대사업 ('26-'31/1,200만불)	-	-	-	500	신규	-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
6	미얀마 (ODA)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 ('19-'26/950만불)	100	100	-	1	△99	△99.0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7		미얀마 직업기술교사 교육원 설립사업 ('15-'27/1,305만불)	50	50	11 (21.4)	50	-	-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8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 ('16-'27/837만불)	677	677	81 (11.9)	215	△462	△68.2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9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19-'27/1,000만불)	100	100	-	1	△99	△99.0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	
10		미얀마 샨 주 마약 재배 감축 및 지속가능한 생계지원 사업(UNODC) ('26-'29/750만불)	-	-	-	500	신규	-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
11		미얀마 청년을 위한 취·창업 통합지원사업(UNDP) ('26-'28/800만불)	-	-	-	500	신규	-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
12	우크라이나 (ODA)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 ('23-'27/500만불)	500	500	75 (14.9)	571	71	14.2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설계사 입찰 지연(유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13		우크라이나 국립아동병원 '오흐마디트' 소아 트라우마 및 재활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 ('25-'28/1,400만불)	50	50	-	804	754	1,508.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입찰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일정 순연
14		우크라이나 에너지 분산화 및 녹색전환 지원 사업(UNDP) ('25-'28/1,405만불)	505	505	-	500	△5	△1.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 R/D 체결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15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24-'27/800만불)	50	50	-	400	350	700.0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 수원기관 내부 행정절차 등 분담사항 이행 지연에 따른 PMC 선정 순연

주) 2025년 9월 12일 기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2025년 신규 국별협력사업 중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총괄관리사 선정 등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10월 현재 2025년 예산 실집행액이 전무하여 2026년도 예산의 집행가능성이 낮아진 사업 37건의 경우 2025년 4분기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예산액을 2026년 과업수행이 가능한 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신규 국별협력사업 중 2025년 10월 현재 실집행이 전무한 내역사업은 총 37건임.

일례로 베트남(ODA) 사업 중 2025년 신규사업은 6건인데, ‘베트남 기후회복력 증진을 위한 지역 적응 계획 수립 및 역량 강화 사업’ 등 5건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및 수원국(수원기관)의 분담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

특히 ‘나이지리아 스마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지원 및 학생 성장 지원 사업’ 및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과 같이 예산의 집행가능성 저하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을 감액 조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 4분기 집행 경과를 확인하여 2026년에 실제 수행 가능한 과업일정 및 집행범위를 재산출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2025년 신규사업 중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	
1	베트남 (ODA)	베트남 기후회복력 증진을 위한 지역 적응 계획 수립 및 역량 강화 사업 ('25-'29/750만불)	100	100	-	1,000	900	900.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원기관 협의절차 지연
2		베트남 띠엔비엔성 소외지역 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 자립역량 강화사업 ('25-'29/2,000만불)	100	100	-	1,270	1,170	1,170.0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원기관 협의절차 지연
3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지원 프로그램 ('25-'29/2,000만불)	100	100	-	1,800	1,700	1,700.0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원기관 협의절차 지연
4		베트남 중북부지역 해안사막화 방지사업 ('25-'30/2,000만불)	100	100	-	1,300	1,200	1,200.0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원기관 협의절차 지연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	
5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 ('25-'27/250만불)	100	100	-	755	655	655.0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원기관 협의절차 지연
6	인도네시아 (OD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방안 구축 사업 ('25-'30/1,195만불)	450	450	-	3	△447	△99.3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 R/D 체결 지연에 따른 PMC 선정 지연
7	캄보디아 (ODA)	캄보디아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왕립행정교육원 역량강화 사업 ('25-'29/1,170만불)	100	100	-	634	534	534.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 순연으로 하반기 내 PMC 선정 완료
8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 민간항공교육시스템 강화 사업 ('25-'29/1,200만불)	100	100	-	1,000	900	900.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 순연으로 하반기 내 PMC 선정 완료
9		캄보디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분야 통합적 기술지도·교육·연구·역량 강화 사업 ('25-'30/1,200만불)	100	100	-	1,000	900	900.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 순연으로 하반기 내 PMC 선정 완료
10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주 포괄적 공공 보건의료 체계 역량강화 사업 ('25-'30/700만불)	100	100	-	1,000	900	900.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 순연으로 하반기 내 PMC 선정 완료
11	방글라데시 (ODA)	방글라데시 간호대학원 교육연구 역량강화 사업 ('25-'29/590만불)	5	5	-	1,032	1,027	20,540.0	**[기타-집행시점 미도래]** ·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 집행 예정
12	몽골 (ODA)	몽골 국립 칭기스칸 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역량 강화 사업 ('25-'28/600만불)	5	5	-	700	695	13,900.0	**[기타-집행시점 미도래]** ·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 집행 예정
13	라오스 (ODA)	라오스 락사오 지역 상수도 확충 및 개선 사업 ('25-'29/600만불)	100	100	-	900	800	800.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집행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PMC 선정 지연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	
14	스리랑카 (ODA)	스리랑카 고품질 옥수수 생산량 증대를 통한 트리포샤 식량 시스템 회복력 강화 사업 (WFP) ('25-'29/1,000만불)	100	100	-	2,578	2,478	2,478.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 R/D 및 국제기구 약정서 체결 지연
1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태국 삼각협력 아세안 전기전자산업 탄소중립 역량강화사업 ('25-'29/600만불)	3	3	-	3,984	3,981	132,700.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선정 등 사업 정상 추진 중으로 하반기 내 선정 완료 예정
16	에티오피아 (ODA)	에티오피아 무역활성화를 위한 통합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 ('25-'29/1,260만불)	30	30	-	1,000	970	3,233.3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입찰 관련 타 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17	아프리카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DR콩고 쾅고 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에너지 접근성 강화사업 (USAID,UNDP) ('25-'28/1,000만불)	1,590	1,590	-	2,375	785	49.3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18		**나이지리아 스마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지원 및 학생 성장 지원 사업 ('25-'29/1,150만불)**	**860**	**560**	**-**	**1,440**	**580**	**67.4**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수원기관 협의 지연으로 인한 PMC 선정 지연
19		케냐 카지아도주 모성과 신생아 전문의료센터 (SMC) 구축을 통한 의료역량강화사업 ('25-'30/1,400만불)	50	50	-	1,648	1,598	3,196.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수원국 약정 체결 지연으로 인한 PMC 선정 일정 순연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	
20		모로코 라바트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사업 ('25-'28/1,300만불)	50	50	-	2,653	2,603	5,206.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수원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PMC 선정 지연
21		알제리 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 ('25-'29/800만불)	500	500	-	1,114	614	122.8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R/D 체결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22		튀니지 글로벌 공공조달교육원 건립 사업 ('25-'30/1,100만불)	250	250	-	810	560	224.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R/D 체결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23		모잠비크 마푸투 주 초중통합학교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 ('25-'29/1,480만불)	850	850	-	3,355	2,505	294.7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수원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24	우간다 (ODA)	우간다 부소가지역 혈액수혈체계 강화사업 ('25-'30/1,200만불)	260	260	-	1,100	840	323.1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R/D 체결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25		우간다 오모로구 학교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초등교육의 질 향상사업 ('25-'29/1,000만불)	13	13	-	1,326	1,313	10,100.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R/D 체결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	
26	탄자니아 (ODA)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 강화 사업 ('25-'28/500만불)**	**1,690**	**290**	**-**	**1,900**	**210**	**12.4**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R/D 체결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27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주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 개선을 통한 통합적 모자보건 개선사업 ('25-'29/1,450만불)	1,145	1,145	-	1,900	755	65.9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수원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PMC 선정 지연
28		탄자니아 모로고로 주 폴리텍대학 건립 및 기술교육훈련 사업 ('25-'30/1,950만불)	50	50	-	1,900	1,850	3,700.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R/D 체결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29	페루 (ODA)	페루 취약계층 및 베네수엘라 난민, 이주민 빈곤 경감을 위한 지역정부 거버넌스 강화 및 필수 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업(UNHCR) ('25-'28/1,450만불)	500	920	-	3,900	3,400	680.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R/D 체결 및 국제기구 약정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30	우즈베키스탄 (ODA)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25-'29/973만불)	50	50	-	1,000	950	1,900.0	**[기타-집행시점 미도래]** · 약정체결 관련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한 사업일정 순연
31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요르단 취약계층 대상 녹색기술 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 ('25-'29/1,000만불)	50	50	-	842	792	1,584.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입찰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일정 순연으로 하반기 내 선정 완료
32		한-요르단 공학기술 훈련원 설립사업 ('25-'29/1,100만불)	50	50	-	691	641	1,282.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입찰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일정 순연으로 하반기 내 선정 완료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	
33		팔레스타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R&D 역량강화사업 ('25-'32/2,000만불)	50	50	-	655	605	1,210.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입찰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일정 순연
34		팔레스타인 세바스티아 통합적 지역개발사업 ('25-'29/900만불)	50	50	-	804	754	1,508.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입찰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일정 순연
35	키르기스스탄 (ODA)	키르기스스탄 대기질 개선사업 ('25-'28/1,000만불)	50	50	-	905	855	1,710.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입찰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일정 순연
36		키르기스스탄 지역 농민-학교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학생 영양 강화와 학교 보건 환경 구축 사업 (WFP) ('25-'28/1,000만불)	50	50	-	780	730	1,460.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 국제기구 약정서 문안 협의 지연
37	타지키스탄 (ODA)	타지키스탄 섬유기술 교육센터 설립 사업 ('25-'29/1,000만불)	50	50	-	10	△40	△80.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PMC 입찰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일정 순연

주) 2025년 10월 10일 기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2025년 계속사업 중 수원국 또는 수원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어 2025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14건의 사업은 2025년 4분기 사업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실제 수행가능한 과업 일정 및 집행범위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이전에 시작한 국별협력사업 중 2025년 10월 현재 실집행액이 전무한 내역사업은 총 14건임.

일례로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4건의 사업은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원기관과의 협의절차가 지연됨으로써 2025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강화사업'의 경우에는 2026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3억 6,400만원(52.0%)이 증액된 10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2025년 4분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2026년도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UNICEF)'의 경우 외교부는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라 하반기 집행 예정으로 2025년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설명하였으나, 이 사업은 2024년에도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2024년에 편성된 본예산 14억 1,7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였고, 2025년 10월 현재까지 집행액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30억 2,500만원의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계속사업 중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	
1	베트남 (ODA)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23-'26/930만불)	1,247	747	-	500	△747	△59.9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원기관 협의절차 지연
2		베트남 국가계획 집행 모니터링평가(M&E) 개선 컨설팅 및 IT 시스템 구축사업 ('22-'27/300만불)	221	221	-	198	△23	△10.4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원기관 협의절차 지연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3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 ('24-'33/3,000만불)**	**2,140**	**110**	**-**	**100**	**△2,040**	**△95.3**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원기관 협의절차 지연
4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강화사업 ('24-'28/1,470만불)**	**700**	**700**	**-**	**1,064**	**364**	**52.0**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 베트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수원기관 협의절차 지연
5	인도네시아 (ODA)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 체계 개선사업 ('24-'28/300만불)	200	200	-	1,000	800	400.0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 R/D 체결 지연에 따른 PMC 선정 지연
6	라오스 (ODA)	라오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 구축사업 ('23-'28/370만불)	150	150	-	1,600	1,450	966.7	**[기타-집행시점 미도래]** ·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 집행 예정
7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반협력국가그룹 (ODA)**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 사업(UNICEF) ('24-'27/600만불)**	**1,388**	**18**	**-**	**3,025**	**1,637**	**117.9**	**[기타-집행시점 미도래]** ·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 집행 예정
8	가나 (ODA)	가나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농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 ('24-'28/950만불)	550	490	-	500	△50	△9.1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집행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시공사 선정 지연
9	아프리카 지역 일반협력국가그룹 (ODA)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 ('24-'27/600만불)	250	250	-	1,200	950	380.0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10	우간다 (ODA)	우간다 뮬라고 국립 전원병원의 자동화 및 의료인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4-'28/1,000만불)	1,800	1,800	-	2,130	330	18.3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수원기관 요청사항 검토 및 추가 기획조사 실시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	
11	중동CIS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21-'26/625만불)	1,614	742	-	75	△1,539	△95.4	**[수원국/수원기관 분담사항 미이행]** · 수원기관측 현지입찰 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일정 순연
12		이란 국립직업훈련 교사 훈련원 현대화 사업(UNESCO) ('17-'28/750만불)	2,927	227	-	2,021	△906	△31.0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13		이란 내 아프간 여성 난민을 위한 통합적 성생식 보건 및 보호 서비스 지원사업(UNFPA) ('23-'28/500만불)	1,324	24	-	652	△672	△50.8	**[기타-수원국 정세 불안]** · 수원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14	키르기스스탄 (ODA)	키르기스스탄 농산물 수확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가치사슬 강화사업 ('24-'27/600만불)	668	238	-	455	△213	△31.9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 수원국 요청사항 검토 및 협의로 인한 사업일정 순연

주) 2025년 10월 10일 기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신규): 사업 수행 대학교 선정 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고려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은 수원국 산업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전문인력으로 훈련하는 상생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대학을 연계하여 학위와 인턴십 과정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6년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글로벌연수(ODA)	67,973	62,973	73,940	5,967	8.8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	-	4,200	4,200	순증

[2026년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2026) 42억원, 신규 [221명×1,900만원(1년차, 6개월)]
- 1인당 1,900만원 = 운영경비 269만원 + 사업비 1,638만원
= (위탁용역 70만원 + 행정비 35만원 + 예비비 164만원)
(항공료 150만원 + 한국어교육 등록금 260만원 + 기숙사비 240만원
+ 생활비 720만원 + 정착지원금 120만원 + 건강보험료 48만원
+ 위탁수수료 등 100만원)

자료: 외교부

이 사업은 국내 학위과정과 국내 취업(인턴십 과정)을 연계한 ODA 프로그램으로서 개발협력 목표(인재양성 및 협력국 경제·사회 발전)와 우리 정부의 과제(한국형 인재양성 ODA)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8) 일반회계-글로벌연수(ODA)(2435-402)(개발협력국)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내 사업 구성]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개요	비고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전문인재 양성	국내 초청 학위과정을 통해 협력국 기술 인재 양성 + 국내 산업 인턴십	글로벌연수(ODA) 下 내역사업 신설

자료: 외교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수요조사와 국내 공모절차를 거쳐 1차년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2~3차년도에는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학기 사이에 2개월씩 3차례의 산업계 인턴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표준절차(안)]

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현지 수요조사 및 국내 공모절차	OT & 한국어교육 (8개월)						전공 1학기						인턴 1차		전공 2학기				인턴 2차		전공 3학기				인턴 3차		전공 4학기			

자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정부 정책 분석 및 고위급 면담을 통해 전문인재 양성 수요를 확인하였고, 2025년 2월에는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재지역 1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1차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수요인원(420명)을 파악하였으며, 2025년 11월까지 국내 지방자치단체·산업체 및 대학교 대상 수요조사와 개도국 대학 및 인재 대상 수요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현황]

시기	추진내용
2024.3.~2025.3.	· 연구용역: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정부정책 분석 · 고위급 면담: 전문인재 양성 수요 확인
2025.2.11.~24.	· 국내 대학 수요 1차 조사: 420명 수요 확인
2025.9.~11.	· 국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대상 수요조사(예정)
2025.11.~2026.1.	· 개발도상국 대학 및 인재 대상 수요조사(예정)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2월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재지역 10개 대학 수요조사 결과]

(단위: 명)

지역구분	연계센터	대학명	수요학과	수요인원
수도권	인천센터	인천대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15
비 수도권	강원센터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동물생명과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에너지・인프라융합협동과정, 산림경영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조경학과, 스마트팜융합바이오시스템공학과	60
		한림대	글로벌협력학과	100
	경남센터	경상대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응용생명과학과	12
	대구센터	계명대	의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10
	대전센터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무역물류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화공신소재공학과	68
	전북센터	전북대	축산학과	20
	제주센터	제주대	컴퓨터공학과, 바이오소재, 식물자원환경, 동물생명공학, 경영정보학, 융합디자인학과	74
	충북센터	청주대	기계항공시스템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바이오의약과, 에너지융합공학과	40
	광주센터	전남대	고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수의학과, 의과학과	21
합계				420

자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참가자를 선발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과정을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추진되던 ‘학위과정연수(석·박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공무원이 아니라 현지 우수 대학을 졸업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학위에 더불어 산업체 인턴십이 추가되며,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학위과정 시작 전 한국어 교육과정(8개월)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기존 학위과정연수(석·박사)와 차이가 있음.

또한 대상국가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한정되고, 사업범위가 석사학위에 산업계 인턴십 및 한국어교육이 추가되고 실행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GKS)’과도 차이점이 있음.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다른 사업 비교]

구분	KOICA 학위과정연수 (석·박사)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GKS)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전문인재)
목적	·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 대상 석·박사 장학 제공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우리 대학 국제화	· 이공계 학위·실습 교육을 통해 한국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개발도상국 미래산업 발전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
초청대상	· 공무원 한정	· 민간인 (초청대상국 국적 소지자)	· 현지 우수 대학 졸업한 민간인
대상국가	· 개발도상국 전체	· 해외 전체	· 아시아 개발도상국
사업범위	· 석·박사	·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한국어교육(8개월) + 석사(2년) + 인턴십(6개월) (향후 학위종류 추가)
실행기관	· 대학	· 대학	· 지자체 + 산업계 + 대학
매칭방법	· 입찰	· 공모(산업 연계 고려 없음)	· 공모(지방자치단체별 비교우위산업 고려)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행 대학교 선정 시 교육부와 법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는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별 참여자 및 활동영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과 산업계를 연결하고 절차를 총괄하는 역할이고, 대학교는 교육 및 학생관리(기숙사 제공 포함)를 담당하며, 산업체는 취업 및 실습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사업의 주요 과정은 석사학위 취득이므로 대학교가 참가자에 대한 관리·지원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전체 과정별 이해관계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수원국</th><th colspan="4">국내</th></tr>
<tr><th>산업계</th><th>교육
기관</th><th>재외
공관</th><th>외교부
(KOICA)</th><th>법무부</th><th>부처</th><th>지자체</th><th>대학/
연구</th><th>산업계</th></tr>
<tr><td>절차</td><td>취업/
실습/
귀환</td><td>교육</td><td>대외정책</td><td rowspan="6">무상원조
총괄</td><td rowspan="6">외국인
정책
총괄</td><td>직종별
발전계획/
교육계획</td><td>총괄</td><td>교육</td><td>취업/실습</td></tr>
<tr><td rowspan="5">이해
관계자</td><td rowspan="5">현지법인</td><td>직업
훈련원</td><td rowspan="5">주재관
협업</td><td>산자부
담당과</td><td rowspan="2">국제관계
대사</td><td rowspan="3">지방대</td><td>뿌리기술</td></tr>
<tr><td rowspan="4">대학</td><td>보건부
담당과</td><td rowspan="3">외국인
정책</td><td rowspan="2">자동차</td></tr>
<tr><td>해수부
담당과</td><td rowspan="3">지방
연구원</td></tr>
<tr><td>산업별
담당과</td><td>조선 등</td></tr>
<tr><td>교육부
국제협력</td></tr>
</table>

자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편,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총 265만 783명으로 2020년 대비 61만 4,708명(30.2%)이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국내 유학생은 총 26만 3,775명으로 2020년 대비 11만 414명(72.0%)이 증가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0~2024년 국내 체류외국인, 국내 유학생 통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체류외국인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2,650,783
국내 유학생	153,361	163,699	197,234	226,507	263,775

자료: 법무부 출입국통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법무부는 2012년부터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음.

2025년 2월에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과 비자정밀 심사대학(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과정 13개교)을 발표하였음.[9)]

9)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하여 비자 심사에 혜택 제공, 인증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취소
·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준 미충족 시 비자 심사상 제재 부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

○ **[인증제, 신청]** 기본요건(불법체류율 기준 이하)을 충족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
→ 매년 모니터링(음영)을 통해 지위 유지 여부 결정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2~3% 미만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8~12% 미만
전략 및 선발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전략 및 인프라	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 및 인프라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20명 미만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유학생 관리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0% 이상	어학 연수생 관리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60% 이상		어학연수생 수료율 50% 이상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0% 이상
	외국인 유학생 진로·취업 지원		한국법령 이해교육 60%이상
성과	중도탈락률 6~8% 미만	*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신입) TOPIK 3급 이상·그에 준하는 역량 (재학) TOPIK 4급 이상·그에 준하는 역량 ※ 모니터링 지표는 음영 표시	
	유학생 상담률 60% 이상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신입 30%/재학 40% 이상)		
	유학생 만족도 관리		

- 인증대학 중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 도모(매년 별도 지정)

  * 특히 우수한 대학 요건: 3년 이상 인증 유지, 불체율 2% 미만, 어학 능력 기준이 50% 이상인 대학 등

○ **[실태조사, 필수]** 외국인 유학생을 1명 이상 유치(4.1. 기준)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유학생 질 관리 유도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8~10% 이상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25~30% 이상
핵심 지표	등록금 부담률 60% 미만	핵심 지표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30명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40% 미만		의료보험 가입률 80% 미만
	공인언어능력(재학) 10% 미만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80% 미만
	공인언어능력(신입) 10% 미만		어학연수과정 수료율 30% 미만

○ **[결과 활용]** 인증대학은 비자 심사완화·홈페이지 홍보 등 혜택 부여, 비자 심사 강화대학은 신입생 비자 심사 강화·발급 제한

인증제	기준 통과	(인증대학) 비자심사 상 혜택(우수인증대학은 혜택 범위 확대)
실태조사	기준 통과	(일반대학) 일반적인 비자 심사(표준입학허가서+재정능력 심사 등)
	기준 미통과	(비자심사강화대학) 비자 심사 강화

자료: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2025.2.24.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11월까지 국내 및 개도국 대상 수요조사 후 공모를 통해 실행기관을 모집·선정할 계획이므로, 향후 대학교 선정 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양질의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1차년도 사업은 2026년 7월에 시작되므로 현지 수요조사 및 지원자 선발 지연으로 인해 사업일정이 순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르면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학위과정 및 인턴과정 진행을 위하여 학위과정 시작 전 8개월 과정의 한국어교육을 편성하고 있음.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표준절차(안)]

<table>
<tr><th rowspan="2">준비</th><th colspan="6">1차년도</th><th colspan="12">2차년도</th><th colspan="12">3차년도</th></tr>
<tr><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r>
<tr><td>현지 수요조사
및
국내 공모절차</td><td colspan="6">OT & 한국어교육
(8개월)</td><td colspan="6">전공
1학기</td><td colspan="2">인턴
1차</td><td colspan="4">전공
2학기</td><td colspan="2">인턴
2차</td><td colspan="6">전공
3학기</td><td colspan="2">인턴
3차</td><td colspan="6">전공
4학기</td></tr>
</table>

자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2026년 7월부터 한국어교육 과정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현지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국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어야 할 것임.

기존에 진행되었던 학위과정연수(석·박사)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도국 정부로부터 사업대상인원을 추천받아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나,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대상인원을 추천받는 절차 등을 새로 구축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사업의 경우 공관을 통한 지원서 접수부터 선발까지 약 4개월 정도 소요되고, 학위과정연수(석·박사)의 경우 상대국에 추천요청을 보내는 시점부터 선발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음.[10)11)]

10) 2025년도 GKS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 공고(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
- 공관 전형 지원서 접수기간: 2025.9.15.~9.30.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1.9.

11) KOICA 석사학위연수 가이드라인(24쪽)
- 공관을 통한 후보자 추천의뢰 및 입학전형서류 송부: 입국 9개월 전
- 최종합격자 확정: 입국 2개월 전

따라서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현지 수요조사 및 지원자 선발 지연으로 인해 사업일정이 순연되지 않도록 사업일정을 압축적으로 계획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신규):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지방 청년들에게 외교업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교류·협력 업무역량을 배양하며 해외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9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공공외교 역량강화	15,754	15,754	18,857	3,103	19.7
국민 공공외교	2,335	2,335	3,945	1,610	69.0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	-	910	910	순증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 소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협조 요청 다발국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지방청년인재를 파견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지원, ▲ 지방민생정책 등 지방 행정 우수 사례 조사, ▲ 현지 방문기관 섭외 및 현지 정보 수집, ▲ 여타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13)14)]

외교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방청년인재에게는 지방외교 분야 일경험을 제공하고, 재외공관에는 지방자치단체 민생외교 분야의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기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이 공공외교분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공공외교를 제외한 여타 업무분야의 지식과 경험 획득이 가능하여 차별점이 있다는 입장임.

---

12) 일반회계-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공공문화외교국)

1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991년 1월「지방자치법」제18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상호 교류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 국제화 관련 업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위해 6개국(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영국) 재외공관에 설치됨.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과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 비교]

구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설)
사업개요	· 우리 청년들을 공공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해외 진출 지원 도모	· 지방 청년들에게 외교업무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교류·협력 업무 역량을 배양하며 해외 일경험 지원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50명 내외
활동기간	· 파견일로부터 6개월	· 파견일로부터 6개월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19세 이상 34세 이하 ·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 · 19세 이상 34세 이하 ·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선발기준	〈서류〉 · 어학 성적 · 가점부여사항 · 정보 활용/처리 능력, 자기소개서 등 고려 〈면접〉 · 공공외교 이해도, 인성 및 기초소양, 업무 능력, 어학 능력, 현지 적응력 등 평가	〈추천〉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인재 양성 사업 참여·수료 청년 중 성적 우수자 등 추천 인재 선발 (지자체별 3~5명)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 제외 ※ 어학 등 공통선발기준은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마련 예정 〈(필요 시) 면접〉 · 지방외교·경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 인성 및 기초소양, 업무 능력, 현지 적응력 등 평가
주요 활동내용	· 재외공관 문화 공공외교 지원 -▲한국주간행사, ▲공관장배 태권도 대회, ▲K-Pop World Festival 등 · 재외공관 지식 공공외교 지원 -▲퀴즈온코리아, ▲한국어·한국학 사업 등 · 재외공관 정책 공공외교 지원 -▲공공외교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등 ·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지원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등	·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의전 및 행사지원 ·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등 조사 · 현지 방문 기관 섭외, 현지 정보 수집 등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체재비 16억 2,000만원 · 수료증 및 기념품 제작 1,000만원 · 임차료 400만원 · 업무추진비 100만원 · 선발 및 관리비용 1억원 · 항공임 등 국외여비 2억원 ⇒ 합계 19억 3,500만원	· 체재비 8억 1,000만원 · 항공임 등 국외여비 1억원 ⇒ 합계 9억 1,000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청년인재의 지자체 국제협력(지방외교) 지원’은 기존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므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외교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의미함.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외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외교부는 2013년부터 공공외교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67%(40명) 증원한 100명의 현장실습원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지원 업무는 기존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기존 사업은 재외공관의 문화·지식·정책·디지털 공공외교 활동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지방인재의 지방외교 및 지방경제 활성화 분야 일경험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지방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목적과 업무범위가 구분된다는 입장임.[15)]

그러나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시에도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수도권 인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인재의 일경험 취득이라는 목적은 기존 사업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은 공공외교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2026년도 기존 사업 추진 시 주요활동 내역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15) 다만, 외교부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과 파견목적과 업무범위, 선발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두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업무 협조 요청(2024년 104건, 2025년 266건)을 감안하면 선발인원수를 별도로 설정하여 지역인재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함.

둘째,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의 파견자 선발 계획에 따르면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외교부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 추진 시 '지방청년 인재의 지방외교 분야 일경험 취득'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외)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필요 시 면접전형을 진행하여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경우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되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수도권 인재에 대한 가점부여를 통해 사회적 배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대한민국 청년이 지원 가능함.

그러나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하여 필요 시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할 것을 계획하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지방청년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에 근거하여 비수도권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업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16)]

이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주소지로 하는 청년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업무 지원을 희망하여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여도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취업 등을 위해 일부 인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지원자의 거주지역을 근거로 지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17)18)]

---

16) 외교부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외교분야 실무경험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게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 경험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인재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균형 발전적 관점에 이 사업의 의의가 있다는 입장임.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사업: 세입예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세출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사업은 대국민 여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및 여권 품질·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51억 8,400만원(12.3%)이 증액된 1,39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23,893	123,893	139,077	15,184	12.3
여권 제조 및 발급	115,549	115,549	130,679	15,130	13.1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7,612	7,612	7,666	54	0.7
여권 품질 및 서비스개선	732	732	732	-	-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사업이나 세출예산안이 세입예산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도록 검토가 필요함.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수입대체경비를 인정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1항은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특정 수입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20)21)]

---

19) 일반회계-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2931-651)(영사안전국)

20)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 사업의 2018~2023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2024·2025년도는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 또한 세출예산안이 세입예산안을 초과하고 있음.

[면허료 및 수수료(여권세입),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세입				세출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본예산 (B)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2018	114,099	114,099	131,303	131,303	100,285	300	13,248	113,833	113,640	△13,814
2019	111,138	111,138	126,315	126,315	101,719	63	7,983	109,765	107,467	△9,419
2020	111,597	111,597	29,618	29,618	99,894	1,939	-	101,833	57,975	△11,703
2021	78,039	78,039	20,859	20,859	77,498	62	-	77,560	76,558	△541
2022	131,859	131,859	76,355	76,355	101,762	62	-	101,824	97,851	△30,097
2023	130,810	130,810	155,536	155,536	85,620	2,109	22,300	110,029	109,482	△45,190
2024	132,361	132,361	154,022	154,022	141,030	64	18,200	159,294	158,899	8,669
2025.9.	104,205	104,205	-	-	123,893	63	-	123,956	-	19,688
2026(안)	123,695	-	-	-	139,077					15,382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현재의 상황은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도입에 따라 여권 발급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여권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전자여권 수수료는 2014년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26면: 35,000원 58면: 38,000원	26면: 35달러 58면: 38달러	26면: 7,700원 58면: 8,360원
		5년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26면: 30달러 58면: 33달러	26면: 6,600원 58면: 7,260원
		5년 미만	15,000원	15달러	3,3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3,300원

자료: 「여권법 시행령」 별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1) 「국고금 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여권발급 수수료의 동결 및 새로운 여권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하여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각 연도 예산안 작성 시 예측된 사항이고, 이러한 예측에 따라 세입예산안의 수준에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세입 현실화를 추진했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국고금 관리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청년인턴 채용 사업: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청년인턴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7,800만원(△6.0%)이 감액된 1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청년인턴 채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1,617	1,617	1,957	340	21.0
청년인턴 채용	1,294	1,294	1,216	△78	△6.0

외교부는 2026년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청년인턴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단기 채용인원을 고려하여 7,800만원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음. 편성된 항목은 급여·활동지원비 및 4대보험료로서 각각 10억 6,500만원, 2,900만원, 1억 2,200만원임.

[2026년도 청년인턴 채용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인턴 채용**: (’25) 12억 9,400만원 → (’26) 12억 1,600만원 [△7,800만원]

· **급여**: (’25) 11억 3,200만원 → (’26) 10억 6,500만원 [△6,700만원]

※ 계획인원 100명 중 6개월 채용 65명, 3개월 채용 35명

· **활동지원비**: (’25) 3,500만원 → (’26) 2,900만원 [△600만원]

- 발대식·수료식·멘토링 등(일반수용비) 2,000만원
- 업무현장 견학(국내여비) 900만원

· **4대보험료**: (’25) 1억 2,700만원 → (’26) 1억 2,200만원 [△500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2) 일반회계-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7033-403)(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및 선발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6년도 예산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년인턴 채용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의 경우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하였으나, 집행률은 69.4%로 계획 대비 채용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이는 계획인원 110명 중 88명은 6개월, 22명은 3개월 채용을 예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채용한 115명의 채용기간을 살펴보면 59명(51.3%)의 6개월, 나머지 56명(48.7%)은 2~3개월로 나타나 계획 대비 채용기간이 짧았던 것에 기인함.

2025년도는 계획인원 100명 중 80명은 6개월, 20명은 3개월 채용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모집인원이 87명으로 선발공고 자체가 계획인원 대비 부족하였고 선발인원은 그보다 적은 70명으로 나타났음.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현재 추가 채용계획은 없으며, 계획상의 총 채용기간에 비해 실제 채용기간도 짧은 수준이므로 2025년도 예산의 상당액이 불용될 것으로 보임.

[2023~2026년도 청년인턴 채용 사업 결산·예산안 및 채용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예·결산					채용			
	본예산(A)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B/A	계획(C)	모집	선발(D)	D/C
2023	-	285	260	25	-	20	23	20	100.0
2024	1,454	1,454	1,009	445	**69.4**	110	144	115	104.5
2025	1,294	1,294	200	-	15.5	100	87	70	**70.0**
2026	1,216	-	-	-	-	**100**	-	-	

주) 2025년 9월 현재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2025년도 청년인턴 채용 사업 채용기간별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획	모집	선발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2024	110 (3개월 22명, 6개월 88명 / 594개월)	144	115 (489개월)	59 (51.3)	-	-	23 (20.0)	33 (28.7)
2025	100 (3개월 20명, 6개월 80명 / 540개월)	87	70 (408개월)	64 (91.4)	2 (2.8)	2 (2.8)	2 (2.8)	-

주) 총 채용기간(월) = 채용인원×채용기간의 합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2024·2025년 예산 집행 사례를 보았을 때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2026년도 채용계획인원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은 6%의 감액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2024년도 집행률 및 2025년도 집행률 및 계획 대비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 기타보전금의 비목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중남미 소재 지역기구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인턴으로 파견하여 차세대 중남미 진출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내내역사업인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에너지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인턴으로 파견하여 에너지 협력 강화 및 국가 에너지 안보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24)]

[2026년도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337	3,337	3,579	242	7.3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390	390	390	-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359	359	359	-	-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6,549	6,549	6,982	433	6.6
에너지 및 광물분야 국제협력 강화	297	297	348	51	17.1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115	115	115	-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예산은 홍보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원과 인턴 22명에 대한 파견경비 3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 예산은 인턴 9명에 대한 항공료 및 월정액 보조금 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23) 일반회계-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1431-401)(중남미국)

24) 일반회계-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3032-401)(양자경제외교국)

[2026년도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25) 3억 5,300만원 → ('26) 3억 5,300만원 [전년동]
· 일반수용비(210-01): 홍보 및 설명회 개최 300만원 (150만원×2회)
· 사업추진비(240-01): 홍보 및 설명회 개최 300만원 (150만원×2회)
· 기타보전금(310-04): 인턴파견 3억 5,300만원 (1,600만원×22명)
○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25) 1억 1,500만원 → ('26) 1억 1,500만원 [전년동]
· 기타보전금(310-04): 항공료 및 월정액 보조금 1억 1,500만원 (1,280만원×9명)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및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에 편성된 기타보전금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다른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외업무여비 및 일용임금으로 비목을 변경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및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에 포함된 파견 경비(항공료 및 월정액 보조금 등)는 기타보전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타보전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수혜금, 학자금, 변상금, (재난)지원금 등이고, 일용임금은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이며,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여비와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상
기타보전금, 일용임금, 국외업무여비 내용]

기타보전금(310-04목)	일용임금(110-04목)	국외업무여비(220-02목)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4.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1.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 -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참석 -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기타보전금(310-04목)	일용임금(110-04목)	국외업무여비(220-02목)
변상금 5.「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6.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2.「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외출장여비 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자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는 공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토록 하는 경우「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각 사업의 인턴에게 지원되는 항공료는 기타보전금이 아닌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25)]

참고로 외교부 소관 사업 중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경우 현장실습원 파견에 소요되는 항공임은 국외업무여비로, 체재비는 일용임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파견경비 중 월정액보조금은 일용임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2026년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25) 19억 3,500만원 → ('26) 19억 3,500만원 [전년동]
- 일용임금(110-04): 체재비 16억 2,0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수료증 및 기념품 제작 1,000만원
- 임차료(210-07): 오리엔테이션 및 네트워킹 4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선발 및 관리비용 1억원
- 국외업무여비(220-02): 항공임 등 2억원
- 업무추진비(240-01): 오리엔테이션 및 네트워킹 100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및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에 기타보전금으로 편성된 파견경비를「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사례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및 일용임금으로 비목을 변경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5)「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10.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사업: 고용부담금 편성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사업은 재외공관에서 현지 경제안보 동향 모니터링 및 주재국 정책·입법 분석을 수행할 전문연구인력(경제안보전문관)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4억원이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6,549	6,549	6,982	433	6.6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대응	1,985	1,985	1,986	1	0.1
재외공관 전문 연구인력 인건비	400	400	400	-	-

2021년 10월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음. 이를 계기로 외교부는 2022년 5월부터 재외공관 현지에서 경제안보 동향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안보전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26년도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사업 예산안의 일용임금 4억원은 경제안보 전문관 6명의 채용·운용을 위한 인건비임.

[2026년도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25) 4억원 → (’26) 4억원 [전년동]
· 일용임금(110-04):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 4억원 [5,600만원×12개월×6명]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제안보전문관은 관련 분야 학위 또는 유관 경력이 있고 현지어 구사가 자유로운 현지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외공관별로 채용공고를 진행하여 채용·운용하고 있음.

2025년 10월 현재 주미국대사관(워싱턴DC),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에서 각 1명씩 경제안보전문관이 채용되어 근무 중임.

26) 일반회계-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3032-401)(양자경제외교국)

나. 검토의견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사업에 고용부담금(4대 보험료)이 편성되지 않아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시 우리나라 국민은 채용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예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고용부담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사업은 최초 2022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 5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편성된 5억원은 모두 인건비인 일용임금으로만 편성되고 채용에 수반되는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한 고용부담금은 편성되지 못하였음.

[2022년도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재외공관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22) 5억원 [신규]
· 일용임금(110-04): 경제안보전문관 인건비 5억원 [6,900만원×12개월×6명]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는 경제안보전문관 채용을 위한 고용부담금이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을 경제안보전문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법」 제15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밖에 없음.[27)]

---

27)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채용공고 시 해당국 시민권자 및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영주권자를 자격으로 하게 되었으며, 예산 사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만 가진 국민은 채용할 수 없다는 설명임.

[2025년 2월 4일 주미국대사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공고 중 자격요건]

○ **자격 요건**

· 미국 체류 및 공관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미국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는 자
(미 시민권자,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영주권자)

※ 외국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및 이에 상응하여 주재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준거법 또한 주재국(미합중국) 법령에 따름

·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 * 경제학, 경영학, 국제관계학, 국제(통상)법, 이학, 공학 등 경제안보 관련 분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자료: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공고(2025.2.4.)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에 직위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사실상 업무수행에 해당지역 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적에 제한을 두어 우리나라 국민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경제안보전문관 채용의 경우 예산상의 제약을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을 채용에서 배제하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예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고용부담금을 편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국적을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통일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4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억원(△11.7%) 감소함.

예산은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38억원(2.5%) 증가하고, 기금은 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억원(△10.9%) 감소함.[1)]

[2026년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5	15	15	0.38	2.5
기 금	439	439	391	△48	△10.9
총수입	454	454	406	△48	△11.7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은 1조 2,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1억원(20.2%) 증가함.

예산은 2,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억원(2.8%) 증가하고, 기금은 1조 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7억원(25.2%) 증가함.

[2026년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289	2,286	2,353	64	2.8
기 금	8,008	4,808	10,025	2,017	25.2
총지출	10,297	7,094	12,378	2,081	20.2

나. 예산안

2026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원(2.5%) 증가함.

[2026년도 통일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5	15	15	0.38	2.5
합 계	15	15	15	0.38	2.5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3,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억원(1.9%) 증가함.

[2026년도 통일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289	3,286	3,353	64	1.9
합 계	3,289	3,286	3,353	64	1.9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조 4,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원(△1.1%) 감소함.

[2026년도 통일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남북협력기금	14,438	11,238	14,278	△161	△1.1
합 계	14,438	11,238	14,278	△161	△1.1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통일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개(36억 5,3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일반회계 신규사업인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북한 자료 이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통일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653
총지출		3,653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통일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정세분석 역량 강화’, ‘북한자료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등 총 10개임.[3)]

[2026년도 통일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정세분석 역량 강화	2,251	3,332	1,081	48.0
2	북한자료센터 운영	892	1,565	673	75.4
3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78	1,074	496	85.8
4	남북회담 추진	240	660	420	175.0
5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1,719	2,907	1,188	69.1
6	본부 전산 운영경비(정보화)	1,768	2,497	729	41.2
[남북협력기금]					
7	민생협력지원	475,885	555,380	79,495	16.7
8	경제교류협력보험	2,501	3,739	1,238	49.5
9	경협기반(무상)	102,649	221,107	18,458	115.4
10	개성공단 기반조성	2,145	3,485	1,340	62.5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통일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000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8,738억원이 예수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746억원의 예수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구조임.

[통일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뒷받침하고,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 등 새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을 확대 반영하였음.

특히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2026년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을 2025년 8,008억원 대비 25.2% 증액된 1조 3억원을 편성하여 1조원대 사업비 수준을 회복하였고, 경제협력 기반조성, 민생협력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음. 일반회계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28억원 증가(1.7%)한 1,699억원을 편성하여,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남북간 대화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대화 추진 예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및 평화공존·통일담론 확산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 및 확대하였음.

2026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 사업’은 원활한 회의 개최 및 자문 활동을 위해 종전 장관 직속 자문기구였던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에 기반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은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진 중인 사업 사례를 참고하되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이 기존 사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은 과거 추진되었던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민생협력지원 사업’ 및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2016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최근 결산내역 및 남북한 정세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 사업(신규): 신진연구자 대상 홍보방안 모색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 사업은 국책·민간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강화, 신진연구자 양성,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통일정책추진	1,756	1,756	1,330	△426	△24.2
통일미래 기획	-	-	665	665	순증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	-	-	465	465	순증

이 사업의 세부내역 중 ‘국책·민간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은 국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일미래연구단과 민간연구기관이 함께 반기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신진연구자 워크숍’은 통일·북한학 신진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며, ‘신진연구자 양성’은 신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과제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고,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운영’은 국책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학회 등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임.

4) 일반회계-통일정책추진(1031-300)(통일정책실)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 (2026) 4억 6,500만원, 신규
- 국책·민간연구기관 정례 협의체 운영, 신진연구자 양성,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등에 필요한 예산 요구

① 국책·민간연구기관 정례 협의체 운영 8,500만원
: 자문사례비·조달수수료 등 1,800만원, 정례회의 확대회의 6,600만원, 간담회 100만원

② 신진연구자 워크숍 8,000만원
: 심사사례비·조달수수료 등 400만원, 신진연구자 워크숍 개최 7,500만원, 간담회 100만원

③ **신진연구자 양성 1억원**
: **연구과제 공모(심사사례비) 1,400만원, 정책연구비 8,600만원**

④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개최 2억원
: 심사사례비·회의자료 제작 등 600만원, 회의실 임차 400만원, 학술대회 1억 8,5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간담회 300만원

자료: 통일부

이 중 '신진연구자 양성' 사업은 2023년까지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임.[5][6]

통일부는 신진연구자 양성 사업을 통해 통일·북한학 관련 석·박사 학위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북한 관련 연구과제 공모를 진행하여 12명의 연구자를 선발하고 과제당 600~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통일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진연구자 양성 사업 개요]

□ **신진연구자 양성**(2026년 예산안 1억원, 신규)
o **대상**: 석·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12명 선발(석사급 5명, 박사급 7명)
o **내용**: 북한 관련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북한 정세 실태 및 정보수집·분석·활용 등 북한 관련 연구 과제 공모 진행
※ 박사: A4 80매 이상, 과제당 800만원
※ 석사: A4 60매 이상, 과제당 600만원
※ 198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 2024년, 2025년 예산 미편성, 2026년 재추진
o **추진절차**: 연구신청서 및 계획서 공모(홈페이지) → 연구계획서 심사 → 면접심사 → 계약상대자 선정(3월) → 계약체결(4월) → 용역수행(6개월) → 연구비 정산

자료: 통일부

5) 일반회계-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정보분석국)

6) 내역사업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 : 정책연구용역비 7,400만원, 연구용역 심사사례비 600만원

나. 검토의견

첫째, 통일부는 2023년까지 진행되었던 과거 사업추진 사례보다 사업대상자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 사업의 2018~2023년도 신청 및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매년 19~37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5~12명이 선발되었음.

경쟁률로 보면 2018년 5: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2022년부터 선발 인원이 증가함(5~7명→12명)에 따라 2023년에는 2.5:1로 낮아졌고, 특히 2022년부터 선발한 석사학위자(2023년 1.8:1)는 박사학위자(2023년 3.0:1)에 비해 경쟁률이 낮게 나타났음.

[2018~2023년도 신진연구자 양성 사업 신청 및 선발인원]

(단위: 명)

구분	신청(A)			선발(B)			경쟁률(A:B)		
	석사	박사	합계	석사	박사	합계	석사	박사	합계
2018	-	25	**25**	-	5	**5**	-	5.0 : 1	**5.0 : 1**
2019	-	19	**19**	-	5	**5**	-	3.8 : 1	**3.8 : 1**
2020	-	23	**23**	-	7	**7**	-	3.3 : 1	**3.3 : 1**
2021	-	24	**24**	-	6	**6**	-	4.0 : 1	**4.0 : 1**
2022	9	28	**37**	4	8	**12**	2.3 : 1	3.5 : 1	**3.1 : 1**
2023	9	21	**30**	5	7	**12**	1.8 : 1	3.0 : 1	**2.5 : 1**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과거에 경쟁률이 낮았던 사업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연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통일연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인 신규 통일·북한학 석·박사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신진연구자 사업의 신청자격은 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인데 2020년 이후 통일·북한학 석·박사 학위취득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평균 150명 정도가 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통일·북한학 신진연구자는 약 750명 정도라고 추정해볼 수 있으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일정 이상의 지원자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음.

[통일·북한학 학위취득자 수]

(단위: 명)

졸업연도	석사			박사			합계
	통일 관련 학위	북한 관련 학위	소계	통일 관련 학위	북한 관련 학위	소계	
2020	47	61	108	10	30	40	148
2021	46	77	123	11	39	50	173
2022	57	57	114	11	24	35	149
2023	38	71	109	10	32	42	151
2024	38	45	83	7	38	45	128
합계 (평균)	226 (45.2)	311 (62.2)	537 (107.4)	49 (9.8)	163 (32.6)	212 (42.4)	749 (149.8)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경쟁률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존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홍보는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진연구자들이 이 사업의 재추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홍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통일부는 이 사업 추진 시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게시된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공모 안내' 게시물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 34,188회였으나 2023년에는 5,751회에 그쳤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의 홍보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도별 신진연구자 정책연구 공모 안내 게시물 조회수]

(단위: 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회수	34,188	33,114	36,039	33,106	37,799	31,431	26,195	16,935	11,434	5,751

※ 2025년 9월 25일 검색 기준

※ 2024년 및 2025년은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라 자료 부재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진연구자'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026년 예산안에 편성하여 재추진하는 사업이고 당시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효과가 감소되는 추세였음을 고려하면, 신진연구자가 이

사업의 재추진을 인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는 통일부 홈페이지 공모 안내 게시 외 대학·학회를 통한 공모 안내, 타기관 안내 협조(교육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 등) 등 다양한 사업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 사업(신규): 종전 자문기구 운영사례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 사업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장관 직속의 평화통일고문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6년도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통일정책추진	1,756	1,756	1,330	△426	△24.2
통일미래 기획	-	-	665	665	순증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			200	200	순증

통일부는 남북관계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국가원로를 중심으로 평화통일고문회의를 구성하여 정기회(4회, 분기별 1회) 및 임시회(2회)를 개최하고, 해외 정책설명회(2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 (2026) 2억원, 신규
- 정기회·임시회 운영, 해외정책설명회 등에 필요한 예산 요구
① 정기회·임시회 운영 9,000만원
: 정기회 운영 5,800만원, 임시회 운영 2,9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② 해외 정책설명회 1억 1,000만원
: 항공료 등 국외여비 8,900만원, 면담·통역·차량임차 등 1,400만원, 간담회 700만원

자료: 통일부

7) 일반회계-통일정책추진(1031-300)(통일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평화통일고문회의의 원활한 회의 개최 및 자문 활동을 위해 종전에 장관 직속 자문기구였던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에 기반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2월에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서 출범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 29일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음.

평화통일고문회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폐지 후 신설 추진 중인 장관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최근 정세 변화에 대해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종전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총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출범 이후 규정에서 원칙으로 정한 회의 횟수를 채우지 못하였고, 분과회의 중 참석대상 중 과반수가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원활하지 못한 운영 사례가 나타났음.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전체회의	**3회** (3.15. / 8.9. / 12.20.)	**2회** (3.15. / 9.6.)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연 4회)
분과회의	**4회** (3.30.~4.4. / 4.24.~5.1. / 8.18.~9.4. / 11.15.)	**3회** (4.3.~4.12. / 7.23.~8.29. / 10.10.~10.23.)	월 1회 개최 원칙 (연 12회)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4년 3분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사례]

(단위: 명, 원)

분과명	일자	참석대상	참석인원	회의안건	수당 집행액
정치군사	2024.7.29.	9	6	향후 통일담론 공론화 방향	1,200,000
경제	2024.8.8.	8	7		1,750,000
사회문화	2024.7.25.	9	8		2,000,000
인권인도	2024.8.29.	8	5		1,250,000
국제협력	**2024.7.23.**	**9**	**4**		800,0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최근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러-북 관계의 변화, 중동 정세 변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예상 등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입지가 변화하고 있음.

통일부는 종전에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40~5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설하는 평화통일고문회의는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축소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 각계 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도 원활한 회의개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단순한 인원 감축보다는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위원의 일정 조율이 곤란하여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자문의견 서면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 위원이 자문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문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여러 시각의 자문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는 종전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에 기반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평화통일고문회의 위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일부 위원은 교민사회 및 해외연구기관 등과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된 인사로 위촉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과 함께 해외 정책설명회를 2회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공공외교를 통한 효과적인 통일정책 홍보를 위해 위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민사회 및 해외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통일정책을 설명할 계획임.

해외 정책설명회를 위해 통일부는 평화통일고문회의 위원 3명과 통일부 공무원 2명의 출장을 기준으로 국외업무여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평화통일고문회의 해외 정책설명회 예산안 세부내역]

○ **해외 정책설명회(2회)**: 1억 1,000만원
- 정기회 및 임시회 미진행 기간을 활용
- 한반도 문제 당사국(미국, 일본 등). 통일·체제전환 경험국(독일, 헝가리 등), 북미회담 개최국(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태 중요국가(필리핀, 호주 등) 중 국가를 선정·방문
- 교민, 해외 연구기관 등 대상으로 우리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의견 청취(반기 1회, 총 2회)

① **항공료 등 국외여비** 8,900만원
- 항공료: {(900만원×3명) + (400만원×2명)}×2회 = 7,000만원
- 일 비: {($40×2명×4일)+($35×1명×4일)+($30×2명×4일)}×2회 = 210만원
- 숙박비: {($282×2명×3박)+($223×1명×3박)+($176×2명×3박)}×2회 = 1,010만원

· 식　비: {($133×2명×4일)+($107×1명×4일)+($81×2명×4일)}×2회 = 630만원
· 해외정책설명 여행자보험 : 50,000원×5명×2회 = 50만원

② 차량 임차료 440만원
· 해외정책설명 차량임차료: $500×3일×2회 = 440만원

③ 면담·통역사례비 1,030만원
· 해외정책설명 면담사례비 : $200×10명×2회 = 590만원
· 해외정책설명 통역사례비 : $500×3일×2회 = 440만원

③ 간담회 개최 사업추진비 660만원
· 해외정책설명 간담회: ($50×15명×3회)×2회 = 660만원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시 일부 위원은 해외에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인사로 위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공공외교 채널을 통한 통일정책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민사회의 저명인사 또는 해외 연구기관과 통일·북한학 관련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된 인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신규): 타기관 사업과 차별화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은 전국 일터·시장 및 거주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행사(평화통일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억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내통일기반조성	8,741	8,741	11,078	2,337	26.7
국민 평화통일 문화체험	-	-	1,403	1,403	순증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	-	1,103	1,103	순증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2026) 11억 300만원, 신규
- 지원인력 보수(상용임금, 고용부담금) 3,400만원
- 조달수수료·자료제작(일반수용비) 3,400만원
- 행사 운영 위탁(일반용역비) 9억 8,100만원
- 출장여비(국내여비) 900만원
- 업무협의 간담회(사업추진비) 1,800만원
- 행사 평가용역(일반연구비) 2,000만원
- 지원인력 보수(고용부담금) 700만원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는 문화 형성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연 10회의 평화통일문화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이 사업은 문화 형성 추진위원회를 통해 기획단계부터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전문가가 함께 구상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8) 일반회계-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통일협력국)

점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통일문화행사와 차이점이 있다는 설명임.

[통일문화행사와 평화통일문화제 비교]

구분	통일문화행사 (내역사업 '통일문화진흥')	평화통일문화제 (내내역사업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목적	문화예술을 통한 대국민 통일공감대 확산	
기획	**통일부** -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 기획 - 문화예술 행사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 부족	**문화 형성 추진위원회** - 행사 기획단계부터 일반국민, 시민사회, 지자체, 지역문화예술 활동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시민사회+지자체+문화예술전문가 10여 명) - 정례적 대면 회의를 통해 행사 주제, 기본방향, 행사별 주요내용 등 기획·발굴 - 각 지자체와도 연초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 - 〈시민 참여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각 행사별 현장 점검 및 피드백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
대상	**광역 대도시** - 광장 등 별도로 마련된 대형 행사장	**지방 소도시** - 지역 시민들의 생활현장
시기	**연 3회** - 회당 2일간 운영	**연 10회** - 회당 개최일수는 다양하게 구성, 회당 2시간~ 5일 등 유동적으로 기획 - 봄, 가을은 야외행사 중심, 여름·겨울은 주로 실내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
내용	• 개막식(장관 및 의원 축사, 국민의례) • 공연(탈북민 합창단, 어린이 태권도 등) • 체험부스(태극기 만들기 등)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 지역사회/기업 연계 프로그램 조사·발굴 - 대국민 공모전을 통한 지역별 행사 컨셉 선정 - 매회 다른 형태와 방식의 문화예술제 추진 ※ (예시) 판교 네이버와 평택 제조업체에서 하는 100인 직장인 통일노래녹음 릴레이 등 • **이동형 종합문화부스(트럭 등) 2동 운영** - 평화통일에 대한 대국민 이해·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종합홍보센터(리플릿, 선물 증정) - '쉽게 풀어쓴 대북·통일정책 이야기' 상영 - 소규모 야외 토크쇼 무대 등 다양하게 활용
예산	('25) 12억 9,600만원 → ('26) 0원 **[순감]**	('25) 0원 → ('26) 11억 300만원 **[순증]**

자료: 통일부

나. 검토의견

사업 추진 시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진 중인 사업 사례를 참고하되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이 기존 사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대한민국헌법」제92조에 근거하여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역조직인 지역협의회를 두고 지역별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국내 통일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6년도 국내 통일특화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174	6,174	4,970	△1,204	△19.5
지역통일활동 지원	4,523	4,523	3,608	△915	△20.2
국내 통일특화사업	1,883	1,883	1,488	△395	△21.0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 2026년도 예산안 비교]

구분	통일부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 통일특화사업’
상용임금	지원인력 보수 3,400만원	-
일반수용비	조달수수료·자료제작 3,400만원	-
일반용역비	행사 운영 위탁 9억 8,100만원	-
국내여비	출장여비 900만원	직원 출장여비 2,000만원
사업추진비	업무협의 간담회 1,800만원	-
일반연구비	행사 평가용역 2,000만원	-
민간경상보조	-	국내 특화사업 7억원 북한이탈주민 공감사업 5억 7,000만원 국내 청년 특화사업 9,900만원 국내 여성 특화사업 9,900만원
고용부담금	지원인력 보수 700만원	-
합계	11억 300만원	14억 8,800만원

자료: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통일 관련 사업
가. 세부사업: 일반회계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위원지원국)
나. 내역사업: 지역통일활동 지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연대 확대로 평화통일 플랫폼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통일활동 확산 전개)
다. 내내역사업: 국내 통일특화사업(지역별 통일공감대 형성·확산,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기반 조성)

2025년에 추진된 국내 통일특화사업을 살펴보면 ‘2025 정월대보름맞이 통일기원 전통민속놀이 한마당(대전 서구)’, ‘제2회 글로벌 근로자 통일 한마음 올림픽(전남 진도군)’, ‘광복 80주년 통일 공감의 장-평화를 보고, 듣고, 느끼다(경기 고양시)’, ‘2025년 평화통일기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대회(경기 포천시)’, ‘2025년 남북요리사 한반도미식페스타 어울림(서울 성동구)’ 등 152개 사업이 진행되었음.[10)]

한편, 통일부는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의 예시로 ‘직장인 통일염원 노래 녹음 릴레이’, ‘남북평화 희망 둘레길 달리기’, ‘접경지역 청년대동제’, ‘종교인과 함께하는 통일한반도 탁구대회’ 등을 예시하였음.

직장과 연계하여 행사를 진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둘레길을 활용한 체육활동을 추진하거나, 풍물놀이와 민속놀이를 활용한 대동제를 하거나, 북한음식 시식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통일특화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 회별 주요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예시①]
천안평택·판교 직장 로비 1층에서 개최되는 〈직장인 통일염원 노래녹음 릴레이〉 행사
- 판교 네이버 사옥 1층에 이동형 녹음부스를 설치하여 쉬는시간 또는 점심시간 등에 방문한 직원들 100명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하나의 노래 완성
- 평화통일 관련 가사를 직접 녹음하여, ‘전체가 모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느끼도록 기획 / 해당 노래는 음원으로 제작·유튜브 공개
- 아울러, 30·40대 학부모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체험 학습 교재 등도 증정 ⇒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유도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년 국내 통일특화사업 내역(발췌)
1. 2025 정월대보름맞이 통일기원 전통민속놀이 한마당(대전 서구, 2025.2.8.)
-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강강술래, 풍물놀이 등 전통민속놀이, 참가자 국악경진대회 등
2. 제2회 글로벌 근로자 통일 한마음 올림픽(전남 진도군, 2025.7.5.)
- 태권도 시범, 탈북민 난타공연, 팀별(나라배정) 체육행사, 나라별 장기자랑 등
3. 광복 80주년 통일 공감의 장 - 평화를 보고, 듣고, 느끼다(경기 고양시, 2025.8.13.)
- 강연, 토크콘서트, 문화예술(패션쇼・공연)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감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4. “함께 걷는 한탄강, 하나 되는 한반도!” 2025년 평화통일기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대회(경기 포천시, 2025.4.19.)
-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약6KM), 포천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자유체험, 축하공연 및 경품추첨
5. 2025년 남북요리사 한반도미식페스타 어울림(서울 성동구, 2025.4.25.)
- 남북요리사 통일밥상 차리기, 300인 먼저 온 통일의 맛 시식회, 기부 캠페인
6. 제4회 어린이 평화통일축제(서울 광진구, 2025.8.21.)
- 어린이 평화통일 공연(연희공방 음마깽깽, 광진 대합창), 체험 활동(평화의 숲 키우기, 한반도 완성하기 프로젝트) 등
7.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소통의 다리 위에서, 통일을 엮다(인천 중구, 2025.8.27.)
- 문화공연, 개회식, 통일토크콘서트, 마크라메 통일체험활동

◆ [프로그램 예시②]
지자체 및 한국관광공사와 협업, 태백산맥과 지리산 둘레길 등 주요 구간 코스를 뛰고, 걷는 〈남북평화 희망 둘레길 달리기〉 추진

- 전북 장수 트레일경주 및 철인3종경기 등 다양한 스포츠와 연계 추진 가능
- 여수, 통영 소규모 마라톤 대회 등과도 연계하여 참여자들이 단체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역사적 아픔(6.25 격전지, 민주항쟁, 항일운동 등)이 있는 지역장소 등을 걷고 뛰며, 평화통일과 국민통합에 대한 다양한 소망·희망을 공유
- 참여자 모자, 티셔츠, 메달 등을 통해 지역내 관심·홍보 효과 증대 가능

◆ [프로그램 예시③]
서울소재 대학생들 50여 명과 3일간 강화파주·연천 지역 재래시장을 순회하며 △풍물놀이 △민속놀이 △연극제 등 〈접경지역 청년대동제〉 개최

- 서울지역 대학(약 5개 대학) 학생 50명이 평화누리버스를 타고 다니며, 접경지역 재래시장에서 하루씩 머물며 사물놀이, 풍물놀이, 연극 등 다양한 공연들을 개최하고
- 시장에 온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민속놀이(제기차기, 비석치기)를 즐기며, 한류문화의 중심인 놀이문화를 지역과 세대구분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
- 인구소멸지역의 단조로운 재래시장에, 활기찬 청년들이 찾아가서, 우리문화와 놀이를 바탕으로 지역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일되는 형태의 행사

◆ [프로그램 예시④]
조계종 탬플스테이, 순복음교회 여름캠프, 천주교 명동성당 앞 주차장 등 다양한 종교행사장에 〈종교인과 함께하는 통일한반도 탁구대회〉

- 한반도모양의 대형탁구대에서 교인들간의 간단한 탁구대회 개최
- 구내식당에서 북한식 순대와 닭껍질쌈, 개성주악 등 음식도 함께 시식

자료: 통일부

또한 통일부는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이 문화 형성 추진위원회를 통해 기획 단계부터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전문가가 함께 구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원, 사회 주요인사, 직능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해당 지역 출신의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통일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은 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이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참가하는 행사의 경우 통일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해당 사업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통일을 주제로 각 지역의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한 행사로 보여짐.[11]

11) 뉴데일리, '제2회 글로벌 근로자 통일 한마음 올림픽' 성료, 2025.7.7.

따라서 이 사업은 행사내용, 기획단계 및 참여인사 등을 살펴보았을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통일특화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되 사업내용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신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운영, 사회적 대화 발전 방안 수립, 국민제안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내통일기반조성	8,741	8,741	11,078	2,337	26.7
사회적 대화 활성화	-	-	2,500	2,500	순증

통일부는 국회와 여러 계층을 망라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단과 국민대화패널단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여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 등을 진행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의 수립 초기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비 13억원,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2억 5,000만원, 사회적 대화 기구 홍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5,000만원, 국민제안 민관협의체 운영비 9억원이 반영되었음.[13)]

[2026년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사회적 대화 활성화**: (2026년) 25억원, 신규

①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13억원
- 자료제작 및 물품 구매 3,200만원, 평가 자문 사례비 5,000만원, 조달수수료 1,100만원, 일반용역비(정례회의 개최, 국민대화 패널 운용 등) 11억 6,100만원, 임차료 1,400만원, 간담회비 2,1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②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수립**: 2억 5,000만원
- 연구용역비(분과별 의제 개발) 2억원, 패널단 모집 운영 및 모니터링 5,000만원

12) 일반회계-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통일협력국)

13)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소통 플랫폼: unikorea.go.kr/promise

③ **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홍보**: 5,000만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 5,000만원

④ **국민제안 민관협의체 운영**: 9억원
- 전문가 및 청년 민관협의체 운영 2억원, 국민참여 소통체계 구축 및 이행 7억원

자료: 통일부

나. 검토의견

첫째, 사회적 대화 기구는 기능과 구성에 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통일부는 운영계획 수립 시 사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통일·대북 정책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한다는 설명이나, 이미 「대한민국 헌법」 제9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 9월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통일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운영단, 국민대화패널단, 청년대화패널단 및 분과위원회를 갖출 예정임.

그러나 이러한 조직 구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구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사회적 대화 기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과 구성 비교]

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
근거규정	「대한민국헌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목적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정부 정책 형성과정에 다양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합의를 도출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반영 -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
조직	- 운영위원회(50명 이내) - 상임위원회(300~500명) - 분과위원회(20명 이상) - 지역회의(광역단위) - 지역협의회(기초단위)	- 운영단(운영위원회) - 국민대화패널단 - 청년대화패널단 - 분과위원회
위원수	21,984명(제21기 자문회의 기준)	미정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통일부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국민적 합의를 위하여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시 지역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대표성도 확보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추천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회단체·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등을 포함한 2만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적 대화기구는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가 협업하는 형태로 민간이 운영주체로 참여하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차별성이 있다는 설명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성부터 운영방안까지 계획된 바가 없어 어떠한 방법으로 민간이 운영주체로 참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분과별 의제 개발 등에 있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차별성이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거 추진되었던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원칙하에서 '통일비전시민사회'의 주도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3회, 6,0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여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였음.[14]

2022~2023년에는 통일국민협약의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하여 총 56회, 4,474명이 참여한 권역별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였음.

14) 통일비전시민사회: 보수·진보·중도·종단 등 다양한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추진기구로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보수단체연합, 250여 개), 시민사회연대회의(진보단체연합, 500여 개), 흥사단·YMCA(중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 연합단체) 등이 참여

[2018~2023년도 사회적 대화 추진 경과]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	추진경과
2018	550	510	공론화 모델 개발 및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 명)
2019	746	744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실시(30회, 3,400여 명)
2020	746	681	통일국민협약 기초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실시(8회, 717명)
2021	682	664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실시(5회, 418명), 「통일국민협약안」 채택(2021.6.) ※ 2021.6.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2021.7.5. 통일부장관 전달 2021.7.8. 대통령 보고 2021.9.23. 국회의장 보고
2022	931	904	협약안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권역별 사회적 대화 실시(31회, 2,253명)
2023	1,265	1,198	협약안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권역별 사회적 대화 실시(25회, 2,221명)

주 1) 2022~2023년: 전문가 청년플랫폼 포함
2) 2018~2021년: 세부사업 '통일정책추진' - 내역사업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2022~2023년: 세부사업 '통일정책추진' - 내역사업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적 대화 추진을 통해 도출된 「통일국민협약안」은 전문과 2개 장으로 구성된 협약 본문으로 작성되었음. 협약본문의 제1장은 시민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16가지를 제시하였고, 제2장은 제시된 미래상을 위한 8가지 세부과제를 명시하였음.[15)]

통일국민협약안은 보수·진보·중도·종단 등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일치된 협약안을 채택하였다는 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을 논의 및 제안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통일국민협약안은 통일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담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채택된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전달되어 대통령 및 국회의장에게 보고되었으나,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도 드러냈음.

따라서 통일부는 과거에 추진되었던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검토하여,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내용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참고자료: 「통일국민협약안」

[참고자료] 통일국민협약안(2021.6.26.)

통일국민협약안

<전문>

통일국민협약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분단 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2018년 이래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수천명의 시민과 활동가, 교사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의제개발, 발제, 질의응답과 자문에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이 오랜 시간의 숙의를 거하여 스스로 마련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 통일국민협약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협약본문>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전국의 시민참여단은 2020년 7월 6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4개 권역별 예비대화와 총 8일간의 전국 종합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과정과 방법에 관해 숙의하여 다음의 협약안을 채택한다.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험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한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목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이력 구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600만원(427.6%)이 증액된 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578	578	1,074	496	85.8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16	116	612	496	427.6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은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상담 및 민원 사례를 축적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를 추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기본적인 등록정보(인적사항 등)와 거주실태, 정착기본금, 사회보장급여 등 지원현황을 관리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과 별도로 구축·운영 중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비교]

구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목적	·기본적인 등록정보(인적사항 등), 거주실태, 지원현황(정착기본금 등) 관리 ·타행정기관과 정보 연계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를 통한 상담·민원 사례 축적·관리로 위기가구 발굴·관리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전체	·위기상황 등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사용기관	·통일부, 지방자치단체(거주자보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거주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 일반회계-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331-500)(인권인도실)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4억 9,600만원은 모두 관리용역비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의 서버 증설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구매를 위한 비용이며 서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될 예정임.

[2026년도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6) 10억 7,400만원 (4억 9,600만원 증액) · 관리용역비(210-15): 10억 7,400만원 (4억 9,600만원 증액) - 시스템 유지보수 1억 1,600만원 (전년동) - DB서버 증설 3억 1,200만원 (신규) - DB서버 관리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1억 8,400만원 (신규)

자료: 통일부

나. 검토의견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의 증액예산(관리용역비)은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조정이 필요함.

현재 운영 중인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은 2023년도 시스템 개선사업 당시 하드웨어 증설 없이 소프트웨어 개선 사업만 수행하였고, 이후 하드웨어 자원 부족에 따른 시스템 지연 및 과부하가 발생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4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로 정보자원(6Core, 16GB)을 제공받아 운영하였음.[17)]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세부내역]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2023년 신규): 7억 2,500만원 · **관리용역비**(210-15): 9,700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9,7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6억 2,8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개선: 6억 1,500만원 - 개선사업 관리: 1,300만원

자료: 통일부

17)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10조(긴급 또는 임시 정보자원 제공 및 회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 또는 임시로 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적 이슈 해결을 위해 긴급히 정보자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슈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2. 해당 업무시스템이 6개월 이내의 한시적인 사용량 급증이 예상되어 입주기관이 정보자원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진단 수행 결과 또는 관리원 내부 검토를 통해 정보자원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통상 최대 6개월 이내의 사용기간을 부여하여 정보자원을 임시 제공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에는 1년 이상 정보자원을 임시 할당하고 있었으므로, 2025년 4월에 해당 자원에 대한 회수가 필요함을 통일부에 통지하였음.

이에 통일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관리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매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서버 구매 비용 3억 1,200만원 및 관리 프로그램 라이선스 비용 1억 8,400만원, 총 4억 9,600만원을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였음.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관리용역비는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이고, 자산취득비는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통일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증액편성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의 구매 비용 4억 9,600만원은 관리용역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상 관리용역비와 자산취득비 내용]

구분	관리용역비(210-15목)	자산취득비(430-01목)
내용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및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방위력 개선사업에 의한 무기 및 장비 취득비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미술품 취득 경비 8. 물품관리법령상 박물관 보존물품 9.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10.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통일부도 기획재정부 최종 심의안에 증액예산의 비목을 자산취득비(430-01목)로 협의하여 편성하였으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예산안 정리과정

에서 착오로 관리용역비로 등록되었으므로, 비목에 부합하는 집행을 위해 비목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남북협력기금】

<총 괄>

6. 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 적정 여유자금 규모 논의 필요

가. 개 요

‘일반회계전입금’ 은「남북협력기금법」제4조에 근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1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217억 7,000만원(△23.3%)이 감액된 715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일반회계전입금(수입)	100,000	100,000	10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지출)	93,337	89,497	71,567	△21,770	△23.3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원 중 715억 6,7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용도이며, 나머지 284억 3,300만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은 과거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차입비용 상환분(경수로계정)과 남북협력기금 사업 추진 시 차입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이자 상환분(남북협력계정)으로 구분됨.

18) 남북협력기금(수입)-일반회계전입금(91-911)(기획조정실)

19) 남북협력기금(지출)-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9110-920)(기획조정실)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구성	내용		2026년도 계획안
일반회계전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716억원) 및 기금사업비 충당(284억원)		1,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 경수로계정 및 남북협력계정 예수이자 상환		716억원
	경수로	· 경수로 사업 관련 기존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한 당해연도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	631억원
	남북협력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당해연도 공자기금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	85억원

자료: 통일부

나. 검토의견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금 사업계획 및 남북관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유자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2019년 연말 기준 624억 800만원이었으나 2025년 8월 말 현재 2,056억 7,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20]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여유자금회수(연초)	84,568	62,408	141,903	176,342	162,545	163,361	190,091
일반회계전입금(사업비 충당)	41,987	92,968	53,926	56,913	12,327	48,789	20,182
사업비 및 운영비	77,369	46,559	33,517	80,201	24,689	35,164	12,614
여유자금운용(연말)	62,408	141,903	176,342	162,545	163,361	190,091	205,673

자료: 통일부

2026년도 남북협력계정 이자상환액 84억 4,800만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사업비 부족분 8,708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임.

그러나 최근 남북협력계정의 이자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신규 예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20) 2022년 말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경우 1,625억원으로 2021년의 1,763억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회성으로 지출된 사업비(경협·교역·금강산 및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425억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지출이 없었다면 2022년 연말 여유자금 규모가 이미 2,000억원을 초과하였을 것임.

[계정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계획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총 계획현액 (A)	경수로계정		남북협력계정		지출잔액 (A-B-C)
		계획현액	지출액(B)	계획현액주)	지출액(C)	
2019	100,873	100,873	58,013	-	-	42,860
2020	98,898	63,238	57,032	35,660	-	41,866
2021	88,256	57,640	46,074	30,616	-	42,182
2022	90,000	46,213	43,087	43,787	-	46,913
2023	73,914	45,054	44,873	28,860	-	29,041
2024	76,209	51,714	51,211	24,495	-	24,998
2025.9.	89,497	76,802	47,373	12,695	-	42,124
2026(안)	71,567	63,119	-	8,448	-	-

주) 2020년 계획 수립부터 계정에 따른 추계금액 분리 산정
자료: 통일부

이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에서 연례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불용이 발생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적립되고 있음.

2025년에도 10월 현재 남북협력계정의 이자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025년 연말까지 이자상환이 없고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 중 3분기에 미배정된 162억원을 제외한 838억원이 모두 집행될 경우, 예비재원과 남북협력계정 이자상환액 등 약 188억 7,100만원이 여유자금으로 추가 적립되어 2025년 연말에는 여유자금 규모가 2,2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일반회계 →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집행잔액 (A-B)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A)	계획현액	지출액(B)	
2019	100,000	100,000	100,000	100,873	58,013	41,987
2020	150,000	150,000	150,000	98,898	57,032	92,968
2021	100,000	100,000	100,000	88,256	46,074	53,926
2022	100,000	100,000	100,000	90,000	43,087	56,913
2023	100,000	100,000	57,200	73,914	44,873	12,327
2024	100,000	100,000	100,000	76,209	51,211	48,286
2025(예상)	100,000	100,000	83,800	89,497	64,929	18,871주)

주) 2025년 집행잔액: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 중 3분기 미배정된 162억원을 제외한 838억원이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입되고, 남북협력계정 이자 상환액 127억원이 지출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00년대에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4,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사례가 있어 현재의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남북협력사업 재개를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여유자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남북협력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적립된 여유자금을 활용하거나 공공자금관리리금으로부터 추가 예수를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고,

2025년 8월 현재 여유자금은 2,056억 7,300만원으로 최근 3년 주요지출(사업비 및 운영비) 평균인 467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이므로, 기금사업계획 및 남북관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유자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 출>

7.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무상) 사업: 최근 결산 내역 및 남북한 정세 등 종합적 고려 필요

가. 개 요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북한 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인도적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794억 9,500만원(16.7%)이 증액된 5,55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남북관리 통행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184억 5,800만원(115.4%)이 증액된 2,211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민생협력지원 및 경협기반(무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민생협력지원	475,885	273,041	555,380	79,495	16.7
북한영유아 등 지원	147,134	147,134	155,815	8,681	5.9
보건의료협력	159,416	79,416	150,735	△8,681	△5.4
농축산·산림·환경협력	168,258	45,414	247,736	79,478	47.2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1,077	1,077	1,094	17	1.6
경협기반(무상)	102,649	51,324	221,107	118,458	115.4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9,714	4,642	9,714	-	-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3,983	3,983	4,068	85	2.1
기타경제협력 사업(비공개)	60,552	28,938	178,925	118,373	195.5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28,038	13,399	28,038	-	-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운영	202	202	202	-	-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160	160	160	-	-

21) 남북협력기금-민생협력지원(2141-402)(인권인도실)

22) 남북협력기금-경협기반(무상)(3030-401)(남북관계관리단)

나. 검토의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증액이 반영된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무상) 사업의 경우 2016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최근 결산내역 및 남북한 정세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총지출 결산은 7%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0~2024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지출(D)	집행률 (D/C)
	당초	수정(C)		
2020	1,205,634	1,203,890	46,559	**3.9**
2021	1,245,579	1,245,579	33,517	**2.7**
2022	1,271,405	1,271,405	80,201	**6.3**
2023	1,212,474	1,212,474	24,690	**2.0**
2024	874,474	877,774	35,165	**4.0**

주) 총계에서 보전거래·내부거래·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증액된 민생협력지원 사업과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최근 5년간 집행률이 5% 미만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북간 교류 중단에 기인하고 있음.

[2020~2024년 민생협력지원 및 경협기반(무상)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민생협력지원	2020	451,092	451,092	7,779	458,871	13,871	3.0	**3.0**	626	444,374
	2021	513,092	513,092	626	513,718	1,708	0.3	**0.3**	9,270	502,740
	2022	513,092	513,092	9,270	522,362	3,371	0.7	**0.6**	-	518,991
	2023	604,969	604,969	-	604,969	752	0.1	**0.1**	-	604,217
	2024	475,314	475,314	-	475,314	763	0.1	**0.1**	-	474,551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경협기반 (무상)	2020	236,970	236,970	10	236,980	8,043	3.4	3.4	98	228,839
	2021	247,167	247,167	98	247,265	4,270	1.7	1.7	1,325	241,670
	2022	247,488	245,282	1,325	246,607	11,563	4.7	4.7	-	235,044
	2023	231,266	231,266	-	231,266	3,908	1.7	1.7	3,242	224,116
	2024	127,152	127,452	3,242	130,694	15,921	-	-	-	114,774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한 정세 변화 및 남북간 교류 재개가 기대되고 있으나,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 거부 방침을 선언하는 등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23)]

따라서 최근 결산내역 및 2025년 4분기 중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무상) 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3) 내일신문, 정부 정책변화에 지자체 남북교류 '기지개', 2025.7.24.
연합뉴스, 김정은, 이승만까지 거론하며 "통일은 없다"…'두 국가론' 쐐기, 2025.9.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은 1,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1)]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0.13	0.13	0.13	-	-
총수입	0.13	0.13	0.13	-	-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은 367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200만원(2.7%) 증가함.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57.64	357.64	367.16	9.52	2.7
총지출	357.64	357.64	367.16	9.52	2.7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0.13	0.13	0.13	-	-
합 계	0.13	0.13	0.13	-	-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367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200만원(2.7%) 증가함.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57.64	357.64	367.16	9.52	2.7
합 계	357.64	357.64	367.16	9.52	2.7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없음.[2)]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청사관리 운영’ 사업 총 1개임.[3)]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청사관리 운영	408	650	242	59.3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정과제인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통일담론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관련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은 일부 지역회의에서 출석인원이 개의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에 대한 내실 있는 자문 및 건의를 위해 지역회의 출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므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 구성 시 기존 사업 추진 사례를 참고하는 등 이념적 중립성 및 세대별 대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 지역회의 출석률 제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구성된 지역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2,800만원(40.6%) 증액된 28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4)5)]

[2026년도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자문회의 운영	4,054	4,054	4,546	492	12.1
국내·해외 지역회의	2,041	2,041	2,869	828	40.6

국내·해외 지역회의는 출범 다음연도에 개최되며 국내·해외 출범회의(전체회의, 출범연도)와 번갈아서 격년 1회 개최하고 있음. 제22기 자문회의는 2025년 11월에 출범 예정이고, 이와 함께 국내·해외 출범회의가 2025년 중 개최될 예정이며, 국내·해외 지역회의는 2026년에 개최될 예정임.

2026년도 예산안의 28억 6,900만원은 18개 국내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사업비 4억 2,800만원과 2개 해외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사업비 24억 4,100만원으로 구성됨.[6)]

4) 일반회계-자문회의 운영(1031-300)(위원지원국)

5) 지역회의(출범 다음연도)는 출범회의(전체회의, 출범연도)와 번갈아서 격년 1회 개최

6) 국내 지역회의(1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북5도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국내·해외 지역회의**(출범연도의 경우 '국내·해외 출범회의'): ('26) **28억 6,900만원** (8억 2,800만원 증액)
① 국내 지역회의(18회, 시·도별): **4억 2,800만원**
- 일반수용비: 1억 1,100만원 - 특근매식비: 100만원
- 임차료: 3,300만원 - 국내여비: 2억 7,900만원
- 사업추진비: 400만원
② 해외 지역회의(2회, 지역별 초청): **24억 4,100만원**
- 일용임금: 8백만원 - 일반수용비: 2억 4,300만원
- 임차료: 1억 2,600만원 - 일반용역비: 3억 9,000만원
- 국내여비: 3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16억 5,800만원
- 사업추진비: 1,200만원 - 고용부담금: 100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국내·해외 지역회의는 일부 회의에서 출석인원이 개의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에 대한 내실있는 자문 및 건의를 위해 지역회의 출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해외 지역회의의 2022·2024년도 평균 출석률을 살펴보면 2022년 51.7%, 2024년 52.0%를 보여 전체 평균 출석률 기준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개의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임.[7)]

[2022·2024년 국내·해외 지역회의 평균 출석률]

(단위: 명, %)

구분	회의개최	출석대상인원	출석인원	출석률
2022년	19회 (국내 18회 / 해외 1회)	19,496	10,070	51.7
2024년	20회 (국내 18회 / 해외 2회)	21,688	11,279	5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 지역회의(2): 미주, 유라시아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7조(의사) 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개별 지역회의의 출석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회의에서 출석인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개의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2022년의 경우 3개 지역회의(경남, 제주, 해외)가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2024년에는 6개 지역회의(서울,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남)가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국내·해외 지역회의 전체 평균출석률이 51.7%에서 52.0%로 소폭 개선된 것과 달리 개의정족수 미충족 지역회의는 증가한 상황임.[8)]

[2022 · 2024년 개별 지역회의 출석률]

(단위: 명, %)

구분		회의명	일시	출석대상	출석인원	출석률
2022	국내	서울지역회의	2022.11.15.	2,825	1,656	58.6
		부산지역회의	2022.11.17.	824	417	50.6
		대구지역회의	2022.11.21.	572	326	57.0
		인천지역회의	2022.11.22.	581	317	54.6
		광주지역회의	2022.11.22.	473	261	55.2
		대전지역회의	2022.11.22.	405	215	53.1
		울산지역회의	2022.11.22.	375	215	57.3
		세종지역회의	2022.11.23.	100	61	61.0
		경기지역회의	2022.11.23.	2,492	1,299	52.1
		강원지역회의	2022.11.24.	820	444	54.1
		충북지역회의	2022.11.25.	619	320	51.7
		충남지역회의	2022.11.25.	828	416	50.2
		전북지역회의	2022.11.30.	848	435	51.3
		전남지역회의	2022.12.1.	1,086	567	52.2
		경북지역회의	2022.12.1.	1,186	606	51.1
		경남지역회의	2022.12.5.	1,179	516	**43.8**
		제주지역회의	2022.12.6.	221	96	**43.4**
		이북5도지역회의	2022.12.9.	263	159	60.5
		소계		15,697	8,326	53.0
	해외	**해외지역회의**	2022.11.28.~12.1.	3,799	1,744	**45.9**
		소계		3,799	1,744	45.9
	합계			19,496	10,070	51.7

8) 2022년은 43.4~61.0%, 2024년은 41.7~65.3%의 출석률을 보여 출석률 편차가 확대됨.

(단위: 명, %)

구분		회의명	일시	출석대상	출석인원	출석률
2024	국내	**서울지역회의**	2024.9.26.	3,575	1,587	**44.3**
		부산지역회의	2024.10.11.	903	487	53.9
		대구지역회의	2024.10.14.	806	456	56.6
		인천지역회의	2024.10.22.	613	322	52.5
		광주지역회의	2024.10.14.	525	296	56.4
		대전지역회의	2024.10.23.	374	198	52.8
		울산지역회의	2024.10.16.	451	271	60.1
		세종지역회의	2024.10.17.	132	55	**41.7**
		경기지역회의	2024.10.11.	2,613	1,137	**43.5**
		강원지역회의	2024.10.7.	834	419	50.6
		충북지역회의	2024.9.27.	621	320	51.4
		충남지역회의	2024.9.30.	890	458	51.5
		전북지역회의	2024.10.16.	928	459	**49.2**
		전남지역회의	2024.10.17.	1,192	582	**48.8**
		경북지역회의	2024.10.4.	1,303	697	53.5
		경남지역회의	**2024.10.7.**	**1,284**	**628**	**48.9**
		제주지역회의	2024.10.10.	254	152	59.8
		이북5도지역회의	2024.10.11.	321	189	58.9
		소계		17,619	8,713	49.5
	해외	미주지역회의	2024.9.9.~9.12.	1,849	1,116	60.4
		유라시아지역회의	2024.12.2.~12.5.	2,220	1,450	65.3
		소계		4,069	2,566	63.1
	합계			21,688	11,279	5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본업과 함께 직무를 병행하게 되므로 회의 일정에 따라 회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을 위해서는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회의 출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해외 지역회의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출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개의정족수 미충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 이념적 중립성 및 세대별 대표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은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국내·해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개최, 영상 및 자료집 제작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5,000만원(1,117.0%) 증액된 1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174	6,174	6,005	△169	△2.7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94	94	1,144	1,050	1,117.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공약사항 실현을 위해 기존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사업을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의 11억 4,400만원은 의제 발굴 및 사업 전반의 기획·분석·평가를 위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 국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개최 비용 7억 8,200만원, 해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개최 비용 2억 7,300만원, 영상 제작비 1,600만원, 분기별 분석자료집 및 종합자료집 발간비 5,300만원으로 구성됨.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舊 우리고장 평화통일 서민대화): **(’26) 11억 4,400만원 (10억 5,000만원 증액)**

①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 2,000만원

- 회의참석 사례비 1,200만원
-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 560만원
- 기획 및 평가간담회 300만원

② 국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34회): 7억 8,200만원

- 기획회의 참석 사례비 800만원
- 프로그램 개발 및 감수 사례비 160만원
- 종합평가 회의 참석 사례비 400만원
- 개최 지원 국내여비 1,000만원

9) 일반회계-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자문건의국)

- 기획 및 평가 간담회(3만원×10명×34회) 1,020만원
- 국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2,200만원×34회) 7억 4,800만원

③ 해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5회): 2억 7,300만원

- 기획회의 참석 사례비 400만원
- 프로그램 개발 및 감수 사례비 160만원
- 개최 지원 국외업무여비(5회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9,489만원
- 기획 및 평가 간담회(3만원×8명×10회) 240만원
- 해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3,400만원×5회) 1억 7,000만원

④ 영상 제작: 1,600만원

- 안내 영상 제작 등(800만원×2식) 1,600만원

⑤ 분기별 분석자료집 및 종합자료집 발간: 5,300만원

- 분기별 분석자료집 발간 3,580만원
- 종합자료집 발간 1,680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므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 구성 시 기존 사업 추진 사례를 참고하는 등 이념적 중립성 및 세대별 대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 발굴을 비롯한 사업 전반의 기획·분석·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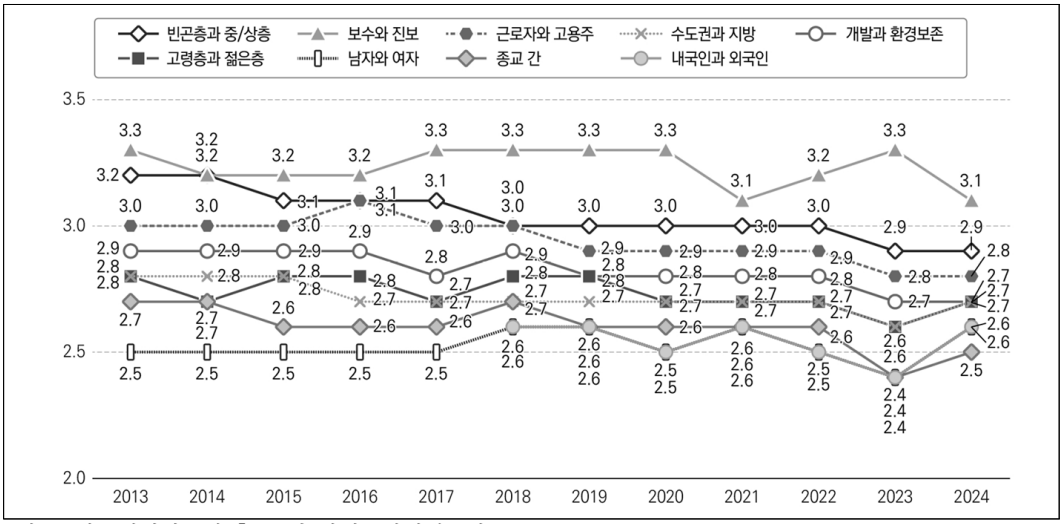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약 15~25명의 자문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최근 이념·세대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여러 사회갈등의 유형 중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중립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사회갈등의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점, 척도: 1~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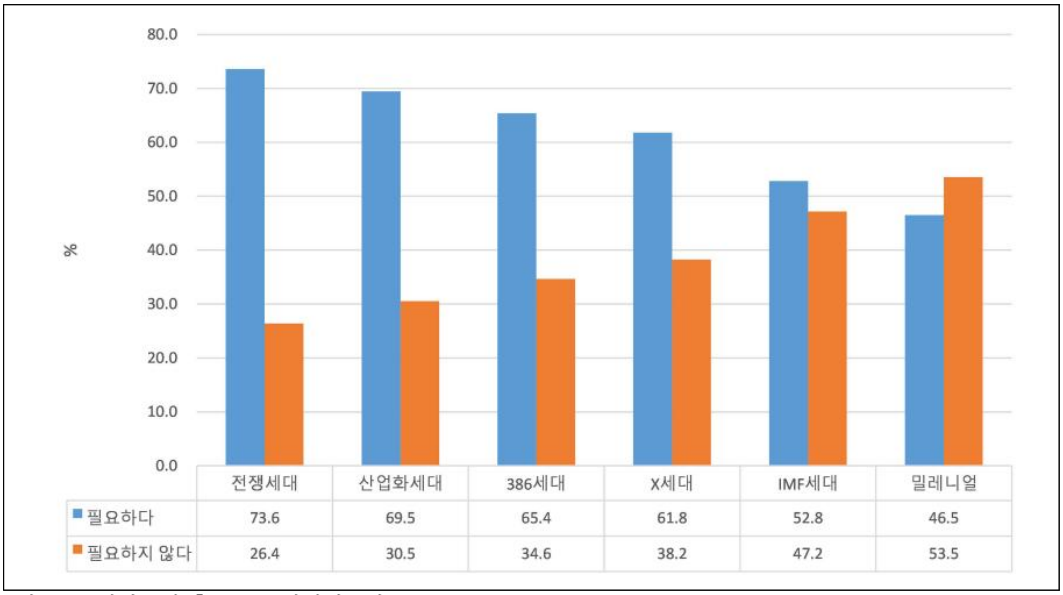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또한 통일연구원의 「KIKU 통일의식조사 2024」에 따르면 세대별로 통일 필요성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부터 세대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통일 필요성 인식의 세대별 비교: 횡단면 분석(2014~2024)]

(단위: %)



자료: 통일연구원「KIKU 통일의식조사 2024」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8년 이후 평화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을 목적으로 ‘평화통일 원탁회의(2018~2020)’ 사업 및 ‘우리고장 평화플랜(2021~2022)[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2023~2025)]’ 사업을 추진하였음.

두 사업은 각각 ‘평화통일 원탁회의 추진위원회’, ‘평화통일 시민대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추진형태가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 사업들의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도출한 개선과제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존 추진 사업의 비교]

구분	평화통일 원탁회의 (2018~2020)	우리고장 평화플랜(2021~2022),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2023~2025)
목적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국내외 시민사회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 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 지역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민주평통이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 확산
추진 절차	· ① 추진위 구성 → ② 참가신청 → ③ 사전의견수렴 → ④ 공론토론	· ① 기획회의 → ② 1·2차 준비위원회 → ③ 참가자 모집 및 퍼실리테이터 선정 → ④ 퍼실리테이터 역량교육 → ⑤ 시민대화 개최 → ⑥ 실천활동 전개
주최	· **평화통일 원탁회의 추진위원회** (기획: 민주평통 / 참여: 시민사회)	· **평화통일 시민대화 준비위원회** (기획: 민주평통 / 참여: 시민사회)
주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도 지역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군구 지역협의회
프로그램	· 설문발표, 인터뷰영상, 테이블토론, 개인투표, 약속의 시간 ※ 사전: 참가자 통일문제 설문조사, 주제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현장인터뷰	· 추진경과 보고, 우리고장 통일공감대 추진과제(안), 제안, 테이블 토론, 우수제안 시상, 약속의 시간(실천 다짐) 등
개최 현황	**총 22회, 5,920명** (677개 단체, 32개 대학 등) · 2018: 5회[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남] · 2019: 13회[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남, 미국, 북유럽 등] · 2020: 13회[부산남구, 부산(대학생), 울산중구, 김포]	**총 20회, 2,160명** (250개 단체, 12개 중고교, 8개 대학 등) · 2021: 6회[부산남구, 인천강화, 경기연천, 강원인제, 충북청주, 전남여수] · 2022: 6회[인천연수, 울산울주, 광주남구, 경기파주, 강원춘천, 경북포항] · 2023: 3회[서울송파, 대구수성, 충남천안] · 2024: 3회[대전대덕, 경기용인, 경남김해] · 2025: 2회[전남목포, 강원강릉]
예산주)	('20) 1억 8,400만원 [국내 4회, 해외 2회]	('24) 9,400만원 [3회]

주) 예산: 해당연도 본예산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 또는 내규의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사회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음.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합의 도출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부처 조직의 변동, 리더십 교체 등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추진과 함께 법령의 개정 또는 내규 제정 등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수입은 10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1.1%) 감소함.[1)]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0.26	10.26	10.15	△0.11	△1.1
총수입	10.26	10.26	10.15	△0.11	△1.1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지출은 1,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2.0%) 증가함.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071	1,071	1,092	21	2.0
총지출	1,071	1,071	1,092	21	2.0

주) 2026년도 총지출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예산 77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0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1.1%) 감소함.

[2026년도 재외동포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0.26	10.26	10.15	△0.11	△1.1
합 계	10.26	10.26	10.15	△0.11	△1.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2.0%) 증가함.

[2026년도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071	1,071	1,092	21	2.0
합 계	1,071	1,071	1,092	21	2.0

주 1) 총계 기준
2) 2026년도 총지출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예산 77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재외동포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없음.[2)]

한편, 재외동포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총 1개임.[3)]

[2026년도 재외동포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900	4,601	2,701	142.2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법정 의무사항인 보안관제센터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한글학교 등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및 해외 입양동포단체 지원 사업을 이관받은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및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을 참고하여 의무위반 또는 중도포기에 대한 반납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최근 통신사·카드사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정부 전산망 해킹 시도 건수 급증 등 보안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보안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신규): 의무위반 또는 중도포기 관련 반납 규정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은 한국에서 학사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거나 국내에 귀환하여 장기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청년 인재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4,500만원(58.1%) 증액된 6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내역사업인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해외 동포청년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억 4,50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및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7,757	27,757	23,778	△3,979	△14.3
재외동포 교육사업	4,074	4,074	7,164	3,090	75.8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3,864	3,864	6,109	2,245	58.1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	-	-	845	845	순증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 및 홍보 사업 수행을

4) 일반회계-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5032-302)(교류협력국)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출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재외동포청은 2026년도 예산안의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에게 어학연수비·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학업지원(국내정착)’ 사업을 신설하여 2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와 함께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취업준비생에게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두 사업은 ‘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 대응, 지역 및 국가경쟁력 제고, 과거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적 부채 청산을 기대하고 있음.

[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개요]

구분	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 학업지원(국내정착)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
사업내용	· 동포청년 인재를 학업·취업 및 정착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 양성	
기대효과	·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국가경쟁력 제고 · 과거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적 부채 청산	
추진기관	**재외동포협력센터**(출연사업)	
지원대상	· 한국어 어학연수생(50명) · 학부·대학원생(100명) **[150명]**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국내 입국하는 취업준비생 **[250명]**
지원사항	· 한국어 어학연수비, 등록금, 항공료, 학업장려금	· 직업교육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항공료, 초기정착금
2026년도 예산안	**22억 4,500만원**	**8억 4,500만원**
산출내역	· **어학연수비**: 1억원(50명×200만원×1학기) · **등록금**: 3억 7,500만원 - 학 부: 1억 7,500만원 (50명×350만원×2학기×50%지원) - 대학원: 2억만원 (50명×400만원×2학기×50%지원) · **학업장려금**: 16억 9,500만원 - 어학연수: 3억 3,900만원 (50명×113만원×6개월) - 학 부: 6억 7,800만원 (50명×113만원×12개월) - 대 학 원: 6억 7,800만원 (50명×113만원×12개월) · **항공료**: 7,500만원(150명×50만원)	· **직업교육훈련비**: 1억 5,000만원 (250명×60만원) · **자격증 취득비**: 500만원(250명×2만원) · **초기정착금**: 5억 6,500만원 (250명×113만원×2개월) · **항공료**: 1억 2,500만원(250명×50만원)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안의 신규 학업지원(국내정착) 사업과 기존 사업을 비교하면, 신규사업은 지원대상이 국내 학업 이후 정착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과, 지원사항에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비의 50%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기존 사업과 학업지원(국내 정착) 비교]

구분	학업지원(국내초청)	학업지원(국내정착)
지원대상	· 국내 학업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	· 국내 학업 및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
지원사항	· 한국어 어학연수비, 생활비, 항공료, 보험금, 논문인쇄비 등	· 한국어 어학연수비, 등록금, 항공료, 학업장려금
2026년도 예산안	38억 6,400만원 [253명]	22억 4,500만원 [150명]
1인당 지원금액	1,527만원/인	1,497만원/인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및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의 관련 규정에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을 참고하여 의무위반 또는 중도포기에 대한 반납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는 국내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등의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5)]

이는 공무원에게 교육에 충실하도록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효과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5)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학사지침」제24조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선발된 대학(원)생이 지원 관계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표절이 확인될 경우,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대학(원)생은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며, 상실자는 차기 학위과정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6)]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6조와 달리 이미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재의 장학생 지위를 현재부터 박탈하고, 장래에 발생할 지원을 중단하는 데 그치고 있음.

재외동포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선발인원이 253명에서 40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250명이 새로 선발되는 등 지원대상 및 예산액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성 부여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사업효과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학사지침」에「공무원 인재개발법」등을 참고하여 의무 위반 또는 중도포기에 대한 반납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규정 제정 시 반납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6)「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학사지침」
제24조(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은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며, 상실자는 차기 학위과정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1. 장학생 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표절이 확인되었을 때
2.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때
3.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한 조속한 구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재외동포청의 보안관제센터를 신설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7억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6년도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900	1,900	4,601	2,701	142.2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	-	2,701	2,701	순증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8)]

재외동포청은 관리 중인 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대부분은 해외 접속이므로 해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입주를 추진할 계획임.[9)]

---

7) 일반회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7121-303)(운영지원과)

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사이버공격·위협의 탐지·대응) ① 국가정보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부보안관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9)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2021년 출범하여 가상공간 공격과 장애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기반시설(인프라)
※ 참여기관(13): 인사처, 보훈부, 성평등부, 법제처, 질병청, 행복청, 새만금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재외동포청 보안관제 현황 및 개선방향]

구분	소관	시스템	現 보안관제	'26년(개선방향)	최근 사례
1	재외동포청	코리안넷	재외동포 협력센터 (산하기관)	**부처합동 사이버 안전센터**	성평등가족부 '25년 합류 합동관제수행
2		한상넷			
3		스터디코리안			
4		영사민원시스템(G4K)	미 관제		
5		업무포털	행정안전부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좌동"	"좌동"
6		홈페이지			
7		재외동포365민원포털			
8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9		e-아포스티유			
10	재외동포 협력센터 (산하기관)	대표 홈페이지	보안관제업체 원격관제수행	**부처합동 사이버 안전센터**	성평등가족부 '25년 합류 산하기관관제
11		재외동포 자료실			
12		사업지원시스템			
13		단체관리시스템			

자료: 재외동포청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보안관제센터 공사비 4억 7,600만원, 보안장비 구매비 14억 3,600만원, 보안관제 용역비 7억 8,900만원, 총 2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음.

현재 사업 추진 일정은 마련되어있지 않으나, 2026년도 예산 확정 이후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입찰공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임.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신규): ('26) 27억 100만원, 순증

-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세종)' 입주 추진] 구축비, 보안장비 구매, 보안관제 용역비
  · 보안관제센터 공사: 4억 7,600만원
  · 보안장비 구매: 14억 3,600만원
  · 보안관제 외부용역: 7억 8,900만원

자료: 재외동포청

나. 검토의견

최근 통신사·카드사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정부 전산망 해킹 시도 건수 급증 등 보안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보안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최근 정부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가 급증하고 있음. 언론보도에 인용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부부처 대상 해킹시도는 161,208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69,982건이 집계되어 연간 10만건 중후반대 수준이 예상되고 있음.[10)]

2025년 8월에는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서버 및 외교부 전자우편시스템이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9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가 발생함에 따라 물리적 보안체계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음.[11)]

이러한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추진 중인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기존 재외동포협력센터 수준에서 진행하였던 보안관제를 강화함으로써 기관 내부 시스템 보호 및 나아가 국가 전체 차원의 보안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한편 이 사업은 보안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사비 및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있고, 공고 전 조달청과의 업무협의 등을 포함하면 공고부터 계약 후 착수까지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12)]

용역입찰의 경우 통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체결되므로 공고기간이 3일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고, 제안서평가 및 협상 절차가 추가되어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입찰공고 절차가 협의 지연 또는 유찰 등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사업 추진이

---

10) 뉴데일리경제, [단독] ‘정부망 뚫렸다’ … 해킹 시도 7만건, 기밀 2800건 유출의 민낯, 2025.10.3.

11) 보안뉴스, [단독] 대한민국 정부가 털렸다... 행안부·외교부·방첩사, 북한 추정 해킹에 국가안보 ‘비상’, 2025.8.9.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순연될 수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조달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의 확정 이후 입찰공고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조속한 보안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관사 운영·관리규정 마련 필요

가. 개 요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재외동포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5,000만원(19.0%) 증액된 28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2,374	2,374	2,824	450	19.0
무형자산	-	-	94	94	순증

재외동포청은 현재 청사 및 관사를 임차 중이고, 청사(2026.6.4. 만료) 및 재외동포청장 관사(2026.8.15. 만료) 임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보증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보증금(무형자산, 440-00목)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재외동포청 청사 및 관사 임차 현황]

(단위: ㎡, 원)

구분	면적	보증금	계약기간
청사	3,083	873,553,000	2023.6.16.~2026.6.4.
관사	115	50,000,000	2024.8.16.~2026.8.15.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재외동포청은 관사를 운영·관리하면서 근거규정 없이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타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관사 운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사 운영비의 부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청은 2024년 8월 이후 재외동포청장을 위한 관사를 임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13) 일반회계-기관운영 기본경비(7111-251)(운영지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 관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월임차료, 보증금 외에 중개보수, 관리비 등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비목으로 집행하고 있음.

[2024년도 재외동포청 관사 운영·관리 관련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비품 구입·설치	중개보수	입주청소	관리비	인터넷요금	합계
금액	11,326	1,023	556	1,064	279	14,248

주) 임차료, 보증금 제외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데, 제22조제2항에서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4)]

재외동포청은 관사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타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와 관세청은 각각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및 「관세청 관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관사 사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관사의 운영·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은 없으나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기관장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임.[15)]

그러나 재외동포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신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청사의 용도와 면적만을 내용으로 하고, 청사의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사의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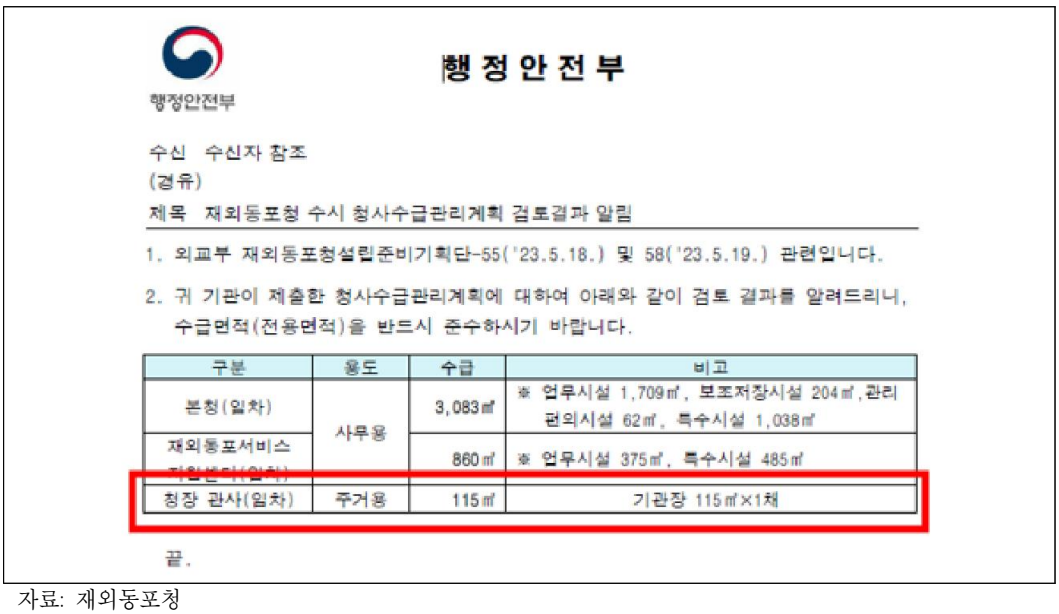
결국 재외동포청은 관사를 운영·관리하면서 근거규정 없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및 타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관사 운영·관리규정을

1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⑥ 총괄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제22조(수리비용 부담)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5) 재외동포청 수시 청사수급관리계획 검토결과

제정하여 관사 운영비의 부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외동포청 수시 청사수급관리계획 검토결과 알림

1. 외교부 재외동포청설립준비기획단-55('23.5.18.) 및 58('23.5.19.)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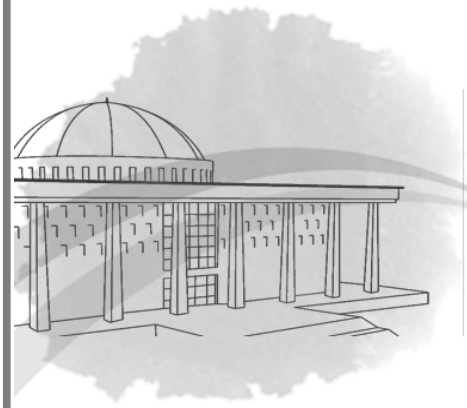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2. 귀 기관이 제출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니, 수급면적(전용면적)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용도	수급	비고
본청(일차)	사무용	3,083㎡	※ 업무시설 1,709㎡, 보조저장시설 204㎡, 관리편의시설 62㎡, 특수시설 1,038㎡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일차)		860㎡	※ 업무시설 375㎡, 특수시설 485㎡
청장 관사(임차)	주거용	115㎡	기관장 115㎡×1채

끝.

자료: 재외동포청

국방위원회



국방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2조 1,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8,333억원(△28.0%) 감소함. 예산은 7,226억원으로 전년 대비 8,653억원(△54.5%) 감소한 반면, 기금은 1조 4,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0억원(2.3%) 증가함.[1)]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5,879	15,879	7,226	△8,653	△54.5
기 금	13,857	13,857	14,177	320	2.3
총수입	29,736	29,736	21,403	△8,333	△28.0

문의 : 박제성 예산결산조사관 thesquare@assembly.go.kr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은 47조 4,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886억원(5.3%) 증가함. 예산은 42조 1,6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69억원(5.1%) 증가하고, 기금은 5조 2,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7억원(6.7%) 증가함.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01,100	402,495	421,669	20,569	5.1
기 금	49,510	49,510	52,827	3,317	6.7
총지출	450,610	452,005	474,496	23,886	5.3

나. 예산안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조 2,7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313억원(△47.1%) 감소함.

[2026년도 국방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294	3,294	3,818	524	15.9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15,003	15,003	5,304	△9,699	△64.6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5,721	5,721	3,583	△2,138	△37.4
합 계	24,018	24,018	12,705	△11,313	△47.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7조 90억으로 전년 대비 1조 5,359억원(3.4%) 증가함.

[2026년도 국방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34,007	435,402	461,203	27,196	6.3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15,003	15,003	5,304	△9,699	△64.6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5,721	5,721	3,583	△2,138	△37.4
합 계	454,731	456,126	470,090	15,359	3.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국방부 소관 2개 기금(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6조 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60억원(8.3%) 증가함.

[2026년도 국방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군인복지기금	10,118	10,118	9,833	△285	△2.8
군인연금기금	46,052	46,052	50,997	4,945	10.7
합 계	56,170	56,170	60,830	4,660	8.3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방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4개(1,113억 8,1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그 중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군에서 필요로 하면서도 민간산업 등에 적용이 가능한 군수품을 첨단 AI 기술을 보유한 민간 업체를 통해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국방AI인재양성’ 사업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 장병의 AI·SW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0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방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정비장비유지	10,235
2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60,000
3	국방AI인재양성	40,61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	8포병단본부/포병대	534
총지출		111,381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국방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방ICT 혁신기술’ 사업,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간부확보장려사업’ 사업 등 총 44개임.[3)]

[2026년도 국방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장교인건비	4,865,905	5,026,083	160,178	3.3
2	부사관인건비	7,018,290	7,237,264	218,974	3.1
3	군무원인건비	2,674,491	2,895,519	221,028	8.3
4	국방부 건강보험부담금	481,324	510,203	28,879	6.0
5	기본급식	1,684,395	1,811,925	127,530	7.6
6	기본피복	350,712	391,449	40,737	11.6
7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정보화)	277,075	289,992	12,917	4.7
8	국방ICT혁신기술	1,000	6,651	5,651	565.1
9	국방광대역통합방(BTL) 정부지급금(정보화)(민자)	95,323	119,672	24,349	25.5
10	병내일준비지원	1,327,660	1,658,716	331,056	24.9
11	기동장비	204,447	329,909	125,462	61.4
12	병참물자	244,101	306,757	62,656	25.7
13	기동장비(유지)	920,156	1,013,825	93,669	10.2
14	항공장비(유지)	2,072,722	2,210,381	137,659	6.6
15	함정장비(유지)	513,586	536,338	22,752	4.4
16	통신전자장비(유지)	249,775	262,576	12,801	5.1
17	특수장비(유지)	310,397	328,130	17,733	5.7
18	장비연료	735,348	760,873	25,525	3.5
19	전력지원체계지원	8,419	11,111	2,692	32.0
20	민군기술협력(R&D)(국방부)	5,896	10,776	4,880	82.8
21	자기개발교육	20,716	40,888	20,172	97.4
22	공통교보재지원	28,426	50,847	22,421	78.9
23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66,783	73,403	78.6
24	병영생활관	258,979	336,444	77,465	29.9
25	정비 및 보급시설	394,076	420,321	26,245	6.7
26	일반지원시설	522,654	623,417	100,763	19.3
27	경계 및 작전시설	241,615	438,630	197,015	81.5
28	공공요금	580,668	620,644	39,976	6.9
29	일반훈련	73,860	96,825	22,965	31.1
30	공군83정비창 사업 및 지원비	740	990	250	33.8
31	공군종합보급창 사업 및 지원비	1,380	2,274	894	64.8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32	인건비	553,835	645,700	91,865	16.6
33	군사시설개선	596,377	726,492	130,115	21.8
34	시설부지지원	2,253	15,280	13,027	578.2
35	민간보상	4,211	8,010	3,799	90.2
36	부대운영지원	220,174	266,112	45,938	20.9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7	60사단 160/162연대	1,558	25,162	23,604	1515.0
38	군사안보지원학교	8,352	15,633	7,281	87.2
39	해병대 제1군수대대	1,037	13,518	12,481	1203.6
40	부대개편 8차	52,593	93,154	40,561	77.1
[군인복지기금]					
41	복지시설운영	374,133	400,579	26,446	7.1
42	주거지원보증금반환금	104,000	120,000	16,000	15.4
[군인연금기금]					
43	퇴직급여	3,908,823	4,148,927	240,104	6.1
44	퇴직수당	334,739	418,330	83,591	25.0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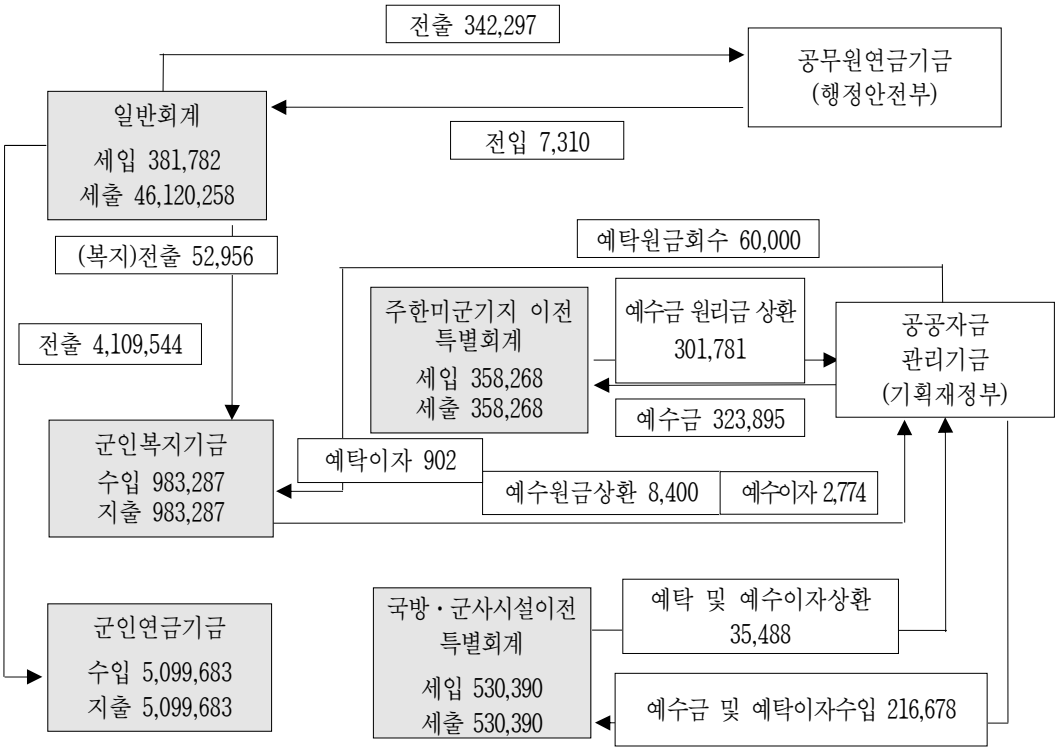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군인연금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군인복지기금으로 530억원, 군인연금기금으로 4조 1,095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55억원이 예탁되었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리금 3,018억원이 상환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 3,239억원이 예수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으로 600억원의 예탁금이 회수되었음. 또한 군인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84억원의 예수금이 상환되었음.

[국방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단위: 백만원)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한 군(軍)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및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집중투자에 있음. 특히,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 근무비를 인상하고,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 R&D를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신시설’ 사업, ‘환경보전시설’ 사업 및 ‘장비획득’ 사업은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 사업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된 사업이 있으므로, 이러한 낙찰차액을 감안한 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일부 유형의 지원 단가가 다른 부처의 유사한 지원사업의 지원 단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국방부는 실무형 AI 인력육성 및 민간의 AI 연구역량을 실증단계의 응용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부대개편 7차’ 사업 및 ‘부대개편 8차’ 사업은 계약체결 결과 발생한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2026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통신시설 사업, 환경보전시설 사업 및 장비획득 사업(단위사업): 장기계속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안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통신시설’ 사업은 이전·신축 부대에 대한 통신 지원 및 노후화된 통신 시설의 보수·교체 등을 통해 군 통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1.2%) 증액된 52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4)]

‘환경보전시설’ 사업은 수질·토양 오염의 방지 및 토양오염부지에 대한 정화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군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7억 8,200만원(4.2%) 증액된 1,669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통신시설 사업 및 환경보전시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통신시설	51,753	51,753	52,398	645	1.2
환경보전시설	160,195	160,195	166,977	6,782	4.2

한편, **‘장비획득’** 단위사업(2331)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항공장비 및 함정장비 등의 군수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총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8억 4,700만원(22.5%) 증액된 5,986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6)]

---

4) 일반회계-통신시설(2131-305)(기획조정실)

5) 일반회계-환경보전시설(2533-301)(자원관리실)

[2026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장비획득	488,796	488,796	598,643	109,847	22.5
기동장비	204,447	204,447	329,909	125,462	61.4
화력장비	20,771	20,771	23,430	2,659	12.8
항공장비	32,032	32,032	28,829	△3,203	△10.0
함정장비	31,295	31,295	28,166	△3,129	△9.9
통신전자장비	60,561	60,561	56,576	△3,985	△6.6
일반장비	66,355	66,355	59,720	△6,635	△11.0
특수장비	31,835	31,835	36,803	4,968	15.6
정밀측정장비	11,914	11,914	10,723	△1,191	△10.0
정비장비	29,586	29,586	24,487	△5,099	△17.2

나. 검토의견

통신시설 사업, 환경보전시설 사업 및 장비획득 사업은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 사업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된 사업이 있으므로, 이러한 낙찰차액을 감안한 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장기계속계약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사업의 이행에 수년의 기간이 필요할 때 한 번의 계약으로 전체 사업이 수행되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장기계속계약 사업은 2025년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2026년도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2026년도에 불용될 예정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도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미리 조정될 필요가 있음.

6) 일반회계-장비획득(2331)(자원관리실)

먼저, 통신시설 사업은 2025년 9월말 현재 해군 해작사 전투모의센터(BSC) 신축 통신공사 등 4개 사업의 6개 계약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2026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즉, 이들 장기계속계약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각각의 계약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감액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6년도 통신시설 사업 예산안 조정가능액(낙찰차액 관련)]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계약명		예산 연부액			계약 연부액			조정 가능액 (A-B)
			2025	2026 (A)	합계	2025	2026 (B)	합계	
통신시설 (2131-305)	(해군) 해작사 전투모의센터(BSC) 신축 통신공사계약 (2025~2026)		108	383	491	108	269	377	114
	(공군) 노후 안테나 철탑교체 (2025~2026)	공사계약	35	987	1,022	35	951	986	36
		감리계약	1	16	17	1	14	15	2
	(공군) 정보통신 기반시설 노후교체 (2025~2026)	공사계약	158	4,383	4,541	158	4,327	4,485	56
		감리계약	3	64	68	3	56	60	8
	(공군) MCRC 장비 이전/설치 공사계약 (2025~2026)		397	795	1,192	394	749	1,143	46
조정가능액 합계									262

주) 2025년 9월말 기준임
자료: 국방부

다음, 환경보전시설 사업도 군수사 탄약지원사 6탄약창 본부 건축물 석면개선 등의 4개 장기계속계약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2026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즉, 이들 장기계속계약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각각의 계약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감액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6년도 환경보전시설 사업 예산안 조정가능액(낙찰차액 관련)]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사업명	예산 연부액			계약 연부액			조정 가능액 (A-B)
		2025	2026 (A)	합계	2025	2026 (B)	합계	
환경보전시설 (2533-301)	수도군단 51사단사령부 오수관로개선	1	2,051	2,052	1	2,035	2,036	16
	지작사 1군지사 8군지단 18보급대대 폐기물 보관시설	1	900	901	1	821	822	79
	군수사 탄약지원사 6탄약창 본부 건축물 석면개선	1	1,759	1,760	1	1,456	1,457	303
	3군단 21사단 포병여단 본부 지자체 관로연계	1	348	349	1	347	348	1
조정가능액 합계								399

주) 2025년 9월말 기준임
자료: 국방부

끝으로, 장비획득 단위사업은 2025년 9월말 기준 총 1건의 장비획득 계약에서 사업취소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연부액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7)]

[2026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 예산안 조정가능액(사업취소 관련)]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장비명/계약명	예산 연부액			취소사유
		2025	2026	합계	
화력장비 (2331-302)	저격용소총 표적획득장비 (2025 ~ 2026)	2	232	234	기술평가결과 부적격 판정, 연내 계약불가로 사업취소(9.22.)

주) 2025년 9월말 기준임
자료: 국방부

또한, 장비획득 단위사업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5년 9월말 기준 총 29건의 장비획득 계약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예산안 편성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감액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7) 해당 연부액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계약이 체결(9월)된 사유로 감액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2026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 예산안 조정가능액(낙찰차액 관련)]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장비명/계약명	예산 연부액			계약 연부액			조정 가능액 (A-B)
		2025	2026 (A)	합계	2025	2026 (B)	합계	
기동장비 (2331-301)	(육)트레일러, 탱크형 (400가론 KM106A1)	110	2,496	2,606	157	2,095	2,253	400
	(공)항공 정비사 출동차 제조(K)	1만원	254	254	1만원	217	217	37
	(777)경화학소방차	1	330	331	1	255	256	75
화력장비 (2331-302)	(육)원거리 조준경(조준장치)	600	2,058	2,658	597	2,004	2,601	54
	(정보사)저격용 관측경	1	308	309	1	245	246	63
항공장비 (2331-303)	(해)엑스레이 필름현상기(자동식)	1	235	236	1	201	202	34
	(해)함정 작전지원용 드론	279	850	1,129	279	660	939	190
함정장비 (2331-304)	(해)연료유 이송펌프 100GPM	30	362	392	30	286	316	77
	(해)윤활유이송펌프(NLG-3)	44	397	441	44	338	382	59
	(해)15인승 구명정	154	140	294	154	134	288	6
	(정보사)잠수자 추진기	1	158	159	1	98	99	60
	(정보사)재호흡기	1	518	519	1	394	395	124
통신전자장비 (2331-305)	(해)수중정밀영상탐색기	160	586	747	160	506	667	80
	(해)선박자동식별장치	25	62	87	25	8	33	53
	(해)항해자료기록장치	22	202	225	22	107	129	96
일반장비 (2331-306)	(육)구레이다	1천원	1,293	1,293	1천원	1,116	1,116	177
	(육)유압크렌25톤	1천원	545	545	1천원	497	497	48
	(해)5톤 직진식 카고크레인	19	157	175	19	125	144	32
	(해)콘크리트 절단기	1	19	20	1	17	18	2
	(해)탄약 정비용 집진기	37	335	372	37	166	204	168
	(해)탄약정비용 페인트 스프레이 부스	36	320	356	36	296	332	24
	(해)탄약 이송용 컨베이어	28	253	281	28	126	154	127
정밀측정장비 (2331-308)	(공)주파수용 교정기 구매(U)	1만원	173	173	1만원	162	162	11
	(해)신호분석기	1	394	395	1	353	354	42
정비장비 (2331-309)	(육)인젝터 측정기용	1	172	173	1	163	164	8
	(해)IC검사기	1	379	380	1	344	345	35
	(해)탄약 열순환식 건조기	8	166	174	8	87	95	79
	(해)탄약이송대	10	193	203	10	100	111	93
	(해)탄약 정비용 분사제청기	25	479	504	25	113	138	366
조정가능액 합계								2,620

주) 2025년 9월말 기준임

자료: 국방부

2. 민간조리원 운영: 민간조리원 운영률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은 조리병의 조리기술을 보완하고 군 급식의 맛과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억 7,700만원(7.7%) 증액된 1,118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민간조리원 운영	103,847	103,847	111,824	7,977	7.7

2026년도 예산안에는 상용임금 916억 8,100만원, 복리후생비 14억 9,400만원 및 고용부담금 186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방부는 채용 부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육군 민간조리원의 정원을 감원(△40명)하고, 상대적으로 채용률이 높은 국직 부대의 신규 소요(+5명)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상용임금(110-03): 916억 8,100만원
- 기본급: (기존) 2,986명×2,133,171원×12개월 + (신규) 5명×2,133,171원×6개월= 765억원
- 정액급식비: (기존) 2,986명×140,000원×12개월 + (신규) 5명×140,000원×6개월= 50억 2,100만원
- 명절휴가비: (기존) 2,986명×2,133,171원×0.6×2회 + (신규) 5명×2,133,171원×0.6×1회= 76억 5,000만원
- 교통보조비: (기존) 2,986명×70,000원×12개월 + (신규) 5명×70,000원×6개월= 25억 1,000만원

○ 복리후생비(210-12): 14억 9,400만원
- (기존) 2,986명×500,000원×1회 + (신규) 5명×500,000원×0.5회= 14억 9,400만원

○ 고용부담금(320-09): 186억 4,900만원
- 4대 보험료 105억 1,600만원, 퇴직적립금 81억 3,300만원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정부의 공무직 근로자 공통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가 인상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기본급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가 인상되었고 명절휴가비의

8) 일반회계-민간조리원 운영(1231-305)(자원관리실)

경우 연 110만원(정액 지급)에서 연 256만원(기본급의 120%, 정률 지급)으로 133%가 인상되었다고 설명함.

[2025년 및 2026년 민간조리원 임금 비교표]

(단위: 원)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가율((B-A)/A)
매월 지급	기본급	2,045,877	2,133,171	4%
	정액급식비	140,000	140,000	-
	교통보조비	70,000	70,000	-
연 2회 지급	명절휴가비	550,000	1,279,903	133%
월 급여 계		234.8만원	255.6만원	9%

주) “월 급여 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월 단위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것임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적정한 민간조리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간조리원 운영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음의 표는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5년 7월말 현재 예산현액 1,038억 4,700만원 중 483억 7,900만원만 집행(집행률 46.6%)되었음. 이러한 집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은 2025년에 불용액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액의 규모는 2021년 35억 9,500만원, 2022년 102억 7,600만원, 2023년 165억 7,000만원, 2024년 139억 3,900만원에 달함.

[최근 5년간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 예·결산 현황(2025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62,881	-	-	62,881	59,242	94.2	44	3,595
2022	98,087	44	△14,233	83,897	73,621	87.8	-	10,276
2023	105,437	-	△600	104,837	88,267	84.2	-	16,570
2024	110,028	-	-	110,028	96,089	87.3	-	13,939
2025	103,847	-	-	103,847	48,379	46.6	-	-

자료: 국방부

이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간조리원의 결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다음의 표는 민간조리원 결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5년 7월말 현재 민간조리원 결원은 177명이고, 결원율은 5.8%임.

이러한 결원의 발생은 2025년의 정원 축소 조정(3,305명→3,026명, 279명 축소)에도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원 조정 여부 및 예산편성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민간조리원 정원, 현원 및 결원 현황(2025년 7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정원(A)	현원(B)	결원(A-B)	운영률(B/A)	결원율((A-B)/A)	중도퇴사자
2021년	2,278	2,014	264	88.4	11.6	116
2022년	3,188	2,494	694	78.2	21.8	169
2023년	3,305	2,713	592	82.1	17.9	83
2024년	3,305	2,778	527	84.1	15.9	348
2025년	3,026	2,849	177	94.2	5.8	124
2026년(안)	2,991	-	-	-	-	-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채용 부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육군 민간조리원의 정원을 감원(△40명)하고, 상대적으로 채용률이 높은 국직 부대의 신규 소요(+5명)를 반영하는 등 민간조리원 정원을 추가로 조정했다는 입장임.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2026년 정원(2,991명)은 2025년 7월말 현원(2,849명)보다 많은 수치이므로 추가로 축소 조정이 검토될 여지가 있음. 결원으로 인한 채용공고·선발 및 실제 근무까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고 통상 3개월의 수습 기간까지 감안하는 경우,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일부 부대에서는 민간조리원의 신규채용이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9)]

이와 관련하여 민간조리원의 결원은 2025년 7월말 현재 177명이며 2025년 중 중도퇴사한 인원의 수는 7월말까지 124명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결원 규모와 중도퇴사 추이를 감안하면 국방부는 적정한 민간조리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민간조리원 운영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민간조리원(공무직근로자)은 각 군별·부대별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충원을 위한 행정 소요가 발생함.

3. 국방ICT혁신기술(R&D) 사업: 과제별 지원단가의 적정성 점검 필요

가. 개 요

‘국방ICT혁신기술(R&D)’ 사업은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군의 다양한 업무환경에 필요한 기술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개발·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억 5,100만원(565.1%) 증액된 6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국방ICT혁신기술(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방ICT혁신기술 (R&D)	1,000	1,000	6,651	5,651	565.1

2026년도 예산안에는 자율지능 인공지능 기술개발 분야의 1개 계속과제 및 2개 신규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44억 6,100만원,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기술 개발 분야의 2개 신규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21억 9,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국방ICT혁신기술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자율지능 인공지능 기술개발: 44억 6,100만원
  · 계속과제: 22억 5,000만원 × 12개월/12개월 × 1건 = 22억 5,000만원
  · 신규과제: 14억 7,400만원 × 9개월/12개월 × 2건 = 22억 1,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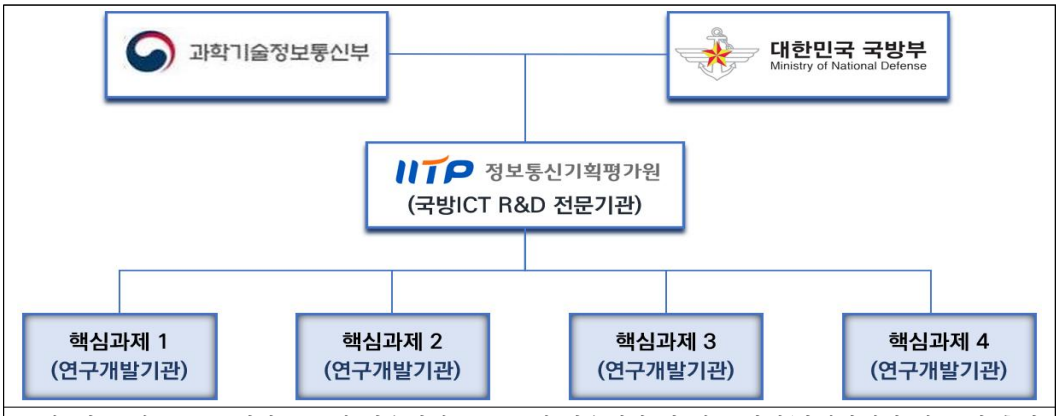
○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기술 개발: 21억 9,000만원
  · 신규과제: **14억 6,000만원** × 9개월/12개월 × 2건 = 21억 9,000만원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R&D) 과제관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예산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11)]

10) 일반회계-국방ICT혁신기술(R&D)(2131-310)(기획조정실)

[국방ICT혁신기술 사업 추진체계]



특징: 각 군의 소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기획, 소요군이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정(단위과제별 실증 및 총괄과제 통합실증)에 참여하여 결과물(성과물)의 실효성을 확인

자료: 국방부

이 사업은 4개 신규과제[12]와 관련하여 상반기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선정 및 연구개발 수행협약 체결을 전제로 과제별 9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과제형 R&D 편성 기준]

상반기 협약과제	하반기 협약과제
9개월분 단, 단년도 과제는 12개월분 반영	6개월분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p. 35.

나. 검토의견

국방ICT혁신기술(R&D) 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상 과제별 지원 단가보다 예산편성 단가가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예산편성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국방부는 2026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인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기술 개발 분야 2개 신규과제의 과제별 지원 단가를 14억 6,000만원으로 산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사업추진 방향 설정 등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사업 전담 관리기능을 수행함.

12) “자율지능 인공지능 기술개발 분야”의 2개 신규과제 및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기술 개발 분야”의 2개 신규과제 등 총 4개 신규과제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기술 분야 예산안 세부내역]

○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기술 개발: 21억 9,000만원 ・신규과제: **14억 6,000만원** × **9개월**/12개월 × 2건 = 21억 9,000만원

자료: 국방부

그런데 이러한 예산편성 단가(14억 6,000만원)는 사업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과제별 지원 단가보다 높은 수치임. 즉, 사업기획보고서에서는 국방부 지원과제 2건에 대한 지원 단가를 각각 9억 3,600만원 및 12억 5,4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과제별 지원 단가 평균은 10억 9,500만원임.

[2026년도 국방부 신규과제 관련 연도별 예산 산출내역(사업기획보고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안)	2,190	▸(신규) 1개 과제 × 936백만원(단가) × 12개월/12개월 = 936백만원 1개 과제 × 1,254백만원(단가) × 12개월/12개월 = 1,254백만원
2027년 요구(안)	2,090	▸(계속) 1개 과제 × 893백만원(단가) × 12개월/12개월 = 893백만원 1개 과제 × 1,197백만원(단가) × 12개월/12개월 = 1,197백만원
2028년 요구(안)	2,090	▸(계속) 1개 과제 × 893백만원(단가) × 12개월/12개월 = 893백만원 1개 과제 × 1,197백만원(단가) × 12개월/12개월 = 1,197백만원
2029년 요구(안)	2,090	▸(계속) 1개 과제 × 893백만원(단가) × 12개월/12개월 = 893백만원 1개 과제 × 1,197백만원(단가) × 12개월/12개월 = 1,197백만원
2030년 요구(안)	2,090	▸(종료) 1개 과제 × 893백만원(단가) × 12개월/12개월 = 893백만원 1개 과제 × 1,197백만원(단가) × 12개월/12개월 = 1,197백만원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기술 분야 투자계획(사업기획보고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총액
과기정통부	3,610	3,610	3,610	3,610	3,610	18,050
국방부	2,190	2,090	2,090	2,090	2,090	10,550
합계	5,800	5,700	5,700	5,700	5,700	28,60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2025년 9월 3일 현재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기술 분야의 2개 신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이 완료되지 않아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가 확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이 사업은 과제기획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 단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향후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될 지원 단가 역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국방부가 사업기획보고서의 과제별 지원 단가 평균(10억 9,500만원)보다 3억원 이상 높은 14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 단가로 산정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것임.[13)]

따라서 이 사업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전기획보고서상 과제별 지원 단가보다 예산편성 단가가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예산편성 단가 및 예산 조정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3) 국방부는 사업기획보고서의 과제별 지원 단가 평균액보다 높은 예산편성 단가를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함.

4.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집행가능한 수준으로의 예산 감액 조정 검토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환자 후송 및 방역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급차 등 의무기동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7,100만원(10.2%) 증액된 19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의무장비획득	40,196	40,196	38,913	△1,283	△3.2
의무기동장비 획득	17,371	17,371	19,142	1,771	10.2

2026년도 예산안에는 상용구급차 186대, 환자후송버스 5대 및 방역차 16대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자산취득비(430-01)	= 191억 4,200만원
- 상용구급차: 186대 × 8,900만원	= 166억 5,900만원
- 환자후송버스: 5대 × **2억 680만원**	= 10억 3,400만원
- 방역차: 16대 × 9,100만원	= 14억 4,900만원

자료: 국방부

[2026년도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장비별 취득 사유]

구분	노후교체	편제 보충(신규)	총 대수
상용구급차	52	135	186
환자후송버스	5	-	5
방역차 (다목적방제방역차량)	16	-	16

자료: 국방부

14) 일반회계-의무장비획득(2231-302)(인사복지실)

나. 검토의견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은 2026년도 중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예산 감액 조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다음의 표는 2025년도 7월말 기준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은 2025년도 예산현액 174억 4,700만원 중 157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3%)되었음.

[2025년도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집행실적(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7월말							2026 예산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의무기동장비획득	17,371	17,371	-	76	17,447	15,759	90.3%	19,142
- 자산취득비(430-01)	17,371	17,371	-	76	17,447	15,759	90.3%	19,142

자료: 국방부

2025년 7월말 기준 미집행액(16억 8,800만원) 중 4억 400만원은 환자후송버스 조달취소에 따라 불용처리가 필요한 금액으로 파악됨. 조달취소 사유에 대하여 국방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형버스 출고 대기 물량이 많아 납품기한을 18개월로 설정하여 조달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납품기한을 24개월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조달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을 유보하였다는 것임.

즉, 국방부는 납품기한을 18개월로 설정할 당시에는 일부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2026년도)로 사고 이월하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납품기한을 24개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산의 재이월(2027년도)이 발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조달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함.[15] 국방부는 조달취소 물량(2대)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에 물량을 추가로 반영(총 5대 = 당초 물량 3대 + 추가물량 2대)하였다고 설명함.

---

1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025년도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 편성단가 및 물량(환자후송버스)]

(단위: 천원)

부대	장비명	편성액 (단가)	편성대수 (물량)	총액	비고
의무사	환자후송버스(41인승)	201,951	2	403,902	-조달청 조달 **-조달 취소**
	환자후송버스(38인승)	235,380	1	235,380	-3자 단가 -조달 추진 중

자료: 국방부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환자후송버스 납품 소요기간(24개월)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소요예산액 전액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 즉, 이러한 국방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은 조달취소가 발생하였던 2025년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은 2026년도 중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예산 조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5.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면서 민간산업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군수품을 첨단 AI 기술을 보유한 민간 업체를 통해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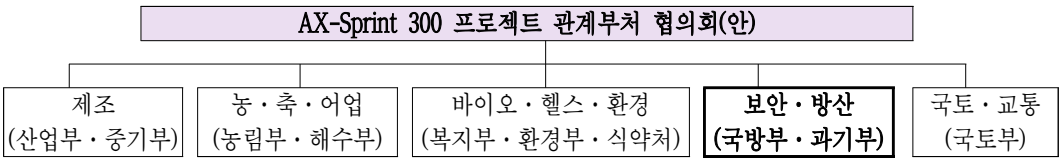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	60,000	60,000	순증

이 사업은 AI 융합산업 중 단기간 내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 프로젝트” [17] 관련 국방 분야 지원 사업임.

[AX-Sprint(전력질주) 프로젝트 추진체계]



자료: 국방부

16) 일반회계-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2341-500)(전력정책국)

17) 사업목적・내용
- (추진배경)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등 원천기술 개발만큼 인공지능전환(AX)과 적용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
  * AGI: 인간처럼 다양한 지적 작업을 이해하고 학습・수행 가능한 가상의 인공지능
- (사업목적) ① AI 관련 제품・서비스 신시장을 빠르게 창출, ② 기존 제조・서비스 기업들의 AX를 가속화, ③ 새로운 AI 전문기업 육성, ④ AI 관련 국민 체감도와 인식 제고
- (사업내용)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Type1) 1년 內 즉시 개발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
  ・ (Type2)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2년 지원)
- (참여) 산업・복지・농림・해수・환경・국토・중기・과기・국방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

[AX-Sprint(전력질주) 프로젝트 부처별 투자계획]

부처	물량	총 사업비(억원)	국비(억원)	부처	물량	총 사업비(억원)	국비(억원)
산업부	65개	2,625	2,100	해수부	25개	937.5	750
복지부	31개	975	780	환경부	15개	750	600
농림부	30개	1,125	900	국토부	29개	1,450	1,160
중기부	45개	1,687.5	1,350	과기부	20개	1,000	800
국방부	**30개**	**833.33**	**750**	식약처	10개	187.5	150

주) 10개 부처의 총 사업비 합계는 1조 1,570억 8,300만원이고, 이 중 국비 지원은 9,340억원임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과제관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예산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2년)이고, 총사업비가 833억 3,300만원(국고 750억원, 민간 83억 3,300만원)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단년도 지원과제(Type 1, 20개) 300억원, 다년도 지원과제(Type 2, 10개) 30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음.[18)]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Type 1 (1년 지원/2026년) : 15억원 × 20개 = 300억원 ○ Type 2 (2년 지원/2026년~2027년) : **30억원** × 10개 = 300억원

자료: 국방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지원 유형]

구분	Type-Ⅰ	Type-Ⅱ
산출 내역	• (1년차) 20개 과제 × 15억원 = 300억원	• (1년차) 10개 과제 × **30억원** = 300억원 • (2년차) 10개 과제 × **15억원** = 150억원
지원 기간	1년	2년
상세내용	• 단기간에 개발하여 즉각적인 현장 개선 효과를 발휘 가능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트랙	• 대규모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 등이 필요한 과제로, 2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군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트랙
	• 기술성숙도가 높아 즉시 군(軍)에 적용이 가능하거나, 군 특화 추가학습 등 R&D가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AI 제품·서비스	• 대규모의 군 특화 학습에 따라 많은 학습 시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R&D가 소요되지만 파급력도 큰 AI 제품·서비스

자료: 국방부

18) 국방부는 단기간 개발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개선 개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단년도 지원과제(Type 1)와 대규모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다년도 지원과제(Type 2)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에 대해 국방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 중복 지원 방지 방안, 지원대상 선정 기준, 사업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민간의 선진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우위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국방부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군 수요조사를 2025년 9월 중 완료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별 필요 기술을 구체화한 후(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12월 사업설명회의 개최 및 사업공고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함.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향후 추진 계획(2025년 9월)]

일정	향후 추진 계획
2025. 9월	소요 접수 및 종합
2025. 10월~ 11월	기술기획* (주관 / 참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국방부・합참・각 군・한국국방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 사업소요 과제에 대한 필요 기술 식별 및 고도화
2025. 11월	사업설명서 작성
2025. 12월	국방 AI 피치데이(Pitch Day) 개최 * 피치데이(Pitch Day): 기술 협력을 위해 사업 모델을 투자자나 파트너에게 발표하는 행사
2025. 12월	예산 확정 후 사업공고
2026. 1월~2월	업체제안서 접수 및 평가
2026. 3월	사업자 선정(30개 과제), 사업 착수

자료: 국방부

이 사업은 과제별 기술기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추후 기술기획 단계에서 과제별 지원 단가가 조정될 여지가 있음. 소요비용 및 지원필요액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술이 확정되어야 산출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방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구체적인 사업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일부 유형의 지원 단가가 다른 부처의 유사한 지원사업의 지원 단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의 Type-Ⅱ 과제별 지원 단가는 1년차 30억원, 2년차 15억원임.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정계획에 따르더라도 과제선정에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1년차 사업기간은 10개월인데, 그럼에도 국방부는 1년차 지원 단가를 2년차 지원 단가의 2배로 산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Type-Ⅱ 지원과제의 경우 대규모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과제로서 데이터 가공비용(과제당 10억원)을 1년차에만 편성하였고, 2년차에 계획된 실증기간을 감안하여 AI의 학습·개발 비용을 1년차에 집중 편성하였다고 함.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과제별 지원 단가(Type-II)]

구분	1년차	2년차	합계
상용 AI 제품·서비스의 군 특화 추가 학습·개발 비용	20억원	10억원	30억원
데이터 가공비용	10억원	-	10억원
군 실증 비용	-	5억원	5억원
합계	30억원	15억원	45억원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타 부처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지원 단가는 매년 20억원 내외로 산정되었으며, 1년차 지원 단가와 2년차 지원 단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음.

또한,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Type-Ⅱ 지원과제의 경우에도 국방부 지원과제와 유사하게 대규모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과제이며, 데이터 가공 및 실증이 필요한 과제로 보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부처별 과제별 지원 단가(Type-II, 1년차)]

구분	국방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1년차 지원 단가	30억원	17.5억원	20억원	20억원	15억원	20억원
2년차 지원 단가	15억원	17.5억원	20억원	20억원	15억원	20억원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방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Type-Ⅱ의 1년차 지원 단가가 타 부처 유사사업의 1년차 지원 단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6.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은 국방 AI 전문인력이 민(산・학)・군 협력 AI 기술 연구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95억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방AI인재양성	-	-	40,612	40,612	순증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	-	19,532	19,532	순증

국방부는 이 사업 예산을 연구개발(R&D) 과제관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2026년도 예산안은 군・산・학 협력센터 5곳 구축 및 운영 예산 150억원, GPU[20)] 서버 구매 40억원 및 기획평가관리비 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195억 3,200만원
- AI 기술개발 협력 연구체계 구축・운영: 5개소 × 30억원 = 150억원
- GPU 서버 등[21)] 구매: 40억원
  ・ 국방 AX 거점 당 서버 1대(GPU 8장) 및 부수장비 설치: 5개소 × 8억원 = 40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사업비 190억원 × 2.8% = 5억 3,200만원

자료: 국방부

19) 일반회계-국방AI인재양성(2432-309)(전력정책국)

20) GPU(Graphics Processing Unit)는 게임, 영상편집 등에 필요한 그래픽스 처리나 기계 학습의 행렬 연산 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를 의미함.

21) 연구개발목적으로 폐쇄망으로 구성된 데이터 스토리지와 GPU 서버

이 사업은 소요군·기관에서 필요한 AI 기술 소요를 제안하면 민·군이 연계하여 이를 과제화하고 군 AI 전문인력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여 실무능력을 습득한다는 점에서 기존 AI 교육·연구센터 사업과 차별화됨.

[(기존)AI 교육·연구센터와 (신설)군·산·학 협력센터의 비교]

구분	AI 교육·연구센터	군·산·학 협력센터
목표	군 장병이 AI·SW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대 환경 개선 및 교육·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국방 AI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실증교육 강화를 통한 AI 인재육성
장소	부대 내부에 설치 (연간 5~8개소 / 2026년까지 총 30개소)	부대 외부에 설치 (총 5개소 / 국방 AX 거점과 인접)
교육 대상	일반 군 장병 및 AI 운용부대 장병	AI 소양·전문교육을 이수한 고수준의 군 AI 전문인력
교육 효과	AI 기본 지식·이론 함양	민·군 협력과제로 실무능력 겸비
추진 내용	▹각 군 주요지역 부대 내 장병을 위한 AI 교육 및 연구환경 구축 ▹부대 내 장병 대상 AI 교육센터 활용 지원 ▹부대 인근 대학과 매칭하여 연 1~2회 기초 소양교육 추진 ▹부대 내 AI 동아리 구성 및 대학 내 멘토링으로 전문교육 추진 ▹차년도부터 AI 동아리 중심으로 대학과 협력하여 군 소요 소규모 AI 프로젝트 추진예정	▹군·산·학 협력센터를 선정, 보유한 연구역량과 산·학 협력역량을 기반으로 공동 AI 기술연구 소요를 과제화 ▹과제화된 연구개발 과제에 군 AI 전문인력을 직접 참여시켜 국방 도메인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동시에, 참여 인력이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첨단 AI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실무능력까지 보유한 AI 전문인재로 발전 ▹군·산·학협력센터가 기획한 민·군 협력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장소인 국방 AX 거점에 인프라 설치
협력 체계	▹주관기관(센터 구축) ▹대학과 운용부대 매칭(교육 추진)	▹대학(주관기관), 산(공동연구개발 기관) 및 군 협력체계 구축
규모	- 2026년까지 30개소 구축 및 운영	- 5개 AI 특화 대학(공모) 선정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민·군 협력 공동개발 지원 장소인 국방 AX 거점[22)23)]을 총 5개소 설치하여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산·학 협력센터를 이러한 국방 AX 거점 인근(동일 건물

22) 국방 AX 거점: 과제 수행에 필요한 국방 데이터를 군이 보유(관리)하며 민간에 제공하는 장소로, 민·군이 공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

23) 국방부는 국방 AX 거점의 경우 민간 AI 대학과 기업의 접근성, 지자체의 지원 여부, AI 산·학 육성지원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차원에서 기존 운영 중인 3개소, 신설 2개소로 총 5개소의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 기존: 서울AI허브(공군), 판교스타트업캠퍼스(육군), 대전카이스트문지캠퍼스(육군)
* 신설: 미정(해군), 미정(국방부·합참)

또는 협업이 가능한 근거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국방부는 공모를 통해 AI 기술에 특화된 국방 AI 특화 대학 5개를 군·산·학 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함.

나. 검토의견

첫째, 국방부는 실무형 AI 인력육성 및 민간의 AI 연구역량을 실증단계의 응용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군·산·학 협력센터-국방 AX 거점 1개소당 총 38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세부내역으로는 군·산·학 협력센터 사무공간 임차료 2.5억원, 사무공간 구축비 1.5억원, 재료비 1억원, 과제기획·사업비 25억원 및 국방데이터 서버 구축비(국방 AX 거점) 8억원 등임.

[개소당 지원 단가 산출내역]

항목	항목	비고	산출내역
군·산·학 협력센터	사무공간 임차료	2.5억원	국방 AX 거점 인근 사무공간 임차
	사무공간 구축비	1.5억원	사무용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
	재료비	1억원	시제품 제작비용
	과제기획 및 사업비	25억원	과제기획 및 인건비 등
	소 계	30억원	-
국방 AX 거점	국방데이터 저장 및 활용 인프라	8억원	엔비디아 GPU 8장(서버1대) 스토리지, PC 등
합 계		38억원	-

자료: 국방부

그런데 국방부는 국회에 2026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2025년 9월 3일 현재 국방 AX 거점 5개소 중 2개소를 확정하지 못하였음. 국방 AX 거점은 AI 서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동일 건물 또는 협업이 가능한 근거리)에 군·산·학 협력센터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전절차의 지연으로 군·산·학 협력센터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2025년 9월말 현재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음. 국방부는 현재의 사업추진 경과를 감안하면

군・산・학 협력센터의 선정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2026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과제 기획 및 실제 AI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소요군・기관에서 필요한 AI 기술 소요가 파악되어야 하지만, 국방부는 2025년 9월말 현재 AI 기술 소요 파악을 위한 소요군・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사업은 기본 지식・이론 함양 위주의 AI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민간의 과제 기획 및 수행에 군 AI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무형 AI 인력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 사업은 협업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국방 AX 거점에 방문하여 국방데이터를 확인・활용할 수 있어 민간의 AI 연구역량을 실증단계의 응용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럼에도 국방 AX 거점의 확정, 군・산・학 협력센터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의 진행 및 소요군・기관 대상 AI 기술 소요 수요조사 등의 사전준비가 미흡하거나 지연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면, 이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취지가 충분하게 달성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실무형 AI 인력육성 및 민간의 AI 연구역량을 실증단계의 응용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방부는 국방 AX 거점에 GPU서버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다수의 GPU서버 공급업체들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최초 사업기획시 GPU서버를 국방통합데이터센터(Defense Integrated Data Center: DIDC)[24]에 통합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주요 사용자가 민간(산・학)인 것을 고려하여 보안 위험 완화 및 민간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GPU서버를 5개 거점에 개별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수정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5곳의 국방 AX 거점에 GPU서버 1대씩을 각각 구축할 계획으로, GPU(H100) 8장으로 구성된 서버를 구축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규모 GPU확보사업 및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의 추진, 세계적인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GPU서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24)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대한민국 국방부를 비롯하여 육군・해군・공군 등 주요 군의 1,100여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 정보화의 핵심 데이터 센터임.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는 각 군 전산소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 체계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지원함.

[인프라 구축(GPU서버 구축) 관련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당초 계획	수정 계획
산출 내역	· 서버 4대(GPU 32장): 서버 4식 × 8억원 = 32억원 · 서버 부수장비: 서버 4식 × 2억원 = 8억원	· 국방 AX 거점 당 서버 1대(서버당 GPU 8장) 및 부수장비 설치: 5개소 × 8억원 = 40억원
2026년도 예산안	40억원	40억원

주) 당초 계획의 서버 부수장비는 DIDC 내부에 GPU서버를 설치하기 위해 보안 · 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수장비 및 소프트웨어(관제SW · 보안SW · 클라우드SW 및 라이센스를 포함, GPU 서버 1대당 2억 상당)를 의미함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방부는 다수의 공급업체들과 미리 협력하여 국방 AX 거점에 GPU서버 납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급망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성능(연산능력)을 지닌 다양한 후속·개량 모델(H200, B200 등)의 납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사업: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 예산규모로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사업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억 9,100만원(51.1%) 증액된 129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2026년도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과학화훈련	87,834	87,834	84,989	△2,845	△3.2
첨단과학훈련장비	52,736	52,736	57,872	5,136	9.7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8,593	8,593	12,984	4,391	51.1

국방부는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시뮬레이터별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업체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의 이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26)]

2026년도 예산안에는 영상모의사격장비 구축 등 4개 신규계약 관련 예산이 12억 6,700만원 편성되었고, 유도무기전술훈련체계 성능개선 등 8개 계속계약 관련 예산이 117억 1,700만원 편성되었음.

---

25) 일반회계-과학화훈련(2434-301)(국방정책실)

26) 장기계속계약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사업의 이행에 수년의 기간이 필요할 때 한 번의 계약으로 전체 사업이 수행되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장기계속계약 사업은 2025년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2026년도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2026년도에 불용될 예정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도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미리 조정될 필요가 있음.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6 예산안	비고
신규	공군	영상모의사격장비 구축	530	-기간 2026~2027 - 총사업비 600
		1비 TA-50 Block2 비행훈련장비 이전설치	503	-
		미사일방어사 방공포병 모의훈련체계 구축	10	- 기간 2026~2028 - 총사업비 9,968
	국직	가상 드론 시뮬레이터	224	- 기간 2026~2027 - 총사업비 1,618
	신규 합계		1,267	-
계속	육군	운전교육용 시뮬레이터(군수교)	1,100	-
	해군	**유도무기전술훈련체계 성능개선(8전단)**	**1,950**	- 기간 2025~2027 - 총사업비 **6,170**
		해상 화생방훈련장 과학화 전술훈련체계(8전단)	1,283	- 기간 2025~2026 - 총사업비 1,683
		구축함 5인치 모의장비형 R-CBT 교체(교육사)	**1,219**	- 기간 2025~2026 - 총사업비 **1,547**
		구축함 DAGAIE(대함유도탄 기만체계) 모의장비형 R-CBT 교체(교육사)	**1,024**	- 기간 2025~2026 - 총사업비 **1,314**
		손상통제훈련 이동식 모의화재 훈련장비(8전단)	254	- 기간 2025~2027 - 총사업비 1,003(4식)
	공군	T-50계열 과학화 정비훈련장비	4,275	- 기간 2024~2026 - 총사업비 7,699
		공대지사격장 장비 및 기반시설 점검(여비)	12	
	해병	비궁 시뮬레이터	600	- 기간 2025~2026 - 총사업비 750
	계속 합계		11,717	-
총 합계			12,984	-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사업은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규모로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이 사업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된 계속계약은 8개로, 이 중 6개의 계약은 2025년을 계약 첫해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다음의 표는 2025년 9월말 현재 계약체결이 완료된 3개 계약 관련 낙찰차액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 사업은 유도무기전술훈련체계 성능개선에서 3억 2,000만원,

구축함 5인치 모의장비형 R-CBT 교체에서 3억 9,400만원, 구축함 DAGAIE(대함유도탄 기만체계) 모의장비형 R-CBT 교체에서 2억 1,400만원 등 총 9억 2,8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사업 낙찰차액 발생현황(2025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총 사업비	계약액 (낙찰차액)
유도무기전술훈련체계 성능개선 (2025~2027)	700	1,950	3,520	6,170	5,850 (320)
구축함 5인치 모의장비형 R-CBT 교체 (2025~2026)	328	1,219	-	1,547	1,153 (394)
구축함 DAGAIE(대함유도탄 기만체계) 모의장비형 R-CBT 교체(2025~2026)	290	1,024	-	1,314	1,100 (214)
합 계	1,318	4,193	3,520	9,031	8,103 **(928)**

자료: 국방부

그런데 이들 3개 계약은 실제 계약체결에 따른 총사업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6년도 예산안에도 낙찰차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2026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구축함 5인치 모의장비형 R-CBT 교체 등의 2개 계약은 발생한 낙찰차액을 2026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조정하지 않는다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사업은 계약체결에 따라 발생한 낙찰차액이 2026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규모로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8. 병영 문화프로그램 사업(신규): 유사사업과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병영 문화프로그램’** 사업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연・공연・세미나 등을 통해 신세대 장병들의 소통・존중・공감 문화를 확산시키고 심리적 유대감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억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7)]

[2026년도 병영 문화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정훈문화활동	47,938	47,938	55,153	7,215	15.1
병영 문화프로그램	-	-	6,032	6,032	순증

2026년도 예산안에는 해군 78회 및 공군 88회의 병영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60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병영 문화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병영 문화프로그램: 60억 3,200만원
- (요구) 소통・존중・공감의 선진 병영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프로그램(강연・팀빌딩・세미나 등) 운영을 위한 예산 신규 반영 요구
- (산출) 〈해군〉 78회 × 3,200만원 / 〈공군〉 88회 × 4,000만원

자료: 국방부

해군의 표준프로그램(안)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심리검사, 조직문화 관련 전문가 특강, 문화예술 체험교육, 팀 과제해결 프로그램, 토론활동 및 문화공연 관람 등으로 구성됨. 국방부는 2026년도에 육상 9개 부대, 함정 69개 부대 등 총 78개의 해군부대를 대상으로 각 연 1회 병영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27) 일반회계-정훈문화활동(2435-301)(국방정책실)

28) 육군과 해병대는 또 다른 내역사업인 ‘문화활동지원’ 사업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고 있음.

[해군 표준프로그램 구성(안)]

시 간	1일차	2일차
07:00 ~ 07:50		조 식
08:00 ~ 08:50		행정 시간
09:00 ~ 09:50	오리엔테이션	⑤ 팀빌딩 프로그램
10:00 ~ 10:50	① 자기인지 프로그램	
11:00 ~ 11:50	(심리검사 및 해석)	퇴소식 / 교육 설문조사
12:00 ~ 12:50	중 식	중 식
13:00 ~ 13:50	② 조직문화 전문가 특강	⑥ 문화개선 관련 퍼실리테이션
14:00 ~ 14:50		
15:00 ~ 15:50	행정 시간	이 동
16:00 ~ 16:50	③ 문화예술 기반 체험교육 Ⅰ	⑦ 문화공연 체험
17:00 ~ 17:50	(소통·협업 훈련)	
18:00 ~ 18:50	석식	
19:00 ~ 19:50	④ 문화예술 기반 체험교육 Ⅱ	
20:00 ~ 20:50	(스트레스 대응력 강화)	

자료: 국방부

공군의 표준프로그램(안)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활동, 전문가 강연, 문화공연 관람 및 체험교육 등으로 구성됨. 국방부는 사령부·단·독립전대 부대의 경우 반기 1회, 격오지 부대의 경우 연 1회 등 총 88회의 병영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공군 표준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내용	소요시간	비고
1일차	병영문화 혁신 팀빌딩 프로그램 * 조직문화 개선 퍼실리테이션	4시간	MC, 전문강사
	'도전/전문성' 가치확산 세미나(강연 위주) * 전문 MC 진행 * 도전/전문성 관련 분야의 특별 강사 강연 * 장병 참여 프로그램 진행	2시간	MC, 전문강사
	'헌신/팀워크' 가치확산 토크 콘서트(공연 위주) * 전문 MC 진행 *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단체 * 유명 연예인(가수, 개그맨, 방송인 등), 인플루언서 등	2시간	MC, 공연단체, 유명 연예인
2일차	핵심가치 내재화 체험부스 운영 * 도전정신 극대화 프로그램 (한계 돌파 챌린지) * 헌신 실천 프로그램 (전우 구조 시뮬레이션) *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공군 퀴즈 챌린지) * 팀워크 증진 프로그램 (협동작전 탈출 게임) * 핵심가치 종합 프로그램 (핵심가치 스탬프 투어)	종일	부스 운영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병영 문화프로그램 사업은 사업목적 및 프로그램 구성이 유사한 기존의 문화활동지원 사업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2026년도 신규사업인 병영 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전문가의 강연, 문화예술 체험교육 및 문화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장병에게 제공할 계획이나, 이는 기존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문화활동지원’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문화활동지원 사업은 민간 예술단체의 부대 방문 공연 및 문화 체험교육과 같은 장병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문화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문화활동지원: (2025) 65억 8,300만원 → (2026안) 65억 1,100만원 -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25억 600만원 · <전군> 120부대 x 13.8백만원 = 16억 5,600만원 · <(육군) GOP 및 해강안 소초> 180부대 x 3.39백만원 = 6억 1,000만원 · <(해병대) 서북도서> 60회 x 4백만원 = 2억 4,000만원 - 병영문화예술체험교육: 18억 9,800만원 · <대면> 107부대 x 10백만원 = 10억 7,000만원 · <온라인> 1식 x 823백만원 = 8억 2,300만원 - 전적기념물 및 군 문화재 관리: 2억 8,000만원 · 90개소 x 3.1백만원 = 2억 8,000만원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기존 문화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업체가 부대를 방문하여 주로 1회성으로 체험교육・공연을 지원하는 것이나,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병영 문화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영내 또는 영외에서 2~3일 간 연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운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신규사업인 병영 문화프로그램 사업과 기존의 문화활동지원 사업은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사업목적이 유사함. 이들 두 사업은 프로그램 구성의 측면에서도 전문가의 강연, 문화예술 체험교육 및 문화공연 관람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사업목적 및 프로그램 구성이 유사한 병영 문화프로그램 사업과 기존의 문화활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 예산 단가의 감액 조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은 드론 운용자의 장비 숙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저가형 교육용 드론을 구매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6억 500만원(3,510.4%) 증액된 19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29)]

[2026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공통교보재지원	28,426	28,426	50,847	22,421	84.8
교육장비	5,906	5,906	23,881	17,975	24.7
교육용 상용드론	530	530	19,135	18,605	3,510.4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교육용 상용드론 1만 1,265대(육군 1만 1,184대, 해병대 81대) 도입을 위한 예산 19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 191억 3,500만원 - 육군 11,184대, 해병대 81대 등 총 11,265대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무게 2kg 미만의 비행시간 20분 이상, 비행거리 500m 이상 및 비행고도 150m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교육용 상용드론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국방부는 비행 컨트롤러(Flight Controller)의 경우 국산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임.[30)]

---

29) 일반회계-공통교보재지원(2438-303)(국방정책실)

30) 비행 컨트롤러는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며, 드론의 자세 제어, 항법, 임무 수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함.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드론에 어느 정도 자율 비행 기능을 제공하여 직접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 특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교육용 상용드론 제원]

구 분	제 원(諸 元)	세부내용
무게(kg)	2 미만	배터리 포함
Flight Controller	국산	-
비행시간(분)	20 이상	-
비행거리(m)	500 이상	-
비행고도(m)	150 이상	-
주파수(GHz)	2.4	필요시 5.7 ~ 5.8
온도조건(℃)	-10 ~ +40	-
풍속(m/s)	최소 8m/s 이상 운용가능	-
조종 수단	· 4채널 이상 · 영상 수신 디스플레이 탑재	-
카메라	Full HD 이상	영상 미저장
전원장치	배터리 2개 이상, 충전기 1대	1대 기준

주)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는 자동 수직 이·착륙 기능, 비정상 상황에서 지정 위치 이동 및 자동 복귀 기능, 배터리 잔량 감시 기능, 충돌 방지 기능 및 GPS 수신 확인 기능 등의 성능을 탑재한 드론을 도입할 계획임. 또한, 국방부는 납품업체에 표준데이터 규격의 무선 통신 방식의 적용을 요구할 예정임.

[교육용 상용드론 요구 성능]

구분	내용
요구 성능	- 통신모듈은 비행 기체와 GCS/조종기 간 표준데이터 규격의 무선 통신 방식 적용, 오류 및 중단 없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 수직 이·착륙 및 비행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긴급 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수동제어 전환 - 비정상 상황(통신 단절 시 등) 시 지정 위치 이동 및 자동 복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배터리 잔량 감시 및 지정 잔량 이하 도달 시 자동 복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비행계획 수립 시 비행경로상 고정 장애물 발생 시 충돌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비행 안전 위한 비행등 2개 이상 장착되어야 한다. - GPS 수신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육용 드론 납품 이전에 시제품 3개를 수요기관에 제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기준 제품으로 선정하며, 확인 간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는 보안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인증이 적용된 드론을 납품받을 계획이며, 전체 부품 리스트를 납품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교육용 상용드론 보안요구사항]

구분	내용
보안 요구 사항	- 계약상대자는 교육용 상용드론 납품 시 CC 인증(국제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 또는 TTA 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이 적용된 드론을 납품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전체 부품 리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수요자에 의해 보안에 취약한 장비 및 부품 확인 결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타	-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Flight Controller는 국산)에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 사양에 따르되 수요기관(육본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은 집행예산 절감을 위하여 예산단가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의 표는 2025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공모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방부는 315대의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을 위해 총액 5억 3,000만원(1대당 약 168만원)의 공모를 추진하였음.

[2025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공모 현황(공고내용)]

품명	재고번호	납지	수량	단가	공모금액 (예산금액)
교육용 상용드론	1550-37X047317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315대	-	530,145,000원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며, 가격 기준 낙찰 하한율을 88.0%로 설정하였음.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기술인증 / 영세기업 / 고용창출 / 정책지원	+3～-2
	계약이행 성실도	납품지연 /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계			10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은 납품업체 선정 시 투찰가격이 사업금액(예산액)의 88% 미만인 업체를 배제하는 제도가 적용되어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다소 제한되는 사업임. 즉, 이 사업은 예산편성 단가가 높게 설정되는 경우 예산 절감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임.

다음의 표는 2025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관련 참여업체별 투찰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8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최저입찰률(88.0%[31])에 근접한 87.9% ~ 90.4%의 투찰율을 보임. 1순위 업체의 투찰율은 88.4%임.

[2025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공모 현황(투찰 결과)]

순번	업체명	투찰금액	투찰률	입찰결과
1	A사	459,510,974원	88.4%	낙찰
2	B사	460,206,520원	88.5%	2순위
3	C사	463,617,000원	89.1%	3순위
4	D사	468,885,700원	90.2%	4순위
5	E사	470,300,000원	90.4%	5순위
6	F사	455,840,100원	87.7%	낙찰 하한가 미만
7	G사	457,200,000원	87.9%	낙찰 하한가 미만
8	H사	457,336,634원	87.9%	낙찰 하한가 미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낙찰률(88.4%)이 최저입찰률(88.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인다는 점,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최저입찰률(88.0%)에 근접한 입찰률로 투찰하였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31) 국방부는 낙찰 하한율을 87.995%%로 제시함. 낙찰 하한가(또는 하한율)는 입찰 참여자들이 제출한 입찰금액(또는 투찰률)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정된 최소 허용 금액 또는 비율임.

국방부가 더 낮은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이 사업 집행예산은 더욱 절감이 가능했을 것임.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의 교육용 상용드론 대당 예산편성 단가는 169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 단가(168만원)와 큰 차이가 없는바, 2026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공모에서도 2025년도 공모와 유사하게 최저입찰률에 근접한 투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할 때, 예산편성 단가를 더 낮게 조정한다면 이 사업 집행예산은 더욱 절감이 가능함.

[교육용 상용드론 예산편성 단가 비교표]

구분	수량(A)	예산액(B)	예산편성 단가(B/A)
2025년도 예산	315대	530백만원	168만원/대
2026년도 예산안	11,265대	19,135백만원	169만원/대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더욱이 2026년도 예산안의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대수는 총 1만 1,265대로 2025년도 도입대수 315대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수치이므로, 대규모 도입에 따른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2026년도 도입단가는 2025년도 도입단가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은 집행예산 절감을 위해 예산단가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은 비행 컨트롤러 이외의 드론 부품까지도 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은 2023년 구매한 드론을 날리자마자 추락하는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했던 사례가 있음. 당시 군사경찰은 납품업체가 이른바 “라벨갈이” 방식으로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여 드론을 제작한 정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음.[32)]

그럼에도 국방부는 교육용 상용드론 핵심부품 중 비행 컨트롤러(Flight Controller)에 대하여만 국산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임. 즉, 국방부는 비행 컨트롤러 이외에 배터리와 프로펠러, 변속기 등 드론 핵심부품을 중국산으로 수입하여 조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것임.[33)34)]

32) MBN, “중국산 라벨갈이 정황, 육군 드론 추락 배경은?”, 2023년 8월 22일자.

33) 통신장비의 소형화 추세를 감안할 때 드론 핵심부품에 비인가 통신장비의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산 부품에 비인가 통신장비의 설치 여부는 사후적으로 점검을 할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할 수 있음.

또한, 납품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을 우려도 있음.

따라서 교육용 상용드론 사업은 비행 컨트롤러(Flight Controller) 이외의 드론 부품까지도 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35]

34) 항공안전기술원의 “2024년 드론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드론제작업체의 부품별 국산화율은 모터 25.6%, 프로펠러 28.1%, 배터리 36.8%, 비행 컨트롤러 37.5%에 불과함.

35) 국방부는 비행 컨트롤러에 대하여는 국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품에 대하여는 전체 부품 리스트를 제공받아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간부확보장려사업: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추진 등

가. 개 요

‘간부확보장려사업’은 군 가산복무지원금과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을 통해 중·단기 복무 간부의 안정적인 획득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4억 300만원(78.6%) 증액된 1,66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36)]

[2026년도 간부확보장려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93,380	166,783	73,403	78.6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	-	53,150	53,150	순증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	-	27,371	27,371	순증

내역사업인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단기복무부사관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단기복무 부사관의 획득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3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적금과 연계하여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73억 7,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장기복무 선발 후 3년간 적금(3년 만기, 월 30만원 한도)의 납입액에 비례하여 매칭지원금(매칭 비율 10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단위로 매칭지원금을 개인 적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임.

36) 일반회계-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인사복지실)

나. 검토의견

첫째,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과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아직 심사 중인 상황으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부사관인건비’ 사업[37]에 편성되어 있던 장려수당[38]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개편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확대(민간모집부사관, 학군부사관 등 포함)하였음. 2026년도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예산안에는 단기복무부사관 5,315명에 대한 장려금 53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 5,315명 × 1,000만원 = 531억 5,000만원 ※ 부사관(5,315명) = 388명(현역모집부사관) + 1,175명(임기제부사관) + 3,646명(민간모집부사관) + 106명(학군부사관)

자료: 국방부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지급대상]

구분	복무	복무기간	대상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부사관	장기	7년	임관시 장기	미지급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단기	4년	현역모집부사관	장려수당	장려금
		4년	임기제부사관 (1년 내 4년 복무 확정)		
		4년	임기제부사관 (1년 후 4년 복무 확정)	미지급	
		4년	민간모집부사관		
		4년	학군부사관		

자료: 국방부

37) 일반회계-부사관인건비(1101-152)(기획조정실)

38) □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개요
○ (목적) 군 복무 경험을 가진 유능한 부사관 확보
○ (대상) 현역 부사관, 임기제 부사관 중 1년 이내 4년 복무 선발자
○ (방식) 임관 시 1회 지급(임관 2개월 이내), 1,000만원 지급

그런데 「군인사법」 제62조의2[39]에서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의 학생(ROTC) 및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제한[40]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에 단기복무부사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41][42][43][44]이 2025년 8월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은 국방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가능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45]

한편, 2026년도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에는 사관생도 등 장기복무자,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46] 및 군 가산복무지원자[47]에 대한 매칭지원금 27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39)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0) 학사장교를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재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구분한 이유는 대학교 재학 시절 학사 장교 지원을 염두에 두지만 미선발될 가능성을 고려(미선발시 현역병 등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하여, 진로 선택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장교후보생 제도(졸업 후 학사 장교로 임관)를 마련한 것임.

41) 제2202640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42) 제220342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 희의원 대표발의)」

43) 제22054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대표발의)」

44) 제22096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45) 참고로 국방부는 또 다른 내역사업인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에서 「군인사법」 제6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를 이미 취득한 사람(졸업생)을 포함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단계에 이르러 해당 대상의 경우 법률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음.

46) 의무복무 중 최소 7~10년까지 추가복무 확정자를 뜻함.

47) 가산복무지원금의 수혜를 받은 기간만큼 가산복무하는 중기복무장교와 전투·기술부사관을 의미함.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 273억 7,100만원 - 임관시 장기 1,512명 × 30만원 × **12월** = 54억 4,300만원 - 장기복무선발 4,300명 × 30만원 × **12월** = 154억 8,000만원 - **군 가산복무지원자** 1,782명 × 30만원 × **12월** = 64억 1,500만원

자료: 국방부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지급대상]

구분	복무	복무기간	대상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장교	장기	10년	사관학교	미지급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중기	6년	3사・간호사관		
부사관	장기	7년	임관시 장기	미지급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자료: 국방부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48]의 경우 「병역법」 제79조의2[49]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2025년 8월말 현재 이와 유사한 규정이 아직 없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초급간부 가입 적금과 연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50]이 2025년 8월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 역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는바,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유사사업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8) 일반회계-병내일준비지원(2242-304)(인사복지실)

49)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 내일준비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제220603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둘째,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가산복무지원금 수령대상에 대한 지원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지급가능한 적정 지원기간을 감안한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2026년도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은 군 가산복무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군 가산복무지원자는 대학 재학 중에 이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할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군 가산복무지원자는「군인사법」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는데,[51]

이미 일정한 혜택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복무를 이행 중인 자까지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국방부는 지원대상자별로 12개월분의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지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우선, 이 사업은 매월 개인별 적금 입금액을 파악한 후 그 다음 달에 매칭지원금을 개인 적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임. 2026년 1월 임관 대상자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예산 집행은 2026년 2월이 될 것임. 이러한 방식에 따라 이 사업은 사업 1년 차인 2026년의 경우 최대 11개월분의 매칭지원금의 집행이 가능함.

다음, 이 사업은 2026년 1월 이후 임관한 초급간부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모든 지원대상자가 2026년 1월 임관하는 것을 전제로 12개월분의 매칭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었음. 이러한 산정방식은 실제 임관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중 사관생도의 경우 통상 3월에 임관이 이루어지고,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임관이 이루어짐.

---

51)「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④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이미 군 가산복무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법률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 가산복무지원자에 대한 지원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지급가능한 적정 지원 기간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11. 동원훈련 사업 및 일반훈련 사업: 집행가능한 수준으로의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동원훈련’ 사업은 전시에 증설 또는 창설이 계획된 부대에 대한 병력 동원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00만원(△0.04%) 감액된 51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52)]

한편, **‘일반훈련’** 사업은 지역방위 능력을 향상하고 전시 기본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일반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9억 6,500만원(31.1%) 증액된 96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53)]

[2026년도 동원훈련 사업 및 일반훈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동원훈련	51,396	51,396	51,371	△25	△0.04
일반훈련	73,860	73,860	96,825	22,965	31.1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Ⅰ형,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으로 구분됨.

우선, 동원훈련Ⅰ형은 예비군 간부 1~6년차와 병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동원지정자)가 병력동원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3일(28H)동안 숙영하며 전시 대비 소속 편제를 유지하여 실시하는 훈련임.

다음, 동원훈련Ⅱ형은 예비군 간부 1~6년차와 병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아닌 자(동원미지정자) 및 동원훈련Ⅰ형을 미이수한 예비군이 동원훈련장 또는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숙영(2박3일) 또는 비숙영(4일)하며 개인 기본전투기술과 주특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임.[54)]

52) 일반회계-동원훈련(2632-303)(인사복지실)

53) 일반회계-일반훈련(2632-304)(인사복지실)

54) 간부와 공군 병은 예외적으로 숙영훈련을 실시하며, 동원훈련Ⅰ형으로 훈련참가비가 지급됨.

다음, 기본훈련은 예비군 병 5~6년차와 대학생예비군 대상자 등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1일(8시간) 동안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임.

끝으로, 작계(작전계획)훈련은 예비군 병 5~6년차와 간부 1~6년차 중 주요 직위자(소대장, 부중대장)가 작계(작전계획)지역에서 연 2회(전·후반기) 각 6시간씩 지역방위 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임.

[예비군훈련 유형 및 대상자별 훈련기간]

구 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동원훈련 Ⅰ형(숙영)	동원훈련 Ⅱ형(비숙영)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	-	-	-
병	1~4 년차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28시간 (2박 3일)	-	-	-
		동원훈련 Ⅰ형 미참석자	28시간 (2박 3일)	32시간 (4일)	-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32시간 (4일)	-	-
		공군 병	-	28시간 (2박 3일)	-	
	5~6 년차		-	-	8시간	12시간 * 반기 6시간
	7~8 년차		미이수 훈련			
간부	1~6 년차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28시간 (2박 3일)	-	-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28시간 (2박 3일)	-	-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예비군법」제11조 및「병역법」제52조제1항을 근거로 예비군 훈련자에게 훈련비, 여비(교통비) 등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55)56)]

국방부는 동원훈련 사업 예산으로 동원훈련 Ⅰ형(구(舊) 동원훈련 및 구(舊) 동미참훈련(입영)) 훈련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귀향여비 등을 지원하고, 일반훈련 사업 예산으로

55)「예비군법」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56)「병역법」
제52조(병력 동원훈련 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 동원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동원훈련Ⅱ형(구(舊)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의 훈련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및 교통비 등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함.

[예비군훈련 유형별 손실보상금 지원금액(단가)]

세부사업	구분(년간)		지원 항목	지원금액(원)		2026년 정부안 (백만원)
				2025년	2026년(안)	
동원훈련 (2632-303)	동원훈련 Ⅰ형 (2박3일)	구(舊) 동원훈련	훈련비	82,000	95,000	33,795
			귀향 여비	* 30km 미만: 1일 8천원 * 30km 이상: {(유류비)156원/km × 이동거리} + (톨게이트 기본료) 900원	* 30km 미만: 1일 8천원 * 30km 이상: {(유류비)156원/km × 이동거리} + (톨게이트 기본료) 900원	3,718
			급식비	13,000	14,000	11,609
		구(舊) 동미참 (입영)	훈련비	82,000	95,000	1,439
			입·퇴소 여비	* 30km 미만: 1일 8천원 * 30km 이상: {(유류비)156원/km × 이동거리} + (톨게이트 기본료) 900원	* 30km 미만: 1일 8천원 * 30km 이상: {(유류비)138.41원/km × 이동거리}	173
			급식비	13,000	14,000	494
일반훈련 (2632-304)	동원훈련Ⅱ형 [구(舊) 동미참 (출·퇴근)] (4일)		훈련비	40,000	50,000	18,374
			교통비	* 30km 미만: 1일 8천원 * 30km 이상: (유류비)131.82원/km × 이동거리	* 30km 미만: 1일 8천원 * 30km 이상: (유류비)131.82원/km × 이동거리	14,268
			중식비	8,000	9,000	13,017
	기본훈련 (1일)		훈련비	-	10,000	9,674
			교통비	* 30km 미만: 1일 8천원 * 30km 이상: (유류비)131.82원/km × 이동거리	* 30km 미만: 1일 8천원 * 30km 이상: (유류비)131.82원/km × 이동거리	9,463
			중식비	8,000	9,000	8,571
	작계훈련 (6시간 × 2회)		훈련비	-	10,000	5,553
			교통비	6,000	6,000	3,332
			중식비	8,000	9,000	9,99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동원훈련 사업 및 일반훈련 사업은 2026년도 중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예산 감액 조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다음의 표는 동원훈련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원훈련 사업은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23년도 83.4%, 2024년도 81.0%임.

[동원훈련 사업 집행실적(2025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A)	추경								
2023	49,873	49,873	29	△1,446	48,456	41,635	83.4	85.9	11	6,809
2024	50,191	50,191	11	△297	49,905	40,690	81.0	81.5	-	9,215
2025	51,396	51,396	-	△86	51,310	27,272	53.0	53.1	-	-

자료: 국방부

한편, 다음의 표는 일반훈련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훈련 사업은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23년도 91.2%, 2024년도 87.8%임.

[일반훈련 사업 집행실적(2025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A)	추경								
2023	56,828	56,828	-	594	57,422	51,870	91.2	90.3	-	5,552
2024	56,356	56,356	-	88	56,444	49,505	87.8	87.7	-	6,938
2025	73,860	73,860	-	△89	73,771	36,094	48.8	48.9	-	-

자료: 국방부

이러한 집행실적의 부진은 실제 훈련 인원보다 예산편성 인원이 과도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다음의 표는 동원훈련 사업의 예산편성 인원과 실제 훈련 인원을 비교한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훈련 인원의 비율은 2023년도 85.2%, 2024년도 79.6%로 나타남.

[동원훈련 사업의 예산편성 인원 대비 실제 훈련 인원 비교]

(단위: 명, %)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편성 계획인원(A)	실제 훈련 인원(B)	비율(B/A)	예산편성 계획인원(A)	실제 훈련 인원(B)	비율(B/A)
동원훈련 (동원훈련Ⅰ형)	428,438	365,147	85.2	431,813	343,630	79.6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23년~2024년)의 실제 훈련 인원의 평균 수치에 일정한 보정치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물량을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즉, 국방부는 2023년 대비 2024년의 실제 훈련 인원이 증가한 경우(동원훈련Ⅱ형 및 기본훈련) "5% 추가 인원 보정치"를 추가 적용하였으며, 일정한 경우(동원훈련Ⅰ형) 훈련 인원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4.7% 추가 인원 보정치"를 추가 반영하였다고 함.

[예비군훈련 유형별 물량 산출내역]

(단위: 명)

세부사업	유형	최근 2년의 실제 훈련 인원			2026년도 예산안 (B)	보정치 ((B-A)/A)
		2023년	2024년	평균 인원 (A)		
동원훈련	동원훈련Ⅰ형	365,147	343,630	354,389	370,894	**4.66%**
일반훈련	동원훈련Ⅱ형	338,936	360,498	349,717	367,496	**5.08%**
	기본훈련	879,945	962,858	921,402	967,471	**5.00%**
	작계훈련	568,020	542,699	555,360	555,361	**0.0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보정치를 적용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은 최근 2년의 실제 훈련 인원보다 더 많은 지원물량이 편성되었음.

즉, 동원훈련Ⅰ형은 실제 훈련 인원인 2023년 36만 5,147명 및 2024년 34만 3,630명보다 많은 37만 894명을 기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이와 유사하게 동원훈련Ⅱ형은 실제 훈련 인원인 2023년 33만 8,936명 및 2024년 36만 498명보다 많은 36만 7,496명을, 기본훈련은 실제 훈련 인원인 2023년 87만 9,945명 및 2024년 96만 2,858명보다 많은 96만 7,471명을 기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특히,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원훈련 I 형은 훈련 인원의 변동성이 크다는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최근 실제 훈련 인원이 2022년 41만 8,280명, 2023년 36만 5,147명 및 2024년 34만 3,630명으로 단기 감소추세를 보임. 이러한 추세가 2025년, 2026년에도 지속되는 경우 동원훈련 사업(동원훈련 I 형 지원 사업)은 과도한 지원물량 추계로 인한 미집행액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57]

[동원훈련 사업의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인원 대비 실제 훈련인원 비교]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2		2023		2024		2025	2026 (안)
	예산 편성	실제 훈련 인원	예산 편성	실제 훈련 인원	예산 편성	실제 훈련 인원	예산 편성	실제 훈련 인원	예산 편성	실제 훈련 인원		
구(舊). 동원훈련	421,381	401,882	411,249	396,336	408,984	405,522	408,984	351,563	411,769	327,643	406,889	355,737
육군	359,114	340,159	348,276	331,000	344,747	347,146	344,747	299,207	344,899	275,135	339,435	287,259
해군	9,155	7,500	9,145	8,512	8,515	10,132	8,515	8,797	8,515	9,395	8,948	9,184
공군	20,467	22,250	22,868	24,375	23,488	29,848	23,488	26,363	23,419	25,810	24,859	26,174
해병	16,946	15,417	15,835	18,279	16,735	18,396	16,735	17,196	17,634	17,303	17,328	17,337
국직	15,699	16,556	15,125	14,170	15,499	-	15,499	-	17,302	-	16,319	15,783
구(舊). 동미참훈련 (입영)	17,231	21,614	17,076	19,065	19,454	12,758	19,454	13,584	20,044	15,286	18,157	15,157
육군	5,783	5,758	5,197	4,197	4,766	-	4,766	2,387	4,766	4,766	3,642	3,755
해군	-	2,243	-	3,116	2,600	-	2,600	1,600	2,600	1,082	2,386	1,408
공군	11,448	13,082	11,318	11,282	11,567	11,948	11,567	9,003	12,157	8,801	11,567	9,348
해병	-	531	561	470	521	810	521	594	521	637	562	646
합 계	438,612	423,496	428,325	415,401	428,438	418,280	428,438	365,147	431,813	343,630	425,046	370,894

주 1) 2022년도의 경우 일부 훈련 미실시
2) 2020년도 및 2021년도 자료는 코로나19로 인한 동원훈련 미실시 등을 감안하여 미기재
자료: 국방부

따라서 동원훈련 사업 및 일반훈련 사업은 최근 실제 훈련 인원의 추세를 감안하여 2026년도 중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예산 감액 조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57) 동원훈련 I 형의 실제훈련인원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의해 2019~2022년의 기간동안 많은 부대들이 해체되면서 부대 증·창설에 필요한 병력동원소요가 감소하였으며, 동원소집 부대가 줄면서 동원지정 예비군도 감소하였다고 설명함.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 출>

12. 부대개편 7차 사업 및 부대개편 8차 사업: 낙찰차액을 감안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부대개편 7차’ 사업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간 총 8,881억원을 투자하여 42개 부대의 이전 또는 개편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45억 800만원(△46.4%) 감액된 1,55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58)59)]

[2026년도 부대개편 7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부대개편 7차	289,688	289,688	155,180	△134,508	△46.4
25사단 사단CCC 개편	6,206	6,206	9,696	3,490	56.2

내역사업인 **‘25사단 사단CCC[60] 개편’** 사업은 25사단의 지휘통제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9,000만원(56.2%) 증액된 96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58)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59)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부대개편 7차(4131-482)(자원관리실)

60) 지휘통제실(Command Control Center: CCC), 작전 및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휘·통제하는 핵심공간

한편, **‘부대개편 8차’**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096억원을 투자하여 22개 부대의 이전 또는 개편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5억 6,100만원(77.1%) 증액된 93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61)]

[2026년도 부대개편 8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부대개편 8차	52,593	52,593	93,154	40,561	77.1
3사단 정보/공병/22여단 군지대대 개편	4,639	4,639	3,105	△1,534	△33.1
3사단 방공/화생방/22여단 포병대 개편	5,510	5,510	3,687	△1,823	△33.1
3사단 군수지원대대 개편	4,380	4,380	2,920	△1,460	△33.3
3사단 18여단 군수지원대대 개편	4,307	4,307	2,871	△1,436	△33.3
3사단 18여단 포병대 개편	975	975	650	△325	△33.3
3사단 23여단 군수지원대대 개편	3,844	3,844	2,564	△1,280	△33.3
3사단 15화생방/121공병대대 개편	5,240	5,240	3,592	△1,648	△31.5
7군지단 개편	5,367	5,367	4,993	△374	△7.0

내역사업인 **‘3사단 정보/공병/22여단 군지대대 개편’** 사업은 정보대대·군지대대 신편 및 공병대대 부대 이전에 따른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3,400만원(△33.1%) 감액된 3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3사단 방공/화생방/22여단 포병대 개편’** 사업은 사단 방공중대 및 화생방 지원대의 대대급 증편·부대 이전 및 22여단 포병대 창설 등에 따른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2,300만원(△33.1%) 감액된 36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3사단 군수지원대대 개편’** 사업은 3사단 군수지원대대의 창설에 따라 정비·보급·수송에 필요한 저장정비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6,000만원(△33.3%) 감액된 2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6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부대개편 8차(4131-489)(자원관리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3사단 18여단 군수지원대대 개편’** 사업은 18여단 군수지원대대 창설에 따라 병역식당, 행정시설, 저장정비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3,600만원(△33.3%) 감액된 28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3사단 18여단 포병대 개편’** 사업은 18여단 포병대 부대 이전 및 지휘관계 전환 등에 따른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2,500만원(△33.3%) 감액된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3사단 23여단 군수지원대대 개편’** 사업은 23여단 군수지원대대 및 23여단 포병대 창설에 따른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8,000만원(△33.3%) 감액된 25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3사단 15화생방/121공병대대 개편’** 사업은 15화생방대대 및 121공병대대의 부대 이전에 따른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4,800만원(△31.5%) 감액된 3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7군지단 개편’** 사업은 7군단의 독립작전 수행을 위한 군수지원체계 보강을 위해 7군지단을 7군단 예속으로 전환함에 따른 병영기본 시설 등을 보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7,400만원(△7.0%) 감액된 4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부대개편 7차 사업 및 부대개편 8차 사업은 계약체결 결과 발생한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2026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부대개편 7차 사업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된 내역사업은 총 24개로, 이 중 13개 내역사업[62]은 2025년을 시설공사 계약 첫해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한편, 2026년도 부대개편 8차 사업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된 내역사업은 총 22개로, 이 중 9개 내역사업[63]은 2025년을 시설공사 계약 첫해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다음의 표는 2025년 9월말 현재 계약체결이 완료된 부대개편 7차 사업 중 1개 내역사업 및 부대개편 8차 사업 중 8개 내역사업 등 총 9개 사업의 낙찰차액 발생 현황을

62) 이들 13개 내역사업은 2025년도 예산에 1차년도 공사비가 이미 반영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2차년도 공사비가 편성되었음.

63) 이들 9개 내역사업은 2025년도 예산에 1차년도 공사비가 이미 반영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2차년도 공사비가 편성되었음.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5사단 사단CCC 개편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총 143억 1,000만원임.

[낙찰차액 발생현황(2025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편성당시 (낙찰차액 발생 이전)			낙찰차액 (연부액 조정 가능액)
		잔여 사업비	연부액		
			2026	2027~	
부대개편 7차	25사단 사단CCC 개편	18,228	9,696	8,532	2,088
부대개편 8차	3사단 정보/공병/22여단 군지대대 개편	11,044	3,105	7,939	1,567
	3사단 방공/화생방/22여단 포병대 개편	13,095	3,687	9,408	1,980
	3사단 군수지원대대개편	10,330	2,920	7,410	1,490
	3사단 18여단 군수지원대대 개편	10,147	2,871	7,276	1,735
	3사단 18여단 포병대 개편	2,310	650	1,660	240
	3사단 23여단 군수지원대대 개편	9,289	2,564	6,725	1,526
	3사단 15화생방/121공병대대 개편	12,974	3,592	9,382	2,146
	7군지단 개편	12,701	4,993	7,708	1,538
조정가능액 합계					**14,310**

자료: 국방부

그런데 이러한 9개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체결 결과 발생한 낙찰차액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감액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이들 9개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가 2027년도 또는 그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을 감액 조정하지 않더라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낙찰차액을 반영(감액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또한, 이들 9개 사업 중 3사단 정보/공병/22여단 군지대대 개편 사업 등 부대개편 8차 사업의 8개 내역사업은 계약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연부액이 이미 2026년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되었으며,[64]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제한된다고 설명함.

64) 즉, 국방부는 당초 예산안 편성시 2년차 연부율(40%)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연부율 기준 20% ~ 30%에 해당하는 예산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주장임.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설명은 낙찰차액을 특별한 이유없이 2027년도 이후 예산에만 감액 반영하겠다는 것임. 이 사업은 총사업비에 연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각 연도별 예산액이 산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 조정 역시 예산편성 연부율을 감안하여 각 연도별로 배분(감액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음의 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사업별 낙찰차액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조정분 산출한 내역을 예시한 것임.

[낙찰차액을 감안한 감액 조정 방안(예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낙찰 차액	비율 (A)	2026년 연부액 (B)	예산 편성 연부율	낙찰차액 감액	
						50%반영 (A×B×0.5)	100%반영 (A×B)
부대개편 7차	25사단 사단CCC 개편	2,088	8.5%	9,696	40%	412	824
부대개편 8차	3사단 정보/공병/22여단 군지대대 개편	1,567	10.4%	3,105	20%	161	323
	3사단 방공/화생방/22여단 포병대 개편	1,980	10.5%	3,687	20%	194	387
	3사단 군수지원대대개편	1,490	10.6%	2,920	20%	155	310
	3사단 18여단 군수지원 대대 개편	1,735	10.0%	2,871	20%	144	287
	3사단 18여단 포병대 개편	240	9.4%	650	20%	31	61
	3사단 23여단 군수지원 대대 개편	1,526	10.8%	2,564	20%	138	277
	3사단 15화생방/121공병 대대 개편	2,146	11.2%	3,592	20%	201	402
	7군지단 개편	1,538	10.0%	4,993	30%	250	499
합 계		14,310	10.2%	34,078	24%	**1,685**	**3,370**

주 1) “비율”은 계약 체결 당시 총사업비 대비 낙찰차액의 비율을 나타낸 것임
2) “2026년 연부액”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액과 동일함
3) “예산편성 연부율”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연부율임
4) “낙찰차액 감액”은 발생한 낙찰차액을 예산안 편성 당시 연부율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배분할 경우 2026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조정이 필요한 금액을 나타낸 것임

자료: 국방부

13.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 필요

가. 개 요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인 서오릉(西五陵)[65] 내에 위치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학교를 국군방첩사령부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66]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억 8,100만원(87.2%) 증액된 15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67]

[2026년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본예산 (A)	추경	예산안 (B)	(B-A)	(B-A)/A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8,352	8,352	15,633	7,281	87.2

2026년도 예산안에는 공사비 149억 4,000만원, 감리비 6억 7,300만원 및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공사비: (2025) 63억 5,800만원 → (2026안) 149억 4,000만원, 85억 8,200만원 증액
- (요구) 2026년 공사 2년차 연부율 및 공사진도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85억 8,200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총공사비(498억 3,700만원)의 30% 반영

○ 감리비: (2025) 3억 3,300만원 → (2026안) 6억 7,300만원, 3억 4,000만원 증액
- (요구) 2026년 공사 2년차 연부율 및 공사진도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3억 4,000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총감리비(26억 1,000만원)의 25% 반영

○ 시설부대비: (2025) 2,200만원 → (2026안) 2,000만원, 200만원 감액
- (요구) 사업진도 및 실집행 예상액 고려하여 2025년 대비 200만원 감액 요구
- (산출) 총시설부대비(1억 5,300만원)의 13% 반영

자료: 국방부

65) 서오릉(西五陵)은 서쪽에 있는 5기의 능이라는 뜻으로 경릉(敬陵), 창릉(昌陵), 익릉(翼陵), 명릉(明陵), 홍릉(弘陵)의 다섯 능을 의미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위치함.

66)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2022년~2027년 / 575억 7,800만원 / 건물 5동(연면적 16,158㎡) 이전

67)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4131-485)(자원관리실)

나. 검토의견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은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575억 7,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임.[68]

다음의 표는 2025년도 9월말 기준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은 2025년도 예산현액 90억 7,200만원 중 23억 6,900만원만 집행(집행률 26.1%)되었음. 특히, 이 사업은 공사비와 감리비가 전액 미집행됨.

[2025년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 집행실적(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9월말							2026 예산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8,352	8,352	10	710	9,072	2,369	26.1%	15,633
· 건설보상비(410-00)	1,639	1,639	-	683	2,322	2,322	100.0%	-
· 실시설계비(420-02)	-	-	10	-	10	1	10.0%	-
· 공사비(420-03)	6,358	6,358	-	-	6,358	-	0.0%	14,940
· 감리비(420-04)	333	333	-	-	333	-	0.0%	673
· 시설부대비(420-05)	22	22	-	27	49	46	93.9%	20

자료: 국방부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에 대하여 국방부는 총사업비 조정으로 공사비 등의 집행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함. 이와 함께 국방부는 2025년 8월 총사업비 협의 완료 이후 공사계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2025년 9월말 현재 이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함.[69]

---

68) 사업추진경위
- 2019. 10월: 선행연구 완료
- 2019. 12월 ~ 2020. 6월: 사업타당성 검토
- 2022. 12월: 설계계약 체결
- 2024. 2월: 조달청 기본설계(설계 30%) 적정성 검토 완료
- 2024. 5월: 조달청 중간설계(설계 60%) 적정성 검토 자료 접수
- 2024. 6월: 개발제한구역 경미한 변경 계약 체결(~2024. 12. 28.)
- 2024. 11월: 총사업비 협의 조정
  (총사업비: 485억 8,600만원 → 555억 4,800만원, 사업기간: 2022년~2025년 → 2022년~2027년)
- 2025. 8월: 총사업비 협의 조정(총사업비: 555억 4,800만원 → 575억 7,800만원)

이러한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전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타당성재조사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 등이 불가피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군사안보지원학교를 국군방첩사령부 내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은 2025년 9월말 현재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69) 즉,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보안 등의 주요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및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인 군사안보지원학교의 필요성, 타 기관으로의 이관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함. 국방부는 이러한 검토가 완료되어야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

<수 입>

14. 입장료수입: 수입증대 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입장료수입’은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및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입장료 수입금을 수납하는 수입과목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30억 8,200만원(2.5%) 증액된 1,288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70]

[2026년도 입장료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입장료수입	125,744	125,744	128,826	3,082	2.5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6년도 계획안에는 체력단련장(골프장) 입장료수입 1,170억 8,800만원, 골프연습장 입장료수입 117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입장료수입 계획안 세부내역]

○ 체력단련장(골프장): 1,170억 8,800만원
- 2022~2023년 평균 결산액(997억 7,600만원) 기준 신분별 입장료 인상률(정회원 30%, 준회원 25%, 비회원 10%) 적용 및 국방대 체력단련장 입장료 수입(22억원) 추가 반영

○ 골프연습장: 117억 3,800만원
-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결산액(114억 9,700만원) 기준 물가상승률(2.1%) 반영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5년 8월말 기준 총 35곳에 달하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운영 중임. 군 체력단련장(골프장)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차등화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정회원은

70)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입장료수입(64-641)(인사복지실)

장교·부사관·군무원 및 병 등으로서 준회원 또는 비회원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가 적용됨.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요금은 2024년 5월 인상 후 변동이 없음.

[군 체력단련장(골프장)별 이용요금(2025년 8월말 기준)]

(단위: 원)

구 분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평일	주말	카트비	평일	주말	카트비	평일	주말	카트비
국군복지단(4)	태릉	47,200	47,200	6,000	79,000	79,000	17,000	190,000	230,000	20,000
	남수원	47,200	47,200	6,000	79,000	79,000	17,000	140,000	200,000	20,000
	동여주	47,200	47,200	6,000	79,000	79,000	17,000	140,000	200,000	20,000
	처인	47,200	47,200	6,000	79,000	79,000	17,000	140,000	200,000	20,000
육군(12)	계룡대	38,000	38,000	6,000	72,000	79,000	10,000	124,000	170,000	20,000
	구룡대	38,000	38,000	6,000	72,000	79,000	10,000	124,000	170,000	20,000
	자운대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7,000	86,000	100,000	12,000
	남성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78,000	94,000	20,000
	창공대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7,000	70,000	98,000	12,000
	함안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68,000	94,000	20,000
	무열대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7,000	78,000	97,000	12,000
	선봉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91,000	107,000	20,000
	비승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83,000	97,000	20,000
	사자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91,000	107,000	20,000
	상무대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7,000	55,000	82,000	12,000
	충성대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10,000	69,000	90,000	20,000
해군/해병대(5)	한산대	33,000	33,000	5,000	51,000	58,000	7,000	108,000	125,000	15,000
	만포대	33,000	33,000	6,000	51,000	58,000	10,000	128,000	149,000	20,000
	낙산대	29,000	29,000	6,000	45,000	52,000	10,000	68,000	88,000	20,000
	충무대	29,000	29,000	5,000	45,000	52,000	7,000	50,000	79,000	12,000
	덕산대	29,000	29,000	5,000	51,000	58,000	9,000	88,000	94,000	20,000
공군(14)	광주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58,000	78,000	12,000
	사천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68,000	90,000	20,000
	김해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72,000	88,000	12,000
	원주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72,000	88,000	20,000
	수원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87,000	98,000	20,000
	대구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78,000	92,000	12,000
	성남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90,000	100,000	20,000
	예천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54,000	83,000	12,000
	청주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79,000	89,000	12,000
	강릉	29,000	29,000	4,000	51,000	58,000	4,000	70,000	90,000	12,000
	충주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88,000	110,000	20,000
	서산	33,000	33,000	6,000	51,000	58,000	6,600	90,000	120,000	20,000
	공사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70,000	90,000	20,000
	오산	29,000	29,000	6,000	51,000	58,000	6,600	84,000	98,000	20,000

자료: 국방부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요금 구분 기준]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병 ·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등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등	· 정회원, 준회원 이외의 민간인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이나 정회원 계급별 요금 차등화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이용하는 병사의 수가 많지 않으나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장병 격려사업, 체력단련기구 보급 관련 사업, 장학사업 및 취업활동지원 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설명하였음.[71]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 주요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5계획액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복지시설운영(2237-641)	374,133	374,133	400,579	26,446	7.1
복지시설확보(2237-642)	40,366	40,366	48,025	7,659	19.0
장병격려사업(2238-643)	40,427	40,427	24,591	△15,836	△39.2
부대시설운영지원(2238-644)	8,290	8,290	8,250	△40	△0.5
장학사업(2239-646)	2,400	2,400	2,900	500	20.8
취업활동지원(2239-647)	15,184	15,184	14,891	△293	△1.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은 국방부도 일부 인정한 것과 같이 제한된 일부 인원의 복지에 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병사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과도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71) 국회사무처,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2025. 9. 4, pp. 58~63.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은 군인복지기금의 수입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입장료수입은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의 주요 수입원이므로, 국방부가 설명한 것과 같이 장병 격려사업, 체력단련기구 보급 관련 사업, 장학사업 및 취업활동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입액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 수입내역]

(단위: 백만원, %)

수입과목(코드)	2025계획액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당초(A)	수정		(B-A)	(B-A)/A
토지대여료(51-511)	125	125	125	-	-
건물대여료(51-512)	24,873	24,873	21,816	△3,057	△12.3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4,883	4,883	5,029	146	3.0
변상금(57-571)	25	25	36	11	44.0
위약금(57-572)	100	100	105	5	5.0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4,225	4,225	3,602	△623	△14.7
입장료수입(64-641)	**125,744**	**125,744**	**128,826**	**3,082**	**2.5**
기타잡수입(69-691)	**342,518**	**342,518**	**381,753**	**39,235**	**11.5**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2)	59,244	59,244	70,296	11,052	18.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3)	57,354	57,354	29,731	△27,623	△48.2
기금예탁원금회수(92-923)	-	-	60,000	60,000	순증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1,020	1,020	902	△118	△11.6
복지계정 소계	**620,111**	**620,111**	**702,221**	**82,110**	**13.2**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을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국방부는 2026년도에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 전동승용카트 도입, 안전펜스 설치 등을 위해 75억 2,300만원을 군인복지지금 복지계정에서 투자할 계획임.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련 지원사업 목록(2026년도 계획안 반영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내역	2025년	2026년	2027년	총사업비
계룡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	90	1,396	-	1,486
무열대 체력단련장 전동승용카트 도입	50	2,389	-	2,439
청주·충주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개선	158	2,202	-	2,360
육군 체력단련장 전산시스템 개선	95	442	3,675	4,212
충무대 체력단련장 안전망 교체	-	594	-	594
국방대 체력단련장 안전펜스 설치 공사	-	500	-	500
합 계	393	7,523	3,675	-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요약하면,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의 경우 제한된 일부 인원의 복지에 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더 많은 장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분한 수입액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련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용요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72]

또한, 국방부는 2024년 5월 요금인상 이후 2025년 8월말 현재까지 이용요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이용요금을 조정(인상)하는 방안[73]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장교・부사관・군무원 및 병에게 모두 동일한 이용요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계급별 요금 차등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2)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을 2024. 5월 부로 30% 대폭 인상(정회원 기준)하였으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인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2026년 수입증대를 위해 이용요금 인상 대신 할인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이용요금 인상은 2026년에 재검토).
* 할인혜택(20%) 대상 축소: 정회원 동반자 할인대상 중 가족 외에 일반인은 제외
* 연간 수입증대 효과(4.7%): 60억원(24만명 × 25,000원)

73) 국방부는 최근 결산수치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으로 수입계획액을 산정하고 있음.

15. 기타잡수입: 관리위탁 업체 선정시 경쟁 입찰을 통한 수입 증대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잡수입’ 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을 수납하는 수입 과목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392억 3,500만원(11.5%) 증액된 3,81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74]

[2026년도 기타잡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B-A)/A
	당초 (A)	수정			
기타잡수입	342,518	342,518	381,753	39,235	11.5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국방부는 군 복지시설(마트, 식당, 복지회관 등)의 운영에 따른 판매운영 수입 등을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의 기타잡수입으로 수납하고 있음.

[기타잡수입 계획안 세부내역]

○ 체육시설: 362억 6,100만원
- 최근 3년(2021~2023년)의 평균 결산액(349억 2,700만원) 기준 물가상승률(2.1%) 적용 및 국방대 체력단련장 수입(6억원) 추가 반영

○ 복지회관: 506억 6,300만원
- 최근 2년(2023~2024년) 평균 결산액(451억 9,500만원) 기준, 이용요금 인상률(10%) 및 물가상승률(2.1%) 합산 반영

○ 휴양시설: 314억 500만원
- 최근 2년(2023~2024년)의 평균 결산액(197억 7,000만원) 기준 물가상승률(2.1%) 및 로카우스호텔 수입(112억 2,000만원) 추가 반영

○ 마트: 2389억 9,000만원
- 최근 3년(2022~2024년)의 평균 결산액(1,848억 2,100만원) 기준 판매확대율(10%) 및 판매수수료 인상 수입(356억 8,700만원) 추가 반영

○ 쇼핑타운: 85억 200만원
-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결산액(83억 2,700만원) 기준 물가상승률(2.1%) 반영

○ 기타시설: 159억 3,200만원
-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결산액(156억 400만원) 기준 물가상승률(2.1%) 반영

자료: 국방부

74) 군인복지기금(복지계정)-기타잡수입(69-691)(인사복지실)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향후 관리위탁 업체 선정 시 경쟁 입찰을 통해 현재의 수익금 배분 비율을 국가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금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언론에서는 서울해군호텔 및 진해해군회관 관련 관리위탁 계약의 적절성 여부 및 국방부의 후속 대응 미흡을 지적하였음.[75] 지적된 주요 내용은 수탁자에게 70%에 달하는 과도한 수익금이 배분되었으며,[76] 10년 이상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반복되었고, 국방부가 계약해지·영업중단·퇴거조치 등 후속조치에 미온적이라는 것임.

다음의 표는 서울해군호텔 예식장과 진해해군회관 예식장 관련 관리위탁 계약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초 계약에 있던 기본위탁료 조항은 수정계약을 통해 삭제되었고, 수익금 배분 비율은 수탁자에게 유리한 70%로 특별한 변동 없이 갱신되었으며, 계약기간은 당초 1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음. 국방부는 이러한 계약을 별도의 경쟁 입찰 없이 기존 업체와 5년 단위로 갱신하였음.

[서울해군호텔 예식장 관련 수의계약 내역]

계약당사자	계약상대방(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익금 배분 조건
해군 재경근무지원단장	○○○	2012.12월	(최초)2013. 1. 1.~2015.12.31.(3년)	(기본위탁료) 연 5,940만원	목표수익(5.7억원) 달성시 초과액 20%
		2013. 3월	(수정)2013. 1. 1.~2017.12.31.(5년)	(기본위탁료) 월 165만원	순수익 배분 7(수탁자) : 3(해군)
		2013.11월	(수정)2013. 1. 1.~2017.12.31.(5년)	-	순수익 배분 7(수탁자) : 3(해군)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2017.12월	(갱신)2018. 1. 1.~2022.12.31.(5년)	-	순수익 배분 7(수탁자) : 3(해군)
		2018. 6월	(수정)2018. 1. 1.~2022.12.31.(5년)	-	순수익 배분 7(수탁자) : 3(해군)
		2020.12월	(수정)2018. 1. 1.~2022.12.31.(5년)	-	순수익 배분 7(수탁자) : 3(해군)
		2022.12월	(갱신)2023. 1. 1.~2027.12.31.(5년)	-	순수익 배분 6(수탁자) : 4(해군)

자료: 국방부

75) YTN, “국방부, 해군호텔 예식장 특혜 운영 의혹 감사”, 2025년 8월 11일자.
한국일보, “경찰, 서울 해군호텔 압수수색, 해군 예식장 유착 비리 관련”, 2025년 8월 26일자.

76) 즉, 이들 해군시설 관리위탁계약은 수익금 배분 기준이 해군 30%, 업체(수탁자) 70%인데, 이러한 수익금 배분 기준은 공군호텔의 사례(수익금 배분 비율: 공군 85%, 업체 15%)와 비교할 때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임.

[진해해군회관 예식장 관련 수의계약 내역]

계약당사자	계약상대방(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익금 배분 조건
해군 진해기지 사령관	×××	2012. 4월	(최초)2012. 5. 1. ~ 2013. 4.30.(1년)	(기본위탁료) 연 3,500만원	목표수익(6.2억원) 달성시 초과액 20%
		2012. 9월	(수정)2012. 9. 1. ~ 2017. 8.31.(5년)		목표수익(6.2억원) 달성시 초과액 80%
		2012.12월	(수정)2012. 9. 1. ~ 2017. 8.31.(5년)		목표수익(3.5억원) 달성시 초과액 80%
		2013.10월	(수정)2013.10. 1. ~ 2018. 9.30.(5년)	-	순수익 배분 7(수탁자) : 3(해군)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2017. 8월	(갱신)2017. 9. 1. ~ 2022. 8.31.(5년)	-	순수익 배분 7(수탁자) : 3(해군)
		2020. 7월	(수정)2017. 9. 1. ~ 2022. 8.31.(5년)	-	순수익 배분 7(수탁자) : 3(해군)
		2022. 8월	(갱신)2022. 9. 1. ~ 2027.12.31.(5년)	-	순수익 배분 7(수탁자) : 3(해군)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과거 운영실적, 향후 추정 운영비용과 예상수익, 수탁자 투자제안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최초 수익금 배분 비율을 설정하였으며, 계약 갱신 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거나 유지하였다고 설명함.[77]

그러나 국방부는 경쟁 입찰을 통해 수익금 배분 비율을 국가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군인복지기금 수입을 증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연도별 서울해군호텔 및 진해해군회관 관련 군인복지기금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해군호텔	직영	222	282	512	539	660
	관리위탁	42	172	480	1,038	1,265
	사용허가	72	64	47	12	56
	계	336	518	1,039	1,589	1,981
진해 해군회관	직영	162	186	218	241	242
	관리위탁	-	-	21	222	313
	계	162	186	239	463	555

자료: 국방부

77) 국방부는 업체(수탁자)의 투자제안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별도의 경쟁 입찰 없이 기존의 업체와 5년씩 갱신한 사유도 설명하지 않음.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신규 관리위탁 업체 선정 시 경쟁 입찰을 통해 현재의 수익금 배분 비율을 국가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금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병무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은 3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00만원(30.5%) 증가함.[1)]

[2026년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56	2.56	3.34	0.78	30.5
총수입	2.56	2.56	3.34	0.78	30.5

2026년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은 5,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6억원(9.4%) 증가함.

[2026년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732	4,732	5,178	446	9.4
총지출	4,732	4,732	5,178	446	9.4

문의 : 박제성 예산결산조사관 thesquare@assembly.go.kr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00만원(30.5%) 증가함.

[2026년도 병무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56	2.56	3.34	0.78	30.5
합 계	2.56	2.56	3.34	0.78	30.5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5,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6억원(9.4%) 증가함.

[2026년도 병무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732	4,732	5,178	446	9.4
합 계	4,732	4,732	5,178	446	9.4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병무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없음.[2)]

한편, 병무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사업, ‘사회복무이행지원’ 사업 등 총 2개임.[3)]

[2026년도 병무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963	2,163	1,200	124.6
2	사회복무이행지원	212,733	247,536	34,803	16.4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인건비성 경비 및 경직성 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이행지원’ 사업 예산액은 2,475억원으로 총지출 5,178억원 중 47.8%의 비중을 차지함. 그 외 병역판정검사 사업(182억원),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284억원) 등 병무청 소관 예산안은 국가 기본 기능 수행을 위한 경직성 지출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은 그동안의 낙찰차액 발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체들의 견적서만을 근거로 예산편성 단가가 대폭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편성 단가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병무청은 2024년에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병무청 지하상황실 설치 사업을 추진한바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건물대여료: 사용요율 상향 조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건물대여료’ 는 13개 지방병무청 건물 등 국유재산의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대가를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0만원(9.3%) 증액된 1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건물대여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건물대여료	108	108	118	10	9.3

병무청은 나라사랑카드 발급소·구내식당 및 ATM기기 운영자 등에게 용도별 사용요율에 따른 건물대여료를 징수하고 있음.

[건물대여료 산출방식]

구분	산출방식
건물사용허가료	(건물가액 + 부지가액) × 사용요율
독신자숙소 사용허가료	재산가액 × 사용요율 × 사용숙소 수

자료: 병무청

4) 일반회계-건물대여료(51-512)(운영지원과)

[건물대여료 유형별 사용요율]

구분		사용요율	사용요율 법적근거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임대	서울청 등 13개 소속기관	25/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행정 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1천분의 25 이상)
구내식당 임대	서울청	40/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4호 :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1천분의 40 이상)
	충북청	30/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6호의2 :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도시가스 정압실/ 금융기관 ATM	서울청	50/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독신자숙소 사용허가료	대전충남청	20/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주거용인 경우(1천분의 20 이상)

자료: 병무청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병무청 건물 중 1,368.82㎡ 및 독신자숙소 14개의 사용허가에 따른 건물대여료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건물대여료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금액(천원)	면적(㎡)	산출근거 및 산식	비고
계	118,350	1,368.82	-	-
서울청	16,171	359.00	산식: (53,411,280원+350,853,180원)×40/1,000	구내식당 임대
	1,146	6.69	산식: (749,280원+622,170,660원)×50/1,000	도시가스정압실
	17,804	**93.54**	산식: (15,015,840원+697,133,040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498	10.00	산식: (1,605,150원+8,351,280원)×50/1,000	금융기관 ATM
부산울산청	5,402	**61.20**	산식: (64,813,760원+151,237,300)×**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대구경북청	9,886	**84.00**	산식: (289,428,968원+106,040,686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경인청	20,724	**143.48**	산식: (170,952,000원+657,964,000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광주전남청	6,244	**53.58**	산식: (43,560,720원+206,206,416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대전충남청	4,298	**47.74**	산식: (65,075,120원+106,860,480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10,026	-	산식: 39,786,081원×20/1,000×14×0.9	주거용재산 대부료
강원청	2,616	**50.76**	산식: (28,517,480원+76,103,960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충북청	5,242	**174.98**	산식: (91,339,560원+118,327,610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3,245	90.27	산식: (47,120,940+61,039,900)×30/1,000	구내식당 임대
전북청	1,016	**35.18**	산식: (27,211,862원+13,435,326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경남청	3,428	**40.00**	산식: (75,221,220원+61,907,286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인천지청	2,504	**28.00**	산식: (44,544,000원+55,639,980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경기북부지청	6,542	**60.00**	산식: (73,006,560원+188,693,600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강원영동지청	1,558	**30.40**	산식: (26,613,120원+35,712,512원)×**25/1,000**	**카드 발급소 임대**

자료: 병무청

나. 검토의견

첫째, 병무청은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 목적의 사용행위에 적용 중인 건물임차료 사용요율의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의 표는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자[5]의 건물대여료 납입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도별 납입금액은 각각 2021년 8,100만원, 2022년 6,700만원, 2023년 7,400만원 및 2024년 7,600만원으로 나타남.

[연도별 기관별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건물대여료 납입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7
계	81	67	74	76	36
국민은행	40.5	33.5	37	38	18
기업은행	40.5	33.5	37	38	18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자에게 2.5%의 사용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병무청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용요율 3.0%보다도 낮은 수치임.

이는 병무청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별 사용요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함에 기인한 것임. 즉, 병무청은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 목적의 사용행위를 행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 보았으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최저수치인 2.5%를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임.[6]

5) 2025년 7월말 현재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자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을 위해 13개 지방병무청 건물을 임차하고 있음.

6)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자의 경우 국유재산을 행정 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낮은 사용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은행의 입장에서 나라사랑카드 발급사업은 매년 20만명을 상회하는 규모의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래 고객의 확보와 저원가성 예금의 유입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임.[7)]

그럼에도 병무청은 이를 공익을 위한 사용행위로만 인식하여 가장 낮은 사용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즉, 병무청은 대여자의 사용가치 및 대여자간 형평성의 측면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최저수치(2.5%) 이상의 사용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나라사랑카드 발급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7
계	244,672	239,244	228,789	218,735	152,792
국민은행	196,241	185,606	188,187	157,883	99,416
기업은행	48,431	53,638	40,602	60,852	53,376

자료: 병무청

---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6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7) 나라사랑카드는 체크카드로서의 기능과 함께 병역증, 전자병역 및 전역증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에 반드시 필요한 카드임. 일반적으로 병무청에서 판정검사 받을 때 파견나온 은행직원을 통해서 발급이 이루어짐. 나라사랑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연계 은행 계좌가 필요하여, 해당 계좌에 군 복무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입금됨.

〈나라사랑카드 계좌와 일반 입출금식 계좌 비교〉

구분	나라사랑카드 계좌	일반 입출금 계좌
목적	군 복무 급여, 지원금 수령	월급, 생활비, 투자 등
기능	제한적 (대출, 자동이체 일부 제한)	다양함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카드 연동 등)
혜택	군인 전용 할인, 보험, 포인트	일반 금융 혜택, CMA, 적금 등

자료: 병무청

일례로 병무청은 대여자가 얻을 수 있는 사용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용요율의 최저수치가 아닌 그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8] 또는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용요율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병무청은 건물대여에 따른 사용가치 및 대여자간 형평성의 측면을 감안하여 건물대여료 관련 사용요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 목적의 사용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최저수치가 아닌 그 이상의 사용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2026년도 건물대여료 세입예산안은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사용허가 면적의 증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의 3개사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로 확정됨. 이들 3기 사업자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최대 8년간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는 2개사에서 3개사로 늘어남.

이러한 변화는 2026년부터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자 수 증가(2개사→3개사) 및 이와 연동된 사용허가 면적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음. 그런데 병무청은 2026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면적을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기존 2개사가 사용하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3개사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병무청은 2026년 1월 초 예정된 입주공사 및 2026년 1월 중순 예정된 사용허가 과정에서 사용면적이 변동될 경우 이후 회계연도부터 관련 사항을 세입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8)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건물대여료 예산 산출내역(나라사랑카드 발급소 관련)]

구분	2025		2026(안)	
	예산액(천원)	면적(㎡)	예산액(천원)	면적(㎡)
서울청	17,600	93.54	17,804	93.54
부산울산청	5,300	61.20	5,402	61.20
대구경북청	9,940	84.00	9,886	84.00
경인청	7,040	71.74	20,724	143.48
	3,520	71.80		
광주전남청	6,100	53.58	6,244	53.58
대전충남청	4,320	47.74	4,298	47.74
강원청	2,700	50.76	2,616	50.76
충북청	5,226	174.98	5,242	174.98
전북청	1,080	35.18	1,016	35.18
경남청	3,200	40.00	3,428	40.00
인천지청	2,550	28.00	2,504	28.00
경기북부지청	6,600	60.00	6,542	60.00
강원영동지청	1,600	30.40	1,558	30.40
합 계	76,776	902.92	87,264	902.86

자료: 병무청

그러나 이러한 병무청의 설명은 2025년 8월말 현재 2026년도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운영자(3개사)에 대한 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임. 이처럼 건물사용료 세입예산안은 병무청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적정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2026년도 건물대여료 세입예산안은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사용허가 면적의 증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임.

<세 출>

2.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낙찰단가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 단가의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입영판정 검사자에 대해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2,100만원(△82.0%) 감액된 6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병역판정검사	21,812	21,812	18,228	△3,584	△16.4
잠복결핵 위탁검사	3,560	3,560	639	△2,921	△82.0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자[10)]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2026년부터 잠복결핵 검사대상을 사회복무요원[11)] 입영판정검사자[12)13)]로 축소 조정하였음. 이러한

9) 일반회계-병역판정검사(1131-301)(병역지원국)

10)「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11)「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도변경에 따라 병무청은 2025년의 경우 잠복결핵 검사대상 인원을 22만 2,525명으로 추정하였으나 2026년의 경우 검사대상 인원을 1만 9,012명으로 추정하였음.

또한, 병무청은 2026년 위탁검사 단가를 2025년 단가(1만 6,000원)보다 100% 이상 증가된 3만 3,600원으로 추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산출내역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 잠복결핵 위탁검사비: 35억 6,000만원 - 인원(222,525명) × 단가(**16,000원**)	○ 잠복결핵 위탁검사비: 6억 3,900만원 - 인원(19,012명) × 단가(**33,600원**)

자료: 병무청

한편, 병무청은 위탁사업자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방식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14]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능력평가(배점: 80점, 평가: 병무청) 및 입찰가격평가(배점: 20점, 평가: 조달청)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하고 있음.

병무청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미만인 업체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예산액) 대비 70% 미만인 업체의 경우 가격점수의 30%에 해당하는 평점만을 부여(페널티 부여)하고 있음.[15]

---

12)「병역법」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3)「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나. 검토의견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은 그동안의 낙찰단가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업체들의 견적서를 근거로 예산편성 단가가 대폭 증액(16,000원→33,600원)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편성 단가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의 표는 2022년~2025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의 낙찰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낙찰률은 2022년 99.5%, 2023년 90.6%, 2024년 77.5%, 2025년 71.0%로 하락하였음. 같은 기간 낙찰단가는 2022년 1만 5,570원에서 2023년 1만 4,500원, 2024년 1만 2,400원, 2025년 1만 1,358원으로 꾸준히 하락하였음.

[2022년~2025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낙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결산		낙찰차액 (A-B)	낙찰률 (B/A)
	예산액(A)	1인당 단가	낙찰액(B)	1인당 단가		
2022	4,069	16,000원	4,047	15,570원	22	99.5
2023	4,014	16,000원	3,638	14,500원	376	90.6
2024	3,688	16,000원	2,858	12,400원	830	77.5
2025	3,560	16,000원	2,527	11,358원	1,033	71.0

자료: 병무청

이처럼 최근 4년간 이 사업의 낙찰단가는 1만 1,358원~1만 5,570원으로 같은 기간의 예산편성 단가인 1만 6,000원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점차 하락하고 있음. 그럼에도 병무청은 2026년도 예산편성 단가를 2025년도 예산편성 단가보다 100% 이상 증가한 3만 3,600원으로 설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2026년 검사대상 인원(1만 9,012명 추정)이 2025년 검사대상 인원(22만 2,525명 추정)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대규모 위탁검사에 따른 단가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이에 기존의 낙찰단가를 감안하지 않고 수탁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단가를 참고하여 예산편성 단가를 도출하였다는 입장임.

---

15) □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사업자선정 방식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80점) 및 입찰가격평가(20점)
  -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병무청) /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세부방법: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2026년도 예산안(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단가 산출근거]

구분	수탁업체 견적서			
	a	b	c	d
검사인원	19,012명			
편성단가	33,600원 (견적기준)	47,421원 (견적기준)	53,650원 (견적기준)	54,610원 (견적기준)

자료: 병무청

그러나 이 사업은 이러한 병무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 예산편성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이 사업은 위탁사업자 선정 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예산액)의 70% 미만인 업체에 낮은 평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적용되어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다소 제한되는 사업임. 즉, 이 사업은 예산편성 단가가 처음부터 높게 설정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에 어려움이 있음.

[2025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공고문 내용(입찰 방법)]

입찰 방법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 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병무청이 예산편성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업체의 제시단가(견적기준)는 실제 위탁사업자 선정 시 해당 업체의 입찰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일례로, 병무청이 견적서를 제출받은 업체 중 2개 업체는 2025년도 의료보험수가와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단가를 제시하였으나, 대규모 위탁검사에 따른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일반경쟁입찰 시 더 낮은 단가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됨.

[최근 5년간 의료보험수가(시중가)]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 액	45,920원	47,290원	48,280원	53,360원	53,650원

자료: 병무청

셋째, 검사대상 인원이 더 적은 국군의무사령부(1,880명) 및 포항해군병원(100명)의 발주용역 낙찰단가는 각각 3만 6,240원 및 3만 8,000원으로, 대규모 위탁검사에 따른 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2026년도 이 사업(검사대상: 1만 9,012명 추정)의 낙찰단가는 이러한 유관기관 발주용역의 낙찰단가보다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큼.

[2025년도 병무청 및 유관기관의 잠복결핵 위탁검사용역 계약단가 비교]

구분	병무청 (일반경쟁)	국군의무사령부 (제한경쟁)	공군본부 (수의계약)	해군포항병원
검사인원	222,525명	1,880명	293명	100명
편성단가	16,000원	42,000원	37,000원	52,000원
계약단가	11,358원	36,240원	36,240원	38,000원

자료: 병무청

넷째, 그동안 병무청은 실제 낙찰단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동일한 예산편성 단가(1만 6,000원)를 적용하는 등 적정 예산편성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일례로, 병무청은 2024년 낙찰단가가 예산편성 단가(1만 6,000원)의 77.5%에 불과한 1만 2,400원임을 인지하고서도, 2024년도와 동일한 예산편성 단가(1만 6,000원)를 적용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 결과 2025년도 이 사업은 낙찰차액 규모가 전년도 대비 확대되었음.

[2024년~2025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낙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결산		낙찰차액 (A-B)	낙찰률 (B/A)
	예산액(A)	1인당 단가	낙찰액(B)	1인당 단가		
2024	3,688	16,000원	2,858	12,400원	830	77.5
2025	3,560	16,000원	2,527	11,358원	1,033	71.0

자료: 병무청

특히, 최저입찰률(70.0%[16])에 근접한 71.0%의 낙찰률을 보인다는 점,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최저입찰률(70.0%)에 근접한 입찰률로 투찰하였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병무청이 전년도 실제 낙찰단가를 고려하여 더 낮은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이 사업 집행예산의 절감은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임.

16)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예산액)의 70% 미만인 업체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이 부여되는 페널티를 받게 됨.

[2025년도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 입찰참여업체별 입찰 현황]

순위	업체명	입찰금액(원)	입찰률(%)	입찰일자	비고
1	A	2,527,438,950	**71.0**	2024-12-05	정상입찰
2	B	2,730,000,000	**76.7**	2024-12-05	정상입찰
3	C	2,559,037,500	**71.9**	2024-12-06	정상입찰
4	D	2,494,505,250	**70.1**	2024-12-05	정상입찰
5	E	2,892,825,000	**81.3**	2024-12-06	정상입찰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요약하면, 이 사업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요구됨에도 병무청의 예산 절감 및 적정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낙찰단가, 유관기관이 발주한 유사용역의 낙찰단가, 대규모 위탁검사에 따른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체에서 제시한 단가만을 근거로 단가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편성 단가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중도해지율 등을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병역법」제79조의2[17] 및 같은 법 시행령[18]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19]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7억 8,400만원(16.4%) 증액된 2,402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20]

[2026년도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사회복무이행지원	212,733	212,733	247,536	34,803	16.4
사회복귀준비금	206,465	206,465	240,249	33,784	16.4

17)「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9) □ 장병내일준비적금: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 ○ 가입대상: 사회복무요원(병무청) / 현역병, 상근예비역(국방부) / 대체복무요원(법무부)
  * 잔여 복무기간 1개월 이상자 적금 가입 가능(2024. 6. 1. 부 시행)
- ○ 가입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사회복무요원 최대 21개월
- ○ 가입한도: (2024년 12월까지)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2025년 1월부터)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
  * 2024. 12. 31. 이전 가입자 : 5만원 단위 납입한도 상향 가능, 복무중 1회만 변경 가능
  * 2025. 1. 2. 이후 가입자 : 5만원 단위로 납입한도 설정 가능, 납입한도 중도변경 불가

20) 일반회계-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사회복무국)

병무청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만기 해지 시 적금 입금액에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월 최대 매칭지원금은 2022년 14.1만원,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이후 55만원임.

[연도별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액 및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보수(월액, 병장 기준)	67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적금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입금액의) 100%	(입금액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 해지한 다음 달 25일[21]에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음.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급절차]

사회복무요원	⇨	은 행	⇨	병무청
· 21개월 소집해제 후 적금 만기 해지 신청		· 개인별 매칭지원금 금액 및 계좌번호 통보		· 복무기간 및 금액 등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2026년도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급대상인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의 소집해제예정자 수(2만 4,597명), 해당 인원의 적금 가입률(2025년 6월말 기준, 92.9%), 가입 기간(20.5개월) 및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예상액(51.3만원[22])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함.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2025) 2,064억 6,500만원 → (2026안) 2,402억 4,900만원 - (산출) 24,597명(소집해제예정자 수) × 92.9%(가입률) × 20.5개월(가입 기간) × 513천원(지원단가)

자료: 병무청

21) 일례로 3월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시 4월 25일에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이 지급됨.

22) 월평균 매칭지원금 51.3만원의 경우 연도별 적금 납입금액을 각각 2024년 38.9만원, 2025년 53.6만원, 2026년 54만원으로 추정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 월평균 적금입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사회복귀준비금 매칭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고 함.

나. 검토의견

첫째,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중도해지율 등을 감안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점검될 필요가 있음.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2년 186억 2,800만원, 2023년 203억 9,600만원, 2024년 174억 9,200만원에 달함. 2025년 7월말 기준 집행율은 50.0%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 추이가 유지될 경우 이 사업은 2025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임.

[연도별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집행률(B/A)
2022	30,301	11,673	18,628	38.5
2023	86,557	66,161	20,396	76.4
2024	159,740	142,248	17,492	89.0
2025.7	206,465	103,190	103,275	50.0

자료: 병무청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적금 가입 인원이 예상치보다 증가될 경우 발생하게 될 예산액 부족이 우려[23]되어 가입 기간 및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예상액 등을 최대치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실제 적금 가입률, 가입 기간 등이 낮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설명함.

[2023~2024년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상세집행 실적]

구 분		금액	가입률	가입금액			가입기간
2023	편성	86,557백만원	77.5% (24,647명)	2022년	2023년		21개월
				40만원	40만원		
	집행	66,161백만원	74.9% (25,432명)	37만원			19개월
2024	편성	159,740백만원	88.2% (26,328명)	2022년	2023년	2024년	21개월
				38만원	38만원	40만원	
	집행	142,248백만원	90.6% (27,053명)	38만원			18개월

자료: 병무청

23)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402억 4,900만원으로, 이는 병무청 총지출 5,177억 8,200만원의 46.4%에 달함. 부처 내 예산 금액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사업 예산에서의 이·전용 등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임.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병무청의 예산안 편성이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며,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함.

일례로, 병무청은 2025년 6월말 기준 적금 가입률 92.9%를 2026년도 예산안 산출에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적금 만기해지 다음 달에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는 점, 적금 가입자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방식임.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규정]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음의 표는 적금 만기월[24]별 중도해지율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도해지율은 2.8%~4.9%의 적지 않은 수치임. 이는 특정 시점의 적금 가입률이 만기일까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금 가입률 변동에 따른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원금액의 변동도 무시할 수 없음을 의미함.[25]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현황]

적금 만기월	가입 계좌(A)	중도해지 계좌 수(B)	중도해지율(B/A)
2025.1	5,250개	241개	4.6%
2025.2	5,400개	255개	4.7%
2025.3	2,865개	110개	3.8%
2025.4	3,576개	175개	4.9%
2025.5	4,655개	214개	4.6%
2025.6	2,578개	101개	3.9%
2025.7	4,060개	138개	3.4%
2025.8	3,836개	156개	4.1%
2025.9	2,440개	93개	3.8%
2025.10	7,453개	212개	2.8%
2025.11	5,193개	158개	3.0%
2025.12	4,810개	149개	3.1%

주) 적금 만기월 2025.1월~7월의 자료는 최종 중도해지율을 나타낸 것이고, 적금 만기월 2025.8월~12월의 자료는 2025년 7월말 기준 중도해지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병무청

24) 적금 만기월은 적금 가입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예정월과 일치함.

25) 이 경우 병무청은 적금 만기월별(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월별) 중도해지율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적금 가입률을 조정(하향 조정)하여 예산안 산출에 적용한다면,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병무청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중도해지율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26]

둘째, 병무청은 2024년에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병무청 지하상황실 설치 사업을 추진한바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병무청은 2024년 7월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 중 4억 2,000만원을 이 사업과 사업목적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병무청 지하상황실 설치' 사업 신규추진을 위해 전용(감)하였음[27].

[2024년도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 전용 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사업명		세부사업 명	목-세목	
승인전용 (2024.7.25.)	사회복귀준비금	140백만원	병무행정운영 (7134-317)	공사비(420-03)	지하상황실 설치
		280백만원		자산취득비(430-01)	

자료: 병무청

병무청 지하상황실 설치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임.[28]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하상황실 구축 기간이 단시간 소요(약 2개월)된 것으로 볼 때, 병무청은 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연초에 사업을 수행하여도 무방하였을 것으로 보임.

---

26)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적금 가입률, 납입액, 가입 기간 등 그동안의 실적을 최대한 반영(예측)하여 과다한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안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2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8)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병무청 지하상황실 공사일정 및 공사비용]

구 분	공사일정	집행내역
실 내 공 사	2024.10. 7.~11. 4.	48,866천원
전 기 공 사	2024.10. 7.~11. 4.	32,510천원
통 신 공 사	2024.10. 7.~11. 4.	19,860천원
소 방 공 사	2024.10. 7.~11. 4.	8,250천원
국가지도통신 이전공사	2024.11. 4.~11.30.	17,721천원
합 계	-	127,20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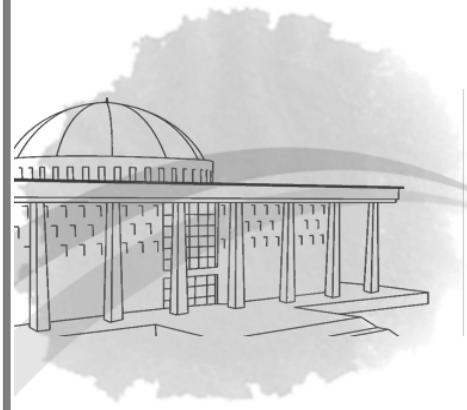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주) 공사비(420-03) 집행내역을 나타낸 것임
자료: 병무청

만약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예산액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였다면 사회복귀준비금 사업과 사업목적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신규 사업을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집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방위사업청

※ 비공개 (227 ~ 312쪽)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은 1,7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원(10.1%) 증가함.[1)]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631	1,631	1,796	165	10.1
총수입	1,631	1,631	1,796	165	10.1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은 76조 4,426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3,587억원(6.1%) 증가함.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720,839	859,822	764,426	43,587	6.1
총지출	720,839	859,822	764,426	43,587	6.1

나. 예산안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원(10.1%) 증가함.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434	1,434	1,531	97	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7	197	265	68	34.5
합 계	1,631	1,631	1,796	165	10.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6조 4,426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3,587억원(6.0%) 증가함.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97,208	825,548	727,424	30,216	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631	34,274	37,002	13,371	56.5
합 계	720,839	859,822	764,426	43,587	6.0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행정안전부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3개(952억 6,9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R&D)’은 재난안전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한 3대 전략분야(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활용 핵심기술 확보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67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은 각 부처가 중복투자 없이 공통업무에 AI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6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울러,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은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 벤처기업들의 사업화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5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20,608
2	진실화해위원회 청산 운영	300
3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	3,390
4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5,000
5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215
6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사업(R&D)	26,766
7	재난안전중점기술로드맵연계형기술개발(R&D)	1,500
8	재난안전산업 우수 기술개발지원(R&D)	2,000
9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2,000
10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18,36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4,935
12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26
13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164
총지출		95,269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보통교부세’, ‘재난대책비(보조)’,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마을기업육성사업’ 사업 등 총 41개임.[3)]

‘보통교부세’의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3,014억 5,900만원(2.2%)이 증액된 61조 7,03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26년 내국세 추정액이 증가(2025년 338.1조원→2026년 343.9조원)한 데 따른 것임.

‘재난대책비(보조)’의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00억 2,000만원(180.6%)이 증액된 1조 10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25년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8,100억원)의 이연집행을 위한 것임.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의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억 9,400만원(143.7%)이 증액된 12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재난안전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경비(76억 8,000만원)의 신규 반영에 따른 것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보통교부세	60,401,769	61,703,228	1,301,459	2.2
2	지역현안특별교부세	658,551	763,307	104,756	15.9
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4,638	190,826	26,188	15.9
4	부동산교부세	4,004,709	4,698,208	693,499	17.3
5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23,189	954,133	130,944	15.9
6	소방안전교부세	985,649	1,036,153	50,504	5.1
7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74,154	1,048,810	174,656	20.0
8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10,530	26,152	15,622	148.4
9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9,058	22,599	13,541	149.5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공주센터신축(정보화)	1,614	4,373	2,759	170.9
11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545	3,393	2,848	522.6
12	국과수기본경비(총액)	3,968	5,533	1,565	39.4
13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83,099	98,197	15,098	18.2
14	재난대책비(보조)	360,020	1,010,040	650,020	180.6
1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1,954	3,188	1,234	63.2
16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16,642	30,318	13,676	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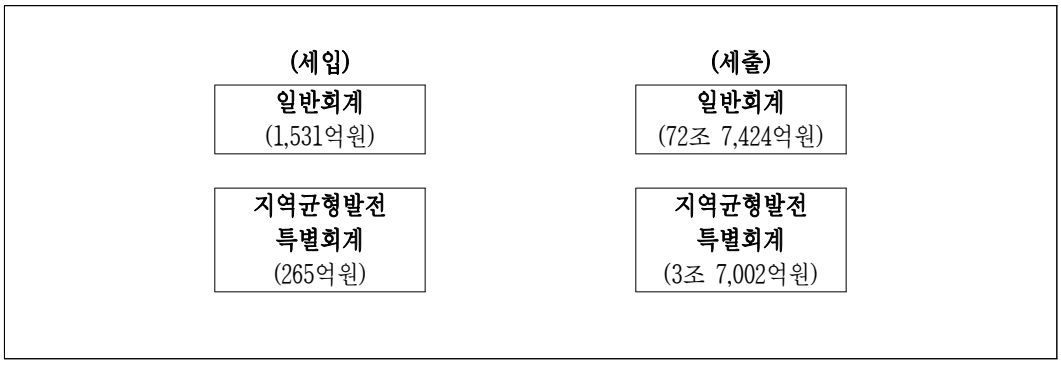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17	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기술개발(R&D)	2,000	2,600	600	30.0
18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R&D)	1,270	1,791	521	41.0
19	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위험성분석 기술개발(R&D)	1,500	2,600	1,100	73.3
20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11,867	18,925	7,058	59.5
21	재난구호지원	900	1,221	321	35.7
22	재난안전의무보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852	1,245	393	46.1
23	B-1정부노후시설정비	353	574	221	62.6
24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6,736	10,592	3,856	57.2
25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140	369	229	163.6
26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4,089	6,505	2,416	59.1
27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156	388	232	148.7
28	지역금융활성화	87	114	27	31.0
29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112,752	129,073	16,321	14.5
30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5,075	12,369	7,294	143.7
31	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	65	2,400	2,335	3,592.3
32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5,392	7,371	1,979	36.7
33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정보화)	1,339	3,152	1,813	13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4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8,643	11,581	2,938	34.0
35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기술개발(2단계) (R&D)	5,600	8,400	2,800	50.0
36	마을기업 육성사업	1,675	5,250	3,575	213.4
37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8,915	11,914	2,999	33.6
38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2,835	3,742	907	32.0
39	지역발전활성화	5,328	10,777	5,259	102.3
40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321	17,820	4,499	33.8
4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1,150,000	1,150,000	순증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체감형 사업을 중심으로 재난안전 대응, 일상 속 국민안전 강화, 지방시대 구현, 인공지능 활용 혁신촉진 등에 중점 투자하였다는 점임.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난대책비(보조)(3,600억원→1조 100억원) 및 재해위험지역정비(8,741억원→1조 4,888억원)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조 1,500억원, 순증)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16억원→52억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늘렸으며,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206억원, 순증) 및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50억→123억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였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부처효율화 AI 지원사업 사업 및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안전산업펀드 사업을 통해 조성될 국민안전사업펀드는 재난안전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국가재정이 주목적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주목적 투자비율의 하한선을 현재 고려 중인 60%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에서는 2026년부터 사업의 기본방향 및 운영체계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생활인구·정주인구 유입 등의 기대효과가 체계적으로 측정되고 효과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지역상품권 발행기반 조성사업은 2026년 수도권 지자체에 3%, 비수도권 지자체에 5%의 국비지원율을 설정하여 차등을 두었는데 이 구분이 지원대상 지자체의 재정력·인구감소 위기 수준 등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 국비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등 3개 세부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추진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지역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총 51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내역사업인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 추진’** 사업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및 착한가격업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억 2,200만원 감액(△97.0%)된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5)]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1349-301)(지방재정경제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시계정)-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1349-301)(지방재정경제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도계정)-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1349-301)(지방재정경제실)

5) 일반회계(세출)-지역경제활성화(1349-301)(지방재정경제실)

[2026년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주]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	-	4,935	4,935	순증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	-	164	164	순증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	-	26	26	순증
합계	**-**	**-**	**5,125**	**5,125**	**순증**
지역경제활성화	3,819	3,819	690	△3,129	△81.9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 추진	3,117	3,117	95	△3,022	△97.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3,060	3,060	-	△3,060	순감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 추진	13	13	13	-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민간클라우드 전환	-	-	38	38	순증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44	44	44	-	-

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지역경제활성화'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6년 예산안 기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등 3개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되었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등 3개 세부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 국비보조율 50%)로 편성되었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관련 2개 내내역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각각 민간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3,800만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210-15목)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관련 2개 내내역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9억 3,500만원
- 11,611개소 × 850,000원 × 50% ≒ 49억 3,500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억 6,400만원
- 386개소 × 850,000원 × 50% = 1억 6,400만원
- 조정재원(△5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600만원
- 61개소× 850,000원 × 50% = 2,592.5만원
- 조정재원(7.5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민간클라우드 전환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800만원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3,800만원

②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 관리용역비(210-15) : 4,400만원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4,4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첫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 3개 사업(자율, 제주, 세종 등)은 지원대상 지자체 간 재정여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국비보조율을 전년 대비 상향조정(30%→50%)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의 국비보조율을 2025년 30%에서 2026년 예산안 기준 50%로 상향조정하였고, 그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대상 국비 지원규모도 2025년 기준 30억 6,000만원에서 2026년 기준 51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500만원(67.5%) 증액되었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2025년 예산-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억 6,000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30억 6,000만원 - 12,000개소×85만원 ×국비보조율30% = 30억 6,000만원	51억 2,500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51억 2,500만원 - (세종·제주 外 15개 시도) 11,611개소 × 850,000원 ×국비보조율50% ≒ 49억 3,500만원 - (제주) 386개소 × 850,000원 ×국비보조율50% ≒ 1억 6,400만원 - (세종) 61개소× 850,000원 ×국비보조율50% ≒ 2,6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국비 보조율 상향을 지속 건의하였고, 물가 안정과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자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하고 있고 시도별 재정력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국비보조율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재정자립도 기준 재정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하면서 다수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서울, 경기, 부산 및 인천 등에 대해서도 국비보조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음.[6)]

[시도별 착한가격업소 분포 및 재정력 비교]

(단위: 개소, %, 억원)

시도	착한가격업소 지역별 분포[1]		시도별 재정력[2]		
	착한가격업소 수	지역별 비중	시도별 본청 예산규모	재정자립도[3]	재정자주도[4]
전체	10,954	100.0	836,608	40.6	50.9
강원	692	6.3	20,270	29.9	45.8
경기	1,692	15.4	161,485	49.7	49.9
경남	788	7.2	36,288	34.0	42.9
경북	672	6.1	30,723	26.9	42.5
광주	345	3.1	22,599	37.0	56.1
대구	517	4.7	34,707	40.8	56.9
대전	516	4.7	21,055	39.0	58.5
부산	789	7.2	54,236	42.0	54.2
서울	1,814	16.6	249,366	76.4	76.6
세종	43	0.4	10,019	62.7	70.7
울산	232	2.1	18,271	44.4	64.1
인천	442	4.0	54,970	51.2	59.5
전남	597	5.5	25,730	26.3	40.5
전북	458	4.2	21,716	25.2	38.8
제주	360	3.3	23,842	39.5	70.8
충남	497	4.5	31,400	33.3	43.4
충북	500	4.6	19,933	31.8	45.2

주 1) 2025년 6월말 기준
2) 시도별 본청의 2025년 본예산 기준
3)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규모 / 예산규모
4)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규모 / 예산규모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효과가 개별 업소의 매출 및 생존율 증대나 해당 지역의 물가안정 등 주로 지역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7] 등을 고려할 때, 시혜적 관점에서 국비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보다,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상향폭을 차등 조정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8]

6) 지원 예정인 업소 수 자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2025년 12,000개소→2026년 12,058개소 지원 예정)임.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4.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8) 참고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국비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 제122호(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를 근거로 하고 있어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지정될 수 있음.

둘째,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민간클라우드 전환 등 2개 내역사업에는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4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분류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경비가 편성되어 있는 바, 정보시스템 통폐합 기조를 고려하여 통폐합 대상인 홈페이지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는 업무영향도(30점), 사용자 수(35점) 및 서비스 파급도(0점) 등 3개 평가기준에 따라 통폐합 대상인 4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분류되고 있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평가결과]

평가기준	점수	평가결과
업무영향도 (40)	1등급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국민) 신고앱(전화로 신고 가능), 상담앱(전화로 상담 가능) 등
	40	
	35	
	30	
사용자 수 (50)	1등급	○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 시스템 접속자 수(중복 사용자 포함) **- 일 평균 접속자 수: 1천명 미만**
	50	
	45	
	40	
	35	
서비스 파급도 (10)	1등급	○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 *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2차 연계 포함) **- 0개**
	10	
	5	
	0	
등급산정 (100)	1등급	○ 등급산정: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
	2등급	
	3등급	
	4등급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의 유지 및 민간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경비를 2026년 예산안에 반영(8,200만원)하고 있고, 특히 민간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사업비는 신규로 반영된 것임.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가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 개편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어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상 상호 연계가 어렵고, 주 이용자가 서민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해당 홈페이지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 후기·업소 추천 및 업소 오류 신고 등의 민원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비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정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통폐합 대상인 정보시스템을 명확한 예외사유 없이 지속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4등급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을 이용자 편의제공을 이유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현 예산안대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운영을 지속하게 되면 운영비용이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2025년 4,400만원→2026년 8,200만원)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됨.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운영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은 보안성이 갖춰진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부처·지자체 공통 업무를 AI 서비스로 효율화·공통 모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6억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9)]

[2026년도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B-A)/A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	-	20,608	20,608	순증
부처효율화 AI 지원사업	-	-	10,220	10,220	순증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	-	10,220	10,220	순증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	-	168	168	순증

내역사업인 **‘부처효율화 AI 지원’** 사업은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5개 과제의 수행을 예정하여 과제당 평균단가 20억 4,400만원을 반영한 102억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를 거쳐 여러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AI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국비지원율 50%)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3개 과제의 수행을 예정하여 과제당 평균단가 68억 1,300만원에 국비지원율 50%를 반영한 102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9) 일반회계-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2039-508)(디지털정부혁신실)

내역사업인 **‘공공 AI사업지원센터’** 사업은 AX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연구원 4명에 대한 12개월분 인건비 지급을 예정하여 1억 6,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었음.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부처효율화 AI 지원사업>
○ 사업출연금(350-02목): 102억 2,200만원
- (산출) 서비스 개발비 20억 4,400만원 × 5개 과제 = 102억 2,200만원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 사업출연금(350-02목): 102억 2,200만원
- (산출) 서비스 개발비 68억 1,300만원 × 3개 과제 × 국비 50% = 102억 2,200만원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 사업출연금(350-02목): 1억 6,800만원
- (산출) 컨설팅 인건비: (책임연구원 3명 + 연구원 1명) × 12개월 = 1억 6,8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첫째, 부처효율화 AI 지원사업 및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은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10]의 일환으로, 각 기관이 차년도 정보화사업의 주요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11]

이는 차년도 정보화사업의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도록 하여 사업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실행계획과의 연관 하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부처효율화 AI 지원사업 및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사업의 경우 각각 부처나 지자체의 공통업무에 관한 AI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산출물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예산안이 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임.

이는 차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비검토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구현기능 및 소요비용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도록 한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소지가 있음.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위 2개 사업들에 대해 실시한 정보화사업 예비검토 결과를 보면, 개별사업 수준에서 내용의 타당성 및 유사중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 각 기관에 의해 추진될 '기관별 맞춤 AI 구축 사업'과의 연계·통합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1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11)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제12조(예비검토) ① 다음 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예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2개 내역사업 관련 2026년도 정보화사업 예비검토 결과]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비검토 의견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AI 정책수립 및 서비스 지원	정부 효율화 AI 지원사업	② 연계·통합 : 중앙, 지자체 등 다수 기관에서 기관별 맞춤 AI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해당 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② 연계·통합 : 중앙, 지자체 등 다수 기관에서 기관별 맞춤 AI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해당 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주)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등은 요구안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공모를 통해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없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모를 거쳐 각 기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바, 국회가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제출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부처효율화 AI 지원사업의 추진에 활용될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경우 2026년에는 2개 기능(내·외부 자료검색·요약, 문서초안 작성 등)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행정안전부는 2026년 제공되는 기능만으로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AI 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을 사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부처효율화 AI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관련 경험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타 부처가 사용하게 될 AI 서비스의 개발을 행정안전부가 대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됨.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재 다른 세부사업[12]을 통해 개발 중인 ‘범정부 AI 공통기반’(이하 “AI 공통기반”)을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13]

그런데 AI 공통기반 관련 연도별 추진내용을 보면, 2025년 사업을 통해서는 전부처 공통으로 활용하는 범용적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2개 기능(내·외부 자료검색·요약 및 문서초안 작성 등)만이 지원될 예정이고, 2026년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야 ‘문서검토·판단’, ‘민원상담 도우미’ 등 보다 고도화된 기능이 지원될 예정임.

[범정부 AI 공통기반 연도별 추진내용(2025-2026)]

〈 2025년 추진내용 〉
○ (공통서비스 개선) 정부 내 공통 활용 가능한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데이터를 구축, 범용적 AI 서비스 개선 및 제공
- 공공행정 활용에 적합하도록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민간모델에 적용하고, 특정분야 정보검색을 위한 RAG 구축·공동활용
※ (학습데이터) 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25만건, (RAG)보도자료, 보고서 등 초기 80만건
- 전부처 공통으로 활용하는 범용적 AI 서비스* 개선 및 제공
*** 주요 서비스 : ▲내·외부 자료검색·요약, ▲문서초안작성 등**
〈 2026년 추진내용 〉
○ (공통서비스 확대) 사용자 수요, 활용성을 반영한 범용적 AI 서비스고도화 및 서비스 추가 제공
※ 확대 서비스(안) : ▲문서검토·판단, ▲민원상담 도우미 ▲25년 서비스 고도화
○ (특화 AI 지원) 공통서비스에 정부·지자체 각 기관의 고유데이터를 결합*한 특화 AI 서비스 개발·운영환경 제공 및 사전 개발 등 지원
- AI 서비스 도입 사전협의 및 기술지원 절차 수립 등
※ 관련 기능 구현 및 절차 마련 등 2025년부터 추진 가능한 부분은 일부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12) 일반회계(세출)-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2039-506)(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13) 참고로, AI 공통기반은 AI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개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음.

따라서, 2026년 AI 공통기반에 의해 AI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내·외부 자료검색·요약 및 문서초안 작성 등 2개 기능을 활용하는 AI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다 효율적인 개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수요조사를 거쳐 확인된 업무 중 2026년부터 개발에 지원될 수 있는 2개 기능이 활용될 AI 서비스들부터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예시)를 보면, 2개 기능만으로는 각 부처가 희망하는 AI 서비스 중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특화 업무' 분야에 속하는 AI 서비스들은 민감한 내용의 문서(예: 조세심판 신청서 등)에 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민원' 분야에 속하는 AI 서비스들 역시 민원 대응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어서, 차차년도(2027년)에야 지원될 수 있는 기능들(문서검토·판단, 민원상담 도우미)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예시)]

구분	분야	기관명	주요 내용
1	특화 업무	국조실	(국민) 조세 심판을 위한 신청서 작성 지원 (공무원) 자료 요약, 사례 제공, 조사 보고서 지원
2		경찰청	수사 사례 제공 및 핵심 요약, 보고서 작성 지원 등
3		보훈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진료 기록 분석 및 요약
4	민원	기재부	분산된 보조금 정보를 통합하여 안내(챗봇 등)
5		질병청	분산된 질병 정보를 통합하여 안내(AI 민원 안내)
6		관세청	다양한 개인 통관 물품에 대한 종합 상담
7	안내	유산청	내외국인, 학생 등 수요자 맞춤형 국가유산 해설
8		문체부	AI가 자연어 기반으로 도서에 대한 정보 안내
9	업무포털	법무부	부내 업무자료 검색, 요약, 초안 작성 등
10		기후부	
11	데이터 구축	국가데이터처	AI가 학습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 지원
12	기타	통일부/농림부	AI가 기존 국회 답변자료를 학습, 답변 초안 생성 등
13		조달청	AI가 기존 자료 학습,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

주) 조사기간: 2025.5.29.~6.19.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AI 공통기반의 제한된 기능만을 활용하고도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으면서 각 부처가 희망하는 AI 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업수요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사업은 ‘공통모델화’의 내용과 이점이 불분명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계획상 지자체 공통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조사한 다음, 과제당 개발비용을 분담할 3-4개 정도의 지자체를 모집하여, 행정안전부가 피출연기관인 NIA에 해당 AI 서비스의 개발용역을 위탁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 공통으로 주민 수요가 높은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모델화’를 사업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통모델화’가 각 지자체가 개발된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면, 현 계획상 개발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되는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공통모델화’에 따른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편익은 다른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향유하게 되는 구조여서 사업에 참가할 유인이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인 ‘공통모델화’의 내용과 이점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신규): 가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을 사전에 수행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은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40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41,634	41,634	40,662	△972	△2.3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26,410	26,410	30,506	4,096	15.5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	-	4,010	4,010	순증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전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고 있음.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 사업출연금(350-02목): 40억 1,000만원
- (산출) DB당 AI학습용 공공데이터 구축·가공비 4억 100만원 × 10개 = 40억 1,0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14) 일반회계(세출)-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2046-502)(디지털정부혁신실)

나. 검토의견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은 현 계획상 사업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가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공데이터 선정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은 AI 서비스 개발 종사자들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100개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선정(「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하고 해당 공공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가공하여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으로 계획되었음.

그런데 개방 대상 데이터는 주로 비정형 데이터이므로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계획상 가공된 공공데이터의 유지관리비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여서 관계 부처와 공공데이터 제공조건을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유한 110콜센터 상담데이터를 제공받아 가공하기 위한 협의과정에만 약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원데이터를 가공에 필요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에 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 바 있음.[15)]

[2024-2025년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 추진경과]

연.월	단계별 사업경과
2023.6.15.	행안부-권익위 국민신문고 데이터 활용 협의 **(국민신문고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 110콜센터 상담데이터를 활용하기로 결정)**
2024.2.	행안부-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1차 협의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활용을 위한 최초 협의)**
2024.4.~2024.8.	사업 추진내용 구체화
2024.9.11.	행안부-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2차 협의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활용을 위한 최종 협의)**
2024.11.20.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제공 협의 완료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2024.12.	학습데이터 자동 생성 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조달 발주
2025.1.~2025.4.	**사업 추진 및 잔여금액 실집행 완료** **(110콜센터 상담원천데이터(TXT) 제공 - 25.2.1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15) 이 사업은 2024회계연도 단년도 사업이었으나 차년도인 2025년 4월에야 완료되었고, 2024년 집행률은 15.1%에 불과하였음.

이는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여 개방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재차 갱신·가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 보유기관에서는 데이터 개방에 따른 지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가공하여 개방할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신규): 사업의 단계적 추진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은 재난안전데이터를 품질관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AI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76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5,075	5,075	12,369	7,294	143.7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	-	7,680	7,680	순증
재난안전 데이터 품질관리	-	-	1,440	1,440	순증
중앙-지자체 AI 학습데이터 구축	-	-	1,410	1,410	순증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의 2026년 예산안 76억 8,000만원은 전액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되었음.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재난안전 데이터 품질관리>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4억 4,000만원

<중앙-지자체 AI 학습데이터 구축>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4억 1,0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내내역사업인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사업은 학계·민간기업에 고품질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여 관련 연구, 서비스 개발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2026년 예산안에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약 1,800종의 데이터 중 간접 연계되고 있는 600종의 데이터의 직접 연계를 위한 경비 14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16) 일반회계(세출)-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3032-509)(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내내역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2026년 예산안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4억 4,000만원
개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25.1월 개통) 총 1,800종의 데이터를 연계 완료했으나, - 이 중 다수는 재난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간접 연계되고 있음 - 600종 데이터는 직접 연계를 추진하여, 연계 방식·주기·정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데이터 품질을 확보할 예정
주요 내용	○ 연계 출처(기관명·시스템명), 연계 방식(API, 파일 전송 등), 갱신 주기 기록 ○ 데이터명, 단위, 형식, 코드체계, 생성주기, 품질지표 (정확성·완전성·일관성) 정의 ○ 데이터 최신성 확인(연계주기 준수 여부), 값의 정확성(통계 검증), 결측치·이상치 확인, 표준코드 준수 여부 ○ 각 데이터셋별 점검 결과 기록, 품질진단 보고서 - 직접 연계 600종에 대한 진단결과 ○ 데이터 수집·연계·검증·배포 단계별 절차 정의 ○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 갱신 주기 관리 방법 포함
결과물 활용방안	학계·민간기업에 고품질 재난안전 데이터를 제공하여 재난안전 관련 연구, 서비스 개발, 산업적 활용 촉진

자료: 행정안전부

내내역사업인 **'중앙-지자체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은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통해 AI 알고리즘 개발 및 재난안전정책 결정 지원을 통한 재난안전정책의 대응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7건의 데이터 분석 및 재난안전분야 정책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14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중앙-지자체 AI 학습데이터 구축 내내역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중앙-지자체 AI 학습데이터 구축	
2026년 예산안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4억 1,000만원
개요	○ (목적)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통해 AI알고리즘 개발 및 재난안전 정책 결정 지원을 통한 재난안전정책의 대응성, 신뢰성 제고 ○ (대상기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 (내용) 데이터 분석(7건)을 통한 재난안전분야 정책결정 지원
주요 내용	○ 재난의 실시간 탐지·예측을 위한 AI학습데이터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수립 시 활용을 위한 AI학습데이터 - 기관의 당해년도 업무 현안의 해결 및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과제 ○ 재난안전 위험지역, 취약지역 도출을 위한 AI학습데이터 구축 ○ LLM 활용을 위한 재난안전 검색증강생성(RAG) 구축
결과물 활용방안	○ (결과물) AI 학습데이터, AI 알고리즘 ○ (기관 활용) 분석과제 결과물 수요 제출기관 제공하여 기관의 재난안전대응·정책에 반영 ○ (공유) 활용데이터 목록, 분석기법, 분석결과물(공개 가능 시) 등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게재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첫째, 내내역사업인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사업은 간접 연계되고 있는 1,178건의 데이터 중 절반에 해당하는 564건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사업대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데이터들의 활용실적을 확인하고, 실제로 활용이 활성화된 데이터들부터 대상으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부터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17] 2025년 8월말 기준 47개 기관의 81개 정보시스템에 소재하고 있는 약 1,800종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 중 1,178종의 데이터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사업은 이 중 활용빈도·대체불가성 등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564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직접 연계 전환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의 연계주기, 값의 정확성, 결측치·이상치를 확인하는 등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활용방안	2026년 예산안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25.1월 개통) 총 1,800건의 데이터를 연계 완료 · 564건 데이터는 직접 연계를 추진하여, 연계 방식·주기·정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데이터 품질을 확보	· 학계·민간기업에 고품질 재난안전 데이터를 제공하여 재난안전 관련 연구, 서비스 개발, 산업적 활용 촉진	1,44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어 각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불분명함에도,[18] 간접 연계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중 약 절반 수준(47.9%)에 해당하는 564종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측면이 있음.

17)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https://www.safetydata.go.kr)

1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활용빈도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책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이를 고려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음.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직접 연계 작업은 각 기관이 보유한 원데이터의 품질 자체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므로 시급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각 데이터의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활용 수준이 높은 데이터들부터 점진적으로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내내역사업인 중앙-지자체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가공대상 학습데이터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어서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앙-지자체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은 ① 사업대상 기관의 선정, ② 과제수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관의 현안 또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정책의 선정, ③ AI 학습데이터의 선정 및 가공, ④ AI 알고리즘 개발, ⑤ 데이터 분석에 의한 정책 제언 등의 과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중앙-지자체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활용방안	2026년 예산안
중앙-지자체 AI학습데이터 구축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통해 AI 알고리즘 개발 및 재난안전 정책 결정 지원을 통한 재난안전정책의 대응성, 신뢰성 제고 - (내용) 데이터 분석(7건)을 통한 재난안전분야 정책결정 지원	・(결과물) AI 학습데이터, AI 알고리즘 ・(기관 활용) 분석과제 결과물 수요 제출기관 제공하여 기관의 재난안전 대응・정책에 반영 ・(공유) 활용데이터 목록, 분석기법, 분석결과물(공개가능 시) 등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에 게재	1,41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현 계획상으로는 어떤 기관을 선정하여, 재난의 실시간 탐지・예측 또는 재난의 위험지역, 취약지역 도출 관련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어떤 AI 학습데이터를 선정하여 가공할 것인지 등의 주요내용을 예산 확정 후 공모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고 있어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추상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주요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국민소통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실적 개선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국민소통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국민소통플랫폼(‘소통24’)을 유지관리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700만원(△9.7%) 감액된 1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국민소통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5,492	5,492	4,464	△1,028	△18.7
정부혁신추진기반구축	3,054	3,054	2,875	△179	△5.9
국민소통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1,726	1,726	1,559	△167	△9.7

이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관리용역비(210-15목) 5억 3,900만원 및 국민참여플랫폼 기능개선·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연구비 1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국민소통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내내역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 관리용역비(210-15목): 5억 3,900만원

〈국민참여플랫폼 기능 확대 및 유지관리〉

○ 일반연구비(260-01목): 10억 2,0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19) 일반회계(세출)-정부혁신추진 및 확산(1933-307)(디지털정부혁신실)

나. 검토의견

국민소통플랫폼(소통24[20])은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정보시스템 등급평가에서 최하위(4등급)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통폐합 기조를 고려하여 소통24의 사용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4년 이래 「정보시스템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여 관리효율을 제고하고 있음.

통폐합 대상은 정보시스템 등급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는데, 2024년 계획 당시 3등급 이하 전체 정보시스템을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가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해서는 4등급 정보시스템만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변경(2024. 6.)하였음.[21]

[정보시스템 통·폐합 추진 현황]

□ **추진현황**
○ **(기준마련)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대상 통폐합 기준·절차 마련(2024.4.)**
*** 지자체·공공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 통폐합 기준 4등급으로 완화(2024.6.)**
○ (2024년 검토) 기관 통폐합 계획을 검토하여 통폐합 대상 확정(2024.10.)
* 제출한 통폐합 계획에 대한 예외 사유 등 검토, 통폐합추진/예외/재수립 등 통보
○ **(지침 개정) 정보시스템 정비 관련 통폐합 예외 인정 근거 마련(2025.2.)**
*「성과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한 정보시스템은 폐기 예외 가능」지침 반영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6조 정보시스템의 정비) 일부 개정(2025.2.3.)
○ (2025년 검토) 2024년 수립 통폐합 계획 변경 및 2025년 신규 대상 확정(2025.5.)
* 계획 변경 사항 등 전년도 계획 이행점검 및 신규 계획 수립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통폐합 추진계획」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기능개선을 하고자 하는 국민소통플랫폼(이하 ‘소통24’)은 정보시스템 등급평가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당초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가 관계 법령상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여 통폐합 대상의 예외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 소통24에 관한 평가결과를 보면, 업무영향도(40점 비중)는 4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 사용자 수(50점 비중)는 5개 등급 중 4등급, 서비스 파급도(10점 비중)는 4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으로, 종합 점수 기준 최하위 등급인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음.

---

20) 소통24(sotong.go.kr, 舊 ‘광화문 1번가’)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와 국민 간의 의견 교환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임.

21)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등급평가를 통해 각 기관 소관 정보시스템들을 업무영향도(40점)·사용자 수(50점) 및 서비스 파급도(10점) 등을 기준으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인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국민소통플랫폼(소통24) 정보시스템 등급 평가 결과]

평가기준	점수	평가결과
업무영향도 (40)	1등급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국민) 신고앱(전화로 신고 가능), 상담앱(전화로 상담 가능) 등
	40	
	35	
	30	
사용자 수 (50)	1등급	○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 시스템 접속자 수(중복 사용자 포함) **- 일 평균 접속자 수: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50	
	45	
	40	
	35	
서비스 파급도 (10)	1등급	○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 *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2차 연계 포함) **- 0개**
	10	
	5	
	0	
등급산정 (100)	1등급	○ 등급산정: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
	2등급	
	3등급	
	4등급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소통24를 중심으로 혁신24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소통24의 운영개선을 통해 동 정보시스템 등급이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 및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7,300만원 증액(12.8%)된 3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3,604	3,604	3,907	303	8.4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925	2,925	3,298	373	12.8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율은 개별 단체의 자부담율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93% 수준으로 책정되었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목) : 32억 9,800만원**
- 2,500만원 × 131개 단체 = 32억 7,500만원
- 기타 2,3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22) 일반회계(세출)-비영리민간단체지원(1140-300)(지방행정국)

나. 검토의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결과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던 보조금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연장평가 당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2024-2026)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2024년 32억 5,000만원에서 2025년 29억 2,500만원으로 감액조정되었는데, 2026년 예산안은 32억 9,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음.

[최근 3년간(2024-2026)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안) 규모	3,250	2,925	3,298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것은 2024년 실시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2025년~2027년 예산은 2024년 대비 일정수준 감축될 필요가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구분	총평
평가결과	・ 감축 (비영리민간단체 세부사업, 일정수준, 25년~27년), 사업방식 변경 - (감축)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세부사업은 24년 대비 향후 3년간 일정수준 감축함** - (사업방식변경) 성과지표 및 재정추계 개선, 부정수급 관리 노력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	・ 집행부진 및 낮은 자부담 - (집행부진 및 자부담) **본 사업의 3년 평균 집행률은 94%, 평균 자부담 비율은 16%**이기 때문에 높지 않은 수준임 - (성과지표 및 재정추계)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및 회계평가 평균 점수'로 지표의 측정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29년까지 동일 예산으로 추계되어 있음 - (부정수급 관리) 본 사업은 총 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개선사항	・ 민간단체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집행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민간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높여 예산의 효율성 및 단체의 재정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성과지표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 개선하고 대외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 재정소요액을 산출하여 합리적인 재정 추계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의 예방을 위해 지원단체 선정 평가 기준에 부정수급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적극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관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2024.9.),「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그런데 2026년 이 사업의 예산규모는 32억 9,800만원으로 전년(2025년도) 대비 3억 7,300만원(12.8%) 증액 편성된 것이고, 감축 이전인 2024년 예산 규모(32억 5,000만원)

에 비해서도 소폭 증액된 것임.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65억원에서 2024년 32억원으로 대폭 감액되어, 보조금을 감액하는 경우 공익사업 선정 경쟁 심화·단체의 참여 위축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단체의 자율적 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증액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에 따른 예산의 감액조정은 평가결과의 환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3년 후 실시될 차기 평가를 통해 문제점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26년 예산안 편성 시점에 2025년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2024년 결산 결과 기준으로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제기된 집행률이나 성과지표 관련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보임.

먼저, 최근 3년간(2022-2024) 결산 기준 보조사업 실집행 내역이 정체(2022년 93.7%→2023년 92.4%→2024년 93.3%)되고 있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23)]

[결산 기준 최근 3년간(2022-2024) 실집행 현황]

(단위: %)

연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실집행률	93.7	92.4	93.3

자료: 행정안전부

다음,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재정사업 성과지표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5년부터 기존 정성적 지표를 삭제하고 정량적 성과지표인 ‘비영리민간단체 회계평가 우수단체 비율’로 지표를 변경하였음.

다만, 목표치 산출 근거가 ‘최근 4년간 우수단체 비율[24)] 평균수준’으로 설정되고 있어 성과개선이 아닌 현상유지를 목표로 측정되고 있고, 2025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실제 성과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국가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감액조정된 이 사업 예산을 증액편성하기에 앞서 차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거쳐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3) 평가시점 기준 최근 3년간(2021-2023) 실적을 가중평균한 집행률이 94.4% 수준으로 이 사업의 평균 자부담 비율(약 16%) 등을 고려할 때 높지 않은 수준으로 지적되었음.

24)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평가 결과 기준(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7.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신규):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조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첨단 기술기반 국민안전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5)]

[2026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B-A)/A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	-	5,000	5,000	순증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전액 일반출자금(460-01목)으로 편성되었음.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출자금(460-01) : 50억원
- 국민안전산업펀드 정부출자금: 50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산업펀드 관련 추진 방안 기준 펀드 조성 규모를 보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의 정부 재정이 출자되고, 최대 출자비율이 50%로 설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자 및 출자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임.

주목적 투자비율 관련하여, 주목적 투자비율의 하한선은 60%로 책정되어 있으나, 민간자금 추가 모집 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목적 투자비율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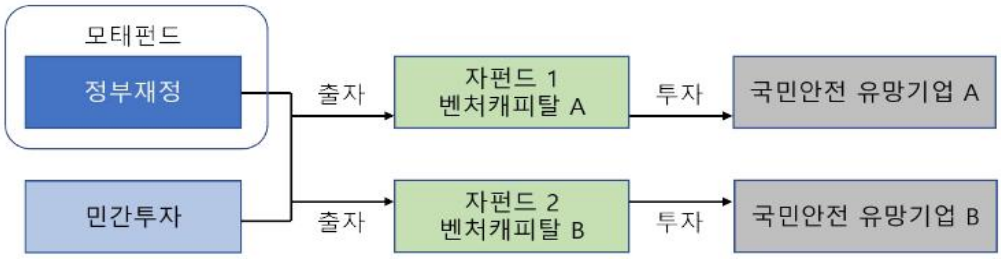
투자 대상 관련하여, 현 계획상 AI·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 안전산업 창업기업 및 기술사업화·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벤처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또한 민간 출자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정부 출자금의 15~20% 범위 내에서 우선 손실 충당 기회를 제공하고, 초과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초과이익의 30~50%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자·지자체 등에 우선적으로 수익을 배분할 예정임.

25) 일반회계(세출)-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2631-308)(안전예방정책실)

[참고자료: 국민안전산업펀드 추진 방안]

1. 개요



결성 목표	총 200억원* ※ 매년 추가 확대 예정
결성 방법	정부 출자 50% + 민간 또는 지자체 등 추가 출자 50% (최대 출자비율 50%) - 한국모태펀드에 재난안전산업 계정(가칭) 신설하여 정부 출자금 100억원 출자* * 행정안전부 50억, 경찰청 50억 - 자펀드 출자 공모를 통해 전문운용사(GP) 선정, 전문운용사에서 민간·지자체(LP) 등으로부터 100억원 추가 모집
결성 조합	재난안전산업 1개 조합, 치안산업 1개 조합 등 2개 조합
투자 대상	AI, 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 안전산업 창업기업, 기술사업화·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벤처 기업 등
2. 세부 운영계획(안)* ※ 세부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와 협의 후 확정 예정	
투자 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하한을 목표액 대비 60%로 설정* ※ 민간 자금 추가 모집 추이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에는 주목적 투자비율 조정 검토
투자 방법	지분 인수 방식
투자 규모	Seed 투자(5억원 내외)를 기본으로 Pre-Series A까지 투자(10억~20억원)
기준수익률	우수 민간 GP 모집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정책펀드 평균 기준 수익률(5%)보다 낮은 0~3% 설정* ※ 기준 수익률 0% 펀드 예시: 창업초기 모태펀드 자펀드, 교육부 소관 모태펀드 등
성과 보수	기준 수익률 초과수익의 30~50% 범위 내에서 운용사에 성과 보수 지급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우선 손실 충당) 정부 출자금에서 15~20% 범위 우선 손실 충당 기회 제공* ※ 문체부 영화, 문화, 스포츠 계정의 경우 15% 이내 (초과 수익 배분)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수령 초과 이익의 30~50% 범위 내 민간 LP 우선 배분 (콜옵션) 모태펀드 출자분의 30~50% 범위 내에서 민간 LP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권리 부여
3. 향후 계획	
○ 2026년 예산 확보 및 한국 벤처 투자와 세부 사항 협의(2026. 1.) ○ 출자사업 공고, 운용사 선정 및 투자조합 결상, 기업 투자(2026.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재난안전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국가재정이 주목적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주목적 투자비율의 하한선을 현재 고려 중인 60%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 펀드는 민간의 과소투자 분야 또는 집중적 초기투자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주요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민안전산업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수익 보전 차원에서 주목적 투자비율의 하한선을 60% 수준으로 설정하고 향후 자펀드 운용업체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는 계획임.

그런데 현 계획상 국민안전산업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은 중소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책 펀드에서 통상적으로 설정하는 주목적 투자비율(60~80%)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 계획상 지원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상향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현 계획상 지원대상은 AI·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 안전산업 창업기업 및 기술사업화·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벤처 기업 등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투자대상으로 설정한 중소기업모태펀드의 특허 계정에 속하는 펀드들의 주목적 투자비율이 대부분 70~80% 수준으로 60%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모태펀드 특허 계정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 설정 사례]

(단위: %)

계정명	출자분야	주요투자대상	모태펀드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특허	IP직접투자	IP직접투자	60	60
	특허기술사업화	IP직접투자	70	60
		IP기반 스타트업육성	62.5	70
		IP창출·보호	50	70
		특허기술사업화	10	80
		특허기술사업화	50~60	60~70
		공공IP 사업화	40.2	70
		IP크라우드펀딩	60	70
		IP기반 창업기업	60	60
		IP기반 지역기업	60	60

주) 출처 자료 기준 최근 5년간(2020-2024) 결성된 중소기업모태펀드 계정에 속하는 자펀드 대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11.15.),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pp.56~59

국민안전산업펀드와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분야를 지원하는 환경 계정의 미세먼지 관련 기업에 대한 주목적 투자비율 역시 70% 수준임. 그 밖에 투자대상 분야가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고 있는 관광계정(65%), 교육계정(80%), 환경계정(60~70%) 등에서도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26)]

[주목적 투자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자펀드 사례(예시)]

(단위: %)

계정명	출자분야	주요투자대상	모태펀드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관광	관광기업육성	관광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65~70	65
교육	대학창업	대학창업기업	75	80
환경	미래환경산업	미래환경산업 기업	60~70	60~70
	미세먼지해결	미세먼지 관련 기업	70	70

주) 최근 5년간 결성된 중소기업모태펀드 계정에 속하는 자펀드 대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11.15.),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pp.56~59

또한 자산운용사 성과보수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이 최근 5년간 정책펀드 수익률(5%)에 비해 낮은 수준(0~3%)으로 설정되고 있고, 초과수익의 30~50% 범위[27)] 내에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성과보수의 지급이 예정되어 성과보수 지급 측면에서 이미 자산운용사에 대해 상당한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28)]

따라서 현재 계획상 60% 수준으로 예정되고 있는 주목적 투자비율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6) 한국벤처투자, 「2024년도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운용계획」, 2024.1.

27) 참고로, 이는 타 부처에서 최근 3년간 계획 공고된 사례들을 참조한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자하는 문화계정·영화계정 모태펀드(초과수익 30% 이내 성과보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출자하는 환경계정 모태펀드(초과수익 20% 이내 성과보수 지급. 단, 관리보수율 하향조정 시 최대 10%p까지 상향조정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출자하는 중진계정 모태펀드(초과수익 20% 이내 성과보수 지급. 단, 관리보수율 하향조정 시 최대 10%p까지 상향조정 가능), 교육부 소관 교육계정 모태펀드(초과수익 20% 이내) 사례에 비해서는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임.

28)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2024.11.15.)에 따르면 출처 자료 기준 최근 5년간(2020-2024) '특허기술사업화' 대상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7.02% 수준임.

둘째, 국민안전산업펀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계획상 투자대상 분야인 ‘재난안전산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출자금 편성 및 집행 이전에 투자대상 세부분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의 투자대상을 ‘재난안전산업’으로 설정하고, 주목적 투자비율에 따라 최소 60% 이상의 자금을 ‘AI·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 안전산업 창업기업 및 기술사업화·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벤처 기업 등’에 지원할 계획임.

[국민안전산업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및 주목적 투자비율]

구분	내용
결성 조합	**재난안전산업 1개 조합(행정안전부)**, 치안산업 1개 조합(경찰청) 등 2개 조합
투자 대상	AI, 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 안전산업 창업기업, 기술사업화·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벤처 기업 등
투자 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하한을 목표액 대비 60%로 설정* ※ 민간 자금 추가 모집 추이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에는 주목적 투자비율 조정 검토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현재 계획상 투자대상 분야인 ‘재난안전산업’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정의된 재난 등[29]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 전반이 포함되어 있고,[30] 이 산업 분야의 특수분류체계(통계청 고시 제2025-592호)를 보면, 재난유형(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 및 재난관리활동 단계(예방, 대응 및 복구)에 대응하는 제조업, 공사업 및 서비스업 등이 망라되어 있음.

---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30)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코드	코드 명칭	코드	코드 명칭
1	자연재난 예방산업	3	재난 대응산업
111 ~115	풍수해 예방 제품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 및 시설 설계·감리 및 안전 진단업	311 ~315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 및기계설비 및 관리시설 공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 진단업
121 ~125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 및 시설 설계·감리 및 안전 진단업	321 ~32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관련 제품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제외)
131 ~139	황사 예방 장비 제조업, 판매업 및 예방 제품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그 외 자연재난 예방 장비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 및 관련 서비스업	324 ~328	구급용·구난용 자동차 기타 운송 및 물품 취급 장비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 및 구난용 운송 관련 서비스업
		331 ~333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제조업, 판매업 및 방역 서비스업
2	사회재난 예방산업	4	재난 복구산업
211 ~213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 제품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	411 ~413	시설피해 복구 공사업 및 비상전력 생산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 수리업
214 ~215	소방 안전시설 공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 진단업	421 ~422	재난현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청소업
221 ~225	교통사고 예방 제품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 및 시설 공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 진단업	5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511 ~513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및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 재해감시시스템 서비스업 등
231 ~234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제품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 및 시설 공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 진단업	521 ~523	안전시설 관리, 위험물품 보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재해감시시스템 제외)
		531	재해보험 서비스업
241 ~247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물품 제조업, 판매업, 기타 제조업 및 기기 수리업, 시설 공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 진단업	541 ~543	재난 관련 교육업, 심리상담 서비스업, 재난관리 컨설팅 서비스업(환경관련 컨설팅 제외)

자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592호)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최근 실태조사 결과[31]를 보면, '재난안전산업'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5개 분류(자연재난 예방산업, 사회재난 예방산업, 재난 대응산업, 재난 복구산업 및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등)별로도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수준이나 사업체 매출규모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31) 「2023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예를 들어, 정부지원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 ‘재난 대응 산업’ 분야의 경우 2023년 기준 789건(2,211억원 규모)의 정부지원 연구개발이 수행되었으나 ‘자연재난 예방산업’ 분야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 실적이 전무하였음.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 실적 보유 여부]

(단위: 건, 억원)

구분	합계					
			정부지원 연구개발		자체 연구개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연재난 예방산업	224	320	-	-	224	320
사회재난 예방산업	552	733	105	263	447	470
재난 대응 산업	2,039	2,809	789	2,211	1,250	597
재난 복구 산업	340	513	49	191	291	322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주)	572	513	69	74	501	433
전체	3,727	4,888	1,012	2,739	2,713	2,142

주)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타 국가 기술지원 도입’ 실적 3건(6억원 규모) 포함
자료: 「2023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p.44

또한, 매출규모별 사업체 수 등을 보면, ‘자연재난 예방산업’의 경우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소규모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9.7%인데 반해 ‘재난 대응 산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7.3% 수준이고, ‘재난 복구 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 이상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인데,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에서 중견 이상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에 달하고 있음.

[재난안전산업 연 매출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 %)

구분	합계							
			5억원 미만		5~30억원		30억원 이상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자연재난 예방산업	8,696	100.0	4,317	49.7	3,764	43.3	615	7.1
사회재난 예방산업	17,389	100.0	9,487	54.5	7,054	40.6	848	4.9
재난 대응 산업	20,383	100.0	13,721	67.3	5,816	28.6	846	4.2
재난 복구 산업	21,285	100.0	13,377	62.9	7,154	33.6	754	3.5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주)	8,675	100.0	4,739	54.7	3,070	35.3	866	10.0
전체	76,428	100.0	45,641	59.7	26,858	35.1	3,929	5.1

자료: 「2023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p.51

현재 행정안전부는 민간자금 유치 차원에서 자산운용사 및 민간투자자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투자조건(낮은 기준수익률 설정, 우선손실분담 조건 부가, 초과수익 우선배분 및 콜옵션 등)을 내정하고 있어,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투자결정이 내려질 경우 투자효과가 약화되거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상을 고려할 때 출자대상 조건을 면밀하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투자조건 설정 시 재난안전사업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야, 활동 유형 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8.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 투자계획 평가지표의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의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재정 지원하는 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조원이 편성되었음.[32)]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B-A)/A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전액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출연금(350-02)**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 1조원

자료: 행정안전부

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세출)-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균형발전지원국)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차 년도인 2022년(7,500억원 출연)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출연금(350-02목) 1조원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음.[33]

[최근 5년간(2021-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비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75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자료: 행정안전부

추진체계를 보면,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34]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조합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련 사무를 법정 위탁하고 있음.[35]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최종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조합은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며, 공제회는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사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하게 됨.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사업 추진체계]

기관명	구분	권한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피출연기관	「지방자치법」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기관	-

3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법률 제18545호(2021.12.7.)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3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3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매년 교부되는 출연금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36]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으로 2,500억원,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으로 7,500억원이 각각 배분되었고 있으며, 광역지원계정 재원 중 40%에 해당하는 1,000억원은 현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37]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배분기준]

(단위: 억원, %)

배분대상	금액	비율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	10,000	100.0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2,500	25.0
시·도 배분금액	1,500	15.0
인구감소지역(89개) 관할 시·도 배분	1,350	13.5
전체 시·도 배분	150	1.5
집합투자기구 출자주)	1,000	10.0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7,500	75.0
인구감소지역(89개) 배분	7,125	71.25
관심지역 배분	375	3.75

주) 2024년부터 매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1,000억원)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시·도에 배분되는 1,500억원 중 1,350억원은 산식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에 배분되며, 나머지 150억원은 재정 및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배분되고 있음.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37)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광역지원계정 배분금액의 배분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_i \times a1_i \times a2_i}{\sum(A_i \times a1_i \times a2_i)}$$

A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1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비율
$a2_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 · 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 · 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1 \times \text{해당 시·도 배분계수}$$

기초지원계정 통해 시・군・구에 배분되는 7,500억원 중 7,125억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며, 나머지 375억원은 관심지역에 배분되고 있음.[38)]

38)「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나. 검토의견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에서는 2026년부터 사업의 기본방향 및 운영체계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생활인구·정주인구 유입 등의 기대효과가 체계적으로 측정되고 효과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이 시설 조성 위주로 추진[39]되어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가 미진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6년 투자계획서를 추가로 모집[40]하면서 기금운영의 '패러다임 변경'을 발표(2025. 8.)하였음.[41]

패러다임 변경의 주요 내용은 ① 투자계획의 기본 방향을 현행 '시설(인프라) 중심' 사업에서 '사람(프로그램) 중심'으로 변경하고, ②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허용하여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③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의 유입효과를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 전환(2025.8.)]

	구분	현행		개선
기본방향	패러다임 (기대효과)	시설(인프라) 중심(HW)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람 중심(SW, 프로그램) (지역 활력 제고)
	재원순환 효과	일회성 투입·투자로 한계		재투자 통한 지역 내 선순환 구축
	참여주체	공공(지자체) 중심		선순환으로 민간 참여 적극 유도
운영체계	집행률	사업지연 등으로 저조	⇨	신속 집행
	성과관리	시설물 구축(진행률)		생활인구·정주인구 유입
	배분체계	(단년도)투자계획 중심		중장기 계획 및 성과 기반 배분

자료: 행정안전부

39)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사업 수 기준 78%, 예산액 기준 91%가 시설조성에 투입되고 있음.

40) 통상적으로 상반기(6.30.)에 완료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 제출 절차를 연장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신규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41) 행정안전부(2025.8.),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투자계획 작성·제출 안내」

한편,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될 투자계획들에 대한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되는데,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지역후보’ 및 ‘양호지역’의 등급 구분이 이루어지고, 2차 평가에서 ‘우수지역’과 S등급(관심지역은 A등급) 양호지역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배분액 조정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1개 지역당</th><th rowspan="2">전체 합계</th></tr>
<tr><th colspan="2">배분액</th><th colspan="2">인센티브</th></tr>
<tr><td>전체
(107개 지역)</td><td colspan="2">7,140억원</td><td colspan="2">440억원</td><td>7,580억원</td></tr>
<tr><td rowspan="4">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td><td rowspan="2">우수지역
후보
(19개 지역)</td><td>120억원</td><td>우수지역
(8개 지역)</td><td>-</td><td>120억원×8개 지역
= 960억원</td></tr>
<tr><td>72억원</td><td>S등급
(11개 지역)</td><td>16억원</td><td>(72억원+16억원)×11개
지역= 968억원</td></tr>
<tr><td rowspan="2">양호지역
(70개 지역)</td><td rowspan="2">72억원</td><td>A등급
(30개 지역)</td><td>8억원</td><td>(72억원+8억원)×30개
지역= 2,400억원</td></tr>
<tr><td>B등급
(40개 지역)</td><td>-</td><td>72억원×40개 지역
= 2,880억원</td></tr>
<tr><td rowspan="3">관심지역
(18개 지역)</td><td rowspan="2">우수지역
후보
(6개 지역)</td><td>30억원</td><td>우수지역
(2개 지역)</td><td>-</td><td>30억원×2개 지역
= 60억원</td></tr>
<tr><td>18억원</td><td>A등급
(4개 지역)</td><td>6억원</td><td>(18억원+6억원)×4개 지역
= 96억원</td></tr>
<tr><td>양호지역
(12개 지역)</td><td>18억원</td><td>B등급
(12개 지역)</td><td>-</td><td>18억원×12개 지역
= 216억원</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현 계획상 1차 평가지표를 보면, 투자계획 단계에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기대효과’를 측정하는 것 외에 기존 사업에 관한 성과분석결과에 관한 배점이 100점 중 6점에 불과하여, 실제 인구 유입 효과에 관한 평가 및 환류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 계획상 성과관리의 핵심지표에 해당하는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의 유입 효과는 단년도 사업 등 단기간·일회성 사업을 통해 달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년간의 자료 수집과 연속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투자계획상 일부 평가지표를 할애하는 것 외에 별도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1차 평가지표]

1. 1차 평가지표 (서면 + 현장평가)			
평가지표			**배점**
투자계획서 평가	계획수립 적절성		15
	사업계획 타당성		35
	계획의 연계성		20
	운영관리 지속성		10
	투자계획서 평가 합계 (A)		**80**
추진실적	성과분석결과		6
	기금 집행률		7
	추진실적 합계 (B)		**13**
정량지표	인구감소지수		3
	투자협약 실적		4
	정량지표 합계 (C)		**7**
가점	중점사업 추진가능성(+6점)		+6
	기금사업 추진실적(+4점)		+4
	신규사업 투자계획서 평가	인구유입 목적과의 부합성	+10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5
		중장기 운영 등 지속가능성	+5
	신규사업 투자계획서 평가 합계		+30
	가점 합계 (D)		**+40**
감점	목적 외 사용		-3
	감점 합계 (E)		**-3**
총점 (A+B+C+D+E)			**100+40-3**

자료: 행정안전부

그리고 2차 평가지표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입지 적절성’이 포함되고 있어 시설 투자사업에 편중된 평가기준이 일부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지표들이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기준들로만 구성되고 있어 이전 사업의 수행실적이 평가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는바, 이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활용하겠다는 변경 이후 패러다임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2차 평가지표]

2. 2차 평가지표 (종합-대면 평가)		
평가지표		배점
계획수립 적절성	여건분석 적절성	5
	비전・전략수립 적절성	7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3
	계획수립 적절성 합계(F)	**15**
사업추진 타당성	입지 적절성	10
	사업 적절성	20
	사업 효과성	15
	사업추진 타당성 합계(G)	**45**
계획의 연계성	기금사업 간 연계성	10
	타 사업・정책과 연계성	10
	지역 간 연계・협력성	5
	계획의 연계성 합계(H)	**25**
운영・관리 지속성	운영・관리추진체계의 적절성	15
	운영・관리지속성 합계(I)	**15**
총점 (F+G+H+I)		**100**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 단계에서 과거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변경된 패러다임에서 강조되고 있는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에 관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변경된 패러다임에 따른 신규 투자계획의 제출 및 심사일정을 보면, 비교적 단기간(6주)에 신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는 일정으로 추진되는데,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 심사를 면밀하게 수행하여 중복투자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신규로 추진될 '사람(프로그램) 중심' 사업의 내용을 ① 사람 중심 투자형, ② 일자리·기업지원 중심 투자형, ③ 마을 중심 투자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 예시를 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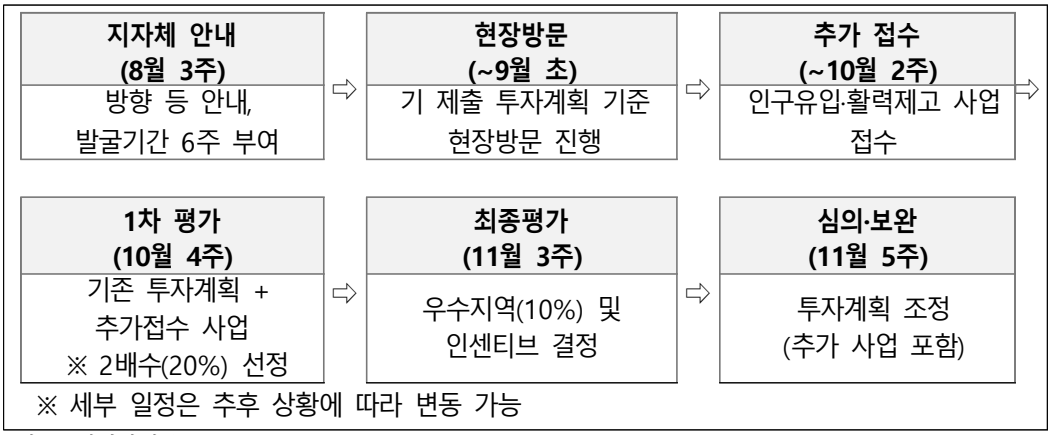
['사람(프로그램)' 중심 사업 예시]

유형	세부유형	사업 예시
① 사람 중심 투자형	정주인구 유입·증가	- 주거 지원, 출산·보육 지원, 교육 지원, 의료·건강 지원, 이주민 정착 지원
	체류인구 확대	- 지역관광 연계협력, 민박·농장체험, 두지역살이, 워케이션 등
② 일자리·기업지원 중심 투자형	기업지원, 산업특화형	- 지역 특화산업단지(예: 의료 R&D 클러스터, AI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연계 - 특례보증(이차보전), 기업지원 펀드 조성
	창업·청년기업 지원	- 청년 창업 희망자 대상 교육·멘토링 제공 등을 위한 창업 플랫폼 운영 - 창업공간 유·무상 임대 지원
	일손 유입 환경 지원	- 기숙사형 근로자 단기 주거지원 - 일자리 연계 플랫폼 운영, 지역 공동체 적응 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육성 지원	-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 지원
③ 마을 중심 투자형	지역문화 재생형	- 지역 유휴공간 재생 (예: 핫플 예산시장, 레드하우스 등)
	공동체 활성화형	- 청년마을,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주도형 정책실험단 등 주민주도 자생적 공동체 조직·운영 - 사회적 공동체, 협동조합 육성 - 노인·청년·취약계층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마을 내 유휴 일자리 연계 등
	생활·관계인구 연계형	- 생활인구 등록제, 자매결연 프로젝트 등 - 마을지도자·이장 활동 지원 및 빈집, 일자리 등 연계 이주·정착 지원 플랫폼 구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변경된 패러다임에 따른 신규 투자계획 제출 및 심사일정을 보면, 8월 3주차에 해당 일정이 각 지자체에 안내되어 6주(8.29.~10.10.)에 불과한 기간만 주어졌고, 11월 5주차로 예정된 심의·보완은 최종평가 이후에야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평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내용이 충실히 계획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세부 평가일정]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 평가과정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중복하여 투자가 이루어질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수도권-비수도권 차등지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1조 1,49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2)]

[2026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1,000,000	1,150,000	1,150,000	순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	999,600	1,149,400	1,149,400	순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편성되어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1조 1,494억원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경상보조: 1조 1,494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지방재정경제실)

나. 검토의견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사업은 2026년 수도권 지자체에 3%, 비수도권 지자체에 5%의 국비지원율을 설정하여 차등을 두었는데 이 구분이 지원대상 지자체의 재정력·인구감소 위기 수준 등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6년 예산안의 지원기준을 보면, 수도권에 3%, 비수도권에 5%의 국비지원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양호하므로, 국비지원율에 차등을 두어 비수도권을 집중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임.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발행주체 유형	국비지원율	정부지원 발행규모	교부(예정)액
불교부단체	-	미정	미정
수도권	3%	미정	미정
비수도권	5%	미정	미정
인구감소지역	7%	미정	미정
전체	4.8%[1)]	240,000	11,494[2)]

주 1) 지원대상 전체 발행주체 평균 국비지원율
2) 2026년 목표 지원 발행규모 24조원에 평균 국비지원율 4.8%를 적용하여 교부(예정)액 도출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시도 단위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 발행주체인 시군구의 재정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43]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기초지자체에 대해 재정여건이 양호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보다 낮은 국비지원율이 적용될 우려가 있음.[44]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단순히 서울과 그 주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수도권으로 지정하는 데 그치고 있고, 2025년 8월 26일 개정(2026.1.1. 시행)된「지역사랑상품권법」역시 제15조제6항에서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명시[45]하고 있음.

---

43) 같은 수도권 기초지자체들 사이에서도 재정자립도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바, 현 기준대로라면 재정자립도가 68.2인 A시와 24.0인 B군에 동일한 3%의 국비지원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4) 실제로 수도권 지자체 A군의 재정자립도는 24.0 수준이며, 비수도권 지자체 B시의 재정자립도는 43.9 수준임.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7%의 국비지원율이 적용되고 있음.

45)「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⑥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계법령에 추가지원의 근거가 명시(「지역사랑상품권법」 제15조제6항)에 되고 있고, ① 연평균인구증감률, ② 인구밀도, ③ 청년순이동률, ④ 주간인구, ⑤ 고령화 비율, ⑥ 유소년 비율, ⑦ 조출생률, ⑧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고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의 실제 규모는 국비지원율 외 시도가 결정하는 ‘지원대상 발행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및 관계 시도는 배분기준 및 교부예정액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의 지자체 보조금은 현 계획상 지원대상 발행규모에 국비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발행규모 및 국비지원율이 동일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되는 발행규모’가 달라지게 되면 보조금 지원규모가 달라지게 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시 보조금 규모]

지원대상 발행규모 × 국비지원율(예: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 = 보조금 지원 규모

주) 2026년 예산안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현 추진체계상 국비지원율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이나 기초지자체별 지원대상 발행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시도여서,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의 방침에 따라 달라지게 됨.

그런데 현재 예산안 심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도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기초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될지 불확실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출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음.

그 결과, 2024년 기준 발행규모가 각각 1,587억원과 1,576억원으로 유사하고, 국비지원율도 2%로 같게 설정된 A시와 B시는 지원대상 발행규모가 각각 585억원, 270억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달라짐에 따라 A시에 대해서는 11.7억원, B시에 대해서는 그보다 현저히 적은 5.4억원의 보조금이 교부되는 등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총 발행규모가 유사하고 국비지원율이 동일함에도 보조금 교부액이 달라진 사례]

구분	총 발행규모 (A)	지원대상 발행규모 (B)	국비 지원율 (C)	보조금 교부액 (D=B×C)	총 발행규모 대비 지원비율 (D/A)
A시	1,587억원	585억원	2%	11.7억원	0.7%
B시	1,576억원	270억원	2%	5.4억원	0.4%

주) 2024년 결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관계법령상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수요파악 및 배분을 담당하는 것은 시도의 역할로 규정되고 있고,[46] 시도 입장에서는 관할 시군구마다 재정여건 등이 상이하고 시기별로 발행규모가 유동적이어서 사전에 교부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그러나 '지원대상 발행규모'는 각 기초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규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될 필요가 있고, 최종적인 교부액 자체는 집행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교부예정액 및 배분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관할 시군구에 대한 보조금 교부예정액 및 배분기준을 예산안 심사 이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음.

4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0. 마을기업 육성사업: 성과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가. 개 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 7,500만원(213.4%) 증액된 5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47]

[2026년도 마을기업육성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B-A)/A
마을기업육성사업	1,675	1,675	5,250	3,575	213.4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 국비보조율 50%) 46억 5,000만원 및 일반수용비(210-01목) 등 운영비 6억원이 편성되었음.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마을기업육성사업>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 46억 5,000만원
- □1차 신규 마을기업 130개소×5,000만원×국비보조율 50% = 32억 5,000만원
- □2차 재지정 마을기업 20개소×3,000만원×국비보조율 50% = 3억원
□ 3차 고도화 마을기업 16개소×2,000만원×국비보조율 50% = 1억 6,000만원
- □재도약 컨설팅 9개소×1,000만원×국비보조율 50% = 4,500만원
-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14개소×8,500만원×국비보조율 50% = 5억 9,500만원
□ 연합 마을기업 2개소×3억원×국비보조율 50% = 3억원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일반수용비(210-01목) 등: 6억원
- □(판로지원) 기획전, 품평회 등 판로지원 1억 7,500만원
- □(워크숍 등) 경진대회, 워크숍, 마을기업의 날 행사 등 1억 5,000만원
- □(연구용역)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1억원
- □(DB운영) 마을기업 DB 운영 8,000만원
- □(현장방문) 현장방문 및 심사수당 등 경비 9,5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4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균형발전지원국)

지원내용을 보면,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1-3차에 걸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특성에 맞춰 재도약마을기업(성과저조・회생대상), 우수마을기업(2회차 지원완료), 모두애(愛)마을기업(3회차 지원완료) 등을 지정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였고, 보조금과 별도로 출자자들이 자부담하는 금액이 보조금 대비 20% 이상의 규모로 책정되고 있음.

[2025년 기준 마을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 일반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1회차 5,000만원, 2회차 3,000만원, 3회차 2,000만원)
	자부담	보조금 20% 이상
맞춤 지원	재도약 마을기업	마중물 사업비(1,000만원)・컨설팅 지원 후 재지정 운영실적 저조하나 회생 의지가 있는 기업 대상
	우수마을기업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판로 지원 등 수행 2회차 사업비 정산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 경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 3회차 사업비 정산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 경과

자료: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24. 11.)

나. 검토의견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핵심지표인 ‘상용근로자 수’ 관련 성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의 측정방식을 개선하고, 발행지침에 명시된 지역성, 기업성 및 공동체성 관련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매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재정사업 성과지표로 측정되고 있는 ‘마을기업 고용인원’은 채용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음.

이 지표는 「마을기업법」의 경제적 목적[48]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공성[49]과도 밀접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2026년 예산안 기준 성과지표를 보면, 3년간 평균치를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상유지만 하더라도 100점의 달성도가 충족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측정산식에 있어서도 ‘예산 대비 고용근로자 비율 평균’에 2026년 예산을 곱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과거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와 당해년도 지원에 따른 성과가 혼동될 우려가 있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2025·2026년 기준 성과지표 비교]

연도	2025년		2026년	
지표명	마을기업 고용인원(단위: 명)		마을기업 고용인원(단위: 명)	
항목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내용	마을기업 증가추세 및 **평균 상용근로자 수를 근거로 목표치 설정**	Σ(전국 마을기업 상용근로자 수)	연도별 예산대비 고용인원 **3년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마을기업 3년간 예산 대비 고용근로자 비율 평균×2026년 예산

자료: 행정안전부

48)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 · 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9) 참고로, 「2025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지침」상 일자리의 질・고용의 형평성 확대 노력은 ‘공공성’ 관점에서 운영요건에 반영되고 있음.

참고로, 최근 7년간(2018-2024) 마을기업 1개소당 상용근로자 수의 추세를 보면, 최소 1.70명(2021년)에서 최대 1.98명(2019년) 사이에서 정체되고 있어,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지표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최근 7년간(2018-2024) 마을기업당 상용근로자 수]

(단위: 개,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마을기업 수(A)	1,514	1,556	1,652	1,697	1,770	1,800	1,726
상용근로자 수 (1년 이상 채용)(B)	2,925	3,077	3,219	2,888	3,171	3,189	3,167
마을기업당 상용근로자 수(B/A)	**1.93**	**1.98**	**1.95**	**1.70**	**1.79**	**1.77**	**1.83**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핵심지표인 '상용근로자 수'를 보다 적정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공공성 관점에서 강조되는 일자리의 질·고용의 형평성 등에 관한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을기업 발행지침'에 규정된 운영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지역성'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에 관한 우선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업성' 관련해서는 마을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적립되는 순이익이 전체 순이익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공동체성' 관점에서는 회원 간 출자금 비율이 균등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신규): 적정 수준의 국비보조율 설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은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기반 협력체계 구축 확대와 지역의 잠재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0]

[2026년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추경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8,915	9,135	11,914	2,999	33.6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	-	2,500	2,500	순증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용역비(210-14목): 21억 5,000만원**
- 의제 발굴 및 실증지원 : 7개 지역×3억원 = 21억원
- 성과분석 등 : 5,000만원

○ **정책연구비(260-02목): 3억원**
- 17개 광역시도 전수조사

○ **임차료(210-07목) 등 운영비: 5,0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균형발전지원국)

이 사업은 국정과제(14-3)에 따른 지역문제해결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1년차 사업을 통해 17개 전체 지역 실태분석 및 선정된 7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년차·3년차 본사업을 통해 민·관·공·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추진목적)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확대와 지역의 잠재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전수조사) 17개 광역시도 대상 지역사회혁신 주체*·공간·자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현황 조사 및 관련 실태 분석 추진(1~12월)
(협력체계) 민·관·공·산·학 발굴(설명회, 간담회), 협업(ESG 사업 연계) 추진
※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지표 반영 및 우수 협력기관·기업, 유공자 포상 등
(사업관리) 1) 지역 선정 → 2) 의제 발굴 → 3) 자원 연계 및 실증 지원(1~12월)
1) (대상)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수요 조사 후 및 2026년 7개 지역 선정(3년 지원)
2) (유형) 단일지역형 1개 광역시도 지정, 지역 연계형 2개 이상 광역시도 공동 추진
3) (운영) 시범사업(1년, 국비 100%) 후 본사업 전환(2년, 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행정안전부

나. 질의요지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은 지자체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1년차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확보 등이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편성하고 적정 수준의 국비보조율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확산 사업은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확대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공모를 거쳐 7개의 비수도권 광역시도를 선정하여 3년에 걸쳐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지자체를 다년간 지원하는 보조사업임에도 1년차 사업비 21억원을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하여 전액 국비로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추진목적)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확대와 지역의 잠재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전수조사) 17개 광역시도 대상 지역사회혁신 주체*·공간·자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현황 조사 및 관련 실태 분석 추진(1~12월)
(협력체계) 민·관·공·산·학 발굴(설명회, 간담회), 협업(ESG 사업 연계) 추진
※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지표 반영 및 우수 협력기관·기업, 유공자 포상 등
(사업관리) 1) 지역 선정 → 2) 의제 발굴 → 3) 자원 연계 및 실증 지원(1~12월)
1) (대상)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수요 조사 후 및 **2026년 7개 지역 선정(3년 지원)**
2) (유형) 단일지역형 1개 광역시도 지정, 지역 연계형 2개 이상 광역시도 공동 추진
3) **(운영) 시범사업(1년, 국비 100%) 후 본사업 전환(2년, 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년차부터 경상보조(330-01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지역 역량에 따른 사업 운영의 편차 발생, 사업의 혁신성·자율성 저하, 지자체 행·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1년차에는 일반용역비(210-14목)을 편성했다고 설명하였음.[51]

그러나 1년차 사업에서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연속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1년차 사업비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사업비 분담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사업의지 및 책임성, 재정여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51) 다만, 1차 년도에 일반용역비(210-14목)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조사업자의 실질적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배부 시 사업 참여주체별 재원 기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식의 평가 방식을 설계·도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21억원(운영비 5,000만원 제외)의 비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변경하고, 국비지원율을 현재 예정되어 있는 2·3년차 사업의 국비보조율(50%)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신규): 공간 리모델링 비용규모의 확인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은 주민참여 및 부처·분야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혁신거점 구축으로 지역역량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16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2)]

[2026년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B-A)/A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8,915	9,135	11,914	2,999	33.6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	-	1,650	1,650	순증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중 지자체에 지원될 예정인 16억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 국비보조율 50%)로 편성되었음.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 16억 5,000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6억원

- 성장거점 공모 : 2개소×16억원×국비보조율 50% = 16억원

○ 일반수용비(210-01목) 등 기타 운영비: 5,0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5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균형발전지원국)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목적) 기초단위 균형성장모델 확산을 위해, 주민 참여와 부처·분야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혁신거점 구축으로 지역역량 성장생태계 조성

○ (대상)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 ※ 수도권 및 광역(단독) 제외

○ (내용) 혁신거점공간 기반 주민참여 문제해결역량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혁신인프라역량 ⇨ 공동체 활성화) 다양한 부처 사업 旣 조성 공간(유휴화 등)을 운영·기능 중심 거점 고도화→지역활성화 공론장

※ (구성) 문턱 낮은맞이공간, 함께 쓰는대관공간, 입주 하는전용공간 (해외사례) 佛, '제3의 장소'

○ (문제해결역량 ⇨ 정책화 프로세스)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리빙랩·정책랩(실증) 이후 정책화·재원연계*로 주민효능감 극대화

* 문제정의 → 기회요인도출·해결방안실증 → 지자체정책 도입 및 재원연계(고향사랑기부제등)

○ (소생활권역량 ⇨ 기본사회 터전) 지역문제 진단 및 비전 구상(미래계획), 기본사회 생활형 과제* 발굴·실증, 다부처 사업 연계 기반 지역가치콘텐츠 활성화 등 읍면동 단위 소생활권역량 성장 지원

* 기본서비스 범주 예시 : 돌봄, 의료, 주거, 에너지, 교육, 교통, 문화, 일자리 등

○ (집단지성역량 ⇨ 축적과 성장) 지역사회 지혜(과정·성과 등)가 쌓여가는 '지역역량성장 지식플랫폼'으로 기초단위 사례연구 및 아카이브 등

□ 소요예산 : 2026예산안 16억 5,000만원

○ 지역역량성장거점 신규 공모 16억원 = 16억원 × 국비보조율 50% × 2개소

○ 사업관리 5,000만원 = 공모 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일반수용비) 4,000만원, 현장점검 등(국내여비) 500만원, 지자체·유관기관 간담회 등(사업추진비) 500만원

나. 검토의견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에 특별한 설비 등이 요구되지 않는 교육·워크숍·정책세미나·포럼 등의 개최 등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경비의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6년 예산안 기준 산출내역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1개 지역당 국비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같은 규모의 지방비가 매칭(국비보조율 50%)되어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임.

이 중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는 계획상 '지역역량 성장거점'의 조성을 위해 지출될 것으로 보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 **소요예산 : 2026예산안 16억 5,000만원**

○ 지역역량성장거점 신규 공모 16억원 = 16억원 × **국비보조율 50%** × 2개소

○ 사업관리 5,000만원 = 공모 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일반수용비) 4,000만원, 현장점검 등(국내여비) 500만원, 지자체·유관기관 간담회 등(사업추진비) 500만원

□ **추진방식**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기초지자체	민간위탁
◦ 사업 총괄(콘트롤타워 역할) ◦ 지자체 행정혁신 지원(참여 확대, 부서 간 칸막이 완화 등) ◦ 생활권 중심 중앙부처 연계 ◦ 행안부 관련 지역재원 연계	◦ 조례 제정, **공간 새단장(일부) 등** ◦ 민간위탁 공모·선정, 관리 등 ◦ 市·郡 총괄부서(기조실 등) 중심, 다부처사업 담당부서 연계, 현장기반 정책화 프로세스 구축·관리	◦ **거점공간 운영** ◦ 지역사업 추진 - 다부처사업 연계기획 및 신규콘텐츠 개발 - 현장기반 정책화 프로세스 지원 등

○ 국비 및 지방비(매칭) 용처

행정안전부	국 비 50%	자치단체경상보조*	※ 공간 운영비(인건비) 제외
기초지자체	지방비 50%	**시설비(리모델링)**, 운영비·사업비 등	※ 공유재산 확보 별도

*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기 조성된 거점 中 즉시활용가능성(정책효능감 창출)을 중점적으로 고려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열린공론장, 다부처 협업 정책세미나·포럼 등이 거점공간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임.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산출내역(안)]

사업명	사업내용	산출내역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 지역역량성장을 위한 기초단위 거점기능 활성화 - **지역역량 강화 교육 · 워크숍, 지역활성화 관련 열린공론장, 다부처 협업 정책세미나 · 포럼 등** ※ (참고) 프랑스, '제3의 장소' 정책: 중앙-지방정부 공동추진	2개 지역 × 8,000만원 = 1억 6,0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상의 활동들은 특별한 설비 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보유한 교육장, 회의장 등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충분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공간을 선정하여 리모델링을 거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외 성공사례(프랑스 '제3의 장소' 정책)를 참고하였고 신규 인프라 조성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기 조성된 공간(저활용 등)을 운영·기능 중심으로 고도화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 리모델링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매칭지방비 산출내역에는 '지역역량 성장거점'의 공간 새단장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출내역에 반영된 과업이 불필요하다면 해당 비용의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선정 과정에서 '지역역량 성장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는 등 별도의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13.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신규): 사업 지출구조의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과 기업의 협업 선도사례의 발굴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4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3)]

[2026년도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B-A)/A
지역발전활성화	5,328	5,328	10,777	5,259	102.3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	-	430	430	순증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4억 3,000만원 중 2억원을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지원할 계획임.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4억 3,000만원
- 기업연계 지역소멸 대응 아이디어 공모 : 7,300만원
(운영비) 공모전 용역 4,000만원, 아이디어 구체화 컨설팅 3회×30만원×10명,
사업추진비 7명×10만원×10회, 국내여비 7명×10만원×10회, 사업관리비 100만원×10회
- 기업이전 및 지역-기업 상생협력 지원 : 3억 5,700만원
(운영비) 행사운영비 6,000만원, 홍보비 7,000만원, 전문가 자문수당 2회×30만원×5명,
사업추진비 7명×10만원×10회, 국내여비 7명×10만원×10회, 사업관리비 100만원×10회
(보조금) 사업화 지원 5,000만원 × 4개 지역 = 2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5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세출)-지역발전활성화(1231-303)(균형발전지원국)

나. 검토의견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보조금 규모(2억원)에 비해 홍보비·운영비 등(1억 5,700만원)의 비중이 과다해 보이므로, 관련 경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4억 3,000만원 중 '기업이전 및 지역-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이 사업은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되는 지자체 보조사업임에도 '기업이전 및 지역-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은 2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 5,700만원은 행사운영비·홍보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임.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국 단위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전광판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굳이 대규모 홍보행사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몇 성과 예시]

□ 추진배경
○ 지역 - 기업 협업 선도사례 창출 및 체계적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한 지방소멸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 제시

□ 추진방안
○ (내용)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과 기업의 협업 선도사례 발굴로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민관 참여형 지역발전 활성화 모델 신규 창출
○ (성과)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기업 협업 성과 창출



롯데웰푸드 협업 ('24.10월) | 이마트24 협업 ('25.5.21.) | 폐현수막 재활용 ('25.6.5.) | 아이디어 공모전 ('25.5.~8.)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과다 계상 우려가 있는 '기업이전 및 지역-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의 행사비·홍보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1조 5,13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0억원(0.6%) 증가함.[1)]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5,040	15,040	15,130	90	0.6
총수입	15,040	15,040	15,130	90	0.6

문의 :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pmh1117@assembly.go.kr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14조 2,442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162억원(5.3%) 증가함.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35,280	135,308	142,442	7,162	5.3
총지출	135,280	135,308	142,442	7,162	5.3

나. 예산안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조 5,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원(0.9%) 증가함.

[2026년도 경찰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4,653	14,653	14,763	110	0.8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915	915	947	32	3.5
합 계	15,568	15,568	15,710	142	0.9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조 3,029억원으로 전년 대비 7,184억원(5.3%) 증가함.

[2026년도 경찰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34,880	134,909	142,031	7,151	5.3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915	915	947	32	3.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	50	51	1	2.8
합 계	135,846	135,874	143,029	7,184	5.3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경찰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3개(54억 3,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치안데이터활용기술개발(R&D)’ 사업은 민감한 치안 비정형 데이터(영상, 음성, 텍스트 등)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암호화 컴퓨팅 기술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치안신산업핵심기술사업화지원(R&D)’ 사업은 치안 R&D 성과 중 경찰청에서 필요한 기술을 대상으로 치안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 및 제품화가 용이하도록 규격 마련·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산경찰병원건립’ 사업은 아산 지역에 경찰 특화 종합병원을 설치하여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 접근성 개선,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경찰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치안데이터활용기술개발(R&D)	1,560
2	치안신산업핵심기술사업화지원(R&D)	820
3	아산경찰병원건립	3,050
총지출		5,43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경찰청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은 ‘차세대지능형순찰플랫폼개발(R&D)’ 사업, ‘미래치안기반조성’ 등 총 17개임.[3)]

[2026년도 경찰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차세대지능형순찰플랫폼개발(R&D)	692	3,465	2,773	400.7
2	미래치안기반조성	2,235	7,525	5,290	236.7
3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	1,500	4,932	3,432	228.8
4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 (폴리스랩3.0)(R&D)	936	2,494	1,558	166.5
5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4,095	9,675	5,580	136.3
6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3,088	24,705	11,617	88.8
7	경찰인재개발	6,597	11,796	5,199	78.8
8	사이버범죄수사단서통합분석 및 추론시스템개발(R&D)	3,640	6,136	2,496	68.6
9	수사경찰전문교육	2,157	3,588	1,431	66.3
10	사이버수사 지원기술 개발(R&D)	5,304	8,736	3,432	64.7
11	경찰작전능력향상기술개발(R&D)	780	1,248	468	60.0
12	국제치안활동강화(ODA)	3,015	4,339	1,324	43.9
13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기술 개발(R&D)	3,120	4,483	1,363	43.7
14	장비관리유지	43,699	59,083	15,384	35.2
15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6,903	9,130	2,227	32.3
16	청사시설관리	81,079	96,088	15,009	18.5
17	피복관리	64,206	76,077	11,871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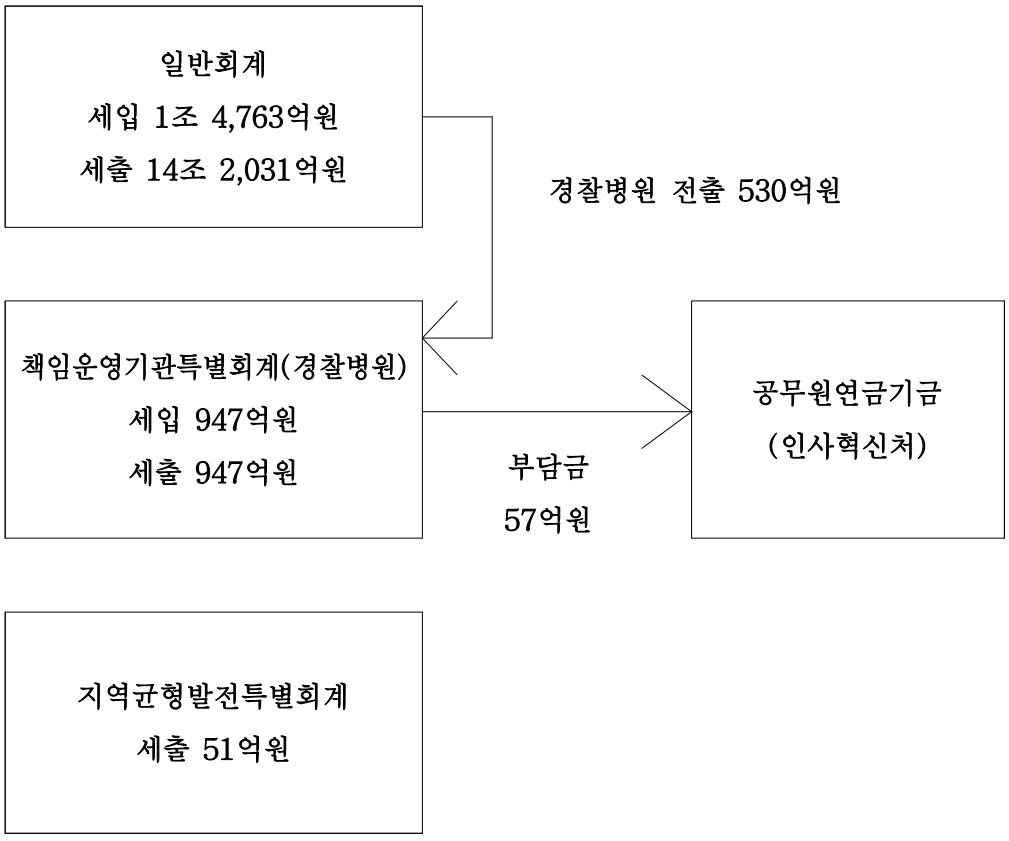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경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529억 9,400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57억 4,400만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임.

[경찰청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025년도 대비 R&D 예산이 41억 8,500만원 증액된 682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임.

또한, 2025년 8월 아산경찰병원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에 따라 2026년 설계비 30억 5,000만원을 신규 세부사업(아산경찰병원건립)에 편성하였고, 국민안전산업(치안·재난산업 등) 분야 기업 대상 투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정책펀드 출자예산 50억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민안전산업 펀드’ 사업은 첨단기술 기반의 국민안전산업(치안·재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주목적 투자비율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대상 분야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자금이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둘째, ‘경찰청 피복비’ 중 창경 80주년 기념에 따른 신형 점퍼 구입에 있어, 전체 경찰 인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우선 교체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국민 혼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형·신형 점퍼의 혼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착용지침 마련과 교체일정에 대한 국민 홍보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저위험권총 및 저위험탄 구매는 집행이 지연된 2025년 구매분은 확정된 표준규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기간인 2026년 내 저위험권총 운영과 관련한 세부준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2026년 구매 계획분이 2027년 현장 배치 되기 전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 사업: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가. 개 요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4]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 심신 단련 및 정서 함양을 위해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지원’** 사업은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9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5]

한편 **‘기타잡수입’**은 체력단련장(골프장)의 이용료, 폐기문서 및 폐토너 매각대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3,300만원(10.9%)이 증가한 48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경찰복지증진	83,446	83,446	87,867	4,421	5.3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지원	937	937	937	-	-
기타잡수입	4,353	4,353	4,886	533	10.9

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일반회계-경찰복지증진(7135-311)(경무인사기획관)

6) 일반회계-기타잡수입(69-691)(기획조정관)

현재 경찰청 체력단련장은 총 2개소(경기 용인, 충남 아산)가 있으며, 현직 경찰 공무원을 포함해 지역주민 및 정회원과 동반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임.[7)]

[경찰 체력단련장(용인·아산) 현황]

구 분	용인 경찰체력단련장	아산 경찰체력단련장
목적 및 기능	경찰 공무원 등의 체력 유지·향상,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위 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준공 연도	1987. 10. 24.	2015. 04. 01.
면 적	286,214㎡	399,405㎡
주요 시설	클럽하우스, 연습장, 그늘집	클럽하우스, 연습장, 그늘집
홀 개수	9홀	9홀

자료: 경찰청

7) [경찰 체력단련장(용인·아산) 이용요금]

이용대상	이용요금(18홀 기준)
현 직	3만원
퇴 직	4만원
순직유가족	2만원
지역주민	평일 7만 5천원 / 주말·공휴일 10만원
정회원과 동반한 일반인	평일 9만원 / 주말·공휴일 13만원

주) 정회원: 현직 경찰관, 경찰관서 공무원, 계약직, 경찰청·해양경찰청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자료: 경찰청

[최근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 입장인원 및 입장료 수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입장인원	입장료 수입
2022	71,154	2,549
2023	70,535	2,252
2024	66,334	2,095
2025. 8월말	39,900	1,651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은 입장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나 개별소비세는 과세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경찰 골프장의 성격을 검토하여 국방부 골프장 사례처럼 과세장소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체력단련장(골프장) 운영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의 10%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입장료 수입의 10%인 1억 9,0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음.[8] 이는 일반적인 영리 목적 골프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한편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골프장 입장 행위 자체에 대해 1인당 12,000원의 정액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경영자로 명시하고 있음. 일반 사설 골프장의 경우 이러한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적용되나, 경찰 체력단련장은 현재 해당 세목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개별소비세법」 관련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8) 2024년 전체 입장료 수입 중 부가가치세 납부금 1억 9,000만원을 제외한 17억 1,400만원은 기타잡수입으로 수납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9] 실질적으로 경찰 체력단련장이 일반 골프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개별소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경찰 체력단련장은 경찰공무원의 체력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체육시설'로서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이 국고로 수납되는 등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개별소비세 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다만 경찰 체력단련장은 직장체육시설임에도 지역주민과 일부 국민에게 이용이 개방되어 일반 골프장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별소비세법」상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는 골프장, 경마장 등 사치성·사행성 소비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여 교정적 성격을 갖고 있음. 한편 일부 골프장의 경우 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과세장소에서 제외하고 있음.[10]

경찰 체력단련장과 유사한 사례로 국방부 및 각 군은 체력단련장 형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

9)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0) 국방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적 성격을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은 회원 모집 없이 운영되는 비회원제 골프장 중 매년 고시되는 기준이용료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어, 대중성을 고려하여 제외된 것이라 볼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는 시 · 도지사가 지도 · 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 · 감독한다.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2] 과세장소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

제외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 체력단련장(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현행 법령상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함.

따라서 관련법령 및 일반 골프장, 국방부 체력단련장(골프장)의 법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의 입장행위를 현행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에 제외 대상임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사업: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간 임무 구분 및 책임 명확화 필요

가. 개 요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사업은 범죄예방·대응정책 수립, 현장 중심 경찰업무 수행 및 다자간 치안협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억 1,700만원(88.8%) 증액된 24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13,088	13,088	24,705	11,617	88.8
	기동순찰대 운영	5,595	5,595	4,970	△625	△11.2
	지역경찰 운영[12)]	17,870	17,870	12,401	△5,469	△30.6

내역사업인 **‘기동순찰대 운영’** 사업은 시·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소속된 기동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2,500만원(△11.2%) 감액된 4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내역사업인 **‘지역경찰 운영’** 사업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소속된 지역 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운영비, 역량 강화 시설 및 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억 6,900만원(△30.6%) 감액된 124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11) 일반회계-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범죄예방대응국)

12) ‘지역경찰 운영’ 사업은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1132-311)사업에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1131-311) 사업으로 이관되어 신규편성되었음.

13) 기동순찰대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의 예방·대응을 주된 목적으로 2024년 2월 출범되었음.

기동순찰대는 2023년 연이은 이상동기, 흉악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 예방·대응 강화를 위하여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2024년 2월에 전국 28개대, 2,668명 규모로 출범하였음.[14] 기동순찰대는 시·도경찰청에 소속되어 관할 경계에 상관없이 도보순찰 위주로 취약지 점검, 수배자·형사범 검거 등 예방활동과 함께 재해·재난 및 중요상황 지원을 수행하여 112신고 대응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지역경찰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음.

[기동순찰대 및 지역경찰 주요 현황]

구 분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주요 업무	도보순찰을 통한 검거·단속·환경개선 등 범죄 취약요인 해소	112신고 대응
소속	시·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배치단위	시·도경찰청 관할 ※범죄취약지·재범우려자 밀집지 등 위주	지구대·파출소 관할
규모	전국 28대 2,338명	전국 50,425명

자료: 경찰청

14) 기동순찰대 배치 현황 (2025년 8월말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순찰대	4	2	1	2	1	1	1	1	4	2	1	1	1	1	1	1	2	1	28
정원	340	170	85	170	85	85	85	43	340	170	85	85	85	85	85	85	170	85	2,338
현원	388	193	86	167	96	95	90	33	378	195	88	92	88	96	77	96	193	96	2,547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은 규정상 임무 범위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으며,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지휘체계 혼선 및 현장 대응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경찰청은 두 조직의 운영 목적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고려하여 상황별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동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기동순찰대의 임무 범위는 범죄취약지 도보순찰에서부터 간첩·테러·국가비상사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 한편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지역경찰 역시 순찰근무를 통해 범죄예방, 초동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31조 동원 규정에 따라 대간첩작전 등 비상사태에도 투입될 수 있어 기동순찰대와 업무 범위가 상당히 중첩되는 실정임.

[기동순찰대 및 지역경찰의 업무범위]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임무) 기동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범죄 취약지 및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거나 치안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를 위한 순찰** **2. 검문검색을 통한 범법자 검거** **3.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 대상인 기초질서위반행위의 단속** **4. 중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관할구역 내 주요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5. 간첩, 테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및 선거·경호 등 범국가적 치안수요에 대한 지원** 6. 주요 치안수요 발생시 시·도경찰청 각 부서와 경찰서에 대한 업무지원 7. 관할구역 내 범죄취약요소 진단 8.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타 기관 등과의 협력 치안 활동 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순찰근무) **③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2.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3.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4. 범법자의 단속 및 검거 5.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6.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제31조(지역경찰의 동원)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지역경찰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찰을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1. 다중범죄 진압, 대간첩작전 기타의 비상사태** **2. 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 **3. 중요범인의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 **4. 화재, 폭발물, 풍수설해 등 중요사고의 발생** 5. 기타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자료: 「기동순찰대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처럼 두 조직의 임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상이한 배치 단위(시·도경찰청, 지구대·파출소)로 운영되는 구조는 지휘체계 혼선과 현장 대응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실제 사건 발생 시 대응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지휘·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15] 기동순찰대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휘부·관리자 모두 지역경찰과의 역할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16] 지역경찰의 경우에도 응답자 1,148명 중 44.1%가 임무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실제 지휘·관리 상황 및 일선 대응 상황에 있어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의 운영 목적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고려하여, 일상적 범죄 예방 순찰에서부터 국가적 비상사태 대응에 이르기까지 상황별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휘체계 혼선과 일선 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5) 「기동순찰대 효과성과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 ㅇ 설문기간: 2025. 8. 8. ~ 8. 14.
- ㅇ 설문대상: 지휘부(시도청장·서장) 258명, 관리부(부·과장) 1,884명, 지역경찰 1,148명
- ㅇ 설문내용: 기동순찰대 인식·활용도, 규모 적정성, 활동 필요분야, 보완·개선방안 등

16) 기동순찰대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응답 결과
- ㅇ 지휘부: 인력조정(55.0%)과 **역할 차별화(55.0%)** > 署·기순대 협업강화 45.7%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응답자의 62.0%는 현재 인력이 많다고 응답
- ㅇ 관리자: **역할 차별화(58.2%)** > 인력조정(51.2%) > 서·기순대 협업강화 42.6%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응답자의 69.5%는 현재 인력이 많다고 응답
- ㅇ 지역경찰: 112신고처리 지원 70.8% > **기순대임무 명확화 44.1%** > 심야근무 31.0%를 요구하고, 건의사항(서술형) 대다수가 112신고처리 지원이나 야간근무 확대 등 요구

3. 국민안전산업펀드 사업(신규):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조정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민안전산업펀드’** 사업은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국민안전산업(치안·재난안전) 분야의 기반 조성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17]

[2026년도 국민안전산업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미래치안기반조성	2,235	2,235	7,525	5,290	236.6
국민안전산업펀드	-	-	-	5,000	순증

이 사업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1:1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혼합하여 운용하는 구조임. 이를 통해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치안·재난안전 등 국민안전산업 분야의 창업, 기술개발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안전산업펀드 구조]



자료: 경찰청

17) 일반회계-미래치안기반조성(7132-311)(미래치안정책국)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①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일반출자금(460-01) 각 5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②이를 한국모태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구조임. 이후 ③한국벤처투자가 민간 투자 운용사를 선정하면, ④운용사는 정부출자금 100억 원과 매칭되는 민간출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안전산업 분야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짐.

[국민안전산업펀드 사업 개요]

○ 국민안전산업펀드
- 투자대상: 첨단기술 기반 국민안전산업 분야의 '창업기업'·'기술사업화' 및 '국외 판로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 또는 '국민안전산업 진출 희망 기업'
- 출자규모: 정부자금 50%(100억원), 민간자금 50%(100억원)으로 연간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 *연간 경찰청 50억원, 행정안전부 50억원
- 주목적투자비율: 60% 이상
- 운용기간: 정책펀드 사례(6~10년) 고려하여 설정
- 기준수익률: 3% 설정 *초과 수익 달성 시, 펀드운용사에 인센티브(초과수익의 70% 내외) 부여

주) 주목적투자비율, 운용기간, 기준수익률 등 세부사항은 한국벤처투자와 협의 후 확정 예정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첫째, 국민안전산업 펀드 사업은 첨단기술 기반의 치안·재난안전 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국가재정이 주목적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주목적 투자비율의 하한선을 현재 고려 중인 60%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 펀드는 민간의 과소투자 분야 또는 집중적 초기투자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주요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경찰청은 국민안전산업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수익 보전 차원에서 주목적 투자비율의 하한선을 60% 수준으로 설정하고 향후 자펀드 운용업체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는 계획임.

그런데 현 계획상 국민안전산업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은 중소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책 펀드에서 통상적으로 설정하는 주목적 투자비율(60~80%)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 계획상 지원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상향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현 계획상 지원대상은 AI·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산업 창업기업 및 기술사업화·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벤처 기업 등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투자대상으로 설정한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특허계정에 속하는 펀드들의 주목적 투자비율이 대부분 70~80% 수준으로 60%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목적 투자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자펀드 사례(예시)]

(단위: %)

계정명	출자분야	주요투자대상	모태펀드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특허	IP직접투자	IP직접투자	60	60
	특허기술사업화	IP직접투자	70	60
		IP기반 스타트업육성	62.5	70
		IP창출·보호	50	70
		특허기술사업화	10	80
		특허기술사업화	50~60	60~70
		공공IP 사업화	40.2	70
		IP크라우드펀딩	60	70
		IP기반 창업기업	60	60
		IP기반 지역기업	60	60

주) 출처 자료 기준 최근 5년간(2020-2024) 결성된 중소기업모태펀드 계정에 속하는 자펀드 대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11.15.),「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pp.56~59

국민안전산업펀드와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분야에 속하는 환경계정의 미세먼지 관련 기업에 대한 주목적 투자비율 역시 70% 수준임. 그 밖에 투자대상 분야가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고 있는 관광계정(65%), 교육계정(80%), 환경계정(60~70%) 등에서도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18)]

18) 한국벤처투자,「2024년도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운용계획」, 2024.1.

[주목적 투자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자펀드 사례(예시)]]

(단위: %)

계정명	출자분야	주요투자대상	모태펀드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관광	관광기업육성	관광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65~70	65
교육	대학창업	대학창업기업	75	80
환경	미래환경산업	미래환경산업 기업	60~70	60~70
	미세먼지해결	미세먼지 관련 기업	70	70

주) 최근 5년간 결성된 중소기업모태펀드 계정에 속하는 자펀드 대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11.15.),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pp.56~59

또한 자산운용사 성과보수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이 최근 5년간 정책펀드 수익률(5%)에 비해 낮은 수준(3%)으로 설정되어 있고, 초과수익의 70% 내외에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성과보수의 지급이 예정되어, 성과보수 지급 측면에서 이미 자산운용사에 대해 상당한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19]

참고로 경찰청은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초과수익의 약 70%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타 부처의 공고 사례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으며,[20] 행정안전부의 계획상 기준(초과수익의 30~50% 이내)보다도 높은 수준이므로, 별도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21]

19)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2024.11.15.)에 따르면 출처 자료 기준 최근 5년간(2020-2024) '특허기술사업화' 대상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7.02% 수준임.

20)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 기준 사례]

구 분	계정	공고일	인센티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계정	2025.9.	초과수익 30% 이내 성과보수 지급 단, 관리보수율 하향조정 시 최대 10%p까지 상향조정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계정	2024.3.	초과수익 20% 이내 성과보수 지급 단, 관리보수율 하향조정 시 최대 10%p까지 상향조정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계정	2025.9.	초과수익 20% 이내 성과보수지급 단, 관리보수율 하향 조정시 최대 10%p까지 상향조정 가능
교육부	교육계정	2023.3	초과수익 20% 이내 성과보수 지급 단, 관리보수율 하향조정 시 최대 10%p까지 상향조정가능

자료: 한국벤처투자, 각 부처 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1)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안전산업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성·운용하는 정책펀드로, 시장실패로 인해 민간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분야에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유동하는 펀드 운용 취지에 따라 민간 참여 유인을 위해 약 70%로 완화하여 설정하였으나, 향후 타부처 펀드 비율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는 설명임.

따라서, 경찰청은 현재 계획상 60% 수준으로 예정되고 있는 주목적 투자비율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안전산업 펀드 사업은 투자대상이 국가데이터처 분류에 의존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치안산업’의 정의와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대상 외의 분야로 자금이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출자금 편성 및 집행 이전에 투자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경찰청은 국민안전산업펀드와 관련하여 전체 자금의 60~8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배정할 계획이며, 그 대상을 첨단기술 기반 국민안전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기술사업화 기업,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 또는 국민안전산업 진출 희망기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경찰청은 국민안전산업을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으로 구분하고, 국가데이터처 고시상의 특수분류 체계를 근거로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치안산업 특수분류에는 장비·의복 제조업, 도소매업, 설계·공사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난안전산업 또한 자연재난·사회재난 대응 관련 제조업, 공사업, 서비스업까지 포괄하고 있어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설정될 수 있음.

이처럼 투자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 당초 펀드의 목적이었던 첨단기술 기반의 국민안전산업 분야 중심의 투자가 희석되고, 본래 취지와 무관한 사업까지 자금이 분산되어 정책펀드 운용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큼.

[치안산업 특수분류(예시)]

코드	코드 명칭	코드	코드 명칭
1	치안 관련 제품 제조업	4	치안 관련 서비스업
1111	폭약 및 화약 제조업	4110	치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11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4121	치안 관련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1121	치안 관련 자동차 제조업	4129	기타 치안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치안 관련 제품 도매 및 소매업	5	치안 관련 기관 및 단체
2110	무기류 도매업	5110	경찰
2120	치안 관련 검색·관찰·전기통신장비도매업	5190	기타 치안 관련 공공행정
2130	치안 관련 감정·감식장비 도매업	5211	치안 관련 전문대학
3	치안 관련 건축·시설 설계 및 공사업	5212	치안 관련 대학교
3100	치안 관련 건축·시설 설계업	5213	치안 관련 대학원
3211	치안 관련 옥외 시설물 설치 공사업	5214	치안 훈련기관

자료: 치안산업 특수분류 제정, 국가데이터처 고시 제2024-845호

[재난산업 특수분류(예시)]

코드	코드 명칭	코드	코드 명칭
1	자연재난 예방산업	4	재난 복구산업
111	풍수해 예방 제품 제조업	411	시설피해 복구 공사업
112	풍수해 예방 제품 판매업	412	비상전력 생산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
113	풍수해 예방 제품 수리업	413	비상전력 생산용 기기 및 장치 수리업
2	사회재난 예방산업	5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211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 제품 제조업	511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212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 제품 판매업	512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
213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 제품 수리업	513	재해감시시스템 서비스업
3	재난 대응산업	521	안전시설 관리 서비스업
311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	522	위험물품 보관 서비스업
312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판매업	523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재해감시시스템 제외)

자료: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고시 제2025-592호

또한 국민안전산업 분야 중 '치안산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치안산업 진흥과 관련한 법률안 상 '치안산업'의 정의가 상이하게 규정되어있음.[22]

[치안산업진흥법 제정안 상 '치안산업'의 정의 규정]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131, 2024.12.2)	치안산업진흥법안 (의안번호: 2206829, 2024.12.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안산업"이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안"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치안산업"이란 **치안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개발, 설계, 유통, 연구개발,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따라서 첨단기술 기반의 국민안전산업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펀드 투자대상인 국민안전산업 범위와 그에 따른 첨단기술이 무엇인지 선별할

22) 신정훈 의원안(의안번호: 2206131)은 치안산업을 기술·장비·시설·제품 등 상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한정하는 반면, 윤재옥 의원안(의안번호:2206829)은 연구개발·정보제공·컨설팅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 제정 경과에 따라 범위 설정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법률상 정의와 실제 투자 대상 범위 간 괴리가 생길 우려가 있음.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 고시상의 특수분류 체계와 연계하여 투자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4. 경찰관 피복비 등 사업: 구형·신형 점퍼 혼용에 따른 국민 혼란 방지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경찰관 피복비 등’ 사업은 경찰 근무에 필수적인 제복 및 장구류 구입 비용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1억 6,400만원(19.0%) 증액된 760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6년도 경찰관 피복비 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피복관리	64,206	64,206	76,077	11,871	18.5
경찰관 피복비 등	63,892	63,892	76,056	12,164	19.0

이 사업은 정기 교체가 필요한 근무복, 외근화 등 희망품목, 신임경찰 피복, 항공 등 특수피복, 외근장구·보호장비 및 불용피복 처리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희망품목’ 예산에 있어, 경찰청은 창경 80주년 경찰 복제 개선을 위하여 신형 점퍼 구매를 위한 예산 21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

[경찰관 피복비 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경찰관 피복비 등
- 희망품목: (’25) 503억 1,400만원 → (’26) 573억 3,800백만원 (+70억 2,400만원)
  신형 점퍼: 70,240명×301,000원 = 211억 4,200만원
- 신임경찰 피복: 87억 400만원
- 특수피복: 5,500만원
- 경찰관 외근장구·보호장비: 97억 9,300만원
- 피복 불용: 1억 6,600만원

자료: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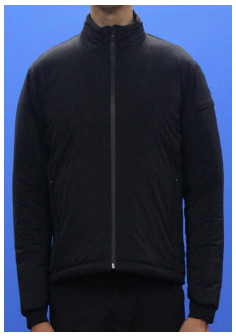
희망품목 전체 구매 예산은 연차별 교체 계획에 따라 산정·편성되고 있음. 그 중 점퍼는 종래 봄·가을용과 겨울용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6년에 도입될 신형 점퍼는 계절 구분없이 통합점퍼와 내피로 구성되며 디자인 및 소재 등이 변경되었음.

23) 일반회계-피복관리(4231-313)(미래치안정책국)

[기존 외근점퍼와 신형 외근점퍼 비교]

구분	봄가을 점퍼	겨울 점퍼
단가	84,000원	117,000원
이미지		
개선 필요점	▵ 활동성이 떨어지고, 오염 쉬움 ▵ 방투습 겉감 원단, 심실링 방수 공법 적용에 부적합한 설계 구조·안감 사용으로 쾌적성·보온성이 떨어짐 ▵ 외근혁대 사용을 고려한 밑단 처리 방식(블루종 형태) 실루엣 ⇒ 사용 편의성 저하	▵ 동절기 착용 시, 매우 춥고 무거움 ▵ 역동적인 활동 시, 열반사가 안되어(통풍구 부재) 땀이 내부에서 식어, 동절기 의류 환경 부적절(급격히 추워짐) ▵ 그 외 봄가을 점퍼의 단점과 동일한 문제점 발생



외피			내피		
	단가	201,000원		단가	100,000원
	겉감	고급 방투습 원단 (기능성 소재)		겉감	초경량 (저데니어) 원단
	안감	초경량 원단 + 메쉬 구조		충전재	고기능성 합성 충전재
	주요 기능	4계절 방투습 기능 (활동성 강화) 야간 시인성 강화		주요 기능	착용감·활동성 강화로 사용자의 선택적 착용 탁월한 착용감 (하이브리드 소재 적용)
▵ 경량·방투습 기능 강화 소재를 적용하여 외근 근무 특화 ▵ 인체공학적 패턴 적용으로 활동성 강화하고, 경찰 다양한 근무 활동에 최적화 ▵ 제품 전·후면 시인성 강화 디테일 적용으로 야간 근무 시 시민대상 경찰 인식 용이			▵ 초경량화 소재, 충전재, 구조 설계 적용으로 피로감 감소 ▵ 수분에 강한 충전재 적용으로 보온성과 땀·열기 등 다양한 경찰 착용자의 상황에 맞춰 범용적 착용 가능 ▵ 레이어드 시스템 적용에 최적화한 구조, 중량감으로 필요시 추가 레이어드 가능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경찰청 피복비 중 신형점퍼 구입에 있어, 전체 경찰 인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우선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식 혼란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 방안은 미흡한 상황으로 보임. 따라서 경찰청은 구형·신형 점퍼의 혼용 기간 동안의 명확한 착용 지침 마련과 교체 일정에 대한 국민홍보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약 10년 주기로 복제를 변경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복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찰관 및 시민 대상 실물·온라인 품평회와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2025년 9월 현재 최종 모델을 제작 중임. 연말까지 시범 착용 및 보강 과정을 거쳐 12월 최종 결과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임.

이후 경찰청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대규모 교체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함. 2026년 예산안에는 전체 교체 인원 133,760명 중 외근 인원 70,240명에 대한 교체분이 우선 반영되었음. 다만 이 과정에서 신형·구형 점퍼가 혼용되는 기간이 불가피하여 국민의 인식 혼란 가능성이 우려됨.

[신형 점퍼 교체 계획]

(단위: 명)

구 분	인원 (현원)	2026년 교체 인원	2027년 교체 인원
외근인원	70,240	70,240	-
내근인원	63,520	-	63,520

주) 외근(70,240명) : ① 지역 경찰 51,156명 ② 기동순찰대 2,668명 ③ 교통 외근 5,200명 ④ 기동대 11,216명
내근(63,520명) : ⑤ 내근(근무복) 18,190명 ⑥ 교통 내근 1,148명 ⑦ 사복 44,182명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의 인식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외근 경찰에게 신형 점퍼를 배분하고 이후 내근 경찰로 확대 배정함으로써 현장의 통일성과 시민 인식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임.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근·내근 인원 간 신형·구형 점퍼가 혼용되는 기간에는 국민의 인식 혼란 등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따라서 혼용기간 동안 내근인원의 기존 점퍼 착용 장소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한 착용 지침을 마련하고, 신형 점퍼 교체 일정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보급 이전에 혼란을 방지할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경찰기동력강화 사업: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은 노후 차량의 교체, 순찰차 등 증차 및 차량임차 비용을 지원하여 경찰의 기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2억 1,200만원(△1.4%) 감액된 87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24)]

[2026년도 경찰기동력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경찰기동력강화	88,757	88,757	87,545	△1,212	△1.4
노후차량교체	83,981	83,981	81,143	△2,838	△3.4
증차	4,186	4,186	4,186	-	-

내역사업인 **‘노후차량교체’** 사업은 내용연수에 따라 순찰차, 전기승용차, 일반승합차, 화물차 등의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3,800만원(△3.4%) 감액된 81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증차’** 사업은 치안력 강화를 위해 순찰차, 일반승합차 등 업무차량의 신규 구입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1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찰기동력강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노후차량교체 81,143백만원**
- 순찰차량 교체 56,074백만원
- 기능별차량 교체 25,068백만원
○ **증차 4,186백만원**
- 순찰차 1,811백만원
- 기능별 차량 2,376백만원

자료: 경찰청

24) 일반회계-경찰기동력강화(4231-311)(미래치안정책국)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의 차량 구매는 MAS(다수공급자 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 구조에 따라 진행됨. 경찰청의 구매계획에 따라 조달청이 우선 다수의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경찰청의 납품요구에 따라 차량이 공급되며 검사·검수를 거쳐 최종 인도된 뒤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임.

[경찰청 차량 구매 계약 절차]

MAS 계약	⇨	차량구매 협조 전 통보	⇨	분할 납품요구	⇨	차량 납품	⇨	검사·검수	⇨	차량인도, 대금지급
조달청↔업체들		장비→경리		경리→조달청		납품업체		치안산업·장비		장비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은 2024년 납기 지연으로 인한 납품사 제재조치 진행 중으로, 일부 차종의 경우 2025년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2026년에 필요한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재차 납품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 제조사와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차량을 확보하고, 납품사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구매 사양서 검사항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 차량구매와 관련하여, 노후차량 교체사업은 2025년 8월말 기준 예산액 839억 8,100만원 중 210억 3,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5.1%이고, 증차 사업은 예산액 41억 8,600만원 중 8억 2,6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9.7%임.

[2025년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8.			
	예산액		집행액 (B)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노후차량교체	83,981	83,981	21,038	**25.1**
증차	4,186	4,186	826	**19.7**

자료: 경찰청

이는 2024년 구매분에 대한 납품지연 및 현재 그에 따른 제재조치 중에 있어, 2025년 차량 계약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2024년 일부 차량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경찰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납품사에 지체상금 8억 1,000만원을 부과하였고,[25] 납품사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9월말 기준 가처분 불복에 따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25년 MAS 계약에 패널티 부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순찰차 및 사고조사차(일반승합차 중 일부)의 2025년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 있음.[26]

2025년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동일 차종은 2026년도 예산안에도 구매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나, 2025년 계획분은 가처분 결과 확정 이후인 10월 중순 이후에야 계약 추진이 가능하고 계약 이후 납품·검사 기간을 고려할 때 2026년 구매분과 일정이 중첩될 것으로 예상됨.

---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26) 2024년 사고조사차(일반승합), 전기·수소전기·고속순찰차 등 총 343대(계약금액 224.9억 원)에 대해 납기 지연이 발생하여 2025.5.8.~2025.6.2. 기간에 납품이 이루어졌음. 2025년 조달청의 MAS 계약에 있어 '적기 납품' 평가항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에 지체상금 부과 정보가 연계되어야 하는 상황임.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의 2025년 집행 현황 및 2026년 구매 계획]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2025				2026 계획	
			계획		집행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순찰차	노후차량 교체	전기중형	217	14,741	-	-	262	17,798
		수소전기	45	3,705	-	-	-	-
		112중형	758	36,126	-	-	758	36,126
		고속	32	1,600	-	-	32	1,600
		암행	10	550	-	-	10	550
	증차	중형순찰	38	1,811	-	-	38	1,811
	합 계		1,100	58,533	-	-	1,100	57,885
기능별	노후차량 교체	전기승용	131	5,944	73	3,433	131	5,944
		수소전기버스	3	2,190	3	2,066	-	-
		일반승합	500	16,500	375	13,270	500	16,500
		화물	10	370	10	282	10	370
		특수	13	1,430	5	548	13	1,430
		이륜	55	825	55	1,438	55	825
	증차	일반승합	72	2,376	20	826	72	2,376
	합 계		784	29,635	541	21,863	781	27,445

주) 2025년 8월 말 기준
자료: 경찰청

지연 물량이 가장 많았던 순찰차(노후차량 교체·증차 포함)의 2024년 구매분의 경우, 총 1,048대 중 705대가 정상 납품되었으나 343대는 납품이 지연되었고, 이 중 일부(306대)는 납기 이후에야 납품 검사를 요청하는 등 납품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2026년에는 2025년 계약 미체결분(1,100대)과 2026년 예산안상 계획분(1,100대) 등 총 2,200대의 순찰차 구매가 더 필요한 상황임.[27)]

27) [2024년 순찰차 구매분 현황]

(단위: 대)

순찰차				
구 분	계획대수	구매대수	납품 현황	
			납기 내	납기 지연
노후차량교체	928	990		
증차	58	580		
합 계	986	1,048	705	**343**

주) 납기 지연분 중 306대는 납기 이후에 납품검사를 요청함
자료: 경찰청

이 경우 납기 지연 문제가 재차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026년에는 차량 제조사와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차량을 확보하고, 납품사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구매 사양서 검사 항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6. 장비관리유지 사업: 저위험권총 및 저위험권총탄의 예산 집행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장비관리유지’ 사업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장비·장구를 보급 및 지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3억 8,400만원(35.2%) 증액된 590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2026년도 장비관리유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장비관리유지		43,699	43,699	59,083	15,384	35.2
	현장장비구입	15,407	15,407	27,911	12,504	81.2
	장비유지관리 운영	24,025	24,025	29,717	5,692	23.7

내역사업인 **‘현장장비구입’** 사업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장비·장구를 보급 및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5억 400만원(81.2%) 증액된 279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저위험권총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저위험권총 9,126정 구입을 위한 136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장비유지관리 운영’** 사업은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품,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억 9,200만원(23.7%) 증액된 297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저위험권총탄 구입에 대하여는 저위험권총탄 2,460,400발 구입을 위한 7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8) 일반회계-장비관리유지(4231-314)(미래치안정책국)

[장비관리유지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현장장비 구입비 ('25) 15,407백만원 → ('26) 27,911백만원 - 권총 ('25) 3,232백만원→ ('26) 14,851백만원 (+16,619백만원) **저위험권총 (150만원×9,126정=13,689백만원)** + 38권총 (95만원×1,223정=1,162백만원) ○ 장비관리운영 ('25) 24,021백만원 → ('26) 29,717백만원 - 권총탄 ('25) 10,369백만원 → ('26) 15,460백만원 **저위험권총탄 (3,150원×2,460,400발=7,750백만원)** + 38권총탄 (355원×21,716,275발)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종래 강력범죄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38권총을 운용해왔으나, 지나치게 높은 살상력으로 인해 경찰관의 사용 부담이 크고 범죄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8권총보다 살상력이 약 1/10 수준인 저위험권총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38권총 및 저위험권총 비교]

구 분	38권총(3인치)	저위험권총(3인치)
사진		
무게(g)/전장(mm)	694 / 191	535 / 204
탄약공급방식	실린더(5발)	실린더(6발)
안전장치	없음	있음
레이저포인터	없음	있음
에너지값	350J	35J
단가	95만원 (탄환: 355원)	150만원 (탄환: 3,150원)

자료: 경찰청

저위험권총은 2024년 실용화 검증을 통해 15개 기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고, 2025년 8월에 성능 및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9월 기준 운영 지침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제도적 정비 단계를 진행하고 있음.

[2025년 저위험권총 도입 추진 현황]

추진 일정	추진 사항		주관
'25.3월~8월	①실험 ②검사	자료연구 성능도출실험 / 안전성검사	치안정책연구소
⬇			
'25.9월	③기준	Ⅰ.성능한계, Ⅱ.사용한계, Ⅲ.유지관리 기준 도출	장비운영 (관련 기능 및 내·외부 전문가 협업)
⬇			
'25.9월~10월	**④지침·계획 반영**	지역경찰 운영지침 개정	지역경찰
		교육훈련계획 반영	교육운영
		장비 유지관리 계획 수립	장비운영
⬇			
'25.10월~12월	⑤규정화	장비 사용·관리 규정 개정	지역·교육·기획·장비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저위험권총 및 저위험권총탄 구매는 표준규격 마련을 위한 R&D 과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집행이 지연된 2025년 구매분은 확정된 표준규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기간인 2026년 내 저위험권총 운영과 관련한 세부준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2026년 구매 계획분이 2027년 현장 배치되기 전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저위험권총 및 저위험권총탄의 구입 및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구입과 실제 배치 사이에 약 1년의 시차가 존재하고, 2026년 예산안에는 2027년에 배치될 서울·부산 현장배치용(5,766정) 및 일부 광역시 훈련용(3,360정) 총 9,126정(136억 8,900만원)의 저위험권총 및 246만 400발의 저위험권총탄 구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저위험권총 연도별 구매계획]

구매연도·수량		훈련용 보급		현장 배치용 보급		
구매연도	구매수량 (예산)	보급수량	보급관서	보급수량	보급관서	대상인원
'25년	1,380정 (20.7억)	1,380정	서울·부산 지역 전체(46개) 경찰서 (경찰서별 훈련용 30정)	-	-	-
'26년	9,126정 (136.9억)	3,360정	광역시 등 112개 경찰서 (경찰서별 훈련용 30정)	5,766정	서울·부산 지역 전체(46개) 경찰서 ('25년 보급된 1,380정을 포함 7,146정 배치)	14,291명 (2인1정)
'27년	9,311정 (139.7억)	3,060정	그 외 102개 경찰서 (경찰서별 훈련용 30정)	6,251정	광역시 등 112개 경찰서 ('26년 보급된 3,360정 포함 9,611정 배치)	19,222명 (2인1정)
'28년	8,839정 (132.6억)	3,385정	교육기관 (교육용 3,385정)	5,454정	102개 경찰서 ('27년 보급된 3,060정 포함 8,514정 배치)	17,027명 (2인1정)
계	28,826정('24년 170정 포함)					

자료: 경찰청

[저위험권총 훈련 및 현장배치 로드맵]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운용 기준 규격 수립 성능 향상	➡	서울·부산	사전훈련	시범운영 현장배치		
		광역시 등 112개 서		사전훈련	시범운영 현장배치	
		그 외 102개서			사전훈련	시범운영 현장배치

자료: 경찰청

그러나 2026년 계획분에 앞서, 2025년 구매 계획분은 성능실험 및 안전성 검사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구매가 보류되어 2025년 9월말 기준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29]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회 상임위에 성능실험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 이후 구매하겠다는 입장이나, 이와 별도로 아직까지 저위험권총 및 저위험탄의 '표준규격' 개발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29) 2025년 9월말 기준 2025년도 저위험권총(1,380정) 구입을 위한 20억 7,000만원 및 저위험권총탄(844,450발) 구입을 위한 26억 6,000만원 총 47억 3,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

경찰청은 별도 세부사업인 ‘경찰장비개선(R&D)(4431-706)’ 사업을 통해 저위험권총 및 저위험권총탄의 표준규격 개발 과제를 추진 중이며, 해당 연구는 2025년 12월 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임. 연구결과에 따른 표준규격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성능·안전성 기준과 인증체계를 제공하여 향후 구매계약 및 운용지침 마련 등의 근거가 되므로,[30] 2025년 구매 예정분 역시 표준규격이 확정된 후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31]

따라서 집행이 지연된 2025년 구매분은 표준규격 확정 후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기간인 2026년 내 저위험권총 운영과 관련한 세부준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2026년 구매 계획분(현장배치용)이 2027년 현장 배치되기 전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0) 동일 세부사업 내 별도 구매 항목인 한국형 전자충격기 구입과 관련하여, 2022년 계약 공고 당시 규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핵심 성능 기준인 표적지 도달(0.33mm 동관 관통) 항목은 계약 체결 이후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설정되었음. 이후 납품검사에서 해당 기준에 따라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서 2023년 12월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고, 업체는 계약 공고 시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검증기준을 사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존재함.

31)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5년 11월 초 공청회를 통해 표준규격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함.

7.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신규 설치분에 대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술영상녹화 제도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7,900만원(38.1%) 증액된 1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32)]

[2026년도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수사인권보호활동	6,144	6,144	6,809	665	10.8
수사인권보호활동	6,144	6,144	6,809	665	10.8
진술영상 녹화실 운영	994	994	1,373	379	38.1

진술영상녹화제도는 피의자의 진술 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224조의2를 근거로 두고 있음.[33)]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장비와 인프라가 확충되어, 현재는 전국 경찰관서에 총 982대의 영상녹화 장비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32) 일반회계-수사인권보호활동(1231-317)(수사인권담당관)

33) 「형사소송법」
제22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 1,373백만원
- 소모품 구입비 200백만원
- 녹화장비 유지보수비 153백만원
- 노후 녹화장비 교체비 465백만원
- **신설녹화실 공사비(20개소) 205백만원**
(신설녹화실 공사비 20개소×1,025만원 = 205백만원)
- 신설 녹화실 장비 구입비(70개) 350백만원
(**신설 녹화실 장비 구입비 20개×500만원** + 녹화실 장비 구입비 50개×500만원)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최근 5년간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이 5% 내외로 저조함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설치 15개소 예산이 반영되었음. 특히 건물 내 기존 시설이 있음에도 확충된 사례가 있는 등 불필요한 예산 투입 우려가 크므로,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 제고와 운영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은 2021년 7.0%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3.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장비 확충과 인프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은 저조한 상황임. 그럼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존 녹화실 유지비 외에 신설 녹화실(20개소) 공사비 및 장비 구입비로 3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최근 진술영상녹화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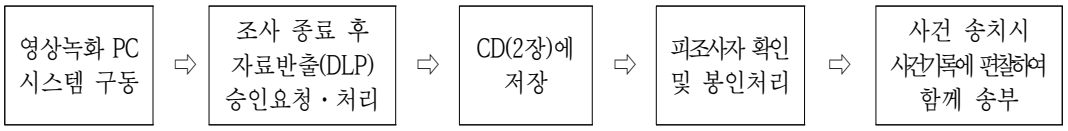
(단위: 건,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8월말
검거 피의자	1,136,661	1,133,788	1,186,123	1,222,484	816,896
영상 녹화 건수	79,170	78,103	60,926	55,399	31,940
영상녹화 실시율	7.0	6.9	5.1	4.5	3.9

자료: 경찰청

진술영상녹화 실시율 저조에 대하여 경찰청은 영상녹화 절차가 번거로워 경찰관들이 상대적으로 진술 녹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의자의 거부 시 강제할 수 없어 저조하다는 설명임. 실제로 영상녹화를 사용할 경우 조사 종료 후 CD저장, 봉인처리, 사건 기록 편철 및 송부 등의 절차가 요구됨.[34)]

[진술영상 녹화 절차]



자료: 경찰청

피의자 거부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경찰청 내부 업무처리 지침은 필요적 영상녹화 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거부 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영상녹화 수요 증가 또는 실시율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영상녹화실 신설에 대하여는 수요를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2026년 신규 설치(20개소)에 대하여 예산 확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 경찰서 및 외청 수사부서 건물 등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참고로 2025년에는 건물에 기존 시설이 있음에도 확충 설치한 곳이 9곳,[35)] 건물 내 시설이 없어 신규 설치한 곳이 6곳임.

현재 실수요가 저조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 이후 설치 장소를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설치 장소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필요성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한편, 특히 기존 시설이 있음에도 추가 확장을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설치분은 감액 조정을 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운영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임.[36)]

---

34) 한편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에 따라 영상녹화 자료도 전자문서와 함께 전자 송부가 가능하도록 2026년 경찰청 내 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이 경우 CD 저장 및 반출 과정에서 일부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35) 이에 대해 경찰청은 층간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였다는 설명임.

36)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6년 신규 설치 수요(청사 이전, 외청 수사부서 신설, 관서 내 분리건물 등)는 정책적 결정, 외부 변동요인 등 연도별 변화에 따라 사전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3년 신규 설치 영상녹화 조사실이 평균 9개소인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영상녹화 운영과 국민의 편의 보장을 위해 총 20개소의 예산 중 최소 9개소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실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8.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 소지허가 갱신 대상자 확대에 따른 모바일고지 서비스 도입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총포·화약 소지허가의 갱신 안내를 위한 우편료, 소지허가증 발급기 교체,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4,300만원(249.5%) 증액된 1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37)]

[2026년도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3,088	13,088	24,705	11,617	88.8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1,544	1,544	3,485	1,941	78.8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418	418	1,461	1,043	249.5

기존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상 ‘총포’ 소지허가만이 갱신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법률 개정(2024.12.)으로 갱신 대상 무기류의 범위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 무기류”)으로 확대되었고, 개정법률 시행(2026.1.)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갱신 대상자가 증가할 예정임.

갱신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①2026년도 예산안에는 갱신 대상자 안내를 위한 등기우편료가 전년 대비 1억 8,800만원 증액되어 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②위험성이 낮은 무기류의 온라인 갱신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8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37) 일반회계-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범죄예방대응국)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원: 1,46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료) 308백만원
('25) 48,000건×2,500원 = 120백만원 → ('26) 123,000건 ×2,500원 = 308백만원 (+188)
- 총포화약 안전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813백만원(신규)
서버 및 소프트웨어(자산취득비) 202백만원
연구개발비(일반용역비) 611백만원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첫째,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소지허가 갱신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갱신 안내를 위한 등기우편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갱신 안내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발송 방식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총포 등 무기류 소지허가 갱신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신청기간 및 장소, 제출 서류 등을 등기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등기 우편료로 2026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1억 8,800만원(156.7%) 증액된 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에 의하면, 등기우편료 단가는 동일하나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른 소지허가 갱신 안내 건수가 2025년 48,000건에서 2026년 123,000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우편료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38)]

38) 경찰청은 2025년 전체 총포 등 무기류 소지자 367,687명의 약 1/3(갱신주기 3년)을 반영하여 2026년의 갱신 안내 대상자(123,000명)를 산출함.

[총포・화약류 등 소지자 및 갱신자]

(단위: 명)

구 분	2023		2024		2025	
	소지자	갱신자	소지자	갱신자	소지자	갱신자
총포	86,262	8,958	88,734	8,048	89,192	13,363
도검	42,592	-	44,383	-	44,553	-
분사기	177,691	-	179,715	-	203,969	-
전자충격기	28,733	-	29,133	-	29,241	-
석궁	710	-	721	-	732	-
합 계	338,011	8,958	344,710	8,048	**367,687**	13,363

주) 2025년 2월 기준

자료: 경찰청

등기우편료의 단가의 건당 발송 요금은 2,500원으로 모바일 발송 단가(176원) 및 일반우편 단가(약 476원)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모바일 등 발송 방식을 변경할 경우 우편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39]

현행 「총포화약법 시행규칙」은 갱신 안내의 실시가 가능하다고만 규정[40]하고 있고 안내 방식이나 송달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소지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 등으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사례로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시 사전 동의자에게 이메일·문자(SMS)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청은 갱신대상자 확대에 따라 우편료 증가가 예상되므로 발송 방식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사전수신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 사업은 기존의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일부 무기류에 대하여 소지허가 갱신 절차를 전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나, 무기류의 규격 및 갱신자의 결격요건 등을 비대면 심사에 의존하는 것은 요건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판단의 세부 기준 등 무기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총포 등 무기류의 소지허가의 갱신 절차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면담을 통하여 결격사유 등 요건을 확인한 후 갱신 허가증이 발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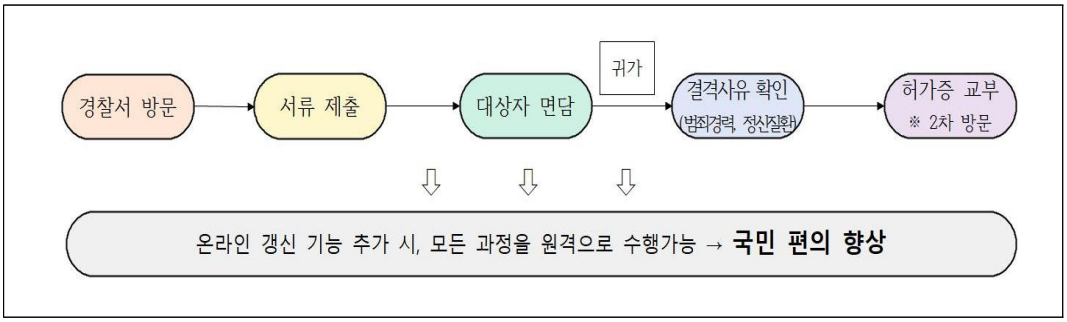
이 사업은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갱신 대상이 되는 무기류의 확대에 따라 일부 무기류에 대하여 소지허가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기존에 운영하던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

39) 총포 소지자 특성상 농촌지역 중·장년층이 주요 안내 대상이었으나 갱신대상인 무기류의 다양화로 지역 및 연령 특성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어, 특히 모바일 고지의 경우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우편료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소지허가를 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총포 등 무기류 소지허가 갱신 절차 변화]



자료: 경찰청

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갱신 기능 도입시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와 무기 사진을 온라인에 업로드하여 갱신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총포 등 무기류의 규격 및 형태와 결격사유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모두 비대면 온라인 절차로 이루어지게 됨.

[온라인 갱신 기능 도입시 변화]

도입 전		도입 후
▸총포(10만정) 3년 단위 갱신제도 - 경찰서 방문시 허가갱신 가능	⇨	▸도검·분사기 등(54만정) 갱신제도 도입 - 분사기·전자충격기 온라인으로도 허가갱신 가능
▸대상자 대면을 통해 **무기 실물 확인**이 가능		▸위·변조 확인 기능 활용, **무기류 사진을 제출**받아 실물확인 가능
▸’13년부터 사용 중인 구식 UI		▸최신 UI 활용으로 업무능률 향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시스템 기능 활용 가능		▸크롬·엣지 등에서도 시스템 기능 활용 가능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현재 계획상 위험성이 낮은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에 한정하여 온라인 갱신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나, 이들 역시 불법 개조나 성능 조작 등의 가능성 등이 존재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영향 등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41]에 대하여 온라인 절차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경찰청은 시스템 기능 개선 시 제출 서류와 사진의 위·변조를 철저히 방지하고,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명확한 허가요건 판단이 어려워 추가 대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세부 요건과 판단기준을 정비하는 등 총포 등 무기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1)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 ·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위장)한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은 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13%) 증가함.[1)]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6	46	52	6	13
총수입	46	46	52	6	13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은 3,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0.5%) 감소함.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311	3,456	3,295	△16	0.5
총지출	3,311	3,456	3,295	△16	0.5

나. 예산안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13%) 증가함.

[2026년도 소방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6	46	52	6	13
합 계	46	46	52	6	13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3,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0.5%) 감소함.

[2026년도 소방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311	3,456	3,295	△16	0.5
합 계	3,311	3,456	3,295	△16	0.5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소방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5개(149억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R&D)’ 사업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시스템 단위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를 위한 실·검증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5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은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 소방기술 확보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 및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8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소방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R&D)	3,500
2	철도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철도 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 체계 개발(R&D)	1,800
3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3,800
4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R&D)	4,500
5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R&D)	1,300
총지출		14,9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소방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119종합상황관리’,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디지털 혁신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R&D)’,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R&D),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사업’ 등 총 12개임.[3)]

[2026년도 소방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119종합상황관리	125	1,287	1,162	929.6%
2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1,017	10,407	9,390	923.3%
3	디지털 혁신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R&D)	500	2,500	2,000	400.0%
4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1,700	3,700	2,000	117.6%
5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R&D)	900	1,800	900	100.0%
6	국립소방연구원운영	1,255	2,106	851	67.8%
7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개발(R&D)	390	624	234	60.0%
8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R&D)	530	799	269	50.8%
9	정책연구개발	400	600	200	50.0%
10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2,600	3,600	1,000	38.5%
11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 소화성능 향상 기술개발(R&D)	750	1,000	250	33.3%
12	소방산업육성	464	614	150	32.3%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소방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소방청 예산안은 전년(3,311억원) 대비 0.5%(3,295억원) 감소하였으나,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완료사업(△76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9.2%(744억원) 증가함. 특히 R&D사업이 전년(305억원) 대비 64.9%(198억원) 증가하여 미래형 재난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크게 높아짐.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10·29 이태원참사,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 등 대형재난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소방관의 마음 건강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형 재난·사고현장을 경험한 소방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둘째, 소방청은 2026년에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자 하나, 이 사업이 소방청의 다른 지자체 보조사업에 비해 국고보조율이 다소 높다는 점에서 적정 보조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시·도별 상이한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을 차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립소방병원이 계획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위한 내과 등 7개 과목에 대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대형 재난·사고현장 출동대원 심리지원 강화 필요

가. 개 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8,400만원(8.2%) 증액된 50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4,677	4,677	5,061	384	8.2
찾아가는 상담실	3,014	3,014	3,448	434	14.4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690	690	740	50	7.2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560	560	560	-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35	35	35	-	-

주)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에는 ①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6,500만원, ② 순직소방관 예우지원 사업 1억 5,000만원, ③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3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음

4) 일반회계-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기획조정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찾아가는 상담실 (34억 4,800만원)**
- 국고보조: 141명(상담사 인원) × 4,575만원(상담 운영비) × 50%(국고보조) = 32억 2,500만원
- 직접수행: 5명(상담사 인원) × 4,114만 5,000원(상담 운영비) = 2억 600만원

* 상담사 인원 : 소방청 및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배치(수도권, 충청·강원, 호남, 영남)
- 사업추진 여비 : 7만 5,000원 × 3명 × 40회 = 900만원
- 사업운영 책자발행 : 800부 × 1만원 = 800만원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7억 4,000만원)**
- 국고보조: 2,800명(지원인원) × 50만원 × 50% = 7억원
- 직접수행: 80명 × 50만원 = 4,000만원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5억 6,000만원)**
- 8,000명(지원인원) × 7만원 = 5억 6,000만원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3,500만원)**
- 1식 × 3.500만원 = 3,500만원

자료: 소방청

소방청의 마음건강 보건안전 지원사업은 크게 '선별·상담·회복·치료'의 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초기 상담을 통해 마음건강 관리·치료필요군을 '선별'하고 있고, 찾아가는 상담실 심층·집단상담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악화를 예방 및 '상담'하고 있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신체리듬 '회복'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검사 약제비 전액 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4대 마음건강 보건안전 지원 사업 운영 체계]

선별	**마음건강 설문조사**	• 개인별 정신건강 점검 및 관리·치료필요군 구분
상담	**찾아가는 상담실**	•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선정하여 상담, 마음건강 교육 등
회복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2~4일간 전문치유 프로그램 운영(힐링, 명상 등)
치료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 정신건강 관련 병원비, 약제비 전액 국비 지원

자료: 소방청

나. 검토의견

10·29 이태원참사,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 등 대형재난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소방관의 마음 건강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형 재난·사고현장을 경험한 소방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대형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인력들은 장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2024년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심리지원 상담 결과에 따르면, 출동대원 2,204명 중 약 12.5%인 275명의 인원이 치료 또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 중 70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긴급심리지원 상담 결과]

(단위: 명)

구분	계	전남	광주	전북	중구본	경남	충남	서울	충북	경기	대전	부산	세종	경북
출동대원	2,204 (100.0)	1,186	339	180	153	68	76	56	50	46	34	6	6	4
치료·관리 필요	275 (12.5%)	243	21	1	9	-	-	-	-	1	-	-	-	-
치료필요	70 (3.2%)	52	16	-	1	-	-	-	-	1	-	-	-	-
관리필요	205 (9.3%)	191	5	1	8	-	-	-	-	-	-	-	-	-

주) 치료 필요는 전문상담사가 상담 후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한 사람이며, 관리 필요는 치료 대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함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1,125명에 대해서도 긴급심리지원을 통해 심층상담이 필요한 인원을 142명(12.6%)으로 확인하였고, 전원 병원으로 연계하였음.

그러나 2025년 7월 29일 이태원참사 당시 투입된 40대 소방관이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2025년 8월 20일에는 이태원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소방관이 10일 동안 실종 후 숨진 채로 발견되었음.

이러한 사건들은 참사 현장을 목격하여 발생한 트라우마 등은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수년 뒤에 증상이 발현됨을 시사하는 바, 소방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참사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을 단발적·임시적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추적관찰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은 1년 단위의 신청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소방관이 매해 직접 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5)]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대형 재난·사고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추적관찰하고, 마음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을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병원진료를 연계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하는 수준임.

2.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신규): 국고 보조율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은 노후 아파트 거주 취약계층(13세 미만 아동·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에게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1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2026년도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1,017	6,180	10,407	9,390	923.3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	-	7,190	7,190	순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71억 9,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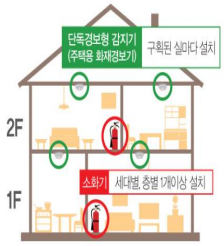
· **단가 8,000원×감지기 3대×노후 아파트 50만세대×60%(국비80%×신청예상75%) = 71억 9,000만원**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이 사업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배선 없이 설치 가능한 건전지 내장(10년 이상 배터리 수명) 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지원하여, 85dB 이상의 경보음으로 거주자에게 대피 신호를 제공해 노후아파트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6) 일반회계-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1133-300)(화재예방국)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비 개요]

			
외관 **(직경 10cm, 무게 150g)**	**기준** **(구획된 실마다)**	**설치** **(나사고정)**	**유지관리** **(리셋버튼 누름)**

자료: 소방청

나. 검토의견

소방청은 2026년에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자 하나, 이 사업이 소방청의 다른 지자체 보조사업에 비해 국고보조율이 다소 높다는 점에서 적정 보조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시·도별 상이한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을 차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노후아파트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기 위해 사업비의 80%를 국고로 보조하고, 사업비의 20%는 지방이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6호나목[7]에 따르면 지역의 화재예방은 자치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8]

---

7)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8) 소방청은 최초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비 100%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방사무적 성격이 지적되면서 지방 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함.

2024년을 기준으로 2,953억 1,300만원의 소방안전교부세[9]와 1조 3,084억 4,900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10]가 소방정책사업비로 지방에 교부되어 시·도 소방본부에 재정사업 이외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을 통해 국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2024년 주요 지자체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교부액의 소방정책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서울		대전		세종		경기		강원		경북		전국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소방안전교부세	24,694	17,197 (69.6)	13,084	10,515 (80.4)	6,276	4,139 (65.9)	40,465	26,697 (66.0)	18,892	12,549 (66.4)	24,737	22,336 (90.3)	295,313	260,595 (88.2)
지역자원시설세	233,656	215,200 (92.1)	31,036	30,114 (97.0)	10,625	10,582 (99.6)	322,000	272,112 (84.5)	40,300	40,300 (100.0)	72,021	72,021 (100.0)	1,308,449	1,231,952 (94.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교부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소방청

다만, 이에 대해 소방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11]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12]는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존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등에 집행되고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만 사업비로 충당되고 있어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시·도별 재정력 격차에 따른 소방서비스 편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함.[13]

---

9)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와 그 정산액을 재원으로 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25%는 인건비 재원으로 우선 사용됨. 소방안전교부세는 다른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관려 투자 소요, 노력도,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교부되고 있음.

10)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 포함)과 선박의 가액에 따라 부과·징수된 세액을 재원으로 하며, 이 중 70~100%를 소방정책사업비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금액은 인건비에 활용됨.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화재예방법」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연기보다 반응이 늦은 열감지기가 주로 설치되어있고, 이로 인해 아동·노인·장애인의 화재 인지 및 대피가 지연되어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14]

최근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의 시·도별 예산이 2021년 총 187억 3,700만원에서 2025년 91억 2,100만원으로 약 51% 감소하였고, 2025년 7개 시·도의 소방시설 보급사업 예산이 3억원 미만, 11개 시·도 전년 대비 삭감, 1개 시·도의 경우 예산이 미반영되는 등 지방비 만으로는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국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2021~2025년 최근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시·도 예산 확보(지방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18,737	12,601	12,621.9	11,179	9,121.5
서울본부	1,140	1,140	1,549	1,037	1,470
부산본부	972	1,187	551.8	559	549
대구본부	500	500	500	500	200
인천본부	300	787	891	747	650
광주본부	828	887	920	864	1,035
대전본부	1,420	1,554	800	5	4.5
울산본부	162.4	223	223.1	244	298
세종본부	18.7	219	235	207	-
경기본부	1,005	1,437	2,065	1,483	878
강원본부	622	1,312	712	432	336
충북본부	405	362	362	492	591
충남본부	380	380	491	165	101
전북본부	649	465	236	464	427
전남본부	1,310	743	844	206	430
경북본부	883.5	519	569	630	505
경남본부	7,901	483	432	429	240
창원본부	198	360	912	376	374
제주본부	43.2	43	300	1,815	32

자료: 소방청

13) 소방청은 일부 지자체의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교부액의 낮은 집행률은 특수·대형장비 교체 및 소방청사 신축 등 장기성 사업의 입찰·제작·공사기간 증가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된 데 따른 이월이 주된 사유이며, 이월 예산은 2025년 10월말을 기준으로 97%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함.

14) 부산 진구('25.6.25. 아동 2명 사망), 기장군('25.7.2. 아동 2명 사망), 만덕동('25.7.13. 노인 등 2명 사망)

다만, 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방청의 지자체 보조사업 보조율은 40~5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국고보조율로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15)]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코드번호)		보조율	2026예산안
1	일반회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1131-302)		100%	15,517
2	일반회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50%	3,925
3	일반회계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1150-500)		40%	240
4	일반회계	실화재훈련시설 구축(1132-324)		50%	3,283
5	일반회계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1133-300)	산림인접지역비상소화장치함 설치지원	50%	2,280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80%**	**7,190**
합 계					32,435

주)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은 시·도 소방본부의 사회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치료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과 성격이 상이함.
자료: 소방청

아울러, 이 사업은 시·도의 재정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하여 80%의 국고보조율을 설정하였으나, 국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별 재정여력을 감안한 차등 보조율 설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3.95	45.13	44.34	49.60	40.72	41.66	46.25	57.53	55.0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25.22	30.43	32.35	23.51	24.40	24.56	33.63 (창원 포함)	34.01	30.60

주)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 세입}×100
자료: 소방청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이 보조율 80%임.

3. 국립소방병원 운영 사업: 철저한 개원 준비 및 의료인력 확보 노력 필요

가. 개 요

‘국립소방병원 운영’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 및 연구수행 전담기관을 충청북도 음성군에 건립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0억 800만원 감액(△36.9%)된 39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립소방병원 운영	62,418	69,067	39,410	△23,008	△36.9

현재 소방병원은 302개 병상, 19개 진료과목,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 시범 운영 후 2026년 6월부터 정식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5년도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및 공사장 전경]

조감도	공사장 전경
	

자료: 소방청

16) 일반회계-국립소방병원 운영(1131-305)(119대응국)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운영 사업은 수지차 방식을 차용하여 편성되었음. 2026년도 소방병원 개원 후 예상되는 비용과 수익의 차이만큼을 국고로 보전하는 방식임.

[국립소방병원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인건비: ('25) 29억 300만원 → ('26예산안) 213억 1,100만원(+184억 800만원)**
  - (산출) 비용 255억 4,300만원 - 수익 42억 3,200만원
- **경상경비: ('25) 8억 9,500만원 → ('26예산안) 76억 5,500만원(+67억 6,000만원)**
  - (산출) 비용 93억 7,500만원 - 수익 17억 2,000만원
- **전산시스템: ('25) 74억 6,800만원 → ('26예산안) 19억 6,900만원(△54억 9,900만원)**
  - (산출) 비용 24억 7,000만원 - 수익 5억 100만원
- **의료장비: ('25) 40억 6,200만원 → ('26예산안) 16억 8,400만원(△23억 7,800만원)**
  - (산출) 비용 21억 1,300만원 - 수익 4억 2,900만원
- **일반비품: ('25) 50억 1,400만원 → ('26예산안) 16억 6,600만원(△33억 4,800만원)**
  - (산출) 비용 20억 9,000만원 - 수익 4억 2,400만원
- **의료용품: ('25) 12억 3,800만원 → ('26예산안) 30억 8,600만원(+18억 4,800만원)**
  - (산출) 비용 35억 400만원 - 수익 4억 1,800만원
- **정주여건: ('25) 1억 5,300만원 → ('26예산안) 5억 4,100만원(+3억 8,800만원)**
  - (산출) 비용 6억 7,900만원 - 수익 1억 3,800만원
- **진료비감면: ('25) - → ('26예산안) 14억 9,800만원(+14억 9,800만원)**
  - (산출) 비용 18억 8,100만원 - 수익 3억 8,300만원

자료: 소방청

나. 검토의견

국립소방병원이 계획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위한 내과 등 7개 과목에 대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2026년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해 476억 5,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2026년 6월 개원 이후 82억 4,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비용과 수익의 차이인 394억 1,000만원을 국고로 보전할 예정임.

위와 같은 예산 지원 방식 하에서 소방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병원이 개원하여 예상되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만일 비용만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방청은 인력배치 시점 및 병상 가동률 조정, 계약금 대금 지급일 연기 등 현금 흐름 조정, 불가피한 경우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함.

소방청은 2026년 6월 정식개원 전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필요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를 개설할 예정이며,[17] 각 과당 1명씩 의료인력을 채용할 예정임.

그런데 2025년 9월말을 기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및 산부인과 의사 2명만이 임용되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은 가채용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확보 예정인 의료인력 4명은 미확정 상태임.[18]

[2025년 9월말 기준 국립소방병원 의사 확보 현황]

진료과목		채용 확정여부 (확정일)	센터구분	진료과목		채용 확정여부 (확정일)	센터구분
외과		**미확정**	화상센터	내과	호흡기내과	-	일반진료
성형외과		-			감염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과		1명 ('25.10. 가 채용)	
정형외과		-	근골격 재활센터	산부인과(부인과)		1명 ('25.11.임용예정)	
재활의학과		-		신경과		-	
신경외과		-		응급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	건강증진센터	진단검사의학과		1명 ('25.9.01.임용)	
가정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미확정**	
내과	순환기내과	**미확정**	일반진료	영상의학과		**미확정**	
	소화기내과			입원의학과		-	
	신장내과			이비인후과		-	
	내분비내과			치과		-	

자료: 소방청

17)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18) 타 진료과 41명의 경우 2026년 1~3월 채용 후 3월부터 배치 예정임.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통해 4차에 걸쳐 공고하여 의사를 모집하고 있으나, 2025년 10월까지 내과·외과·영상의학과 3개 분야 전문의 지원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인력 부족 문제는 장기화 될 우려가 있음.

[국립소방병원 의사 모집 경과]

공고	모집 기간	모집과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선발인원
1차공고	('25.06.11. ~ '25.06.25.)	외과	1명	-	-	-
		산부인과	1명	-	-	-
		소아청소년과	1명	-	-	-
		마취통증의학과	1명	1명	1:1	-
		영상의학과	1명	-	-	-
		진단검사의학과	1명	1명	1:1	1명
2차공고	('25.08.11. ~ '25.08.18.)	내과	1명	-	-	-
		외과	1명	-	-	-
		산부인과	1명	1명	1:1	절차상 10월 공고 재응시 및 11월 임용 예정
		소아청소년과	1명	-	-	-
		마취통증의학과	1명	-	-	-
		영상의학과	1명	-	-	-
3차공고	('25.09.11. ~ '25.09.18.)	내과	1명	-	-	-
		외과	1명	-	-	-
		소아청소년과	1명	-	-	-
		마취통증의학과	1명	-	-	-
		영상의학과	1명	-	-	-
4차공고	('25.10.02. ~ '25.10.16.)	내과	1명	-	-	-
		외과	1명	-	-	-
		산부인과	1명	1명	1:1	채용진행중
		소아청소년과	1명	1명	1:1	채용진행중
		마취통증의학과	1명	1명	1:1	채용진행중
		영상의학과	1명	-	-	-
		재활의학과	1명	1명	1:1	채용진행중

자료: 소방청

2025년 9월말 기준 채용이 결정된 의료진이 병원장과 진담검사의학과, 산부인과에 불과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통한 연말 부분 개원도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내년 1~3월 채용예정인 타 진료과 41명 확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6월 정식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임.

의료인력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한정된 국고지원 하에서 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공항 인접부지(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119항공정비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억 1,900만원(△34.2%)이 감액된 85억원이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13,141	13,141	8,782	△4,359	△33.2
119항공정비실 건립	12,919	12,919	8,500	△4,419	△34.2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건설보상비(410-00): 31억 5,100만원
○ 실시설계비(420-02): 2,500만원
○ 공사비(420-03): 39억 900만원
○ 감리비(420-04): 14억원
○ 시설부대비(420-05): 1,500만원

자료: 소방청

현재 소방헬기의 정비는 전국 17개 시·도 및 중앙119구조본부에서 119항공대 조직내 별도의 정비조직 없이 정비사들이 정비해오고 있으나, 새로 건립되는 119항공정비실에서는 외주정비로 해오던 중정비사항[20)]을 전담할 예정임.[21)]

19) 일반회계-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1132-312)(장비기술국)

20) 중정비사항: 소방헬기 항공시간 600시간이내 ~10년이내에 받는 각종 정비사항

21) 전국 119항공대 17개소(중앙119구조본부 1개소, 서울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소)에서는 일부 자체정비사항은 지속할 예정임.

소방청이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119항공정비실 건립 이후 연평균 총 76억원이 절감되고, 헬기가동률이 1.4배 향상되며, 운항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22)]

[119항공정비실 건립 전후 변화 및 기대효과 비교]

<table>
<tr><th>구 분</th><th>기 존</th><th>119항공정비실 건립이후 변동</th></tr>
<tr><td>정비통합</td><td>항공대 정비
ㅇ자체정비(25시간~300시간)
(25시간~ 100시간) +
(6개월 ~ 300시간)
+
외주업체 정비
ㅇ외주정비(600시간 ~ 10년)
ㅇ부품정비(중요부품 분해)
ㅇ엔진정비(엔진 분해)</td><td>119항공정비실 정비
ㅇ중정비(6개월~10년)
+
항공대 정비
ㅇ자체정비(25시간~100시간)
+
외주업체 정비
ㅇ부품정비(중요부품 분해)
ㅇ엔진정비(엔진 분해)</td></tr>
<tr><td rowspan="3">기대효과</td><td>〈가동률 저하〉
정비일정 중복, 정비기간 연장으로
헬기가동률 저하</td><td>〈효율성〉
헬기 가동률 1.4배 향상
(정비기간 평균 20~25일 이상 단축 예상)</td></tr>
<tr><td>〈예산과다투입〉
독점적 정비서비스 이용에
따른 낮은 가격 협상력</td><td>〈경제성〉
연평균 총76억원 절감,
20년간 합산 1,727억 절감예상</td></tr>
<tr><td>〈정비 비효율〉
통합 정비관리 부재 및 다기종 운용으로
정비 비효율 발생</td><td>〈안전성〉
전문적 항공정비실 운영에 따라 운항
안전성 확보</td></tr>
</table>

주 1) 상기 시간, 개월, 년은 소방헬기의 운항 시간 및 기간임
2) 기존의 ⋯⋯ 에 기입된 기간에 해당되는 중정비 부분이 119항공정비실로 이관될 예정임
자료: 소방청

22) 소방청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 2026년부터 76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설명함.
① 약 30억원 절감: 정비사 근무 조정, 항공대별 3명 교대근무로 구성됨(현재 헬기 대당 4명)
(기존: 124명, 헬기31대×4명) → (변경: 51명, 17개 항공대×3명)
② 약 22억원 절감: 부품 공동구매 등으로 물품대가 인하되어 약 22억원 절감
(기존: 부품대 220억원) → (변경: 198억원)
③ 약 24억원 절감: 정비실 자체정비를 통해 연평균 외주정비 비용에서 물품대를 제외한 금액을 절감가능액으로 추계함

나. 검토의견

119항공정비실 사업은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조정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공사비가 일부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소방청의 119항공정비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3~2027년 동안 총사업비 428억원이 투입되고, 공사비의 경우 2025년에 114억 9,500만원, 2026년에 39억 900만원이 투입됨.[23)]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2023~2027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현행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건설보상비	건설보상비	8,550	1,200	14	1,200	14	1,200	14	3,176	49	1,774	9
건설비	기본설계	542	218	40	324	60	-	-	-	-	-	-
	실시설계	858	-	-	813	94	-	-	-	-	45	6
	감리비	3,250	-	-	24	1	173	4	1,400	42	1,653	53
	공사비	29,513	-	-	1,218	5	11,495	39	3,909	15	12,891	46
	시설부대비	84	-	-	8	9	51	60	15	19	10	12
합계		42,797	1,418	3	3,587	9	12,919	30	8,500	23	16,373	35

자료: 소방청

이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절차에 따른 정비실 건립 설계용역기간 연장으로 2024년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였고, 2024년 편성된 12억 1,800만원은 전액 국립소방병원 공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또한 2025년 7월에서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5년 편성된 공사비 114억 9,500만원 중 약 40%(약 45억 9,800만원)만 공사업체 선정 등을 위한 원인행위로 10월 중에 집행될 예정이고, 남은 60%(약 68억 9,700만원)는 2026년도로 이월될 예정임.[24)]

---

23) 최초 총사업비는 320억원(2023년 착수, 2026년 완료)이었으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증액을 위해 총사업비가 2024년 382억원으로 증액되었고, 2025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반영·물가변동·설계의도구현비용 등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428억원으로 증액되었음.

24) 결국 시설완공 또한 당초 계획인 2026년 3월에서 2027년 6월로 약 1년 3개월(15개월) 지연될 예정임.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 현황]

단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비고
기본계획 수립		2022.5.	2022.5.	-
부지 선정		2021.12.	2021.12.	-
실시설계 용역	기본설계	2023.8.~12.	2023.11.~2024.7.	7개월 지연
	실시설계	2024.1.~4.	2024.7.~2025.6.	1년 2개월 지연
토지보상		2023.3.	2023.12.	9개월 지연
공사		2024.9.~2026.3.	2025. 10. ~ 2027. 6.(예정)	1년 3개월 지연
시설완공		2026.3.	2027. 6.(예정)	1년 3개월 지연

자료: 소방청

전문적인 항공정비실이 건립될 경우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며,[25] 이를 통한 헬기 가동률의 증가는 화재진압 역량 제고로 이어져 일선 화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방청은 119정비실 건립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건립되어 사업효과를 적기에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5) 특히 AW139 헬기 기종을 기준으로 제작사별로 외주 정비를 맡겼던 정비들을 119항공정비실에서 통합하여 정비하면서 정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예를 들어 1년 이상 운항한 AW139 기종의 경우 정비실 구축 전에는 50일 이상 정비기간이 소요되었다면, 정비실 구축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19항공정비실 건립 전·후 기체정비 기간 비교(AW139) 기준>

		119항공대			외주정비									
정비실 구축 전(前)	구분	25 시간	50 시간	100 시간	**6 개월**	**200 시간**	**300 시간**	**600 시간**	**900 시간**	**3,000 시간**	**1년**	**2년**	**4년**	**10년**
	정비 기간	1일	2일	3일	5일	5일	50일 이상	28일 이상	50일 이상	2개월 이상	50일 이상	60일 이상	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장소	119항공대			제작사별 외주 정비업체									
정비실 구축 후(後)	구분	119항공대			**119항공정비실**									
		25 시간	50 시간	100 시간	**6 개월**	**200 시간**	**300 시간**	**600 시간**	**900 시간**	**3,000 시간**	**1년**	**2년**	**4년**	**10년**
	정비 기간	1일	2일	3일	5일	5일	35일 이내	28일 이내	35일 이내	2개월 이내	30일 이내	40일 이상	40일 이상	3개월 이내
	장소	119항공대			119항공정비실									

주 1) 시간, 개월, 년은 소방헬기의 운항 시간 및 기간임
2) 119항공대 정비는 119항공정비실 구축이후에도 자체정비 범위를 축소하여 존치함
('25시간~300시간' → '25시간~100시간')

자료: 소방청

인사혁신처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23조 9,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7,657억원(3.3%) 증가함. 예산은 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7.2%) 증가하고, 기금은 23조 9,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7,652억원(3.3%) 증가함.[1)]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65	65	70	5	7.2
기 금	231,365	231,365	239,017	7,652	3.3
총수입	231,430	231,430	239,086	7,657	3.3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은 30조 3,0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144억원(6.4%) 증가함. 예산은 2,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원(6.8%) 증가하고, 기금은 30조 5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984억원(6.4%) 증가함.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358	2,358	2,517	160	6.8
기 금	282,530	282,530	300,514	17,984	6.4
총지출	284,887	284,887	303,031	18,144	6.4

나. 예산안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억원(77.6%) 증가함.

[2026년도 인사혁신처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20	620	1,101	481	77.6
합 계	620	620	1,101	481	77.6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6조 8,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6억원(6.4%) 증가함.

[2026년도 인사혁신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4,086	64,086	68,182	4,096	6.4
합 계	64,086	64,086	68,182	4,096	6.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1개 기금(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35조 1,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882억원(4.1%) 증가함.

[2026년도 인사혁신처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공무원연금기금	337,737	337,737	351,619	13,882	4.1
합 계	337,737	337,737	351,619	13,882	4.1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인사혁신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개(11억 8,7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 사업은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안 강화 등 DB관리체계 개선 및 수요맞춤형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인사혁신처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	1,187
총지출		1,187

한편, 인사혁신처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사업, ‘임대주택건립’, ‘신규시설 건립’ 사업 등 총 7개임.[3)]

그 중 인사혁신처의 ‘교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AI 교육장 신축 및 AI 과정 운영 확대를 위한 고성능 노트북 구매 비용이 반영,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사업은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증액임.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사업 의 증액분에는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2024년 670,005명 → 2026년 72만 7,937명 예상) 등이 반영되었고, ‘퇴직수당’ 사업의 증액분에는 퇴직인원 증가 추세(2024년 51,260명 → 2026년 60,033명 예상) 및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한 단가 상승분(2024년 53,558천원 → 2026년 58,444천원) 등이 반영되었음.

계속해서 ‘임대주택 건립’의 계획안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가족형 주택 매입 자금 200억원이 신규 반영되고, 광주운암·원주단계 및 전주효자 지구 임대주택 재건축 공사비 232억 9,600만원 및 세종1차 임대주택 신규 건립 사업의 2년차 사업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비 259억 1,500만원 등이 반영되고 있음.

[2026년도 인사혁신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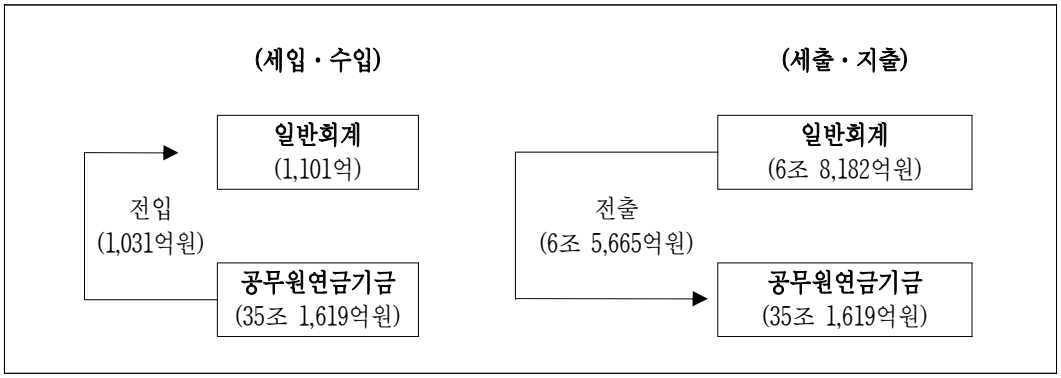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교육시설 유지관리	3,088	4,212	1,124	36.4
2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33,345	44,223	10,878	32.6
[공무원연금기금]					
3	퇴직급여	23,559,168	24,907,621	1,348,453	5.7
4	퇴직수당	3,097,663	3,508,563	410,900	13.3
5	재해보상급여	204,771	229,277	24,506	12.0
6	임대주택건립	23,261	81,171	57,910	249.0
7	신규시설건립	230	2,143	1,913	831.7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인사혁신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1개, 공무원연금기금 1개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6조 5,665억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031억원이 전입되었음.

[인사혁신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역량있는 공무원 선발·육성, 활력있는 공직 여건 조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미래 대비 디지털 인사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재정 운용 및 기금 운용수익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6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안에는 2026년 중에 반환 예정인 기관장 관사 임차보증금(8억 4,000만원)이 과소 반영되어 있는 바, 이를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교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AI 실습을 목적으로 고사양노트북 300대의 신규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430-01목)가 신규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교육시수·교과목별 대상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수량 및 단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교육수요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단가 및 수량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사업에서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과소 반영·과다 유보되어 비효율적 재정운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는 향후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잉여금이 신속하게 반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기관장 관사 임차보증금 지원금의 반환액을 세입예산에 적정 반영할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위반에 따른 환수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700만원(17.6%) 증가한 15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349	1,349	1,586	237	17.6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장·단기 국외훈련 의무복무 위반 환수액 등: 15억 8,600만원 - 교육훈련비 반납 및 정산 - 관사 전세금 회수 - 소송비용 등 기타 * 2020-2024년 결산액 평균 수준 산정

자료: 인사혁신처

4) 일반회계(세입)-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인사관리국)

나. 검토의견

2026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안에는 2026년 중에 반환 예정인 기관장 관사 임차보증금(8억 4,000만원)이 과소 반영되어 있는 바, 이를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2026년 예산안에서 3개 사업을 통해 총 9억 6,000만원의 기관장 관사 임차보증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임.

현재 기관장 관사 관련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다시 체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년마다 한번씩 임차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 편성되고 있음. 관련 3개 세출예산[5]의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을 보면, 2024년 결산 기준 8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6년 예산안에는 총 9억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기관장 관사 임차 관련 3개 사업 최근 3년간(2024-2026)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내역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기관운영 (7011-250)	기관장 관사 임차	350	-	400
국가인재원기본경비 (7018-250)	기관장 관사 임차	250	-	260
소청심사 기본경비 (7018-252)	기관장 관사 임차	240	-	300
합계		840	-	960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2026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에는 결산 기준 최근 5개년(2020-2024) 결산액의 평균 금액이 단순 반영되어 있어, '기관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3억 6,200만원이 반영되고 있음.

그 결과 2024년 집행되어 2026년 중에 반환될 예정인 기관장 임차보증금 지원액 8억 4,000만원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세입예산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임.[6]

---

5) 일반회계(세출)-기관운영(7011-250)(인사조직과), 일반회계(세출)-국가인재원 기본경비(7018-250)(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일반회계(세출)-소청심사기본경비(7018-252)(소청심사위원회)

6)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연체료 및 반환금 등을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관사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수입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5개년 평균액 수준으로 산출하였다고 함.

그러나 최근 연도인 2024년 결산에서 2022년 집행되었던 임차보증금 10억 8,000만원 전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예상되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액 회수를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해 보임.

[최근 5년간(2020-2024)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결산 기준 5개년 수납실적(2020-2024) 및 2026년 예산안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026안주)
예산액	1,181	748	873	748	1,349	4,899	1,586
결산	990	1,978	1,673	1,247	1,962	7,850	1,570
교육훈련비 반납 및 정산	429	1,800	1,098	989	846	5,162	1,032
관사 전세금 회수	350	-	380	-	1,080	1,810	362
소송비용 등 기타	211	178	195	258	36	878	176

주) 2026년 예산안은 결산 기준 5개년(2020-2024) 평균값의 근사치를 반영하고 있음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2026년 중에 반환 예정인 기관장 관사 임차보증금 지원액(8억 4,000만원)과 현재 반영되어 있는 금액(3억 6,200만원)의 차액(4억 7,800만원)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교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AI 실습 교육용 노트북의 구매 단가 및 수량 조정 등 검토 필요

가. 개 요

‘교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속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2,400만원(36.4%) 증가한 4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6년도 교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B-A)/A
교육시설 유지관리	3,088	3,088	4,212	1,124	36.4

2026년 예산안 중 전년 대비 증액편성된 주요 내역을 보면, AI 실습 교육장 구축을 위한 공사비(420-03목) 6억원 및 AI 실습 교육용 노트북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430-01목) 5억 5,500만원 등이 포함되고 있음.

[교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교육시설운영: 3억 1,900만원(전년동)
② 내진보강 및 안전성 평가: 2,000만원(전년동)
③ 교육시설구축: 15억 1,500만원(+10억 3,100만원)
- (산출) **AI 실습 교육장 구축(6억원)**, 교육업무동 및 기숙사동 옥상 방수(6억 6,800만원), 실내체육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8,400만원), 중강의실(15·16강의실) 프로젝터 설치(3,300만원),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14개소) 교체(5,100만원), 식당 등 노후 팬코일 교체(1,000만원), 종합방재실 노후 이중바닥재 교체(6,900만원)

④ 교육지원장비구입: 10억 8,800만원(+5억 8,800만원)
- (산출) **AI 실습 교육용 노트북(5억 5,500만원)**, AI 실습 교육장 전자칠판(3,700만원), 네트워크 방화벽 라이선스(3,100만원), 중강의실(15·16강의실) 프로젝터(4억 5,300만원), 천장형 팬코일(1,200만원) 등

자료: 인사혁신처

7) 일반회계(세출)-교육시설유지관리(2134-302)(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 검토의견

교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AI 실습을 목적으로 고사양노트북 300대의 신규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430-01목)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실제 교육시수·교과목별 대상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수량 및 단가가 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수요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단가 및 수량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에 AI 실습 교육장을 신축하려는 목적으로 2026년 예산안에 AI 실습교육장 구축을 위한 공사비(420-03목) 6억원 외에 AI 실습 교육용 노트북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430-01목) 5억 5,5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구매 예정 수량인 300대는 2026년 신설될 예정인 AI 실습 교육장의 최대 수용인원을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현 계획상 대형(200명) 교육장 1실 및 소형(30명) 교육장 3실의 신축이 계획 중임.

[2026년도 진천 AI·전산실습장 구축 계획]

구분	대형	소형
수용인원	200명×1실 = 200명	30명×3실 = 90명
용도	신규자 및 승진자 기본교육 및 일부 전문교육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자료: 인사혁신처

또한 AI 교육용 노트북에 요구되는 사양이 일반 사무용 노트북보다 높다는 것을 전제로 300대 모두를 추정가격 185만원에 해당하는 고사양 노트북으로 구매할 계획임.

[교육용 노트북 단가표(예시)]

구분	고사양노트북	중급노트북
가격	185만원	149만원
프로세스	인텔 울트라 7 (1.7GH)	인텔 울트라 7 (1.7GH)
메모리(RAM)	32G	16G
그래픽카드	전용 GPU	내장 그래픽 처리
저장장치	1T	SSD 512GB
보안·관리	사용자계정·권한관리, 보안 등 암호화 지원	사용자계정·권한관리, 외부 침입방지, 보안 등 암호화 지원
활용분야	AI 모델 학습·추론, 딥러닝 실습, 빅데이터 분석 등	AI 모델 실습, 빅데이터 분석 등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현 계획상 구매 예정 수량인 300대는 현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 전체 수량(327대)에 근접한 것이어서, 사실상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계상된 것이므로 과다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연식 5년 이하 노트북 155대 중 130개는 강의 모니터링 등의 용도로 상시 사용되고 있고, 현재 기획하고 있는 '문제 기반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을 위해서 고정형 PC가 아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계획상 전체 대상인원(기수당 300~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기본교육 등은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능 습득을 학습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트랙(심화과정)의 경우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설 및 운영될 예정이어서, 구매 대상 노트북 전량을 고사양노트북으로 구매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전산실습장 신설 시 교육운영 변화(안)]

구분		현행	계획
기본교육	장소	진천	진천
	방식	강의 및 실습	강의, 실습(AI tool 활용) + 사례기반 실습, 워크숍 등 PBL
	내용	AI 기초 소양 교육(강의형)	• 정책기획, 행정관리, 연구수행 등 직무별 세분화 • **동일 교육과정(예 7급 신규자)내에서도 역량 수준별 분반 교육** • 정책데이터 분석, 행정프로세스 혁신 등 다양한 사례 및 문제 해결 워크숍 도입
전문교육	장소	과천	진천
	방식	강의 및 실습	강의, 실습(AI tool 활용) + 사례기반 실습, 워크숍 등 PBL
	교과	24개 과정(AI 2개, 정보화 22)	AI 과정 50개 이상 운영
	내용	- GPT 생성실습, AI 트랜드 및 윤리 등 - AI기반 문서작성, 엑셀활용 등 기초 리터러시 - 데이터분석 및 앱제작 등	〈직무구분〉 - (정책기획) 정책 시뮬레이션,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 (행정관리) 문서자동화, 보고서 요약시각화, 등 업무 효율화 - (연구분석) 통계적 인사이트 도출, 데이터 및 AI 기반 분석 역량 강화 **〈역량별 · 직급별〉** **- AI 역량 차이를 반영하여 <u>전문가 트랙(심화과정) 신설</u>** 〈행정서비스 기획과정〉 문제정의→기술타당성 분석→서비스설계→도입방식 결정→운영 및 유지보수→성과관리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신축될 대형실습장에서 사용될 장비(최대 200대)는 중급노트북(추정가격 149만원)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소형 실습장에서 사용될 고사양 장비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수요에 관한 보다 면밀한 수요파악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구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 사업(신규): 별도 연구비 편성의 필요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 사업은 인사관리제도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B-A)/A
인사관리국	358	358	398	40	11.2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	-	-	45	45	순증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연구비(260-01목): 4,500만원
-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

자료: 인사혁신처

8) 일반회계(세출)-인사관리국(7011-264)(인사관리국)

나. 검토의견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 사업은 구체적인 수행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과제의 구체적인 수행내용 확정 후 기존 ‘정책연구개발’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인사관리제도 연구용역’ 사업은 기본경비 및 관서운영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 ‘인사관리국’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은 인사관리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취지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예산이 적정 비목으로 편성되었는지, 상위사업인 ‘인사관리국’의 편성 목적(기본경비 및 관서운영경비 편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사실들이 불분명함.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보수·인재개발·연금 등 인사관리국 소관 제도에 관해서는 연구주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 연구과제는 구체적인 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수시과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인사혁신처의 2026년 예산안에는 이미 9개 내외의 정책연구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비(260-02목)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9)]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수행내용의 확정 없이 연구비를 따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의 구체적인 수행내용을 확정한 이후 다른 세부사업인 ‘정책연구개발’ 세부사업(7032-300)에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목)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9) 일반회계(세출)-정책연구개발(7032-300)(기획조정관실)

【공무원연금기금】

〈지 출〉

4.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사업 등: 지자체 수탁금 잉여금 반환액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및 **‘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등 2개 사업에서 대여학자금 융자사업의 수탁금 잉여금을 반환하고 있으며, 2개 사업의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39억 2,500만원(60.2%)이 증가한 1,70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등 2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2개 세부사업 합계	106,196	106,196	170,121	63,925	60.2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40,500	40,500	50,000	9,500	23.5
회계기금간거래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65,696	65,696	120,121	54,425	82.8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일반회계)	58,488	58,488	113,311	54,823	93.7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특별회계)	7,208	7,208	6,810	△398	△5.5

10) 공무원연금기금-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8920-895)(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등 2개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 반환금및손실금(710-03) : 500억원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지자체, 반환기관 : 255개)
〈회계기금간 거래〉
○ 일반회계전출금(610-01): 1,133억 1,100만원
- 도시환경개발원 : 24억 2,000만원
- 인사혁신처 : 1,031억 1,100만원
- 국방부 : 73억 1,000만원
- 방위사업청: 4억 7,000만원
○ 특별회계전출금(610-02): 68억 1,000만원
- 우정사업본부 : 68억 1,000만원

자료: 인사혁신처

위 2개 사업을 통해 반환되고 있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융자사업'[11]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융자재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하여 부담금에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상환액이 대부액을 3년 이상 연속하여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및 '회계기금간 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등 2개 세부사업을 통해 부담금을 반환하고 있음.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관련 규정]

구분	주요내용
반환대상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금(회수액-융자금) 발생 기관**
반환금액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 **: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다.
반환시기	정산년도 기준 차차년도* 상반기(매년 6월 중)

자료: 인사혁신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11) 공무원연금기금-대여학자금융자(융자)(3141-321)(공무원연금공단)

‘잉여금’ 은 대여학자금 수탁금에서 당해 연도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부잔액을 차감하여 산출되고 있으며, 2024년 결산 기준 잉여금 규모는 8,621억원임.

[최근 5년간(2020-2024) 결산 기준 대여학자금수탁금 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여학자금 수탁금	누적 수탁금(A)	40,055	37,467	35,127	32,764	31,347
	반환금(B)	2,589	2,341	2,369	1,422	1,220
	수탁금 잔액 (C=A-B)	37,466	35,126	32,758	31,342	30,127
	대부잔액(D)	29,030	26,638	24,517	22,980	21,506
	잉여금(C-D)	8,436	8,488	8,241	8,362	8,621

주) 당해년도 수탁금・반환금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검토의견

첫째,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사업에서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과소 반영·과다 유보되어 비효율적 재정운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는 향후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잉여금이 신속하게 반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대여학자금 수탁금의 여유분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12]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의 산식을 조정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후속조치를 수행하였음.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상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금액 산출내역]

주요내용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 :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전년도 상환액의 25%주)**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다.

주) 반환금액 산식 중 '± 전년도 상환액의 25%'은 과년도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추가되었음.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25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그러나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지자체 대상 반환액(요구안에 반영)이 4,851억 8,300만원임에도 확정된 계획액은 500억원에 불과하여, 지자체에 반환되어야 할 4,351억 8,300만원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용될 예정임.

12)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7) 과도한 수탁금 잉여금 해소 필요	관련 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대여학자금융자(3141-321),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	주의
	지적 사항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탁금은 대여학자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수탁금 잉여액 8,239억원으로 과다한 문제가 있음	
	시정 요구 사항	○ 인사혁신처는 국가 예산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수탁금 잉여금 반환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도한 수탁금 잉여액 해소를 통해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고,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대여학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분에 대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것	

[최근 5년간(2022-2026) 지자체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액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자료: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획
지자체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		601,025	585,029	608,926	611,138	-
「대여학자금 융자사업 운용지침」 상 반환액		259,457	232,577	164,997	406,216	485,183
기금운용 계획(안) 편성내역	요구안	259,457	232,577	164,997	406,216	485,183
	조정안	159,449	130,360	82,498	40,500	50,000
	확정 계획액	159,449	130,360	82,498	40,500	-
집행액주)		159,449	130,360	82,498	40,500	-

주) 2021-2024년은 결산 기준, 2025년은 8월말(2025.8.) 기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사업 계획액에 반영하여 해당 잉여금이 신속하게 반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여학자금 융자 사업을 위한 수탁금 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타 여유자금과는 구분 계리되고 있으면서도 반환대상 기관별로는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공단은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수탁금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반환할 필요가 있음.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액 및 관련 이자수입은 기금 여유자금에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2024년 결산 시점부터 관련 이자수입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규칙」 및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 및 구분계리되고 있음.[13)]

해당 규정의 취지는 대여학자금 수탁금이 각 기관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것이므로, 수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각 기관에게 반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 관련 이자수익을 타 여유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으면서도, 위탁기관별로는 수탁금 잉여금의 평균잔액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각 기관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점 기준으로도 이자수익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약 326.5억원[14)]에 달하는 이자수익이 반환되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편입되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금액이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13) 관련 내부규정은 이하와 같음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123조(결산정리의 실시) ① 제110조에 따른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 간 조정계정 및 본·지부계정의 정산
2. 본·지부 간 자금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자금이자 및 시설자산, 주택자산, **대여학자금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유입된 자금에 대한 내부자금이자 계상**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

제16조의2(대여학자금 잉여액 운용수익률 산정방법) ① 대부자산 중 대여학자금 잉여액 운용수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여학자금 잉여액 평균잔액 × 적용 이자율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여학자금 잉여액은 당해 대여학자금 수탁금 일평균 잔액 합계에서 대여학자금(융자보조원가충당금 제외) 일평균 잔액 합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대여학자금 잉여액 운용수익률은 해당연도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금융자산운용수익률이 (-)일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14) 2024년 연말 기준 집계된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의 평균잔액은 약 8,163억원이며, 「회계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수익률(4.00%)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수익은 326.5억원 수준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3	-	13	-	-
총수입	13	-	13	-	-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4,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9억원(33.3%) 증가함.[1)]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634	-	4,843	1,209	33.3
총지출	3,634	-	4,843	1,209	33.3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3	-	13	-	-
합 계	13	-	13	-	-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9억원(33.3%) 증가함.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634	-	4,843	1,209	33.3
합 계	3,634	-	4,843	1,209	33.3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음.[2)]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 ‘정당보조금’ 사업,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등 총 19개임.[3)]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국회의원선거관리	-	52	52	순증
2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45	13,280	13,235	29,411.1
3	재보궐선거관리	149	388	239	160.4
4	재외선거관리	1	48	47	4,700.0
5	선거보전금	-	631	631	순증
6	정당사무지원	66	675	609	922.7
7	정당보조금	52,383	116,987	64,604	123.3
8	공명선거기반조성	740	4,837	4,097	553.6
9	위법행위예방활동	7,439	10,956	3,517	47.3
10	인터넷심의기반조성	93	257	164	176.3
11	선거방송토론	281	504	223	79.4
12	선거여론조사심의	238	337	99	41.6
13	인건비	225,570	240,531	14,961	6.6
14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340	1,837	1,497	440.3
15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313	5,626	4,313	328.5
16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137	205	68	49.6
17	차량및물품관리	605	1,105	500	82.6
18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491	27,881	9,390	50.8
19	위원회운영	703	1,369	666	94.7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사업 등 선거관련 사업예산과 그에 따른 선거보전금 사업과 정당보조금 사업 예산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중 법규평가를 실시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3곳에 불과하였으므로, 2026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법규교육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선거연수원의 CI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유사 교육기관들이 장기간 CI를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교체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사업의 목적은 온라인투표의 단계적인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나,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지원한 선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 및 사용자 편의성 증진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사업: 통일적인 법규교육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사업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황파악, 예방 안내활동 및 엄중조사·조치 등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12.7%) 증액된 44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공정선거지원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위법행위예방활동	7,439	7,439	10,956	3,517	47.3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3,924	3,924	4,424	500	12.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공직선거법」제10조의2에 따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5)]

---

4) 일반회계-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선거정책실)

5)「공직선거법」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⑥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2026년도에 편성된 공정선거지원단 사업 예산은 2026년 6월 3일에 예정되어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단 운영 예산임.

[공정선거지원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공정선거지원단 수당·실비 38억 4,400만원 (+4억 6,900만원)**
가. (수당) 8만 2,560원×1인×25일×12월×271위원회×0.5 = 33억 5,600만원(+4억 2,000만원)
나. (실비) 2만원×1인×15일×12월×271위원회×0.5 = 4억 8,800만원(+4,900만원)
ㅇ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5억 8,000만원 (+3,100만원)**
가. (운영비) 3만원×12월×271위원회 = 9,800만원(전년동)
나. (우수지원단 성과금) 10만원천원×271위원회×0.4 = 1,100만원(전년동)
다. (차량사례금) 2만원×12월×271위원회×0.7 = 4,500만원(전년동)
라. (교육훈련 등) 6,400만원(전년동)
· (중앙) 100만원×1회 = 100만원
· (시·도) 350만원×18시도 = 6,300만원
마. (4대보험료) 8만 2,560원×1인×25일×12월×271위원회×0.5×0.1147 = 3억 6,200만원(+3,100만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검토의견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중 법규평가를 실시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3곳에 불과하였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법규교육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에 따르면, 공정선거지원단의 담당 직무는 ①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②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임.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정선거지원단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관계법 및 선거 절차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일반인인 공정선거지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연수원 사이버 강의나 대면교육 등을 통해 정치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방법으로 객관식 지필평가 등의 방식으로 법규평가를 실시하였음.

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269개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 법규평가를 실시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3개에 불과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규교육이나 평가체계 없이 일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법규평가를 하고 법규평가 우수자를 선정하여 성과수당(약 2,600만원)을 지급하였음.[6)]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법규평가 실시 현황]

(단위: 개소, 명, 천원)

전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법규평가 실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공정선거지원단원	전체 법규평가 응시 공정선거지원단원	법규평가 응시자 중 우수 인원	성과수당 수급인원	전체 법규평가 우수인원 성과수당 지급 금액
269	183	3,552	2,263	615	578	26,23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이 각종 질의 및 단속상황에 대하여 전임직원 보고 후 그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공정선거지원단이 법규 관련 사실을 잘못 안내하거나 단속하더라도 지원단을 관리하는 일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시정하여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나,

공정선거지원단의 잘못된 안내와 단속은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통일적인 법규 운용능력 교육 및 평가 방법을 포함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침을 준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법규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7)]

6) 법규평가 우수인원 615명 중 성과수당을 지급한 인원은 578명으로 지급여부 및 금액 또한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음.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2026년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통일적인 법규 운용능력 교육 및 평가 방법을 포함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2. 청사 CI 제작·교체 사업(신규): 선거연수원 CI 교체의 필요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청사 CI 제작·교체’** 사업은 선거연수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선거연수원의 CI를 개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청사 CI 제작·교체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선거연수원 운영	1,909	1,909	2,225	316	16.6
청사 유지·관리	1,689	1,689	2,005	316	18.7
청사 CI 제작·교체	-	-	78	78	순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수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선거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선거연수원의 역할을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CI를 새로 개발할 예정임.

CI 개발에는 약 5,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개발 이후 외부간판·실내 안내판·출입구 사인·생활관/화장실 명판·현판·도로이정표 등의 교체를 위해 2,5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기준 선거연수원 CI 및 청사 CI 제작·교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청사 CI 제작·교체 7,800만원(순증) · (시설물 교체) 416만 7,000원×6종 = 2,510만원 · (개발용역) 5,300만원×1식 = 5,300만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일반회계-선거연수원운영(7132-352)(선거연수원)

나. 검토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선거연수원의 CI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유사 교육기관들이 장기간 CI를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교체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개 위원회 중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13년 제작)를 변형한 자체 CI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선거연수원 또한 2008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CI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및 유권자(미래유권자 포함)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수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선거연수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고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 CI현황]

기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연수원
CI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에는 선거연수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선거연수원 CI를 개발할 예정임.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한 기관 대표 이미지 변경이 아닌 기관의 설립 목적과 핵심 가치를 반영한 상징체계를 수립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체계를 통해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독자적인 CI의 교체가 선거연수원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또한 경찰청 소속 경찰대학의 경우 2005년 제작한 CI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관세청 소속 관세인재개발원의 경우 2003년에 제작한 마크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이 2008년에 제작된 CI를 약 19년 만에 교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로 CI를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보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독자적인 CI를 사용하는 사례]

기관명	소속 교육기관명	기관명	소속 교육기관명	기관명	소속 교육기관명
경찰청	경찰대학 (2005년 제작)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2003년 제작)
					

자료: 관련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선거연수원은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감안하여 CI 교체주기의 적정성 및 교체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 온라인투표 지원 활성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온라인투표의 단계적인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00만원(△1.4%) 감액된 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온라인투표기반조성 (정보화)	563	563	555	△8	△1.4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 조성
가. (안내홍보물 제작) 400만원
· 인쇄물 : 80원×252구시군×200부=400만원
나. (대국민 안내홍보 여비) 3만 2,000원×252구시군=800만원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업무협의) 1,000만원
· 중앙 : 50만원×2회×3기관=300만원
· 시도 : 41만원×17시도=700만원
라. (온라인투표 만족도 조사) 300만원×2식=600만원
마. (담당자 교육훈련자료 제작) 80원×252구시군×250부=1,000만원
바. (담당자 교육 참석 여비) 4만원×252구시군=1,000만원
사. (담당자 교육 운영) 200만원×1회=200만원

○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가.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5만원×8명×1회=200만원
나. (온라인투표시스템 외부연계수수료) 20만원×5종×12월=1,200만원
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1,453만원×5명×12월×0.56=4억 9,100만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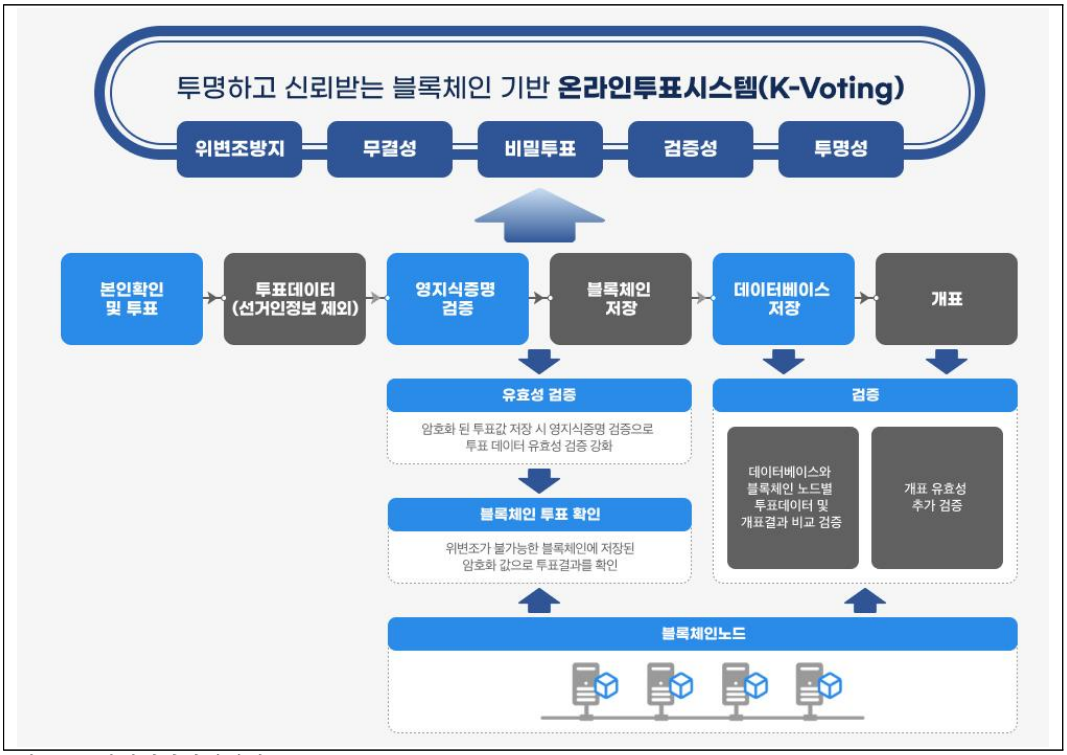
9) 일반회계-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선거정책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스마트폰과 PC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음. 대표자의 선출 및 안건 결정 등을 위해 구성원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찬반투표·선택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제공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 선정·구축되었고,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총 55억원을 투입하였음.

2022년 11월에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24년 11월에는 영지식증명[10] 적용 온라인투표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데이터 등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다는 입장임.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운영 도식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은 특정 정보의 진위성을 증명할 수 있지만, 그 정보 자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암호화 기법으로 데이터의 유효성, 소유성을 입증하며, 실제 정보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임.

이 사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각급 학교의 선거를 지원하고 있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주요 지원 사례]

구분		기관명	선거명	선거기간
정당		○○○○	○○○○ 전당대회선거	2025.8.20.
국가기관		○○사무처	언론환경자문회 출입기자위원 보궐선거	2025.6.30.~7.2.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	○○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시민투표	2025.8.18.~8.20.
공공기관		○○도시교통공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SCTC)	2025.9.1.~9.3.
학교	초등	○○초등학교	2025 학생자치회 전교임원 선거	2025.1.3.
	중등	○○중학교	○○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2025.3.17.~3.19.
	고등	○○고등학교	○○고 교장공모제 모바일 심사	2025.6.17.
기타		○○○○회	제29대 ○○○○회 회장 선거(투표)	2025.1.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검토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사업의 목적은 온라인투표의 단계적인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나,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지원한 선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 및 사용자 편의성 증진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1~2025년(9월말)까지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1,612건의 선거를 지원하고 76만 9,506명이 이용하였으나 2024년에는 1,007건의 선거를 지원하고 98만 3,824명이 이용하였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현황을 지원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당내 경선 등을 위한 정당의 시스템이용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4년에는 54건을 지원하고 1만 2,265명이 투표하여 2022년에 비해 지원건수는 △22건(28.9%), 투표인원은 △5,238명(△29.9%) 감소하였음.

또한 시스템의 주요 이용대상인 학교의 경우 2022년 1,321건 선거에 대해 45만 4,733명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를 하였으나, 2024년에는 706건의 선거에 대해 30만 9,073명이 투표를 하여 2022년 대비 투표지원건수는 △615건(△46.6%), 투표지원인원은 △14만 5,660명(△32.0%) 감소하였음.

[2021~2025년(9월말)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이용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	
		선거건수	투표인원	선거건수	투표인원	선거건수	투표인원	선거건수	투표인원	선거건수	투표인원
정당		40	664,376	68	213,710	41	412,384	61	474,516	35	659,339
국가기관		8	893	10	1,850	7	1,837	9	1,429	10	1,765
지방자치단체		96	29,154	76	17,503	57	15,465	54	12,265	26	5,769
공공기관		129	43,870	52	28,398	66	31,822	51	21,846	22	12,735
학교	초등	888	260,911	469	130,809	334	104,084	235	81,727	122	34,590
	중등	607	248,171	388	158,458	336	135,220	222	107,266	51	15,940
	고등	567	227,569	464	165,466	414	157,594	249	120,080	233	102,658
	소계	2,062	736,651	1,321	454,733	1,084	396,898	706	309,073	406	153,188
기타		100	49,512	85	53,312	116	104,278	126	164,695	46	48,356
합계		2,435	1,524,456	1,612	769,506	1,371	962,684	1,007	983,824	545	881,15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사회적거리두기 및 비대면 활동 권고로 다양한 기관에서 온라인투표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고, 온라인투표 서비스는 각급 학교에서 이용 비중이 높으나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경우 공직선거 준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음.[11)]

또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용을 위한 행정서류 및 선거인명부 업로드 등이 필요한데, 이용자들이 기표대 대여 및 종이수개표가 상대적으로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이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선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온라인투표의 단계적 도입 기반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 시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 전후 일정기간 위탁선거의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을 고려하여 관할위원회의 공직선거 업무전념을 위해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지침에 서비스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없음.[1)]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하였음.[2)]

[2026년도 10 · 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	-	133	133	순증
총지출	-	-	133	133	순증

문의 :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pmh1117@assembly.go.kr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 2025년도의 경우 예비비로 124억원이 편성됨.

나. 예산안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음.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함.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	-	133	133	순증
합 계	-	-	133	133	순증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증액사업이 없고, 총 7개(132억 5,1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3)]

그 중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를 통해 참사의 사실관계 파악,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안전사회 구현’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 방안,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026년도 10 · 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1,853
2	안전사회 구현	293
3	대외협력	464
4	기록관리	250
5	인건비	4,707
6	기관운영(총액)	1,421
7	기관운영	4,263
총지출		13,251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024년 9월 13일에 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2025년의 경우 예비비가 편성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은 전액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위원회 추진일정(조사 6개월, 조사연장 3개월, 종합보고서 작성 3개월)을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연구용역 예산과 위원회 활동을 대외에 홍보하고 기록물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함.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전사회 구현' 사업은 조사기간이 2026년 9월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희생자 진상조사 결과가 재난안전 및 피해자권리보장 연구용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 시작 전 조사국과 안전사회국 및 연구기관 간의 중간 결과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조사와 연구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안전사회 구현 사업(신규): 진상규명조사 결과와 연구용역 간 연계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안전사회 구현’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에 대한 세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 확보·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순증한 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안전사회 구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안전사회 구현	-	-	293	293	순증

[안전사회 구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연구비 1억 2,500만원**
- 재난안전 관련 조사·분석 연구 7,500만원
- 피해자 권리침해 관련 조사·분석 연구 5,000만원

자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 사업의 계획에 따르면 피해자·희생자 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됨. 연구용역 결과는 재발방지대책(안)과 최종 종합결과보고서의 핵심 내용으로 반영되어, 10·29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 등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하게 됨.

4) 일반회계-안전사회 구현(1131-320)(안전사회국)

[2026년도 안전사회 구현 사업 계획]

재난안전·권리침해 현장 및 실태 조사	재난안전·권리침해 조사·분석 연구 용역 수행 및 전문가 감정	재난안전·권리침해 관련 세미나,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재난안전·권리침해 개선방안 연구 용역**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자료 제출 요구 • 현장 실지조사 등 관련 자료 수집	• 재난안전 및 피해자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분석 • 조사 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전문가 감정 실시 등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자료 제출 요구 • 사실/ 정보 조회, 감정 의뢰, 전문가 자문 등 • 신청 및 직권사건 관련 조사·분석 연구 등	• 조사·분석 연구 자료 및 전문가 감정 자료 등을 토대로 **재난안전·권리침해 개선방안 연구**
재난안전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자 권리침해 구제 방안 마련	재난안전·권리침해 재발방지 대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재난안전·권리침해 재발방지 대책 평가 및 수정	종합 결과보고서 발간/보고/배포
• 재난안전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 • 피해자 권리침해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재난 안전·권리침해 재발방지 대책의 유효성 검증	• 전문가 및 관계인 의견에 따른 보완조사 • 전문가 및 관계인 의견 검토 및 타당성 평가 → 재난안전·권리침해 재발방지 대책 수정	• 종합 결과보고서 발간/보고/배포

자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나. 검토의견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26년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용역 역시 같은 시한 내 종료되어야 하므로, 진상조사 결과가 연구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연구용역 시작 이전에 진상규명조사국과 중간 결과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조사와 연구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026년 9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이후 3개월간 종합보고서가 작성·발간될 예정임. 이에 따라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6년 12월 종료되며, 사무처는 잔존사무처리를 위하여 2027년 3월까지 존속하게 됨.[5)]

[10 · 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추진계획]

사전조사	⇨	조사	⇨	조사 연장	⇨	종합보고서 작성	⇨	청산 등 잔존사무 처리
'25.5.17. ~ 6.16.		'25.6.17. ~ '26.6.16.		'26.6.17. ~ 9.16.		'26.9.17. ~ 12.16.		'26.12.17. ~ '27.3.16.

자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따라서 피해자·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포함하여 이 사업의 연구용역 등 연구활동도 2026년 9월 내 마무리 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2026년 연구 용역 계획은 연초에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4~5월에 연구가 종료되도록 계획하고 있음.

---

5)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에 조사개시를 결정하여 조사활동이 2026년 9월 17일까지(연장기간 3개월 포함) 수행될 수 있으며,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등을 위하여 추가로 기간 연장시 2026년 12월 17일까지 활동이 가능함. 이후 사무처는 잔존사무 처리 후 2027년 3월 17일까지 존속할 예정임.

「10 · 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2026년 안전사회 구현 사업 연구용역 계획]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과제명	연구내용	계약액
재난안전조사 및 연구	• 안전문화 대책 수립 관련 (연구기간) **'26년 1월 ~ '26년 4월** (계약일로부터 90일)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사례를 연구하여 국내 제도·정책·법령·관행 등의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25
	• 재난응급의료체계의 조사·분석·개선연구 (연구기간) **'26년 1월 ~ '26년 4월** (계약일로부터 90일)	국내·외 재난응급의료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존 운영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 목적	25
	• 재난관리정보 체계 구축·운영 현황 조사·분석·개선연구 (연구기간) **'26년 1월 ~ '26년 4월** (계약일로부터 90일)	재난상황을 관리는 정보체계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유의미한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 목적	25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 대규모 재난 시 공공과 민간의 정신건강 대응 체계 연구 (연구기간) **'26년 1월 ~ '26년 5월** (계약일로부터 120일)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 공공과 민간의 정신건강관리를 등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개선책 마련	25
	• 재난 희생자의 사회적 기억 및 추모를 위한 국가·국제적 차원의 추모사례 연구 (연구기간) **'26년 1월 ~ '26년 4월** (계약일로부터 90일)	재난 희생자의 사회적 기억 및 추모를 위한 국가·국제적 차원의 추모사례 조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추모 공간 또는 조형물 조성, 추모 행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추모·위로·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25

자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다만 진상 조사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함. 현재 진상규명조사국은 피해자·희생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조사기간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6] 2025년 9월 중순 기준 총 282건을 배당하였고 227건의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종결사건은 각하로 인한 1건임.

6) 일반회계-이태원참사 진상규명(1131-310) 세부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국내조사, 국외조사 등 18억 5,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2025년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조사 현황]

(단위: 건)

구분	배당		신청서 검토 중	조사개시		종결	
	신청	직권		신청	직권	신청	직권
조사총괄과 (구조적원인)	1	6	-	1	6	-	-
	7			7		-	
조사1과 (희생자)	106	-	16	83 *병합 7	-	-	-
	106			83		-	
조사2과 (피해자)	48	121	31	16	121	1(각하)	-
	169			137		1	
계	155	127	47	100 *병합 7	127	1	-
	282			227		1	

주) 2025년 9월 18일 기준

자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이 사업의 연구용역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나 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하여 진상규명조사국의 진상규명 조사 및 안전사회국의 안전사회 구현 관련 조사와 단절되어 진행될 우려가 있음.[7)]

따라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10·29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재난방지 등 사업목적에 충실히 기여하기 위해서는 진상 조사결과를 연구 중간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유·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연구기간 시작 이전에 진상규명조사국과 안전사회국 및 연구기관 간 정기적 협의 계획 및 중간공유 지침을 수립하는 등 조사와 연구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이에 대해,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관련 연구용역이 별도로 추진 예정인 가운데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는바,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구현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임.